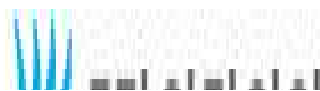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영역 보고서

중 · 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이 보고서는 연구영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6. 12.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 21
연구 책임자 조금주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연구 원 최윤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
권재원 (고덕중학교 교사)
연구 보조원 김윤나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박사과정)

연구 요약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 학교생활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침해사례와 인권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학생 인권 개선책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학생 인권 유형에 따른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침해 현상은 학교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 배경, 성별, 성적, 외모에 따른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매체를 통한 표현 참여의 제한, 국기에 대한 경례, 종교행사 참여로 인한 사상·양심·종교의 강요, 자치활동 및 외부 집회 참여 제한으로 인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일기장,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자유권의 침해가 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체벌로 인한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부당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보호권,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빈곤층 및 소외 학생들에 대한 복지권, 정당하게 일할 권리 등에 대한 침해가 그 예이다.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학교생활규칙에 근거하여 규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두발에서, 복장, 양말, 신발까지 제한을 두고, 두발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생활규칙 자체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 따라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학생 인권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현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의 중고 재학생 및 교사와 학부모를 모집단으로 층화 표집한 1,955명이다. 이들을 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학생이 1160명, 학부모 533명, 교사가 262명이다. 분석 결과, 유의미한 내용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규칙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48.5%가 어렵פות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규칙 공개를 모르는 비율도 절반에 달했다. 학교생활규칙의 제·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시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개정 규칙에 대해 만족을 나타낸 학생과 학부모는 20%대였으나, 교사들은 60.3%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반응의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은 복장관련 규칙들, 두발관련 규칙들, 학생회 입후보자 성적 제한 규정 등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86.7%가 처벌하기 전에 충분히 통보했다고 응답했으나, 학생 83.7%, 학부모 90.0%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집단간 차이를 드러냈다. 기본권적 인권 상황에 관한 문항에서는 교사가 스스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여기는 정도에 비해 학생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여기는 정도가 월등히 높았다. 한편 급식 및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급식 장소가 식당인 경우, 54.3%가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설이 낡고 위험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식수에 대한 불만도 높게 나타났다. 부업(아르바이트) 관련 인권 침해 사항으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부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한 시간보다 더 많은 노동을 시키거나 심야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대응과 관련해, 교사들은 상담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학생은 상담창구 마련과 정부의 감시·징계를 42%로 동일하게 반응하였다. 청소년 인권 의식과 대한 분석 결과, 학생들은 폭력으로부터 보호, 합리적인 징계절차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았고, 학부모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발, 복장,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의식을 낮게 나타냈다. 학생 인권 문제의 원인과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37.7%가 학급당

인원 수 감축을 원한다고 답했으나, 학생과 학부모는 제도마련, 학교 규칙의 자율적 제정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았다.

이상의 논의들은 학생인권을 둘러싼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교사들의 문제의식이 다르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각기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는 것이기도 하나, 이들 각 집단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설문 조사, 면접 조사, 간담회를 통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국 학교들의 학교생활규칙 내용 분석에 따른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금지 형태의 통제중심의 학교 규칙 내용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외국 사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오랜 유교적 전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중국, 대만은 물론, 학교를 획일적으로 운영해 온 일본의 경우, 학교 규칙에 상세한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에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분석 대상국이었던 미국, 캐나다, 호주 역시 금지 조항들이 많다. 이러한 성격은 종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도 그대로 나타나 설립별에 따라 커다란 차이없이 통제위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국의 경우 학생들의 인권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간의 대립이 우리에게 비해 적은 것은 금지 위주의 통제성격 띤 학교생활규칙 자체의 문제만이 아님을 시사한다. 오히려 우리나라 학교생활규칙들은 다른 나라의 학교들에 비해 상세하지 못하다. 바로 이것이 어느 선까지 허용되고, 규제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학생, 교사간 문제 소지로 등장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외국의 학교 규칙이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규정은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상과 그릇된 행동을 자제하게 하기 위한 벌의 명백한 선으로 작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간 마찰을 줄일 수 있게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가 학생 인권 보호 및 함양 관련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칙이 제정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민주적인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대표와 교사 대표가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히 학부모 대상의 인권 교육이 시급하다. 이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는 것은 교육 3주체의 박약한 인권의식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인권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교육과 인권의 가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철학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직원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청소년 인권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사점들에 기반하여, 현재 각종 정당이나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책안들을 고려해 몇 가지 가설적인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 인권과 관련해 관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을 잘 실현하는 모범적 학교사례들을 발굴, 이런 학교들에 대한 시상, 다른 학교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별로 인권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의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은 안들은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학생인권신고센터’(가칭)가 필요하기는 하나, 이처럼 구체적인 제시안은 이에 대한 상세안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학생 인권 보장 및 신장을 위한 법 체제 마련 및 정비에 관한 건이다. 현재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법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차 례

| | |
|--|------------|
| I. 서론 | 1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 내용 | 4 |
| 3. 연구 방법 | 5 |
| 4. 연구 제한점 | 9 |
| II. 이론적 배경 | 10 |
| 1. 선행 연구 | 10 |
| 2. 학생 인권의 개념과 특성 | 15 |
| 3. 학교의 제도적 특성과 재학 관계의 성질, 그리고 학생의 법률적 지위 | 17 |
| 4.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학생 인권 내용 | 20 |
| 5. 인권 및 학생 인권의 유형과 유형별 주요 이슈 | 24 |
| III.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인권 침해 내용 분석 | 39 |
| 1. 중·고등학생 인권 제한 및 침해 내용 | 39 |
| 2. 학교생활규칙 구조·내용 및 특징 파악 | 41 |
| 3. 2005년 이후 학교생활규칙 개정 내용 | 50 |
|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 58 |
| IV. 중·고등학생 인권 실태 조사 | 67 |
| 1.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 조사 | 67 |
| 2. 학교 방문 면접 조사 | 103 |
| 3. 간담회 | 114 |
| V.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칙 내용 분석 | 118 |
| 1. 미국, 캐나다, 호주 학교 규칙 | 118 |
| 2. 중국, 대만, 일본 학교 규칙 | 131 |
| VI. 결론 | 162 |
| 1. 요약 | 162 |
| 2. 시사점 | 168 |
| 3. 중·고등학생 인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172 |
| 참 고 문 헌 | 175 |
| 부 록 :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 설문지 | 182 |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90년 5월 발표된 청소년 헌장에 따르면, “학교는 청소년이 조화로운 배움을 통하여 교양과 지식과 체력을 기르는 곳이다. 자질을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통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을 가르치며, 문화 의식과 민주 시민 정신을 높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전문과 5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던 청소년 헌장은 1998년 전면 개정되어 전문과 청소년의 권리 12개조, 청소년의 의무 9개조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헌장까지 개정하며 1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학교는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커녕 여러 측면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곳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통사회의 청소년은 미성숙자로서 온전한 사회구성원이 아니었다. 따라서 부모를 비롯한 어른의 지도와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몸에 익혀야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 들어 과학과 발달심리학의 발달로 아동과 청소년 일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루소와 듀이의 자연주의적 아동관이 설득력을 얻게 됨에 따라 청소년은 성인을 표준으로 하여 미성숙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갖는 온전한 인격체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의 인권논의는 바로 이러한 사상의 연장선 위에서 배태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인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두발 자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가 두발의 길이와 스타일을 규제하자 학생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나선 데서부터 시작한다.

1983년 두발 자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앞머리 3cm 이내’, ‘귀밑 3cm 이내’ 등으로 자체 규정을 두자, 서울시 교육청은 2000년 8월 9일 여름 방학 개학과 함께 일선 학교에 ‘학교규정개정위원회’를 설치, 두발 제한 등 각종 학교 규칙을 새로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교육청 차원에서의 두발 길이 및 염색에 대한 지침 등 규제는 없으나 학교장이 재량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생활규칙 개정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내용의 합리성 및 기본권 보호원칙에의 부합성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더욱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율과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제 이발 실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두발에 대한 제한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생 두발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었다. 2000년 8월초 학생들은 거리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청와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는 민원을 제가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9월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공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예시안을 통하여 규제 완화를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두발 규제권이 학교장으로 넘어간 상태였으므로 그 기대가 충족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6월 14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05년 5월까지 조사된 전체

중학교의 92.56%에 해당하는 2,761개교와 고등학교의 91.10%에 해당하는 1,924개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5년에 32개의 중학교와 44개의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규정뿐만 아니라, 그 처벌에 있어서도 비인권적인 형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21세기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를 비롯, 인권 침해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05년 6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 학교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각급 학교의 두발 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칙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06년 7월, 두발 규제, 강제보충수업 등 학생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서울 D고 3학년 O군에게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특별교육이수는 퇴학 처분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무거운 징계이다. 이에 대해 O군은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학생의 날’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바뀐 2006년 11월 3일, 두발 제한과 체벌 등 학교 공간의 인권 침해를 그쳐달라는 각종 행사가 이어졌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두발단속’이 여전히 강행됐다. 수원시 O고에서는 이날 오전 대입수능 시험을 코앞에 앞둔 3학년 전체 남학생을 대상으로 두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틀 전 앞머리는 손으로 내렸을 때 눈썹 위에, 옆, 위, 뒷머리는 손을 넣었을 경우, 머리카락이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이발소로 이동시켜 강제로 자르겠다는 공고문을 붙여 놓자, 학생들은 ‘머리를 잘리는 게 아니라 인권이 잘려나가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것이 문제되자, 학교 측은 ‘공고문의 내용처럼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머리를 단정히 자르도록 지도하는 것에 그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수원 O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처럼 적지 않은 학교에서 강제 두발단속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강제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따라서 강제이발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비인권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학생의 두발에 대한 제한은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제한의 내용과 절차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 합리적 과정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83년부터 교복자율화가 실시되었으며, 1986년 2학기때부터 다시 복장 자율화 보완조치를 채택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을 입거나 자유복을 입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0년 8월 ‘학교생활 지도 대책’ 발표를 통해 다시 교복 착용을 적극 권장하라는 공식 지시를 내렸고, 이후 학교에서 교복 차림이 부활하였다.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인권 침해 현상은 두발 제한 및 복장 부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강제로충수업, 소지품 검사, 이를 지키지 않을 때의 체벌 등 그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8년 1월, 교육개혁위원회는 학생체벌 금지를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대체 지도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8년 3월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체벌 금지 원칙을 마련하였다.

한편 1999년 2월에는 국회에서 교사 체벌권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다. 2000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교사의 체벌 재량권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2002년 6월, 교육부는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통해 구체적인 체벌 규정을 마련하고 벌점제를 도입하였다. 같은 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예시안 개정을 권고했으나 11월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03년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아동 체벌을 전면 금지토록 권고하였다. 이어 2004년 6월 대법원은 학생 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2005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상습 폭력 교사 퇴출 등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했으며, 2006년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학생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O고에서 심각한 학생에게 무려 200대를 때린 과도한 체벌이 논란이 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8월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 체벌을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안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키는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법원의 2004년 판례에 따라 ‘용인되지 않은 체벌’을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감정에서 비롯되거나 공개적으로 체벌이나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이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안없는 체벌금지가 자칫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초·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적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4가지 학생 징계 규정에 ‘출석중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오늘날 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항은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와 체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침해 현상은 학교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이다. 가정 배경, 성별, 성적, 외모에 따른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매체를 통한 표현 참여의 제한, 국기에 대한 경례, 종교행사 참여로 인한 사상·양심·종교의 강요, 자치활동 및 외부 집회 참여 제한으로 인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일기장,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자유권의 침해가 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체벌로 인한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부당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보호권,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빈곤층 및 소외 학생들에 대한 복지권, 정당하게 일할 권리 등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06년 1월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에서 전국 고등학생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42.7%가 ‘두발과 복장 규제’라고 답했고, 그 다음이 ‘교사의 감정섞인 체벌과 언어’가 29.4%,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학교 행정’ 22.9% 등으로 답하였다.

2006년 3월,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시·군 교육청과 함께 도내 전체 고교 338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생활규정의 학생 인권 침해 및 문제 야기 가능성 여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 58개교의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관련 조항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개교가 퇴학 관련, 52개교가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관련, 30개교가 징계 및 폭력사건 처리 관련, 21개교가 용의·복장 관련, 4개교가 소지품 검사 등 기타 관련 조항에서 각각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관련 조사들을 근간으로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 학교생활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을 둔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침해사례와 인권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학생 인권 개선책을 탐색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을 비롯, 학생 인권의 개념과 특성들에 대해 살펴보고, 학교의 제도적 특성과 재학 관계의 성질, 그리고 학생의 법률적 지위, UN 아동권리협약을 통해서 본 학생 인권의 내용, 학생 인권의 유형과 유형별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내용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학교생활규칙의 구조 및 내용들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한 진정 사례 등을 분석한다.

셋째, 학교생활규칙 및 인권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설문을 실시하여, 학생 인권 실태 및 만족도를 파악한다. 또 학교 방문 조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학생 인권 문제를 학생, 교사를 통해 알아본다. 한편 학생인권운동가 및 생활지도부장 교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이유 및 개선책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외국의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칙 및 처벌 규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학생 인권 개선의 비교 자료로 활용한다.

다섯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 침해 정도를 파악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탐색한다. 단위학교 차원,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행해져야 할 과제들은 물론 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모색한다.

3. 연구 방법

오늘날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상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들을 시행하였다.

1) 문헌조사 및 인터넷 사이트 검색

학생 인권에 관한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국내 및 국제 청소년 인권 단체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참고문헌 뒤 참고자료에 제시)하여 필요한 부분들을 인출하여 사용했다.

2) 설문조사

중·고등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문제점 및 개선책 등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법(questionnaire)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근간으로 학부모 및 교사들 대상의 질문지를 사용한다.

(1) 표집 방법 및 대상

표집 추출을 위한 모집단 파악에 사용한 교육기초통계는 다음 페이지 <표 1>과 같다.

모집단을 구성하는 비율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대표성을 키울 수 있는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층화추출법은 단순 무작위 추출법에 비해 표집의 대표성을 큰 폭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층으로부터 일정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표집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규모별, 설립별, 단계별, 공학별, 계열별을 고려하여 선정한 총 42개의 학교들은 다음 <표 2>와 같다.

이렇게 선정한 학교들을 시도별·지역별 규모로 보면 서울특별시 4개교, 부산 2개교, 대구 3개교, 인천 3개교, 광주 3개교, 대전 3개교, 울산 2개교, 경기 3개교, 강원 2개교, 충북 2개교, 충남 2개교, 전북 3개교, 전남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3개교, 제주 3개교이다.

<표 1> 교육기초통계에 근거한 모집단

(단위 : 개교)

| 단 계 별 | 시도별 | 지역규모별 | | | 설립별 | | | 별학 및 공학별 | | | 계 | |
|------------------|-------------|-------------|----------|----------|-------|-----|-----|----------|-------|-------|-----|-----|
| | | 특별 / 광역시 | 읍면 지역 | 도서 벽지 | 국립 | 공립 | 사립 | 남자 | 여자 | 공학 | | |
| 중 학 교 | 서울 | 363 | | | 2 | 251 | 110 | 50 | 47 | 266 | 363 | |
| | 부산 | 162 | 3 | 1 | - | 126 | 40 | 42 | 32 | 92 | 166 | |
| | 대구 | 106 | 12 | | 1 | 83 | 34 | 14 | 9 | 95 | 118 | |
| | 인천 | 97 | 3 | 14 | - | 103 | 11 | 30 | 27 | 57 | 114 | |
| | 광주 | 75 | | | 1 | 48 | 26 | 10 | 8 | 57 | 75 | |
| | 대전 | 76 | | | - | 57 | 19 | 13 | 10 | 53 | 76 | |
| | 울산 | 40 | 11 | | - | 47 | 4 | 6 | 7 | 38 | 51 | |
| | 경기 | 319 | 132 | 21 | - | 387 | 85 | 45 | 46 | 381 | 472 | |
| | 강원 | 44 | 68 | 49 | - | 146 | 15 | 31 | 28 | 102 | 161 | |
| | 충북 | 43 | 76 | 4 | 2 | 102 | 19 | 17 | 16 | 90 | 123 | |
| | 충남 | 44 | 140 | 3 | 1 | 140 | 46 | 30 | 26 | 131 | 187 | |
| | 전북 | 72 | 125 | 4 | - | 150 | 51 | 22 | 21 | 158 | 201 | |
| | 전남 | 51 | 161 | 36 | - | 211 | 37 | 29 | 26 | 193 | 248 | |
| | 경북 | 80 | 187 | 16 | - | 205 | 78 | 55 | 46 | 182 | 283 | |
| | 경남 | 96 | 153 | 6 | 1 | 176 | 78 | 44 | 43 | 168 | 255 | |
| | 제주 | 20 | 20 | 2 | 1 | 35 | 6 | 7 | 7 | 28 | 42 | |
| 소계 | 1,688 | 1,091 | 156 | 9 | 2,267 | 659 | 445 | 399 | 2,091 | 2,935 | | |
| 고 등 학 교 | 인 문 계 | 서울 | 214 | | | 2 | 72 | 140 | 66 | 62 | 86 | 214 |
| | | 부산 | 87 | 3 | 1 | 1 | 43 | 47 | 32 | 27 | 32 | 91 |
| | | 대구 | 59 | 6 | | 1 | 26 | 38 | 19 | 14 | 32 | 65 |
| | | 인천 | 59 | 1 | 10 | - | 49 | 21 | 23 | 20 | 27 | 70 |
| | | 광주 | 48 | | | 1 | 12 | 35 | 17 | 13 | 18 | 48 |
| | | 대전 | 43 | | | - | 22 | 21 | 13 | 10 | 20 | 43 |
| | | 울산 | 25 | 4 | | - | 18 | 11 | 8 | 6 | 15 | 29 |
| | | 경기 | 189 | 21 | 2 | 1 | 140 | 72 | 22 | 18 | 172 | 212 |
| | 강원 | 25 | 25 | 16 | 1 | 52 | 13 | 16 | 11 | 39 | 66 | |
| | 충북 | 29 | 19 | 1 | 2 | 32 | 15 | 10 | 8 | 31 | 49 | |
| | 충남 | 27 | 48 | | 1 | 46 | 28 | 17 | 17 | 41 | 75 | |
| | 전북 | 48 | 25 | 1 | 1 | 27 | 46 | 25 | 20 | 29 | 74 | |
| | 전남 | 30 | 45 | 10 | - | 51 | 34 | 13 | 14 | 58 | 85 | |
| | 경북 | 65 | 56 | 4 | - | 60 | 65 | 40 | 33 | 52 | 125 | |
| | 경남 | 62 | 56 | | 1 | 67 | 50 | 24 | 21 | 73 | 118 | |
| | 제주 | 13 | 5 | | 1 | 10 | 7 | 6 | 6 | 6 | 18 | |
| 소계 | 1,023 | 314 | 45 | 12 | 727 | 643 | 351 | 300 | 731 | 1,382 | | |
| 실 업 계 | 서울 | 78 | | | - | 19 | 59 | 5 | 30 | 43 | 78 | |
| | 부산 | 44 | | | 2 | 12 | 30 | 6 | 8 | 30 | 44 | |
| | 대구 | 18 | 2 | | - | 9 | 11 | 4 | 5 | 11 | 20 | |
| | 인천 | 27 | 1 | 2 | 1 | 19 | 10 | 12 | 10 | 8 | 30 | |
| | 광주 | 13 | | | - | 6 | 7 | - | 4 | 9 | 13 | |
| | 대전 | 13 | | | - | 6 | 7 | 4 | 4 | 5 | 13 | |
| | 울산 | 8 | 4 | | - | 10 | 2 | 1 | 2 | 9 | 12 | |
| | 경기 | 69 | 46 | 11 | - | 68 | 58 | 2 | 18 | 106 | 126 | |
| | 강원 | 16 | 21 | 11 | - | 42 | 6 | 6 | 9 | 33 | 48 | |
| | 충북 | 14 | 16 | | - | 24 | 6 | 1 | 3 | 26 | 30 | |
| | 충남 | 12 | 23 | | - | 27 | 8 | - | 8 | 27 | 35 | |
| | 전북 | 22 | 35 | | 1 | 35 | 21 | 5 | 17 | 35 | 57 | |
| | 전남 | 15 | 43 | 6 | - | 51 | 13 | - | 6 | 58 | 64 | |
| | 경북 | 23 | 50 | 2 | 1 | 47 | 27 | 7 | 21 | 47 | 75 | |
| 경남 | 21 | 35 | | - | 27 | 29 | 6 | 16 | 34 | 56 | | |
| 제주 | 6 | 6 | | - | 10 | 2 | - | 1 | 11 | 12 | | |
| 소계 | 399 | 282 | 32 | 5 | 412 | 296 | 59 | 1621 | 492 | 713 | | |

<표 2> 설문 대상 학교

| 지역별 | 설립별 | 단계별 | 공학형태 | 계열 | 학교 수 | |
|---|--|----------|---------------------------|---------------------------|--------------------------|-----|
| 서울(4개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6개교) | 국· 공립 | 중학교 | 남중/여중 : 각 1개교 공학 : 3개교 | - - | 5개교 | |
| | | 고등학교 | 남고/여고 : 각 1개교 공학 : 3개교 | 인문계 인문계 2개교 / 실업계 1개교 | | 5개교 |
| | 사립 | 중학교 | 남중/여중 : 각 1개교 공학 : 3개교 | - - | 5개교 | |
| | | 고등학교 | 남고/여고 : 각 1개교 공학 : 3개교 | 인문계 인문계 2개교 / 실업계 1개교 | | 5개교 |
|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개교) | 국· 공립 | 중학교 | 남중/여중 : 각 1개교 공학 : 4개교 | - - | |
| | | | 고등학교 | 남고/여고 : 각 1개교 공학 : 3개교 | 인문계 인문계 2개교 / 실업계 1개교 | 5개교 |
| 사립 | | 중학교 | 남중/여중 : 각 1개교 공학 : 4개교 | - - | 5개교 | |
| | | 고등학교 | 남고/여고 : 각 1개교 공학 : 4개교 | 인문계 인문계 3개교 / 실업계 1개교 | | 6개교 |

설문 대상 학교는 설립별, 단계별, 공학형태도 고루 표집되도록 고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실업계고등학교(농업고, 공업고, 정보산업고, 수·해양고, 실업고),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고), 특성화고등학교(조리, 원예, 미술, 디자인, 애니메이션, 인터넷 등)로 나누어지는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이에 따라 표집된 42개교 중에는 공업고 1개교, 정보고 2개교, 과학고 1개교, 디자인고 1개교, 대안중학교 1개교, 대안고등학교 1개교 등 7개교가 포함되었다.

집락추출법(cluster sampling)에 의한 1차 집락 단위는 학교, 2차 집락 단위는 학급으로 한다. 따라서 전국에 걸쳐 선정된 42개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표 3> 설문 배포 대상

| 집단 | 대상 | 학교 수 | 대상자 수 |
|-----|---|------|--------|
| 학생 | 중학생 1, 2, 3학년별 무작위 10명=30명 | 20개교 | 1,260명 |
| | 고등학생 1, 2, 3학년별 무작위 10명=30명 | 22개교 | |
| 학부모 | 1, 2, 3학년 5명씩=15명 | 42개교 | 630명 |
| 교사 |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각 학년부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7명 | 42개교 | 294명 |
| 계 | | | 2,184명 |

10월 16일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예비검사를 거쳐, 10월 27일 대상 학교로 발송된 설문은 11월 15일까지 40개교에서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은 총 1,955부로 89.5%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2) 설문 내용 구성

설문의 내용은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규칙 인지도, 제정 절차, 바람직한 제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것, 학교 규칙 준수 정도 및 인권 침해 인식 정도에 관한 것, 처벌 여부, 처벌 종류, 지도 방법, 징계처리에 관한 것, 학교생활 인권 침해 여부, 인권 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것, 청소년 권리 인식 정도에 관한 것, 인권 침해 방지 과제, 인권 교육 필요성에 관한 것, 건강권 침해에 관한 것, 일할 권리에 관한 영역의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 내용들을 설문 대상인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으로 제작했으며, 제작된 설문지는 전문가인 2명의 교수에 의해 검토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3) 분석 방법

수합된 설문지는 코딩 작업을 거쳐 SPSS Window Version 13.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인권 상황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기초로, 지역별, 설립별, 단계별, 공학별, 계열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집단, 교사집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아울러 학교 생활규칙에 대한 지지정도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학교 방문 면접 조사

두발 및 용모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학생들의 반발을 일으킨 학교들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면접(interview)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면접 조사하였다. 대상 학교는 중학교 1개교, 인문계 1개교, 공업고 1개교로 3개교에서 실시되었으며, 각 학교의 생활지도부장 교사와 각 학년별로 한 명씩 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자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3명의 교사에 의해 12월 6~7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4) 간담회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분석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향후 개선책을 모색하고 관련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 검토하였다.

12월 6일 실시된 간담회에는 교직 경력 36년의 일선 학교 생활지도부장 교사와 오랫동안 학생 인권 운동을 펼쳐온 인권운동가 및 청소년 인권 운동단체 소속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4. 연구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실태 조사이므로, 진학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미진학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제한점을 지닌다.

둘째, 용어상의 문제로, 법령이나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학교생활규정뿐 아니라, 학교생활규칙,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규칙, 학교 규율이 함께 쓰이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도 통일하지 않고 쓰고 있다.

셋째, 학생에 대한 관념과 교육관도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15세기 이후, 중세의 학칙은 학생에 대한 감시, 체벌 등을 주요소로 학생을 어른과 대비시켜 훈련하고 규율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18세기 되면서 학생은 성인 생활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아 중세와 같이 학생에게 치욕적인 벌을 가한다든지 하는 관념은 없어지게 되었다. 19세기 되면서 규율이나 규칙에의 복종보다는 학생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키우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교육은 훈련 과정을 필요로 하며, 규율 자체가 하나의 교육과정이 될 수 있고, 통제적 성격을 띤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학생을 과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여 억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자 한다. 학생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통제는 학생과 교사의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규율이 교사나 학부모인 기성세대에 의해서보다는 학생 스스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들을 자발적으로 구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 여전히 통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넷째,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칙 비교 분석에 있어,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나라들을 비교했으나, 몇몇 나라들에 국한하였으며, 각 나라들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및 공립·사립·종립을 고려하기는 했으나 한두 학교의 규칙들을 대상으로 국한함으로써, 그 나라의 전체적 경향성까지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중등학생들은 학교 규율에 영향을 받는 진학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들은 크게 국제 인권 관련 연구, 청소년 인권 연구, 학교 규율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국제 인권 연구

이용교 외가 번역한 인권교육의 기법(1996)이라는 국제사면위원회가 영어로 발간한 소책자(Shopping List of Techniques in Teaching Human Rights)에서는 인권의 내용을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다.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권리 알기, 인권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기, 국제적 유대의 필요성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천정웅(1999: 95)은 「청소년인권 : UN·국제기구의 발전노력과 주요국 동향」 편에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UN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1989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채택한 것은 그 하나의 결실이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청소년인권을 국제기구의 권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아동권리협약)가입 이후 아동과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 협약은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하고 193개국이 채택했으며, 192개국이 비준 서명하였다. 동 협약에 서명 비준한 당사국은 매 5년 마다 정부 또는 NGO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갖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 제1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00년 5월 1일 제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02년 5월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2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 하나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이다. 한국은 2004년 9월 24일에 각각 비준하였다. 이 2개의 선택의정서에 대한 국가보고서는 2006년 12월 중 제출예정이다.

2) 청소년 인권 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7)는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통해 한국의 인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역사와 배경, 한국에서 인권 의식이 약한 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인권 교육의 내용, 영역, 학습단계, 인권 교육의 학습기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해설한다. 그리고 인권 교육의 현실을 알기 위하여 현행 도덕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를 분석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인권 문제 등을 간략히 다룬다. 마지막 장에서 인권 교육 수업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덕과 교과와 사회 교과와 수업 지도안을 제시한다. 또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인권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교(1999)는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에서 청소년 권리의 특성을 고찰하고, 청소년 권리의 세계적 동향을 UN 등 국제기구의 주요 문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사례 및 프로그램과 관련 단체 활동들을 소개하고, 국내의 경우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사례를 발굴해 놓았다.

특히, 국내의 청소년 권익증진 활동 현황으로는 충남청소년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중고등학생복지회, 사이버유스, 인권동아리 타래, 젊은 모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프로그램 사례 등 다양한 권익증진 관련단체의 활동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일반 인식, 청소년의 권리유형별 인식, 청소년 권익증진 방안과 과제로 나누어 정리 제시하였다.

이용교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의 권익증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며, 청소년의 시민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 등의 범사회적인 노력이 활성화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1999)은 「인권교육길잡이」라는 책에서 인권의 출발점, 인권의 성격, 인권에 대한 인류의 약속 등을 소개한다. 인권의 역사, 인권 교육 활동, 인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 등을 요약해서 제시한다. 인권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1, 2, 3 단계의 과정을 설명한다.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생명,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 책임, 연대, 평화, 자연과의 조화 등을 예로 들고 이를 설명한다. 이 책은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민간단체가 인권 운동의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제작한 것이다.

천정웅(1999: 125)은 「청소년인권 : UN·국제기구의 발전노력과 주요국 동향」에서 청소년 인권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와 주요 외국의 동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와 수행 전략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최윤진은 그의 저서 「청소년의 권리(1998)」에서 청소년의 권리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고 가정, 학교, 직장 등 청소년의 각 생활 영역 속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청소년 권리문제와 주요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권리의 허용과 제한의 근거와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관련 법률 내용을 분석하여 각 주제별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밝히고 있다.

최윤진의 논문 “청소년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고찰”(1999)에서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논리의 부당성을 다양한 실증적 자료제시와 논리적 분석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최윤진(1999: 45-46)은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의 현주소”에서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청소년’과 ‘자율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이미지가 마치 서로 힘겨루기를 하듯 대치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권과 자유권 및 참여권 사이의 조정과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주요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우리 청소년들은 실제 현실의 권리보장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특히 가정에 비해 학교와 사회에서 권리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보호권에 비해 자율권의 보장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권리의식 수준에 실제의 권리 충족경험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보호 및 복지권에 비해 청소년의 자유권 및 참여권 등 자율권의 향유와 행사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최윤진, 2000)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 성격과 내용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아동과 청소년은 그 성숙과 능력정도, 그리고 두 시기의 요구와 차이점에 따라 권리의 내용과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두 집단의 권리와 차이점은 20C 후반 UN을 중심으로 제정되거나 선포되어 왔던 국제 규범의 분석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 내용은 2001년도의 최윤진의 논문 “역사적 맥락과 현시대 국제 규범에 비추어 본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에 잘 설명되고 있다.

정희옥 외(2000: 121~124)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 규율, 교칙,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청소년 참여권, 복지권 등과 같은 본래적 권리의 속성과 관련된 문제들 보다 언어, 체벌 등을 중심으로 권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직 청소년들이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미약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청소년권리의 주요 개념인 참여권, 자유권, 복지권 등이 서로 상충되는 이론적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참여권은 적극적 자유권에 해당되지만, 참여권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학습한다는 교육적인 측면과 참여권의 보장이 청소년권리의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제고해야 할 청소년들의 권리이다. 그러나 참여권은 자기결정의 과정을 핵으로 하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육 받을 청소년의 복지권과 일면 상충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 성인의 입장에서 양육의 명목으로 청소년의 참여와 자기결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예를 들어 ‘체벌’의 경우 어디까지가 교육적 차원, 또는 교권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유권 및 복지권의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라는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권리를 구성하는 위와 같은 주요 개념의 속성과 범주에 관련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에 제시되었던 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권리 관련 규정의 제정·정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세부 실천 규정의 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만약, 법률체계상의 문제로 단일법안 제정이 불가능하다면, 각 상위의 권리(인권)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청소년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실천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 및 학부모 대상의 ‘청소년권리 주체성’을 인식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권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권리와 관련한 교육이 정규교육인 학교 교과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청소년권리보호기구’의 설치 및 각 교육청 단위의 대

책기구(가칭 ‘청소년권리보호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청소년권리보호기구’에는 상담, 교육, 권리관련 정보센터의 기능은 물론 청소년권리 침해에 대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섯째, 학교 내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청소년들의 참여를 인정·보장·유도하는 유연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충족될 경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결정, 예컨대 학교 규율의 제·개정, 학교 행사 일정, 학교교육방침의 결정 등에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 준수를 강요하는 것 보다는,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섯째, 민간단체(NGO) 차원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과 시민운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곱째, 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길은배(2001)는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청소년 인권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인권지표의 정기적 측정과 발간, 관심영역별 집중연구를 통한 지표체계의 보완을 제안하고 있다.

강순원 외(2001)는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매뉴얼에서 인권교육의 소재, 인권교육의 방법, 인권 실현자로서의 자각, 첫째, 노출과 만남, 둘째, 물음과 깨달음, 셋째, 분석과 수용, 넷째, 대안과 적용, 다섯째, 반성과 결단 5가지 교육활동 과정을 제시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참여적인 인권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정준교(2002)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인권 증진방안”에서 가정과 학교 및 사회영역에서 각각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해 청소년들에 대한 신뢰구축, 민법과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법 개정, 공간과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청소년위원회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문용린(2003)은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인권 관련 국제선언 및 협약과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인권 관련 내용을 조사함으로써 인권이 법적인 개념으로서 인권교육 과정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 7차 교육과정의 인권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인권교육의 내용 선정과 구성 방향을 구안, 유, 초, 중, 고 인권교육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권재원(2004)의 연구는 청소년의 수업·인권 불만에 대한 학교·학원을 비교하였다. 최근 사교육의 과도한 팽창의 원인으로 학교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불만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청소년보다 학부모의 의견을 더 중요시 하고 수업 불만에만 치중하여 청소년 인권을 소홀히 다룬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층화 표집 한 27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인권 불만도를 측정하고, 이들을 각각 학교/학원간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업 불만도는 학교/학원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권 불만도는 학교가 학원보다 $p<.01$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원 유인동기로서 학교에 대한 불만이 수업보다 오히려 인권 영역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따라서 사교육 억제를 위해 학교 수업 강화보다 학교에서 청소년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심

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3) 학교 규율 연구

조금주 외 4인(1999)의 연구는 중·고등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각종 학교 규율들이 청소년의 자율성 신장에 장애요소로서 상존해 오고 있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청소년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고 새로운 공동체적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형성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학교규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로 규율 제정 절차와 개정 절차가 대단히 단선적이고 통합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규율의 적용을 받는 학생과 규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세 부분에서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규율을 지켜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규율들은 거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런 규율은 실제로 학생들로 하여금 통제 당한다는 인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둘째, 학교 규율이 학생들의 개성적인 생활과 개별적인 활동 및 자주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규율들 중에서 특히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규율의 예는 크게 복장과 용모에 관한 규율과 학생회 활동에 대한 규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반드시 없어지거나 간섭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율’과 ‘반드시 있어야 할 규율’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우선 지나치게 세부적인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간섭이 축소되어야 하고, 특히 집단행동에 관한 규율과 학생회 활동에 대한 규제는 학생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반면, 교수학습과 관련된 규율과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규율, 형법 위반에 관한 규율들은 존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론적으로 학교 규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사고력과 창의력 육성이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통제’위주의 학교규율은 ‘자율’위주의 학교규율로 바뀌어야 하며, 둘째로, 학생 ‘선도’위주의 학교 규율은 학생 ‘참여’위주의 학교규율로 바뀌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조금주 외 1인(2000. 12)은 1999년에 수행된 「학교규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기초한 대안 탐색 연구」(65~68)에서 학교 규율과 관련하여 자율 규율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제반 관련자들 간의 이해나 인식의 차이가 규율의 자율적인 제·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규율을 제정함으로써 규율의 제·개정을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바꾸어나갈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문제 혹은 교실붕괴로 표현되는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적 기반으로도 작동할 것이다. 또한 통제와 감시위주로 이루어지던 학생생활지도를 교원 및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협조함으로써 학생이 중심

이 되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교 규율 자율 제정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규율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조직한다. 둘째,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학생이 참여하는 학칙을 만들기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셋째, 학교 규율에 대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에 대한 홍보 및 연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 규율 자율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나 토론회 및 연수를 통하여 모범 사례의 선전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율적인 학교 규율을 제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의 참여이다.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학교 규율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실화되지 않으면 민주적인 학칙의 제정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학교 규율에 관한 심의사항에 관해서는 학생들도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재원(2005)은 학교의 복장규정이 청소년의 정치문화와 비행가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학교 복장규정은 교사·학생간의 첨예한 문화충돌을 야기하는 영역 중 하나이다. 이러한 학교 복장규정은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는 비행 예방이라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반면 복장규정이 민주 시민성과 창의성을 저하한다는 반대론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학교 복장규정은 이런 교육적 효과를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관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찬·반 양론 모두 그 효과나 역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학교의 복장 규정이 민주시민성의 핵심인 참여형 정치문화와 비행 예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290명의 청소년을 표집하여 통계적 검정을 시도하였다. 조사 결과 학교 복장규정은 참여적 정향보다 묵종(默從)적 정향을 증가시켜 참여형 정치문화 형성에 부정적 결과를 주었고 비행 가능성 감소에는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교 복장규정은 법적인 근거 뿐 아니라 교육적 효과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2. 학생 인권의 개념과 특성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생래적인 권리와 개인이 사회, 국가와의 관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생래적 권리는 자격과 권한, 즉 최소 기준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라고 할 수 있고, 개인과 국가 또는 집단간의 관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특수한 입장을 반영한 특정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학생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특성을 가질까? 학생권이란 한마디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를 말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학생 인권의 의미와 의의를 윤리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생권의 윤리적 기초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수단적 존재가 아니며,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학생도 신분, 지위, 능력의 고하간에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은 서양의 전통적 인권사상의 내용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개념에 대해 뚜렷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영국의 법률가 W. Blackstone에 의하면 인권이란 ‘자연적 개인권’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인간 개개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의 권위이며 따라서 그의 ‘자유의지(free will)는 스스로의 포기(계약, 합의에 의한)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나 사회의 어떠한 권위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학생권의 교육적 기초

한 개인이 권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능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러한 합리적 판단과 책임 능력은 곧 사회적 차원에서의 한 사람의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저절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습득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 교육은 그 필요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에게는 이러한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부여 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가 이 같은 역할, 즉 소속 학생들을 교육시켜 합리적 판단 능력과 민주 시민적 자질을 키우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다시 학생의 권리가 인식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순환론적 논리가 성립된다. 즉 학교교육 목적의 수행과 달성을 위해서 민주적 교육방식과 학생 권리의 존중이 다시 필요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학교가 바깥 민주사회의 모델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교실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아이디어의 교환 장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학교가 학생을 유능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키우려면 그 안에서 적절한 역할, 행동방식, 가치관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권위적인 한 목소리에 의해서가 아닌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의 교환과 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핵심 멤버들인 학생의 권리가 존중되지 못하고 무시되면 교육과정의 각 부분에서 학생을 소외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자율적인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으며 민주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볼 수 있는 자신의 권리 존중과 이에 따르는 책임 수행 능력을 키우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타인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상호 신뢰의 태도나 자세를 키우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학교가 원래의 교육 목적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제대로 인식되

고 존중되어야 하며 학창 시절 부터 권리, 의무 수행 능력과 이에 따르는 민주주의 원리 습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최윤진, 1991: 56~57).

물론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권리 행사는 무제한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학교는 교육 활동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과 함께 이를 위해 소속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또 행위를 통제할 권한도 갖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 행사도 이와 같은 학교의 고유한 권한 범위 안에서 제한되고 억제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 측이 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합리적 근거나 이유 없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지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갈등을 일으키게 될 때 나타난다. 그러므로 양측의 권리와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의 문제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학생권리의 내용 및 허용범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의 제도적 특성 및 재학관계의 성질, 그리고 학생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기본 이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학생권에 관한 법률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윤진, 1998: 80~81).

3. 학교의 제도적 특성과 재학 관계의 성질, 그리고 학생의 법률적 지위

학교는 국가로부터 국민 교육의 의무를 위임받은 기관이다. 따라서 주요 구성원이며 교육대상인 학생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는 자체의 소속 구성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바깥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도 같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군대나 경찰과 같은 공공기관이 보여주는 기관적 특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바깥 사회 구성원들의 공공안전이나 이익을 위해 내부 구성원들에게 의무가 부과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이익이나 권리가 제한되기도 한다. 학교 역시 이러한 기관적 특성에 따라 외부의 전체 국가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내부 구성원에게 책임이 부과되기도 하고 또 그 구성원인 학생의 권리가 제한되기도 한다.

학교의 설립 주체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 학교에게 부과한 의무 수행을 촉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로서, 우선 국가가 학교에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원래 의도한 목적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학교에게 학생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안전하고 능률적인 학교의 운영을 책임지우고 또 감독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근거로서, 학교 행정가나 교사는 국가에 고용된 공복으로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신분이 주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이들에게 국가 목적의 수행을 위해 일해야 하는 법률적, 도덕적 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Wringe, 1981: 123~125).

이러한 학교의 제도적 특성과 함께 학교와 학생 간의 재학 관계의 성질에 따라 학교에서의 학생의 권리가 제한되어지게 되는데 학교와 학생 간의 재학 관계의 성질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적 이론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서경환, 1990: 10~25, 홍정선, 1986: 123~128).

첫째, 친권 이양론(In Loco Parentis Doctrine) 들 수 있는데,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 있는 경

우에 부모의 지위를 대신하여 학생에 대한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보통법(common law) 상의 원칙이 친권 이양론이다. 이 이론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Blackstone의 영국 법 주역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공교육 제도가 등장한 이후에 자주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친권 이양론은 학생들의 재학과 동시에 학교가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제권을 위임 받음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에 어긋나는 학생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는다라는 논리인데, 즉, 부모는 자신의 친권을 교사에게 이양한 것이기 때문에 입학이후에는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친권 이양론에 관해서 근래에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학교와 학생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부모라도 자녀의 인권을 마음대로 이양할 수 없고 이양했다고 하더라도 전권이 아닌 부분적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또 가장 중요하게는 점차 학생도 인권의 주체로 바라봐야 하며 학교 안에서도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학생 인권 존중의 관점 등에 근거해서 친권 이양론은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특별권력관계이론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권력관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공법상 근무관계와 영조물 이용관계에 관한 공·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특별한 관계에 놓이는 자에게 강화된 종속을 의미한다. 이를 교육적 상황에 적용할 경우, 교원은 그 임명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따른 포괄적인 의무를 지게 되며 학생, 아동은 공법상의 영조물, 즉 공공시설 이용관계에 있고 이때 관리자와 이용자 간에 특별권력관계가 성립한다.

특별권력은 명령권과 징계권을 자지며 구체적 법률의 근거 없이도 목적 달성을 위해 권력 주체의 명령,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포괄적 지배 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학칙이란 영조물 이용 상 필요한 명령을 문장화 한 것을 뜻하게 되고 동시에 학교의 장에게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입헌군주제라는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생성된 관념으로서 오늘날에는 반 법치주의적, 반 민주주의적 성격의 것으로서 간주되어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재학 관계는 영조물 이용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교육관계로 보아야 하며 이는 학생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학교 측의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셋째, 재학계약설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학생의 재학관계를 학교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특정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하나의 문서로 이해되며, 학칙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갖는다면 계약상의 구속력에 의해 학생이 복종해야 함이 정당화 된다.

그러나 서경환(1990)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재학계약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계약이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이 적용되기 어렵고, 따라서 학교 측이 계약관계를 이용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 할 우려가 많으며, 둘째로, 학생들은 학교의 입학 조건이나 학칙 등을 계약으로 인식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자로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수 있고, 계약이론을 주창하는 학자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집단적 계약은 일반 계약과는 성격이 다름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의 제반 기

능과 조건들을 정부에서 간섭하고 규제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데 있어서 자율적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설은 학생과 학교 양 측 모두에게 계약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재학 관계의 성질에 관한 위에서 소개된 몇 가지 대표적 이론들은 모두 근래에 와서 그 부적합성과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학생 기본권을 제한하는데에는 부적절함이 여러 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권리는 위에서 설명된 학교의 제도적 특성이나 재학관계의 성질에 따라 그 내용과 허용 범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학교의 책임은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과 내용을 제공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규율이나 교칙을 정하여 학생의 행동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 책임의 수행 방법이 잘못 선택되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독단적인 힘에 의해 부당한 복종이 요구되는 경우, 함부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일상적인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교 측의 이익과 보다 더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학생의 이익 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칫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 현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의 이익과 학생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 가운데 학생 권리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학생의 법률적 지위는 학생이 갖는 권리의 성질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학생은 국법상 지위에 따라서는 국가의 구성원(국민)으로서 갖는 권리와 학교라는 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가 있고,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는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구분되며, 권리의 인정 근거에 따라서는 헌법상의 권리와 비헌법상의 권리로 나누어진다. 그 밖에도 법관계의 성질에 따라서 공법상의 권리와 사법상의 권리의 구분이 가능하다.

헌법상 보장되는 대표적인 기본권들은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이다. 따라서 비록 학생은 그 신분, 연령, 상황 등에 의해 권리의 범위와 정도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다른 일반인들이 소유한 모든 종류의 기본권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권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는 학생이라는 특정 신분에 의해 그 범위와 한계가 제한되기도 하고 또 학생이라는 지위에 따른 특정권이 주어지기도 한다.

UN의 아동권리협약에서는 학생들의 인권 제한은 다음 4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즉 ‘최선 이익의 원칙’, ‘의견존중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이 그것이다. ‘최선 이익의 원칙’이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활동이 공적 혹은 사적 기관 등 어떠한 기관에 의해 행해지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견존중의 원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그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생존과 발달의 원칙’은 모든 아동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에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아동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학생 인권 내용

아동과 청소년 인권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규범은 1989년 UN이 정한 ‘아동권리협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부(협약 제 1조~제4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의, 협약의 일반원칙, 구체적 권리 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2부(협약 제42조~제45조)에서는 비준 절차를 다루고 있다(최윤진 외, 2004: 73~76).

UN이 정한 ‘아동권리협약’ 역시 모든 아동 권리의 근간이 되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재산,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차별도 없이 규약에 규정된 제반 권리를 향유”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각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이들의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세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인해 현 시대 아동과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확고한 국제 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 협약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비준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아동의 권리보장을 법적 의무로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되었고,

둘째,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의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등 아동을 독립적 권리주체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셋째, 이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협약의 원리와 조항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조항에 명시된 내용의 준수와 실천을 위해 회원국들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약의 책임 있는 이행과 집행의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근거해서 UN 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주요 인권을 배경내(1998: 29~31)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4> 청소년 인권

| 구분 | 명칭 | 조약규정 권리내용 |
|--------|------------------|-------------------------------------|
| | 기본적 원칙 | 제2조 (성, 인종, 기타 사회적 지위로 인한 차별 금지) |
| | | 제3조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 보장) |
| | | 제5조 (부모의 책임과 권리 존중) |
| 보편적 인권 | 국제적 인격권 시민적, 정치적 | 제6조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 |
| | | 제7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를 알고 양육받을 권리) |
| | | 제8조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권리) |

| | | |
|--------------------------|--------------------------------|---|
| | 권리 | 제9조 (부모로부터 분리 금지와 분리된 경우에 있어서의 면접교섭권) |
| | | 제10조 (가족00제결합을 위한 출입국의 자유) |
| | | 제11조 (국회불법이송 및 불반환의 금지) |
| | | 제12조 (의사표명권) |
| | | 제13조 (표현의 자유) |
| | | 제14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 | | 제15조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 |
| | | 제16조 (사생활, 명예, 신망을 보호받을 권리) |
|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제17조 (대중매체, 정보에 대한 접근권) |
| | | 제24조 (건강,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 |
| | | 제26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 | | 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 | | 제28조 (교육에 대한 권리, 청소년의 존엄성과 협약의 원칙에 합치되는 학칙의 운영) |
| | | 제29조 (인격과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등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 존중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 기관 설치의 자유) |
| 제31조 (휴식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 | |
| 고유한 인권 | 신체, 정신적 능력에 상응하는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 제18조 (부모에 의한 일차적 양육과 이에 대한 국가 원조를 받을 권리) |
| | | 제19조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학대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 | | 제32조 (경제적 착취와 유해노동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
| | | 제33조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 | 제34조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 | 제35조 (약취, 유인, 매매, 거래로부터 보호될 권리) |
| | 제36조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 | 특수한 상황아래 놓인 청소년의 권리 | 제20조 (가족이 없는 청소년의 양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 |
| | | 제21조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의 권리) |
| | | 제22조 (난민 청소년의 보호와 원조받을 권리) |
| | | 제23조 (장애청소년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
| | | 제25조 (양육지정된 청소년이 정기적인 의료진료를 받을 권리) |
| | | 제30조 (소수자, 선주민 청소년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할 권리) |
| | | 제37조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에 대한 사형, 고무의 금지와 적절한 취급을 받을 권리) |
| | | 제38조 (무력분쟁시 징집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 | 제39조 (착취,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심신 회복과 사회복귀에 대한 권리) |
| | | 제40조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권리) |
| | 권리를 위한 권리 | 제42조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청소년에게 널리 알릴 국가의 의무 이행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 |

국제 아동권리 협약은 18세 이하의 아동의 전반적 인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등 학생의 보편적 인권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정, 사회영역 등과 대별되는 학교에서의 학생의 인권과 연계된 내용들을 지적해보

면 다음과 같다.

1)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권리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은 일정한 연령에 이르기까지 또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기간의 교육은 무상으로 받게 되어 있다.

2)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균등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3)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를 당하지 않을 권리

교육상 행해지는 학생에 대한 벌의 방식, 체벌의 정도, 정·퇴학 등의 징계방법은 선택과 적용에 있어서 대상 청소년의 행동의 심각성, 성숙 정도, 벌의 효과 등이 신중히 고려되어 적절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감정적이거나 과도한 벌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4)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학교에서 학생징계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절차로서, 징계처분의 이유와 증거에 관한 통지를 받아야 하고 학생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등 학생에게도 행정처분에 있어서 적법 절차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5) 부당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학교 운영상 요구되는 학생의 소지품이나 사물함의 수색과 압수에 있어서 그 이유나 근거 등이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하며 그 방법이나 과정이 청소년의 나이, 성에 비추어 적절해야 하며, 함부로 부당하게 압수, 수색을 할 경우 학교 권한의 남용이 되며 학생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6)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학교 안이나 밖에서 연설, 토론, 대화와 같은 구두적 표현 방식이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한 문

서적 표현 방식, 혹은 집회나 결사 활동을 통한 집단적 표현 방식 등에 의한 청소년들의 의사 표현은 그것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다른 학생의 권리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내용, 방법, 시간, 장소 등이 지나치게 비교육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으로 하여금 뚜렷한 근거와 이유없이 그들 의사의 표현을 막거나 제한하려하면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7)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는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이 아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설속에서, 질 높은 교육내용과 적절한 교육방법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학생의 기본적 권리 내용 대부분이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배경내(1998)는 국제 아동 권리 협약의 조항 중에서 가정영역 및 사회영역 등의 내용 및 조항과 대비하여 분류하고, 특히 학교에서의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과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5> 생활영역별 청소년 인권

| 생활영역 | 조항 | 권리내용 |
|------|----------------------|--|
| 가정 | 제6조 |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 |
| | 제9조 |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
| | 제12조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 |
| | 제18조 | 부모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 |
| | 제19조 |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학대, 방임, 착취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
| | 제11조, 제20조, 제21조 | 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 |
| 학교 | 제6조 |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 |
| | 제12조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 |
| | 제13조 |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표현할 자유 |
| | 제14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 | 제15조 |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
| | 제16조 |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간섭과 비난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 | 제19조 |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학대, 착취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
| | 제26조 |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 |
| | 제27조 |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 | 제28조 | 무상의무교육을 비롯한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청소년의 존엄성과 조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학교규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 제29조 |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의 정신에 합치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 |
| 제31조 |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 |
| 제36조 |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 | | |
|--------|---------------|---|
| | 제42조 | 조약의 원칙과 조약이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를 알 권리 |
| 사 회 | 제17조 |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대중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 | 제31조 |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
| | 제32조 | 경제적 착취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 제33조 |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 제34조 |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 제37조 |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 고문과 사형, 기타 비인간적 취급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변호인의 원조를 받을 권리 |
| | 제39조, 제40조 | 형사절차에 놓인 경우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사회복지를 지원받을 권리 |

5. 인권 및 학생 인권의 유형과 유형별 주요 이슈

1) 일반 인권의 유형 분류

김정래(2000)는 인간 권리의 형태와 범주를 다음과 같이 내용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 Hohfeld는 권리의 행사를 중심으로 ‘권리’가 함의하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네 가지 범주의 권리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권’, ‘자유권’, ‘권한’ 및 ‘면책권’이 그것이다.

① 청구권(claim rights) : 청구권을 흔히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권리이다. 상대방에 대한 의무와 상관개념으로 파악된다.

② 자유권(liberty rights) : 자유권은 한 개인이 남에게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의 속성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책무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나에게 어떤 법적 하자나 또는 나 자신이 지어야 할 어떤 책무가 없다는 점이다.

③ 권한(power) : 권한은 어떤 개인이 특정한 것을 행사할 모종의 힘을 얻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의 일종이다. 유언장을 작성 할 때 권리 혹은 투표할 권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면책권(immunity) : 면책권은 권한과 달리, 타인의 권한으로부터 제약받지 않는다는 권리이다. 이를테면 나는 타인의 권한으로부터 ‘면책’ 된 것이다.

(2) 일반권과 특정권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 ‘일반권’이라 하고, 권리가 특정한 개인에게 적용될 경우, ‘특정권’이라 한다. 일반권은 주로 자연법 사상에서 나온 제 권리들, 이를테면 간섭받지 않을 권리, 생존 및 재산권 등을 뜻하며 특정권을 특정한 개인과의 계약 또는 거래, 혹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권리이다. 여기에서 인간관계란 한 개인이 자의적으로 맺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관계까지 포함한다. 전자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의사와 환자, 아내와 남편,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비롯된 권리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비롯된 권리 등이 포함된다.

(3) 실정권과 도덕권

Hohfeld가 분석한 권리 형태가 지닌 결정적인 단점을 그것이 실정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실정권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도덕권이라 한다.

그밖에 고전적 권리와 현대적 권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1) 고전적 권리

고전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 의식이 싹트면서 성립된 권리들로서 주로 시민계급 형성 과정에서 생겨난 권리를 지칭한다.

① 자유권 :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방해 등을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포함하여 인신 구속 등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과 거주 이전, 주거, 언론, 집회, 사상, 양심, 종교, 학문의 자유에 관한 권리

② 평등권 : 평등권은 법 앞의 평등을 포함하여 성별, 신체적 조건, 사회적 지위, 재산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③ 재산권 : 시민계급의 형성과 맞물려 제기된 권리로서 사유재산의 보호를 골자로 하여 부당하게 징세 당하지 않을 권리

④ 생존권 : 17-8세기에 형성된 신형 시민 계급이 요구한 생존에 관한 권리로서 신체의 생존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권리

(2) 현대적 권리

현대적 권리는 고전적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인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이며, 복지권이 대표적인 현대적 권리이다.

① 적극적 자유권 : 권리의 주체로서 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모종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일체의 일(행사, 단체가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복지권 : 복지권은 인간이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 결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정당화되는 권리이다. 이를테면 질병, 무지, 기아 등은 인간이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결핍의 상태이기 때문이 인간이면 누구나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복지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수혜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③ 교육받을 권리 : 복지권으로서 ‘교육권’은 일차적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몇몇 중요한 국제권리협약에 의하여 보장된 기초교육의 무상의무교육을 의미한다.

④ 제3세대의 권리 : 제3세대 권리는 권리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정에서 파악되는 권리 개념이다. 인간의 권리에 관한 인식은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하였는데, 제1세대 권리는 자유권(특히 소극적 자유권), 생명권, 재산권과 같이 근대시민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를 지칭하고, 제2세대의 권리는 복지권과 같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에 요구되는 권리(사회, 경제권)를 말한다. 제1세대, 제2세대의 권리가 개인의 청구 등에 의하여 행사 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제3세대 권리는 평화, 환경, 노동 단결과 같이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하여 실현되는 권리를 지칭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인권의 유형의 분류 틀은 학생 인권의 분류 틀이 되기도 하지만, 성인은 대별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분류 틀과 또 그 중에서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인권의 분류 틀은 인권주체의 지위와 상황에 따라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인권 내용과 이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유형의 분류틀이 다르게 제기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유형을 Freeman(1983)과 Franklin(1986)의 분류 틀에 근거해서 살펴보고, 학생의 인권 유형을 다시 학교상황에서 제기되는 인권의 이슈에 근거해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아동 및 청소년 인권의 유형 분류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이들 집단의 사회적 위치, 성장발달상의 욕구, 성숙 및 능력정도 등에 대한 특성에 따라 성인은 대별되는 권리의 내용과 유형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 유형을 Franklin(1986)과 Freeman(1983)은 둘 다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Franklin, 1986: 14 ; Freeman, 1983: 40).

(1) 복지권(welfare rights)

모든 아동 및 청소년들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기본권적 성격의 권리를 의미하며 영양, 의료, 주거, 건강, 교육 등의 권리가 이에 속한다.

(2) 보호권(protective rights)

아동이나 청소년이 부적절한 양육, 방임, 착취, 학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3) 성인권(adult rights)

사회정의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투표, 노동, 결혼, 운전,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된 권리들이 이에 포함된다.

(4) 부모에 대응되는 권리(rights against parents)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autonomy)과 독립적인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소하게는 자신의 두발·외모에 관한 결정으로부터 진로선택, 의료조치, 거주지, 낙태 및 임신중절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 등에 있어서의 아동·청소년의 자율적 판단과 대안선택, 결정, 그리고 행동의 권리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4가지 영역의 권리유형을 기초로 할 때, 4영역의 권리들이 아동과 청소년 두 집단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역에 따라서는 청소년보다 아동에게, 또 아동보다는 청소년에게 더 요구되는 권리일 수 있듯이 영역별 권리와 연관성에 있어서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다. Freeman(1983)은 위의 4가지 영역의 권리 성격과 쟁점을 각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번 복지권은 ‘행복한 아동’을 목표 삼아 아동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기본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UN의 아동권리협약의 포괄적 내용들을 그 주요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복지권’은 소위 아동 해방론자들이 주창하는 해방적 관점보다는 보호론자들의 아동보호적 관점을 근거에 담고 있으며, ‘권리’ 차원이라기보다는 보호차원에서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호의 목록(a list of the protections)이라고 볼 수 있다.

(2)번 보호권은 ‘보호’의 이데올로기를 표면적으로 주창하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아주 어린 유아나 아동의 다치기 쉬운 취약성을 강조하며 부모의 보호가 책임과 역할에 역점을 두고 주창되는 권리이다.

(3)번 성인권은 능력(incapacity)이나 성숙정도(maturity)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없이 자의적이고 획일적인 연령(age)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인과 권리부여에 있어서 차별대우하는 부당한 현실을 문제 삼고 제기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인지발달 및 도덕성발달이 대부분 12세와 14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과 또 현대에 점차 조속해져가는 아동과 청소년의 양상들을 볼 때, 특히 10대 후반 후기 청소년들에게 투표권, 근로권 등 성인이 향유하는 권리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성인 권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번 부모에 대응되는 권리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부모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때, 그 권리의 타당성은 결정해야 할 사안이 사소한 것(minor decision)인지 중대한 것(major decision)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것이 나이 어린 아동의 결정권을 의미하는지 좀 더 성숙한 청소년의 결정권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어린 아동보다는 성숙한 청소년에게, 이 권리는 더 중요하게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할 권리라 할 수 있다(Freeman, 1983: 40~52).

이상과 같은 Freeman의 영역별 권리 성격의 분석내용을 살펴볼 때, 아동과 청소년의 ‘능력’과 ‘성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하고 또 능력이 발달된 청소년집단의 권리와 청소년에 비해 미숙하고 무력한 아동집단의 권리는 같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인권’이나 ‘부모에 대응되는 권리’ 등 성인에 버금가는 인지적·도덕적 판단능력, 자율적 선택 및 책임 능력들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동보다는 청소년에게 더 비중이 주어지고 또 더 존중되어야 할 권리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더 미숙하고 무력한 아동들에게는 ‘복지권’과 ‘보호권’ 등이 주위 기성세대와 사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불가결한 아동의 권리영역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상의 차이는 이러한 능력과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두 집단의 발달상의 요구와 사회적 역할 등의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달리 성인으로의 전이과정을 목전에 둔 자립요구가 큰 시기라는 점이 아동과는 다른 사회적 지원과 권리의 확보를 요구하게 된다.

Coles(1995)는 의존으로부터 자립으로의 전이과정을 감당해야할 청소년기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아동권리 영역과 대별되는 청소년권리의 영역을 (1) 천부권(entitlements) (2) 보호권(protection rights) (3) 의사표명권(representational rights) (4) 권능부여권(enabling rights) 등 4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각 영역별 권리 성격과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Coles, 1995: 211~218).

(1) 천부권(entitlements)은 청소년기에 소유하고, 행동하고, 알기 위해서 주어지는 법률적, 도덕적 기본권을 의미하는데 주요 하위영역별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추구권(right to knowledge)

청소년의 자아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 권리로서 여기에는 교육권, 직업훈련권, 주거지 및 임금체계 등에 관한 지식, 건강 및 의료체계에 관한 지식, 형법절차 및 법률에 관한 지식 등을 습득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② 사회보장의 권리(right to social care)

③ 사생활의 권리(rights to privacy)

④ 평등기회의 권리(rights to equal opportunities)

(2) 보호권(protection rights)은 사회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영역으로서 특히 성적(sexual), 신체적(physical)학대와 노동 현장에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① 체벌 등 신체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 성적학대 및 성추행 등으로 보호받을 권리

③ 인종, 장애, 성(性)등의 이유로 인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 노동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확보 및 노동시간의 제한 등의 권리

(3) 의사표명권(representational rights)이란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의사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입장을 개진 및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주로 교육 및 훈련, 주거지, 의료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들이 포함된다. 비단 일반청소년들이 관련된 학교, 훈련기관, 사회기관들뿐 아니라 비행청소년들의 교정시설 및 기관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도 관련 청소년들이 의견표명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기관 내 청소년들의 의사표명권이 주장 될 수 있는 세부적 사항들을 제시해보면,

① 자신에 관한 보고내용을 읽고, 조언하고, 또 자신에 대해 상술 할 권리

② 기관 내 처우에 대해 불평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

③ 노동현장에서 노동조건, 환경에 대해 의논할 권리

④ 노동현장에서 훈련이나 고용기간이나 조건에 대하여 의논할 권리

(4) 권능부여권(enabling rights)은 청소년들의 법률적, 도덕적 권리주장들이 실제로 실현 및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자원 및 비용이 확보되어야함을 주장하는 권리이다. 청소년 범죄, 실업, 학교 중도탈락, 노숙청소년문제 등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청소년 정책의 실패 및 과오로 인해 자립으로의 전이과정에 실패한 청소년이나 소외되고 궁지에 몰린 청소년들에 대한 구제와 보충을 위한 비용과 자원의 확보가 청소년의 권리부여권 행사를

위해 요구된다.

이상의 Coles가 제시한 청소년권의 4영역과 앞서 Freeman(1983)이 제시한 아동권의 4영역을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권의 '친부권'과 '보호권'은 아동권의 '복지권'과 '보호권'과 그 성격이 유사하게 아동과 청소년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과 위협스러운 외부환경과 학대로부터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 복지 및 보호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권과 청소년권사이의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청소년권에 있어서는 아동에게 요구되는 의식주, 의료 등에 대한 기본권 이외에 자립능력함양을 위한 진로 및 근로관계 지식습득과 훈련 그리고 기회균등의 권리 등이 필수적인 권리로 포함되고 있고 보호권 영역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이 근로현장에서 당하기 쉬운 학대, 착취, 차별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나 청소년 모두에게 복지권, 보호권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두 집단의 핵심문제와 요구의 차이를 감안할 때 그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Coles가 제시한 '의사표명권'이나 '권능부여권'은 청소년들의 전이과정(학교-작업전이, 가정전이, 거주지전이)이 실제 현실에서 실현될 때 요구되는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일반 성인이나 가정 내 부모에게 촉구하는 권리라기보다는 취업현장에서의 사용자나 청소년정책담당자 등 청소년의 자립과정에서 관계 맺을 대상 집단에게 촉구하는 권리 적 성격이 강하다. 즉 아동에 비해 자립의 요구가 큰 청소년 집단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학생 인권의 유형 분류

최윤진(1998)은 청소년의 권리의 내용 중에서 학교상황에서 제기되는 학생 권리의 주요 영역과 유형을 청소년의 자유권, 청소년의 평등권, 청소년과 적법절차의 권리, 학교 안전사고와 청소년의 권리, 학교체벌과 청소년의 권리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바 있다. 학교에서의 학생의 권리 유형에 관한 국내외 주요 문헌(Fischer,L., Schimmel, D., & Kelly, C., 1987 ; Nazario,T.A., 1988 ; 서경환,1990 ; 최윤진외, 2004)에 있어서도 학생의 인권에 관한 분류 영역과 주요 이슈들은 대개 위의 분류 틀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러한 분류 틀에 근거하여 학생 인권의 유형과 그 인권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학생의 평등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도 명시 해놓고 있다. 여기서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는 능력 이외의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나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적 차별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는 소극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장학제도를 정비하여 경제적 빈곤층에게도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생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평등권을 누려야 함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학교에서 다양한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고통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주요 사안들을 제시해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균등한 처우, 학업 성적이나 지능 등에 따른 차별,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경제적 여건에 의해 받는 불이익과 차별,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받는 불이익과 차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성별, 성적, 사회적 신분과 처지 등에 의해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학생의 자유권

①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의 보장이란 학문 활동이 특정 목적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않고 오직 진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즉 진리의 발전을 위하여 창조적인 자유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정치나 행정적 판단 혹은 요구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학문 발전의 기본 조건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문의 자유가 과연 학생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논란의 제기되기도 하나, 근래에는 점차 대학생과 더 나아가서 중·고등학생에게도 이러한 학문의 자유가 확대 적용된다는 주장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 할 소지가 있는 주요 사항들로 지적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통제, 학교나 교육 행정기관의 학교 도서에 대한 통제가 과도 할 때 나타나는 사례들을 들 수 있다.

②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표현의 수단이 담화, 연설, 대화 같은 구두의 형식인 경우 언론의 자유라 하고, 서적, 간행물, 도서와 같은 경우 출판의 자유라 한다. 학생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잠재력을 키우고 발휘하기 위해서 또 진리의 발견을 위해서 필수적인 인권임을 감안 할 때,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경우에 재학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는 달리 표현의 내용, 방식, 정도에 있어서 제한이 가해 질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성인과 같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지, 또 제한된다면 어떤 기준과 범위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서 미국의 Tinker 사건을 비롯한 많은 판례들을 통해서 그 기준과 허용 범위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학생의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들의 주요 견해를 요약해보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그것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다른 학생의 권리에 본질적인고도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내용, 방법, 시간, 장소 등이 지나치게 비교육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에서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학생의 출판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학생의 ‘출판’에는 학교 신문, 교지 등 학생들에 의해 출판되는 것들이 포함되며 크게는 학교의 공식출판물 혹은 학교의 지원을 받는 출판물을 일컫는 ‘학교 출판물’과 학교 내부에서 출판된 것일지라도 학교 측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지하 신문, 유인물들을 일컫는 ‘학교 외 출판물’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학생의 출판의 자유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인권을 침해의 논란을 제기했던 사례들은 주로 학교 내외 출판물들에 대한 과도한 사전 검열과 제한 통제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③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란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원하는 방법으로 수용하고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신앙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 등 적극적인 자유 뿐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선교 및 종교 활동에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자유 까지 포함한다.

근래 한국에서는 D고 K군 사태를 계기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 바 있었는데 관련해서 제기되어진 주요 쟁점은 강제 배정 방식에 의해 입학이 허용되는 종교 재단의 사립학교에서 종교 의식과 교육이 가능한지의 문제였으며 그 밖에 유사한 타 학교 사례들 중에 입학 시 학생의 충성 선서로 인한 학생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문제, 경전의 소지여부를 검사하는 학교 측 행위의 학생 사생활 침해 여부 문제, 학생회장 선출 시 특정 종교인의 조건을 요구하는 학교 제도가 부당한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의 여부 등 학생 인권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④ 집회, 결사의 자유

통상적인 결사의 자유가 국가권력과 시민 사이의 충돌 문제라면 학생의 결사의 자유는 학교 당국과 학생 사이의 충돌 문제가 주류를 이룬다. 학생의 결사의 자유는 정치적 결사와 사교적 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치적 결사는 다시 학교 외부의 정치에 대한 결사와 학교 자치와 관련된 결사와 학교 자치와 관련된 결사(학생회, 각종 학내 이익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경환, 1990).

학교 내 집회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이슈는 학교 내 공식적인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클럽활동 등과 학교 밖의 집단 활동 및 집회 등에 대해서 학교 당국의 불합리한 간섭과 과도한 제한과 통제 혹은 비협조적인 자세와 무관심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학생 인권 침해의 문제가 주류를 이룬다.

미국의 경우 학생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보다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 내용을 이유로 하는 제한은 금지되고 단지 합리적인 시간, 장소, 방법의

규제가 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 단체로 하여금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승인제도 혹은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승인을 받은 단체는 때로는 학교 측의 통제를 받기도 하지만 많은 지원과 이익이 부여되기도 한다. 만일 학교 측이 부당하게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학생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최윤진, 1998: 95~97).

⑤ 두발 복장 등 외양에 관한 자유

학생의 헤어스타일과 복장에 대한 규제는 집단에 대한 귀속감의 제고, 행동 통일의 용이성, 자제와 절도의 수반이라는 점에서 찬성하는 견해와 그것들에 대한 규제는 학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학생의 심미감, 정서 발달 등을 저해한다고 반대하는 견해가 공존해 왔다. 과거에는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영향 아래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학교의 학생에 대한 두발 복장에 대한 제제가 당연시되기도 하였으나 근래에는 이것이 학생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 할 수 있음을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학생의 개성의 존중 및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입장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포괄적 개념에 의하여 외모 등에 관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져 가고 있다.

⑥ 소지품 압수, 수색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체포, 구금,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서 국민의 재산과 주거 특히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학교에서도 통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생활지도라는 명목 하에 학생의 소지품 검사와 압수, 수색 등이 적절한 절차 없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부당한 압수 수색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듯이 법률에 의하지 않거나 사전 영장 없이 학생의 소지품등이 수색당하거나 압수당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교육목적에 의해 부득이 행해질 경우라도 그 범위와 기준이 분명해야 하며 지나친 압수나 수색 행위에 의해 학생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됨을 나타낸다.

넓게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권리는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결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알려고 하거나 캐묻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어떤 개인적 사실에 대한 벌설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물이나 생활이 본인의 허락없이 뒤지거나 압수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3) 기타 학생의 보호 복지권

①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를 당하지 않을 권리

교육상 행해지는 학생에 대한 벌의 방식, 체벌의 정도, 징계 방법은 선택과 적용에 있어서 대상 학생 행동의 심각성, 성숙 정도, 벌의 효과 등이 신중히 고려되어 적절한 방법으로 행해

져야 한다. 감정적이거나 과도한 벌은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처벌의 효과에 관해서도 문제학생의 위법 사실에 대해 ‘응징’보다는 ‘예방지도’ 및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학교에서 학생 징계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절차로서 징계 처분의 이유와 증거에 관한 통지를 받아야 하고 학생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등 학생에게도 행정 처분에 있어서 적법 절차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권리를 학생에게도 보장함으로써 효율성 중심의 행정편의주의를 방지하고 학생도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주요 결정에 관해 알고 대처하며, 또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학창시절부터 민주 시민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③ 학생이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학교는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이 아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설 속에서 질 높은 교육 내용과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안전사고라고 할 때, 안전사고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정상적인 교육활동 이외에 방과 후 운동장에서의 놀이 활동, 통학 도중의 교통사고 등 교육활동이외에 발생하는 사고 등 광범위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평소 학교 안전 교육의 강화와 피해보상제도의 확립, 안전사고에 대한 법률 지식 등의 습득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환경권을 보장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쾌적한 학교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헌법 제35조 환경권은 물론 청소년 기본법 제 5조 제 1항에서는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밀 학급, 학교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등 열악한 물리적 교육 주변 환경은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화장실, 휴게실, 교실에 대한 쾌적한 환경 마련, 냉·난방, 교실 공기 정화, 안전유리로 된 유리창 시설의 확보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최근에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열악한 급식 환경의 문제는 학생들에게 집단 식중독 현상을 발생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식생활 등 기본적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⑤ 건강권

건강권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로, 이전에는 하나의 선언적 권리일 뿐 실정법상의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많은 학자나 행정실무자들의 견해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 헌장을 비롯한 세계인권선언,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 보장을 강조한 문서가 발표되면서부터 건강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경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34조)’라는 조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건강권이 인정됨으로써 첫째, 각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기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자유권적 보장). 예컨대 국가가 승인한 의료·의약품 등에 의한 피해, 인체실험, 로보토미(lobotomy : 일부 정신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외과수술을 통해 뇌의 전두엽과 나머지 부분 간의 연결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생각의 메커니즘과 감정의 메커니즘을 분리하는 것) 등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방지를 요구하는 권리를 생명권, 신체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건강의 유지·증진, 질병의 예방·치료 기타 건강회복 조치, 의료보장 등의 충실 등을 위한 시책(사회권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보건의료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평생국민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증진과 학교보건의료, 산업보건의료, 환경보건의료, 식품위생·영양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강권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8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1항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보장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 (기본이념) 1항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개정 2006. 9. 27>’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책임)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3항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27>’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책임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 7. 19 전부 개정된 법률 제7962호 학교급식법(시행일 2007. 1. 20)에 학교급식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 제6조 (급식시설·설비) 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장 학교급식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도, 제10조 (식재료), 제11조 (영양관리), 제12조 (위생·안전관리), 제13조 (식생활 지도 등), 제14조 (영양상담),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7조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등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⑥ 빈곤층 등 소외 학생에 대한 복지권

학생의 복지권 중에는 생활보호대상 학생, 결식 학생, 소년소녀 가장 등의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문제와 고충을 해결해 주는 사안들이 두루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결식 학생을 위해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에 관한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권은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보편적인 권리로서 무상의무교육의 기본 교육을 받을 권리도 중요하게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⑦ 노동권

20세기 산업사회의 발전 속에서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으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받는 세대로 간주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생활 영역에서 소외된 채 무능한 소비중심 세대로 성장해 왔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부당한 노동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함과 동시에 성장과정에 걸맞은 노동의 권리도 있음을 인식하여 노동의 기회와 직업체험의 기회가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점차 청년실업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비단 실업의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 비행과 이탈 등 제반 사회문제를 같이 동반하고 있어서 선진 외국에서는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을 청소년 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및 진로교육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소비자본시장의 발달에 따라 청소년들이 주요 소비 주도 세력으로 떠오름에 따라, 상업시자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낙인찍히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어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경제교육과 소비자교육을 통해 건강한 소비습관과 생활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서 근래에 나타나는 청소년을 둘러싼 노동과 직업세계에서의 나타나는 주요 문제와 관련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청소년 노동과 직업세계의 주요 문제

| 문제 상황 | 현행 주요 정책 |
|---|--|
| *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장 미흡 - 청소년 노동의 저평가와 고용주의 부당 노동행위 조장 | *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지원 - 근로 여건 개선 - 아르바이트 관련법 규정개선, 지침서 보급 - 아르바이트 지원센터 설치 |
| *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 취업기회 미흡 - 구직활동 지원 부족, 실업계 청소년들의 사회적 입지 낮고 직업선택에서의 불리한 여건 | * IT, 관광통역 등 취업 유망 분야 직업훈련 확대 * 학교·학생·고용안정센터 - 기업 간 취업네트워크 구축 강화 * 「학교 직업상담원」 운영활성화 및 취업 정보 시스템 활성화 * 청소년 창업지원 및 창업교육 실시 |

위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정부의 주요 정책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보호,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는 반면 현실적인 문제는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장이 미흡하고, 청소년 구직활동에 대한 사회전반적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일할권리가 오히려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인권선언 제 23조에서는 ‘마음 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장하고 있다. 제 24조에서도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며 노동과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근로활동(만 18세미만인 연소근로자)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헌법에 의하면 만18세가 되지 않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근로기준법 63조)이 당연히 적용됨을 물론, 그 외에도 청소년보호법 등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취직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만15세로 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62조, 67조),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님으로부터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만15세미만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취직을 할 수 없으나, 만13세~14세까지의 청소년은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만13세 미만인 사람도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취직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서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만15세가 넘으면 취직인허증이 없어도 취직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자리를 찾을 때, 취직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이 고용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다.

<표 7>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 업소의 종류 | |
|--|--|--|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모두 유해한 것 으로 인정되는 업소 | ① 유흥주점 ② 단란주점 ③ 비디오물감상실업 ④ 노래연습장업 ⑤ 무도학원업 | ⑥ 무도장업 ⑦ 사행행위영업 ⑧ 전화방 ⑨ 성기구취급업소 |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 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 정되는 업소 | ① 숙박업 ②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③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④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⑤ 다류배달에 시간의 대가를 수수하는 등의 다방(소위 티켓영업) ⑥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의 영업 ⑦ 음반판매업 ⑧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⑨ 일반종합게임장, ⑩ 만화대여업 ⑪ 담배소매업 (담배소매업을 겸하고 있는 체인점, 슈퍼 및 편의점 등 도 포함됨) | |

청소년의 근로시간 및 임금 기준은 성인과 달리, 하루 7시간, 주 4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일부 업체(대기업과 은행, 금융)에서는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일에 최대 8시간, 1주일에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사업주와 쉬기로 약속한 날에는 일해서는 안 되나, 연소근로자가 동의하고,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야간·휴일근로를 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야간·휴일근로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연소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지방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해야 한다.

연소자도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같은 회사에서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경우 성인의 최저임금의 90%가 연소자의 최저임금이 되고,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성인의 최저임금과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정하며, 매년 9월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문의하거나 노동부홈페이

지(www.molab.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연소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연소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직접 일을 한 연소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소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소근로자의 의지에 반하여 부모님 등의 보호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또 임금은 매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연소자도 일하는 도중에 쉴 수 있으며,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휴게·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루에 4시간 일한다면 30분 이상을 쉴 수 있으며, 1주일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짜를 개근하였다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1개월을 개근했다면 월간 휴가(1일)를 받을 수 있다(이해주, 최윤진, 구정화, 2005).

위의 논의에서 다루어진 학생 인권의 내용 및 유형 분류 틀은 4장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생활규칙 및 인권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설문 문항 작성에 기초 틀로 사용되었다.

Ⅲ.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인권 침해 내용 분석

1. 중·고등학생 인권 제한 및 침해 내용

최윤진(1997: 11~12)은 학교에서 지켜야 할 청소년의 권리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들었다. 첫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 교육의 기회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균등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교육적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를 당하지 않을 권리로, 교육상 행해지는 학생에 대한 벌의 방식, 처벌의 정도, 정·퇴학 등의 징계 방법은 선택과 적용에 있어서 대상 청소년의 행동의 심각성, 성숙 정도, 벌의 효과 등이 신중히 고려되어 적절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감정적이거나 과도한 벌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로, 학교에서 학생 징계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절차로서, 징계처분의 이유와 증거에 관한 통지를 받아야 하고 학생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등 학생에게도 행정처분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로, 학교 운영상 요구되는 학생의 소지품이나 사물함의 수색과 압수에 있어서 그 이유나 근거 등이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하며 그 방법이나 과정이 청소년의 나이, 성에 비추어 적절해야 하며, 함부로 부당하게 압수, 수색을 할 경우 학교 권한의 남용이 되며 학생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섯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로, 학교 안이나 밖에서 연설, 토론, 대화와 같은 구두적 표현 방식이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한 문서적 표현 방식, 혹은 집회나 결사 활동을 통한 집단적 표현 방식 등에 의한 청소년들의 의사표현은 그것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다른 학생의 권리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내용, 방법, 시간, 장소 등이 지나치게 비교육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으로 하여금 뚜렷한 근거와 이유 없이 그들 의사의 표현을 막거나 제한하려하면 함부로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일곱째,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로, 학교는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이 아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설 속에서, 질 높은 교육내용과 적절한 교육방법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표시열(1997: 17)은 체벌 등 학교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들었다. 학교에서 불법 행위 책임이 자주 문제되는 것은 학교사고, 예컨대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하여 위법한 행위가 된 경우, 학생들 간의 싸움 등으로 인한 사고시 친권자 및 교사의 감독책임의 경우, 그리고 학교 시설물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교 환경에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학교 내의 지배적인 행동방식이나 가치, 태도 등의 영향이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인 가치,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물질만능주의 풍조와 권위주의적 태도,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부정부패,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사회분위기 등이 학교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배경내(1998: 40)는 이러한 학교문화가 학생

인권의 침해과정에서 수행하는 역기능을 분석하였다. 입시문화와 통제위주의 권위주의 문화가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지속시키는 지배적 문화가 되어 있고, 이 문화는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암기위주의 단편적 지식과 획일주의, 권위주의, 폭력에의 순종, 경쟁적 동료관계를 생산한다고 한다. 특히 권위주의적 문화는 엄격한 학교의 규율과 위계질서를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이 유발할 수 있는 학생들의 저항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성정숙, 1998: 22).

1996년 10월,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인격적인 대우나 권리침해로는 ‘두발 규제(30.0%)’를 제일 먼저 꼽았으며, ‘교사들의 폭언 및 체벌(20.5%)’과 ‘성적에 의한 차별대우(15.7%)’도 함께 지적했다(육이은, 2001: 39).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침해 현상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육이은, 2001: 39~47).

① 두발 규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발 규제이다. 2000년에 있었던 두발규제철폐운동으로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두발 규제는 가장 일상적이고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이다.

② 체벌

학생 인권 문제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체벌이다. 체벌에 대한 견해는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찬성론과 일단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인격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반대론으로 팽팽히 맞선다.

그러나 체벌도 엄연한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관점에서 반대론을 지지할 때, 체벌이라는 인권 침해는 ‘시시 때때로’ 이루어진다. 또한 체벌이 ‘어떤 일의 정당성’에 근거하기보다 ‘교사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위 유지의 수단으로서도 이용되는 경향이 짙다. 무엇보다 체벌의 감시 장치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체벌이 아니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③ 소지품 검사

학교에서는 소지품 검사도 정당하게 실시된다. 물론 거부할 권리 같은 것은 없다. 학생 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사적인 공간을 침해하고 사적인 소유물을 강제 압류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④ 성추행

성추행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언어폭력부터 직접적인 신체접촉까지 일어나고 있다. ‘너네들 치마 줄여 입고 다니면서 술이나 따르려고 그러니?’와 같은 교사들의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목을 쓰다듬거나 혹은 치마 길이를 남자 교사가 채는 등 보다 직접적인 피해가 일고 있다.

⑤ 성차별

두발규제에서 보더라도 ‘남자는 두피 3cm, 여자는 귀밑 3cm’ 등으로 규정하여 마치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남자는 짧게 자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내면화시키고 있다.

⑥ 표현의 자유

서울 Y고등학교 다모임 게시판에 학생들이 비판적 글을 올리자, 학교 학생부 교사들이 ‘사이버 학생부’ 등을 운위하며 다모임 게시판에 올라온 모든 글을 분석하고 교사나 학교를 비방한 학생,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린 학생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체벌을 가하고 강제로 사과문을 올리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학교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⑦ 종교 자유문제

종교 문제는 체벌이나 성추행, 두발 규제 등과 같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특히 종교재단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종교수업을 강요하고 강제적으로 기도를 하게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벌도 서슴지 않는다. 서울 S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목사에게 6개월 이상 교회에 나왔다는 증명서를 받지 못해서 학생회장에 출마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의 꿈은 좌절되었다.

⑧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우리나라 학교 대부분의 교칙에는 ‘학교장 허락 외에 일체의 대외 활동을 금한다’라든가, ‘학교장 허락이 없는 교내 비공식 동아리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따위의 규정이 있어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내·외 일체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학칙의 기준도 애매모호하여, 대부분 학교의 분위기나 전통, 학교장의 성격에 따라 적용범위도 크게 다르다. 1990년대 중반, 최OO군의 강제 야자 관련 위헌 소동을 계기로 모인 중고등학생복지회의 회원들이 학교로부터 탈퇴를 중용받으며 체벌을 받은 사례나,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준)의 전 부산 지역장이 학교 측으로부터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2. 학교생활규칙 구조·내용 및 특징 파악

앞에서와 같은 사례들이 2000년 이후에도 빈번히 일어나자 두발 등 학생의 용모와 관련해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마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2년 9월 학교생활규정이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학교생활규정의 목적>

<예시안>
·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을 규정, 학생들이 21세기 주역으로서 학교·지역사회·국가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

유엔아동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하게 하는데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제2조)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하게 함을 교육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시안은 어린이·청소년의 이익과 생존·발달을 보장하기보다 사회질서유지에 목적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따라서 위의 법이념에 맞고 오늘의 학생인권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다.

<교내생활규정 중 용의사항>

<예시안>

- 가방은 자유로운 것으로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19①5)
- 무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19①8)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서 '학생신분에 맞는'이라는 규정은 표현이 모호하고 그 판단을 학교당국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두발상태 불량으로 적시한 무스·젤 등을 사용하여 '두발형태의 변형을 가하지 않은 범위 내'라는 규정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자의적 벌점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학교 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용의사항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예시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회>

<예시안>

-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음(\$35)
- 학생회의 의결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 발생(\$38)

학생회회원 역시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수 없음'의 규정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도록 하며,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다운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보장이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하는 바,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교육기본법(제5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서는 학교 운영위에서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비민주적이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이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하여야 하며, 학교생활규정을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 받는다’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가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현재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교사와의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적 학습 분위기, 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 부재 등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해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을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로, 나아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권리의 주체로 대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방법>

- <예시안>
- 학생회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생활지도협회의 심의 사항(§48)
 - 회칙제정 및 개정, 조직 및 편성, 예산·결산·감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회 회칙 개정은 대의원 또는 집행위원 발의, 생활지도협의회 심의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49)
 - 학교생활규정 개정은 교원 발의,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일정 수 교원 찬성으로 개정,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얻어야 함(§92)

예시안에서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회의 심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학생회 관련 규정에는 이 사항이 누락되는 등 비체계적이다. 생활지도협의회는 지도기관이 되어 일상적인 지도·지원을 해야 하고, 학생회활동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대표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특히 학생이 자신들에게 미칠 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견존중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도 존중하여,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각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학교현실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학생체벌>

- <예시안>
- 교사의 감정에 치우친 체벌 금지, 체벌기준에 따라야 함
 - 교사는 체벌 시 학생에게 사유 인지시켜야 함
 - 체벌은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3자를 동반하여 실시
 - 체벌 전 교사의 학생 건강상태 점검의무, 이상 있을 때 연기가능
 - 체벌 도구는 지름 1.5cm내외, 길이 60cm이하 나무, 직선형
 -

.....(이어)

- 체벌부위는 둔부. 여학생은 대퇴부로 제한
-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 해당 학생에 상해 금지
- 해당 학생은 대체벌 요구 가능, 해당 교사는 학교장 허가 얻어 보호자 내교토록 하여 학생 지도문제 협의(\$54)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 7항은 “학교의 장은 ...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법률상 체벌권한은 학교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체벌을 형법상의 정당행위라는 관점에서,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체벌의 목적·정도·방법·부위를 제시하고 있다. 정당한 목적은 훈육·수업진행·교육상 필요·훈계 등을 예를 들었고, 정당한 체벌 정도와 방법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만큼의 객관성을 지닌 정도와 방법이라고 했으며, 정당한 체벌 부위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지 않을 안전한 신체부위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떠나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행위인지에 대한 치열한 찬반양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는 체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어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한다.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교육벌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교육벌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도록 하며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급 학교 및 도·농간 학교에 따라 생활규정을 달리 하여야 함에도 예시안의 규정이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초등학교생활규정과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은 각 학교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은 자신이 생활

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학교 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이 때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두발제한으로 인한 학생의 인권침해 소지 여부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원칙, 교육기본법 제12조 교육과정에서의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등의 국내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보장, 제12조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16조 사생활 보호, 제28조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는 학교규율 등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하여 볼 때 학생들의 인권 침해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비추어 보아도,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한편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7조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발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 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발의 자유가 기본적 권리고 그 제한이 예외적인 이상 두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하여 교육당사자 간에 합의된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는 상태나 행위만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두발 제한이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된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목적이 통제의 편의성이 아닌 청소년의 보화와 인격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제 시 강제이발과 같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규제의 정도 또한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 이익으로 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해당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나 현행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내용을 분석해보면, 두발에서 복장, 양말, 신발에 까지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강제이발 실시를 비롯하여 이에 따른 처벌 강화로, 학생 두발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칙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두발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각 학교마다 그 제한기준은 일정하지 않다.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개의 피진정 고등학교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65명 중 24명과 65명 중 42명이 두발을 강제로 잘랐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발 자율화 및 합리적 규제 등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별다른 개선 없이 두발 제한이 획일적이고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현재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칙상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파악, 분석해보았다. 분석 대상은 G중학교, K여자중학교, S중·고등학교, C여자고등학교이다. 이들 학교의 학교생활규칙 공포 및 시행일자를 보면, G중학교 2005년 6월 27일 공포, K여자중학교 2005년 3월 1일 이후 적용, S중·고등학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C여자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시행으로 명시되어 있어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규칙들이다. 분석결과, 4개의 중·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두발, 교복, 양말·신발, 명찰 관련 학교생활규칙을 두고 있었다.

1) 두발 관련 학교생활규칙 분석

두발 관련 학교생활규칙의 경우, 여학생은 어깨선에 닿으면 머리를 하나로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학교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으나 귀밑 몇 cm(ex. 10cm, 30cm, 50cm 등)를 넘지 않을 것을 각 학교마다 규정하고 있었다. 원색의 머리끈이나, 큰 핀 등이 금지되며 단정한 머리형태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어떤 것이 단정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없이 두발 규정을 제한하고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가르마를 불허용하고, 눈썹이 보여야 하며 뒷머리는 뒤 목둘레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발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매우 엄격함을 알 수 있었다.

<표 8> 두발 관련 학교생활규칙 분석

| 구분 | G중학교 | K여자중학교 | S중·고등학교 | C여자고등학교 |
|--------|------|--|--|--|
| 두 발 | 여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 끝선을 기준으로 10cm까지 기를 수 있고, 어깨 끝선 이상이면 묶는다. ◦ 무스, 헤어스프레이, 파마, 염색 등은 하지 않는다. ◦ 큰 핀, 큰 리본, 원색의 장식을 머리에 하지 않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밑 50cm 이하 ◦ 어깨선에 닿으면 머리를 뒤로 가게 하여 단색끈을 사용하여 하나로 묶어야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발을 기준으로 하며 여학생용 컷은 허용한다. 단발에서 길면 묶어야 하는데 묶은 길이는 30cm를 넘으면 안 되며, 머리를 틀어올리면 안 된다. ◦ 묶지 않은 머리는 어깨에 닿지 않아야 한다. ◦ 원색을 제외한 머리끈, 머리핀, 머리띠를 허용하며 바나나핀과 성인용은 금한다. ◦ 브릿지, 염색, 코팅, 파마는 금한다. |
| | 남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머리가 눈을 가리지 않고 옆머리는 이륜각(컷구멍 위)을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뒤 목둘레선을 넘지 않는 단정한 머리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머리 - 눈썹이 보여야 한다(가르마 불허용). ◦ 옆머리 - 귀 윗부분이 나와야 한다. ◦ 뒷머리 - 셔츠의 칼라에 닿지 않아야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여학생 공통으로 파마, 염색, 무스, 젤, 스프레이 등 인위적 행위 금지. ◦ 무용, 예체능 지망생과 곱슬머리, 탈모학생 등은 담임허락으로 특례인정(학생부와 협의 후). |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색, 파마, 코팅과 일체의 헤어제품 및 모자 착용을 금한다. | | |

2) 교복 관련 학교생활규칙 분석

교복과 관련한 학교생활규칙은 날씨에 따라 융통성은 있었으나 교복 착용 시기를 규정하고 있었고 춘추복 위에 덧옷 착용을 금하며 폴라 티의 경우도 흰색, 검정, 회색 등의 제한된 색상과 라운드형의 티셔츠는 금지, 발토시 금지, 바지단 길이 제한, 치마길이 제한 등의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다. 강화여자중학교의 경우만 춘추복 위에(속에 남방, 폴라 티도 가능) 동복 상의를 입고, 그 위에 코트나 잠바를 입을 수 있다는 좀 더 완화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표 9> 교복 관련 학교생활규칙 분석

| 구분 | G중학교 | K여자중학교 | S중학교 | S고등학교 | C여자고등학교 | | |
|----|--|---|--|--|---|--|--|
| 교복 | <p>교복은 계절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 및 색상 디자인 등의 것을 따른다.</p> <p>◦ 교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단, 날씨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p> <p>- 춘복 : 5월 초순~5월 하순</p> <p>- 하복 : 6월 초순~9월 하순</p> <p>- 추복 : 10월 초순~10월 하순</p> <p>- 동복 : 11월 초순~이듬해 4월 하순</p> <p>학교에서 규정한 형태 및 색상, 디자인 이외의 복장은 착용을 금한다.</p> <p>무채색(흰색, 회색, 검정) 폴라</p> | <p>본교가 지정한 교복을 계절에 맞게 춘추복, 하복, 동복을 입는다.</p> <p>◦ 춘추복</p> <p>-상의: 흰색 긴팔 블라우스 또는 남방에 조끼를 착용한다.</p> <p>-하의: 스커트는 무릎을 살짝 덮도록 한다.(-무릎 위 금지)</p> <p>-양말: 색이나 무늬가 너무 강한 것은 피한다.(-발 토시는 하지 않는다.)</p> <p>◦ 하복</p> <p>-상의: 짧은 소매의 흰색 블라우스</p> <p>-하의: 스커트는 무릎을 살짝 덮도록 한다.(-무릎 위 금지)</p> <p>-양말: 색이나 무늬가 너무 강한 것은 피한다.(-발 토시는 하지 않는다.)</p> <p>◦ 동복</p> <p>-상의: 춘추복 위에(-속에 남방, 폴라 티도 가능) 동복 상의를 입고, 그 위에 코트나 잠바를 입을 수 있다.(외투의 색은 단색으로 하며 원색은 피한다.)</p> <p>-하의: 겨울용 스커트(-무릎 위 금지)나 교복 바지를 입는다.</p> <p>-양말: 살색 스타킹이나 검정색 스타킹에 가항과 같은 양말을 착용한다. (검정색 반스타킹은 신을 수 있다)</p> <p>◦ 계절별 교복 입는 시기(기온에 따라 유동 가능)</p> <p>-봄(춘추복): 날씨의 변동에 따라 학생부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혼용기간을 둔다.</p> <p>-여름(하복): 위와 같음</p> <p>-가을(춘추복): 위와 같음</p> <p>-겨울(동복): 위와 같음</p> | <p>공통사항</p> <p>◦동복착용 시기 - 10월 하순 - 4월 하순</p> <p>◦춘추복착용 시기 - 4월 하순 - 5월 하순, 9월 하순 - 10월 하순</p> <p>◦하복착용시기 - 5월 하순 - 9월 하순</p> <p>※ 착용시기에서 혼용기간(1주일 정도)을 두어 기후에 적응하도록 한다.</p> <p>※ 중·고 흰색 폴라티 착용허용(11월초)</p> <p>※ 바지 단 : 8~10 인치</p> <p>※ 치마 길이 : 무릎까지</p> | <p>여학생</p> <p>◦동복-상의:감색 자켓, 조끼, 벵타이, 흰색 블라우스(폴라티), 하의:회색스커트 또는 검색바지</p> <p>◦하복-상의:반팔 흰색 블라우스</p> <p>하의:취색스커트(바지)</p> <p>◦춘추복-상의:조끼, 블라우스, 벵타이</p> <p>하의:동복치마(바지)</p> | <p>남학생</p> <p>◦동복-상의:감색 자켓, 흰색와이셔츠(폴라티)</p> <p>벵타이, 조끼(검정색, 감색)허용,</p> <p>하의:회색 바지</p> <p>◦하복-상의:반팔 흰색 와이셔츠</p> <p>하의:취색바지</p> <p>◦춘추복-상의:와이셔츠(폴라티), 벵타이</p> <p>하의:동복바지</p> | <p>여학생</p> <p>◦동복-상의:감색 자켓, 흰색 블라우스, 조끼, 벵타이</p> <p>하의:감색 스커트(바지)</p> <p>◦하복-상의:반팔 흰색 블라우스,</p> <p>하의:취색스커트(바지)</p> <p>◦춘추복-상의:흰색 블라우스, 조끼, 벵타이</p> <p>하의:동복치마(바지)</p> | <p>◦ 블라우스는 백색으로 학교에서 정한 모양이어야 하며 스커트 속에 넣어 입는다. 하복의 경우에는 스커트 속에 넣지 않는다.</p> <p>◦ 동절기에 한하여 블라우스 대신 폴라티셔츠를 입을 수 있되 색상은 흰색, 검정, 회색, 감색(곤색)에 한한다. 라운드형 티셔츠는 금한다.</p> <p>◦ 교복에는 단추는 꼭 달아야 한다.</p> <p>◦ 춘추복은 동복에서 자켓만을 제외하여 착용하며, 춘추복 위에 덧옷 착용을 금한다.</p> <p>◦ 동복 착용시 허용된 기간에는 코트를 입을 수 있되 검정색, 감색(곤색), 회색의 학생용 코트에 한한다.</p> <p>◦ 동복 및 춘추복 착용시는 벵타이를 착용한다.</p> <p>◦ 교모는 동복, 춘추복 착용시, 학교 내외 행사시, 월요 조희시 쓴다.</p> <p>◦ 하의</p> <p>스커트는 무릎을 덮도록 하며, 치마 허리를 접어 올리거나 치마단, 치마폭을 줄여서 입는 짧은 치마는 금지한다.</p> |
| | | | | | | | |

3) 양말, 신발, 명찰 관련 학교생활규칙 분석

양말, 신발 관련 학교생활규칙을 보면, 원색을 모두 금지시키고, 흰색·검정·밤색·곤색 등의 무채색만 착용을 허용하는 걸 알 수 있다.

명찰은 교복위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위치까지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양말, 신발, 명찰 관련 학교생활규칙 분석

| 구분 | G중학교 | K여자중학교 | S중·고등학교 | C여자고등학교 |
|--------|--|---|--|--|
| 양 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복 착용 시 검정색 스타킹에는 검정 양말, 살색 스타킹에는 흰색 양말, 춘추 하복 착용 시에는 목이 짧은 흰색 양말을 착용한다. ◦ 맨발이나 화려한 무늬의 양말, 성인용 스타킹, 등산용 스타킹 등은 착용을 금한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 :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주황, 보라색과 같이 화려한 색과 무늬는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양말, 짙은 양말, 긴 양말, 토시형 양말을 금한다. ◦ 무늬 있는 스타킹, 그물 스타킹은 금한다. |
| 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화는 실용적인 학생용 운동화(흰색 또는 검정색)나 학생용 구두(검정색, 밤색)를 착용한다.(굽이 높은 구두나 통굽, 지나치게 큰 신발,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은 금지) ◦ 신입생 - 검정색, 감청색 실내화용 슬리퍼 ◦ 샌들, 부츠, 에나멜 구두, 철판 구두, 발목 위까지 오는 구두, 신발은 착용을 금지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화를 신는다.(- 구두, 부츠, 흰색 운동화 금지) ◦ 실내화는 항상 지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는 학생용 단색의 슬리퍼를 신으며 흰색이나 옥실용 슬리퍼는 금한다. - 동절기는 위의 슬리퍼나 흰색 실내화를 신는다. - 장식이 없는 털실내화를 신을 수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운동화 또는 고무제품의 슬리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리퍼: 밝은 색상의 제품과 털실내화 및 실내용은 금지 ◦ 운동화, 캐주얼화 혼용 ◦ 흰색의 제품은 금지하나 약간의 무늬로 이루어진 것은 허용한다. ◦ 구두, 슬리퍼식 운동화 등 변형적인 제품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이 없는 검정색, 곤색, 갈색의 학생 단화 또는 흰색을 제외한 운동화를 신는다. |

4) 기타사항

그 밖의 기타 사항으로 가방에 대한 규제 내용과 외모에 대한 규제 내용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방의 경우, 실용적인 학생용 가방(배낭형)을 사용한다. 요란한 무늬, 원색의 색상, 고가의 가방, 여행용 가방, 숙녀용 핸드백, 한쪽 어깨에 메는 성인용 가방, 스포츠용 가방은 착용을 금한다. 가방에 요란한 장식을 달고 다니지 않는다였다. 외모에 대한 기타 규제 사항으로는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 이외에 성인용 화장품 휴대와 액세서리(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마스크트 등)의 패용을 금한다. 손톱, 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르지 못한다. 속눈썹 부착이나 화장을 금한다. 귀를 뚫는 행위를 금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개성 표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무채색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획일화시키는 것을 규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생활규정 분석팀(2006)이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중·고등학교 202개 학교 교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3. 2005년 이후 학교생활규칙 개정 현황 및 내용

위에서와 같이 두발, 교복, 양말·신발, 명찰 등과 관련한 통제위주의 학교생활규칙이 학생들의 인권침해의 근간을 이루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 생활지도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각급학교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해 학교생활규칙을 개정·시행하도록 지도해왔다.

실제로 이러한 지도방침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는 다음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 소속 구본회 의원이 2005년 국정감사 이후 2006년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했다고 보고한 학교 중에서 156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해 각 학교에서 개정한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개정 추진실적 상으로만 보면 강원, 제주, 인천, 충남 등은 100%의 고등학교가 2005년 8월까지 학교생활규칙을 민주적으로 개정했다고 보고했으며, 나머지 시·도 역시 높은 제·개정 비율을 보였다. 가령, 경남의 경우도 174개 고등학교 중 129개(75%) 학교에서 제·개정했으며, 대전도 56개 고등학교 중 50개 학교에서(89.3%) 학교생활규칙을 제·개정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체 조사한 156개 학교중 두발 관련 규제조항을 개선한 것으로 판단된 학교는 35개 학교에 불과했으며, 미개선이 74개교, 개악이 15개교로 분류됐었다. 두발관련 개선 조항이 없는 학교는 32개교였다.

| 구분 | 전체조사 학교 수 | 개선사례 | 미개선사례 | 개약사례 | 총 관련 사례 |
|--------------|-----------|------|-------|------|---------|
| 두발 | 156 | 35 | 74 | 15 | 124 |
| 장신구 | 156 | 5 | 10 | 5 | 20 |
| 신발 | 156 | 6 | 13 | 3 | 22 |
| 교복 | 156 | 6 | 10 | 8 | 24 |
| 기타(양말, 가방 등) | 156 | 4 | 15 | 5 | 24 |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두발

| 지역 | 전체조사 학교 수 | 개선사례 | 미개선사례 | 개약사례 | 두발관련 총 사례 수 |
|----|-----------|------|-------|------|-------------|
| 서울 | 30 | 6 | 17 | 4 | 27 |
| 부산 | 20 | 1 | 7 | 3 | 11 |
| 경기 | 36 | 3 | 23 | 2 | 25 |
| 전남 | 10 | 1 | 4 | 1 | 6 |
| 충북 | 10 | 5 | 1 | 1 | 7 |
| 광주 | 10 | 2 | 3 | 1 | 6 |
| 강원 | 40 | 17 | 19 | 3 | 39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대구 | | | | | |
| 합계 | 156 | 35 | 74 | 15 | 121 |

2) 장신구

| 지역 | 전체조사 학교 수 | 개선사례 | 미개선사례 | 개약사례 | 장신구관련 총 사례 수 |
|----|-----------|------|-------|------|--------------|
| 서울 | 30 | 2 | 3 | 4 | 9 |
| 부산 | 20 | 1 | 2 | | 3 |
| 경기 | 36 | 1 | 1 | | 2 |
| 전남 | 10 | | | | |
| 충북 | 10 | | | | |
| 광주 | 10 | | | | |
| 강원 | 40 | 1 | 4 | 1 | 6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대구 | | | | | |
| 합계 | 156 | 5 | 10 | 5 | 20 |

3) 교복

| 지역 | 전체조사 학교 수 | 개선사례 | 미개선사례 | 개약사례 | 교복관련 총 사례 수 |
|----|-----------|------|-------|------|-------------|
| 서울 | 30 | 1 | 3 | 2 | 6 |
| 부산 | 20 | | 3 | 1 | 4 |
| 경기 | 36 | | 3 | 3 | 6 |
| 전남 | 10 | | | | |
| 충북 | 10 | | | | |
| 광주 | 10 | 3 | 1 | | 4 |
| 강원 | 40 | 2 | | 2 | 4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대구 | | | | | |
| 합계 | 156 | 6 | 10 | 8 | 24 |

4) 신발

| 지역 | 전체조사 학교 수 | 개선사례 | 미개선사례 | 개악사례 | 신발관련 총 사례 수 |
|----|-----------|------|-------|------|-------------|
| 서울 | 30 | | 1 | 1 | 2 |
| 부산 | 20 | | 4 | | 4 |
| 경기 | 36 | | 3 | | 3 |
| 전남 | 10 | 2 | | | 2 |
| 충북 | 10 | | 1 | 1 | 2 |
| 광주 | 10 | 2 | 1 | | 3 |
| 강원 | 40 | 2 | 3 | 1 | 6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대구 | | | | | |
| 합계 | 156 | 6 | 13 | 3 | 22 |

5) 기타(가방, 양말, 스타킹 등)

| 지역 | 전체조사 학교 수 | 개선사례 | 미개선사례 | 개악사례 | 기타관련 총 사례 수 |
|----|-----------|------|-------|------|-------------|
| 서울 | 30 | | 2 | 2 | 4 |
| 부산 | 20 | | 2 | 1 | 3 |
| 경기 | 36 | | 6 | | 6 |
| 전남 | 10 | 1 | 2 | | 3 |
| 충북 | 10 | | 1 | | 1 |
| 광주 | 10 | 1 | | 2 | 3 |
| 강원 | 40 | 2 | 2 | | 4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대구 | | | | | |
| 합계 | 156 | 4 | 15 | 5 | 24 |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규칙을 제·개정을 했다고 보고했지만 용모복장이나 학생회, 징계 등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실제로 개정하지 않은 학교는 꽤 많았다. 두발 이외에 다른 용모복장 규제에 대한 개정 시도도 별로 없었다.

다음의 예시에서처럼 개선 시도는 했으나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고 인권 침해 요소는 여전히 남겨놓아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교가 90개 학교로 많았다.

<예시 1> 경기도 ㅇ고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19조 10항(용의사항) 동복 착용시 여학생은 살색, 회색, 또는 검정색 스타킹을 신는다. | 제16조(좌동) 동복 착용시 여학생은 살색, 회색 또는 검정색 계통의 스타킹을 신는다. |

<예시 2> 부산 ㄷ고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14조(두발규정) 1. 두발은 스포츠형(앞머리 : 5cm이내, 뒷머리는 : 스포츠형)으로 | 제14조(두발규정) 1. 두발은 스포츠형(앞머리 : 6cm이내, 뒷머리는 : 단정한 스포츠형)으로 |

심지어 규제를 더 강화하고도 개선했다고 보고한 학교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는데, 이런 학교는 156개교 중 19개 학교로 나타났다.

<예시 3> 경남 사고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2조(용의복장규정) 여학생머리 모양은 단발머리, 묶음머리를 허용하며, 머리카락의 길이는 자유화한다. | 제2조(용의복장규정) 여학생머리 모양은 단발머리, 묶음머리를 허용하며, 머리카락의 길이는 귀밑 20cm 이내로 한다. |

반면, 실제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역력히 보인 곳도 있었으나, 이런 학교는 18개교 정도에 그쳤다.

<예시 4> 서울 사고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4조 ① 스포츠형 머리를 권장한다. ②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5~7cm 정도 길이로 눈썹을 덮지 않도록 한다. ③ 옆머리는 귀를 닿지 않도록 한다. ④ 뒷머리는 끝 부분이 2cm이하로 단정히 한다. | 제4조 ① 머리 길이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구노회 의원이 전국 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칙이 나아진 정도를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학교생활규칙이 문제가 된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학교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는지를 묻는 물음에 164명(57.3%)이 ‘거의 나아진 게 없다’고 답했으며, ‘조금 규제가 완화되고 나아졌다’고 답한 학생은 83명(29.0%)에 불과했다. 또한 학교생활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방식을 묻자 31.4%가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의원회에서 결정함’(30.6%), ‘몇몇 학생대표들의 의견만 들음’(22.9%)이라는 대답이 차지했다. 학급회의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직접 참여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학생들은 14.9%에 지나지 않았다.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추진현황을 시기별·전국별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이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2004~2005년의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추진을 통해 많은 학교에서 생활규칙 제·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인천의 경우, 420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규칙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충북의 경우도 2005년 8월 중 80개의 인문계(44개교), 실업계(31개교), 특목고(5개교)에서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이 이루어졌음을 보고하였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나(강원 96.3%, 대전 92.4%, 경기 86.5%, 경남 82%, 경북 71%) 아직도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이 56%, 54% 수준에 머문 지역도 있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일 것이다.

둘째, 2004년과 2005년 연도별로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추진현황을 비교해 볼 때, 2004년과 2005년 연도별 편차없이 비슷한 정도의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추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4년에 학교장 및 교감 연수시 2004학년도 학교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전달했으며, 이어 2005년에도 학교장 및 교감 연수시 2005년 학교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전달했다. 따라서 학교생활지도 기본계획 전달방법 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방안 분임토의, 연수, 역점시책 및 역점과제로의 선정 등의 보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부분 학교생활지도 계획 책자 제작·배포를 통해 학교생활규칙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 학부모, 학교간의 협의 및 인식 확산을 통한 학교생활지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위로부터의 하달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학교구조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한계 등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섯째,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의 학교생활규칙 및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제·개정이 주로 학교장·교감·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담당 교사와 이를 책임질 수 있는 학교장, 교감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담당자뿐만이 아닌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도 공지하여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일 것이다.

<표 11>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추진현황

| 치시 역거 | 2004년 | 2005년 |
|----------|--|---|
| | 주제 및 내용 | 주제 및 내용 |
|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생활지도 계획 책자 제작 배부: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2004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계획」 제작·배부 생활지도부장 워크숍 개최: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교사 워크숍: 학생생활규정의 민주적 제·개정 추진 지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생활지도 계획 책자 제작 배부: 「2005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계획」 제작·배부 : 생활규정 제·개정 및 자율 준수 풍토 조성 학생 두발지도 지침 개정 2005학년도 학교생활규칙 검토·분석: 학생 두발 지도 지침 개정 시행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2005 학교생활규칙 검토·분석 실시 : 학생선도(징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관련 규정, 체벌규정, 용의복장(두발관련규정 포함) 규정 등 |
| 경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생활규칙 정비: 논란의 소지 및 학생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의 개정을 정비하도록 함. 용의복장 및 두발의 지나친 규제, 불합리한 학생회 임원 자격제한 등 본청 및 지역교육청 장학진의 생활지도 점검시 확인 및 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및 확인 알림(2005.04.06)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 중시한 학교생활규칙 마련-각급학교의 제·개정 학교생활규칙 제출(중학교:지역교육청, 고등학교:도교육청) 학교생활규칙 점검 :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점검팀 구성(05.18), 인권침해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요소 등 협의(05.18, 점검팀 회의) 분석 및 점검 결과 인권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 학교별 통보함 |
| 인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전달 '04년 학교장 및 교감 연수 시 전달 : '04년 여름방학 생활지도 계획에 반영하여 전달 ('04.6.22), '04년 2학기 생활지도 계획에 반영하여 전달 ('04.9.7), '04년 겨울방학 생활지도 계획에 반영하여 전달 ('04.1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전달 ('05.3.10) : '05 학교장 및 교감 연수 시 전달, '05 여름방학 생활지도 계획에 반영하여 전달 ('05.7.6) |

| | | |
|----|---|--|
| 강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25(중등교육과-842) : 2004 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 송부 ◦ 7. 1(중등교육과-6987) : 2004학년도 여름방학 및 2학기 학생생활지도 계획 보냄 ◦ 9. 6(중등교육과-10255) : 학교생활규칙 자료 제출 협조 ◦ 9. 15(중등교육과-11074) :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에 따른 협조 사항 및 제·개정 현황 제출 ◦ 11. 25(중등교육과-15225) : 2004 수능 후 학생생활지도컨설팅 추진계획 알림 ◦ 12. 31(중등교육과-18628) : 수능 후 학생생활지도 컨설팅 추진 결과 알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21(중등교육과-2356) 2005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송부 ◦ 3. 24(중등교육과-4324) : 2005년 전반기 학생생활지도컨설팅 추진계획 알림 ◦ 3. 28(중등교육과-4879) : 2005년도 학생생활지도 강화 ◦ 4. 15(중등교육과-6384) : 비교육적 두발지도 지양(금지) 협조 ◦ 5. 23(중등교육과-8713) : 2005년 전반기 학생생활지도컨설팅 추진결과 알림 ◦ 5. 31(중등교육과-9037) :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에 따른 협조 ◦ 6. 27(중등교육과-10498) : 2005년도 여름방학 및 2학기 생활지도 계획 보냄 ◦ 7. 26(중등교육과-12554) : 학생두발제한 관련 인권위원회 결정문 안내 |
| 충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지도 계획 책자 제작 배부 ◦ 생활지도부장 워크숍 개최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2004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계획’제작·배부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교사 워크숍: 학생생활규정의 민주적 제·개정 추진 지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지도 계획 책자 제작 배부 ◦ 학생 두발지도 지침 개정 ◦ 2005학년도 학교생활규칙 검토·분석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2005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계획」 제작·배부 : 생활규정 제·개정 및 자율 준수 풍토 조성 ◦ 학생 두발 지도 지침 개정 시행 ◦ 2005 학교생활규칙 검토·분석 실시 : 학생선도(징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관련 규정, 체벌규정, 용의복장(두발관련규정 포함) 규정 등 |
| 충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장 회의(2004.02.13) ◦ 생활지도부장, 생활지도담당장학사 연수(2004.03.05) ◦ 각급 학교 장학지도 및 종합감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2004.3 - 2004.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도부장, 생활지도담당장학사 연수(2005.03.09) ◦ 중·고등학교장회의(2005.3.23) ◦ 각급 학교 장학지도 및 종합감사를 통한 점검 중(2005.03부터) ◦ 각급 학교생활규칙 일제 점검 예정(2005.08.12) |
| 대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계획 보냄(생활규정 제(개)정 지시) ◦ 3월 생활지도 상임위원회 회의(전달) ◦ 학생인권존중차원의 생활지도 철저(중등교육과-2464) ◦ 학교(학생)생활규정 사본 제출(중등교육과-8993) ◦ 2004학년도 생활지도 관련 각종 실태 파악 제출(중등교육과-139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계획 송부(생활규정 제(개)정 지시) ◦ 3월 생활지도 상임위원회 회의(전달) ◦ 비교육적 두발지도 지양(금지) 알림(중등교육과-5727) ◦ 학교폭력예방 토론회 및 사례발표회 ◦ 6월 생활지도 상임위원회 회의(전달) ◦ 인권존중, 자율, 책임풍토 조성을 위한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촉구(중등교육과-8448) ◦ 학생두발 제한 관련 결정문 송부(중등교육과-10565) |

| | | |
|-----|--|--|
| 경 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3.5 회의를 통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침 전달 ◦ 2004.5.30. 학교생활규칙 정비현황 파악 ◦ 2004.7.4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지침 시달 ◦ 2004.8.30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지침 시달 ◦ 2004.11월-12월 20개시·군지역별 학생생활 규정내에 학생인권 침해 조항 조사 및 협의회 실시 ◦ 2004.11.29. 회의를 통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침 시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1.13. 인권존중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방안 분임 토의 ◦ 2005.3.5 회의를 통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침 시달 ◦ 2005.4.20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침 시달 ◦ 2005.4.26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침 시달 ◦ 2005.5.9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침 시달 ◦ 2005.5.30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현황 파악 ◦ 2005.6.18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침 시달 ◦ 2005.6.20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침 시달 ◦ 2005.7.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침 시달 |
| 대 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의 학교생활규칙 및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제(개)정 일부 학교 상존('04 국회 국정감사 시 제기)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사) 협의회 회의 자료(2004.12.2.), II.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한 학교생활규칙 개정 ◦ 200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교원노조공동단체교섭단체협약서, 제40조(학생의 자율권 신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자율·책임 중시」 풍토 조성을 위한 2004. 학생생활지도 계획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차 혁신과제 알림(혁신복지담당관-227, 2005.01.20.) - 학교생활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회 : 2005. 2. 24.(교육청) - 학교생활규칙 개정을 위한 기본 방침 확정 : 2005. 2. 28.(교육청) - 학교생활규칙 개정을 위한 기본 방침 통보 : 2005. 3. 9.(교육청) - 학교생활규칙 개정 : 2005. 3월~8월(초·중·고) - 학교생활규칙 확인 및 준수 풍토 조성 : 2005. 9월~(교육청 및 학교) |
| 전 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도 협의회 개최 - 2004.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전달 협의회(2004.03.09) - 참석자 : 28명(지역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직속기관), - 장 소 : 2층 소회의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전달 협의회(2005.03.11) - 참석자 : 332명(지역청 생활지도 담당장학사, 고등학교 교감, 고등학교생활지도부장, 직속기관) 장소 : 대회의실 ◦ 지역교육청별 생활지도부장 협의회 개최(2005.03.12 - 03.16) - 대상 : 22개 지역교육청 - 내용 : 학교생활규칙의 민주적 개정 ◦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협조 공문 발송 1) 비교육적 두발지도 지양 요청(2005.04.14) - 내용 : 비교육적 두발지도 지양 2)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회의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관련 자료 송부 (2005.05.07) - 내용 : 학교생활규칙의 민주적 개정 3) 두발 관련 실태파악 제출(2005.05.07) - 내용 : 학교생활규칙의 민주적 개정 4) 학교생활규칙 보완 및 개정 요망(2005.05.12) - 내용 : 학교생활규칙의 민주적 개정 |
| 광 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지침 시달 및 연수 개최(중등교육과-1423, 2004.03.05) ◦ 여학생 교복 치마 고정착용 개선 권고(중등교육과-10593, 2004.07.04) ◦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업무 추진 및 현황 점검 협조(중등교육과-15414, 2004.09.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지침 시달 및 연수 개최(중등교육과-3596, 2005.03.03) ◦ 학생의 인권(인격) 존중 차원의 학생생활지도(중등교육과-6614, 2005.04.01) ◦ 비교육적 두발지도 지양(금지) 지도(중등교육과-7828, 2005.04.15) ◦ 인권존중과 체벌지양의 학생생활지도 다시 알림(중등교육과-8738,2005.05.02) ◦ 두발관련 실태 파악 및 비교육적 두발지도 금지(중등교육과-9066, 2005.05.09) |

| | | |
|----|--|--|
| 광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학생)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2004.12.16,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교감협의회에서 전달 연수 (2005.05.10) ◦ 학생 두발관련 규정 학생 의견 반영을 통한 제·개정 지침 시달(중등교육과-11875, 2005.06.14) ◦ 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부장 협의회를 통한 지침시달(2005.06.16) ◦ 2005학년도 여름방학 중 학생생활지도 계획에 국가인권위의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 안내((2005.07.08) |
| 울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81140-1709(2004.1.20) 학교생활규칙 내용 분석 검토-학교별 생활지도규정 취합하여 생활지도부장 대표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 분석 ◦ 중등81140-1709(2004.1.20) 학교생활규칙 내용 분석 및 개정 검토-분석된 내용을 학교에 시달하여 개정하도록 시달함. ◦ 2004.5.6 업무연락을 통해 개정된 학교생활지도 규정 제출받음 ◦ 중등교육과-1085(2004.6.29) 전국생활지도 담당장학관 협의회 회의결과 장학자료 시행-학생생활규정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교육과-3126(2005.3.9) 학생인권·자율·책임 을 중시하는 생활지도 장학계획 시달 및 연수 ◦ 2005.3.23 고등학교 장학협의회 학교장 연수 실시 ◦ 2005.5.20 고등학교 장학협의회 학교장 연수 실시 ◦ 2005.6.2-6.4 교육부 주관 전국 생활지도 담당장학관(사) 연찬회 특강시 관내 생활지도부장 연수 실시 ◦ 중등교육과-3126(2005.3.9)에 의거 학급학교 생활지도 규정 취합 분석 ◦ 중등교육과-7500(2005.5.9) 비교육적 두발지도 금지 및 관련 규정 현황 파악 ◦ 중등교육과-6493(2005.4.15) 비교육적 두발지도 금지, 두발규정 및 인권침해요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개정 후임정 적용 당부 ◦ 중등교육과-9863(2005.7.1) 7.8-7.9 1박2일 학생생활지도부장 연수 ◦ 중등교육과-10662(2005.7.14) 학생두발 제한관련 결정문 송부 ◦ 중등교육과-7318(2005.5.3) 교감회의 소집 교감연수 |
| 제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학년도 생활지도 중점추진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학교규칙 제·개정 - 학교생활규칙 중 학생의 인권침해 요소 개정 -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토론문화의 활성화 - 학교생활 규범 자율 제정 및 실천 지도 ◦ 지구별 생활지도담당교사 협의회 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6개지구, 고등학교 4개지구, 분기별 1회 . - 대상 : 생활지도담당교사 - 내용 :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및 생활규정 제·개정 취지 설명 ◦ 장학지도 시 체벌 없는 학교 풍토 조성 취지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4. 10. / 2004. 12. - 장소 : 15개 일반계고 - 내용 : 체벌관련 민원 사례 및 체벌 금지 취지 설명 ◦ 생활지도담당교사 연찬회 시 체벌규정 관련 연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4. 12. 15. - 장소 :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세미홀) - 대상 : 중·고 생활지도 담당교사 150명 - 내용 : 학생생활규정 분석 및 체벌 금지 취지 연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학년도 제주교육의 역점시책 및 2005학년도 생활지도기본계획 역점과제로 선정·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 가능성이 있는 학교생활 규정 개정 - 학교생활규칙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개정 ◦ 지구별 학생선도단 협의회 회의시 행정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10개 지구 - 대상 :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담당교사 전체 70명 - 내용 :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취지 설명 ◦ 장학지도 활용 :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통한 제·개정 행정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분기 담임장학지도시 - 장소 : 초·중·고 교사 전원 - 내용 : 체벌관련 민원 사례 및 체벌 금지 취지 설명 ◦ 시·도교육국장 협의회 자료(2005. 4.19)에 근거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중시』 풍토 조성을 위한 공문 시행(2005. 05.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생활규정 등 :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통해서 개정 ◦ 생활지도 담당장학사 업무협의를 통한 '체벌없는 학교풍토 조성'에 공동 대처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5. 6. 21 - 대상 : 지역교육청 생활지도 담당장학사 및 본청 생활지도 초·중등 장학사(총 5명) - 내용 : 학생생활규정 분석 및 행정지도 방안 모색 ◦ 2005학년도 여름방학 및 제2학기 생활지도계획에 추진과제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 가능성이 있는 학교생활규칙 개정 - 학생관련 규정 제·개정시 학급회와 학생회 참여 보장 |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칙예시안을 마련하고, 2003년부터 생활지도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여러 차례 교육감 및 교육청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는 단위학교에 주는 하나의 지침일 뿐, 규제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학교생활규칙상의 내용 변화는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 27일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의 두발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탈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 차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례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례와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두발 관련 대화,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정사례의 내용으로는 학생 자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2001년에 비해 2006년으로 올수록 진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두발관련 고발내용은 총 495건, 용모관련 114건, 교복관련 81건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자유권 침해가 비일비재하며 이를 시정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2001. 11.~2006. 5.)

| 시 기 | 사건명 | 분류 | 진정요지 |
|-----|-------------------------|---------|--|
| 1 | 2001. 11. 교내 인권침해 | 인간의 존엄성 | 학생들 인권문제로 학부모들과 학교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이를 조사하였던 피진정인들이 부모들의 동의없이 어린 학생들을 불러 장학사, 주사, 담임선생과 대질하여 조사하였던 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는 진정 |
| 2 | 2002. 11. 법령, 제도개선 | | 교사가 생활지도 규정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진정 |
| 3 | 2002. 11. 편파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 평등권 | 진정인의 아들이 선배들에게 상습적 폭행, 금품갈취를 당하여 진정인이 이를 신고하였으나, 증거품인 쇠파이프가 없어지고 가해학생들의 협박 글도 증거품으로 받아주지 않아 가해학생변호사와 경찰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다고 진정 |
| 4 | 2002. 11. 신체의자유 침해등 | 기타 | 피해자는 지각과 불펜 미지참으로 담임에게 체벌을 받아 상해를 입었음. 피해자가 중얼거리자 담임교사가 체벌을 가하고 피해자를 퇴학시킬 것을 요구하여 학생과로 넘겼음. 피해자는 경위서 작성을 강요받고, 진정인은 수차례 사죄하며 교육청 장학사에게 중재를 부탁하였으나, 이로 인해 교장이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고, 이의신청시 퇴학된다고 함 |
| 5 | 2003. 1. 법령개선 (학생징계 규정) | | 피해자는00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00학교의 비리 등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가 퇴학처분 받음. |

| | | | | |
|----|-----------|--------------------------|-----------|---|
| 6 | 2003. 6. | 제도개선 | | 일선 고등학교 미션스쿨에서 학생들의 개인신앙과는 관계없이 학교 측에서 정한 종교 행사나 예방 등을 강제함 |
| 7 | 2003. 9. | 기타진정 | | 각 학교에서 학생회 임원에 대해 “반장, 부반장 선거는 전교 석차 10%에 들어야한다”는 등의 자격을 두고 있음 |
| 8 | 2003. 10. | 성별에 의한 기타차별 | 성별 | 여학생 교복 중, 치마 교복만 있는 학교가 76.3%, 치마 및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19.4%, 이 중 바지교복인 학교는 22개교임. 양성혼합반에서 남학생부터 번호를 주고, 남학생 뒷번호부터 여학생번호를 줌 |
| 9 | 2004. 2. | 기타진정 | | 00여교 담임이 학생들의 귀, 목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적절한 대응이 없어 학교장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요구함 |
| 10 | 2004. 3.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인간의 존엄성 | 00학교 부장교사, 교장, 교감이 학생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교칙을 개정,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함 |
| 11 | 2004. 10. | 평등권 침해 | 기타 | 진정인이 재학교중인 00에서 00프로젝트에 선정되어 22억을 지원받았으나, 학교 측에서 소수 엘리트에게 모두 투자하여 대학진학을 높이기를 실현한다고 발표함 |
| 12 | 2004. 10. | 평등권 침해 | 기타 | 학교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학급, 전교 정,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정임. 또한 입후보 자격에 재학생 중 성적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학년 석차 1/3이내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부당함 |
| 13 | 2005. 1. | 성별에 의한 기타차별 | 성별 | 중, 고등학교 여학생 교복에 바지가 없는 것은 차별임 |
| 14 | 2005. 3. | 용모를 이유로한 기타차별 | 용모, 신체조건 | 학교규정에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게, 귀머리는 와이셔츠 칼라에 닿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머리를 자르라고 하고, 신입생 중 80%가 머리를 잘랐음 |
| 15 | 2005. 3. | 용모를 이유로한 기타차별 | 용모, 신체조건 | 진정인은 머리가 곱슬이라 묶고 다녀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 머리를 묶으면 안 된다고 하여 교장실에 찾아가 사정을 말하였으나, 결국 안 되었고 두발 및 복장 검사도 더욱 엄격해졌음. 이에 시정을 원함 |
| 16 | 2005. 3. | 인격권침해 등 | 인간의 존엄성 | 00교사가 학생들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하고, 하키 라켓으로 허벅지, 엉덩이, 정수리를 때림. 수업시간에는 놀라고 하고 욕을 심하게 함. 수업시간에 술에 취해 들어온 적도 있음 |
| 17 | 2005. 4. | 학교급식 관련지문 날인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 사생활의비밀과자유 | 00지역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운행중임 |
| 18 | 2005. 5. | 집회결사의 자유침해 | 언론의 자유 |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시위에 참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 집회에 참석하는 학생을 불법집회에 참석하거나 집단행동하는 학생에 대해 징계하도록 한 각 학교 교칙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관련 사이트를 검색해 동태를 파악하여 각 학교 교사 및 장학관, 담임 장학사에게 집회현장에서 생활지도를 하도록 하였음 |
| 19 | 2005. 6.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재화의 공급 이용차별 | 사회적 신분 |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치마만 입게 하고 교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만 신게 함. 다른 학교는 운동화와 구두를 혼용하여 신을 수 있게 하는데 00학교만 빈부격차가 난다는 이유로 운동화를 신지 못하게 함 |
| 20 | 2005. 6. | 과잉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인간의 존엄성 | 00학교에서는 교사의 훈계로 그칠 수 있는 사소한 학생들의 잘못에 대하여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 합계 21점을 초과하며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리 하도록 하는 ‘학교생활상벌점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 21 | 2005. 6. | 성희롱 | 성희롱 | 피진정인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체벌을 가하면서 다리 사이를 쳐다보는 등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있으니 조치바람 |
| 22 | 2005. 7. | 종교를 이유로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 종교 | 피해자는 개신교 신자인데 수학여행 일정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임. |
| 23 | 2005. 8. | 교사에 의한 성희롱등 | 성희롱 | 교사 000는 시험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하여 진정인의 성기를 때려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학생복장용의규정의 개정, 두발규제시 강제이발 및 폭행, 학생에 대한 인격적 모욕 등의 인권침해도 발생하고 있음 |

| | | | | |
|----|-----------|-----------------------|-------------|--|
| 24 | 2005. 9. | 사생활 침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진정인은 교사인데 생활지도부장이 교육청의 지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공문을 올려 CCTV를 설치했음 |
| 25 | 2005. 9. | 용모를 이유로한 타차별 | 용모, 신체조건 | 생활지도부장 선생님 및 학생부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들어오셔서 학생들의 머리를 강제로 자리고 때림. 또한 매일 하루에 한번씩 교실을 돌아다니시면서 머리검사를 하고 때림 |
| 26 | 2005. 9. | 체벌에 의한 인권침해 등 | 신체의 자유 | 진정인은 전학년 학생으로, 두발규제로 단속된 학생 6-70명중 진정인 외 2명에게만 엎드려뺨치기 기합을 주고 진정인을 포함한 4명만 생활지도부실로 불러 체벌하였음. 진정인은 당일 이발한 후 다시 등교하였는데, 다시 이발하라고 하며 머리를 때리고 학교에서 마주치자 이발할 것을 강요하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때림 |
| 27 | 2005. 10. | 기타사유를 이유로한 교육시설 이용등차별 | 기타 | 농구부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생 학교급식소 배식, 교내행사 지원 등의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새로 부임 온 코치와 부장교사로 인해 진정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임 |
| 28 | 2005. 10. | 도서관건립 미이행에 의한 인권침해 | 인간의 존엄성 | 모 국회의원이 도서관 건립을 약속하였으나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학교는 재정악화, 학생들은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음 |
| 29 | 2005. 11. | 각서요구에 의한 인권침해 | 양심의 자유 | 내신성적 140점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양식의 차별적 각서를 강요함 |
| 30 | 2005. 11. | 인격권침해 | 인간의 존엄성 | 교사들이 커터 면도기와 가위를 들고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머리를 째고 있음 |
| 31 | 2005. 12. | 학교CCTV 설치에 의한 인권침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급 학교에 CCTV 설치를 결정하였음 |
| 32 | 2005. 12. | 용모를 이유로한 교육시설의 이용차별 | 용모, 신체조건 | 교사가 학생들의 두발이 길다는 이유로 수시로 잡아당기고 몽둥이로 때리며 진정인의 두발을 강제로 잘랐음 |
| 33 | 2005. 12. | 용모를 이유로한 기타차별 | 용모, 신체조건 | 수업 중 담당 교사가 머리가 긴 학생 10여명을 강제로 이발하였음. 당시 전 회장인 학생에 대해서는 경고만 하고 이발하지 않았음 |
| 34 | 2005. 12. | 용모를 이유로한 교육시설의 이용차별 | 용모, 신체조건 | 최근 학생들의 두발이 길다는 이유로 강제 이발을 실시하였음 |
| 35 | 2006. 1. |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 학문예술택의 자유 | 진정인의 아들이 질병으로 인한 지각, 결석, 교사와의 마찰 등 사유로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고 전학을 가라고 하여 진정함 |
| 36 | 2006. 5. | 급식비 미납바코드 시행에 의한 인권침해 | 인간의 존엄성 | 00학교 학생들은 점심식사시간에 학교 급식소 문을 지나 학생 목에 걸린 학생증이 카드인식기에 자동으로 접수되어 급식비 납입 현황이 파악되고, 급식비 납입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전광판에 “급식불가”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수치심을 느낌 |
| 37 | 2006. 5. | 학생간 폭행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 인간의 존엄성 | 피해자는 학교 불량사극에 의해 폭행과 금품갈취를 당하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 처벌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반성문을 쓰라고 한 것이 전부여서 진정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경찰서로 사건 이송, 만 14세이하이므로 조사하지 않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학교폭력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해주길 원함 |
| 38 | 2006. 5. | 건강권 침해 등 | 인간의 존엄성 | 학교건물 왼쪽의 연립 건축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 분진과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 39 | 2006. 5. | 기타사유를 이유로한 교육시설의 이용차별 | 기타 | 야간자율학습을 반 강제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성적우수자에게만 우수한 환경과 시설을 갖춘 정독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부에 민원 제기하자 교육청에서는 적법하다고 하여, 방과후 성적에 따른 수업과 지도를 일체 금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한 시정을 요구함 |

진정사례 내용을 시기적으로 보면 2005년에 22건으로 가장 많은 진정 내용이 있었다.

진정사례 주제 측면에서는 과잉처벌, 교사처벌, 학생징계 처분, 인격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아, 인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잘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용모·신체, 성별, 성적 등의 차별에 관한 내용과 평등권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다.

진정사례 내용으로는 CCTV설치를 통한 사생활침해 내용, 학교급식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 침해 내용 등의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인권침해 내용에서부터 학교폭력관련 및 처벌에 관한 사적인 내용에까지 다양했으며 용모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등의 이슈에 따라 집중되어 나타나는 사례들도 있었다. 용모를 이유로 한 기타 차별 내용의 경우, 두발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조치 권고 및 확인 절차를 여러 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까지 학생들이 머리카락을 잘리는 실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어 이 사례들의 심각성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교복착용에 있어, 현대사회에서 치마보다는 바지를 많이 입는 시대적·문화적 상황에 역행하여 교복에 바지가 없었으며 치마를 강요하는 성역할 문제로 남학생과의 차별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진정사례 처리결과들은 의결결과 제3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진정취하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용모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의 경우는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의 2006년 2006. 2. 19~11. 23까지 위원장과의 대화 두발 관련 의견내용으로도 현 상황 실태의 심각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 두발 규제 내용뿐만이 아니라, 규제에 따른 처벌이 교사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사례

| 두발 관련 사례 | | | |
|----------|----|-------------|---|
| 번호 | 지역 | 중·고 (학년) | 비고 |
| 1 | 서울 | 중 | 남학생에게만 두발제한을 한다 |
| 2 | 경기 | 고(1) | 두발 길면 퇴학도 시킨다. 학교에서 미용사 되려는 초보자를 불러 반삭을 시킨다 |
| 3 | 경남 | 고 | 강제이발로 뒷머리 파임, 서슴없는 욕설 |
| 4 | 경북 | 중(3) | 두발검사로 감점 10점 |
| 5 | 서울 | 중 | 강제이발 |
| 6 | 부산 | 중 | 쫓대빠를 차거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집어 뜯고 각목으로 엉덩이 구타. 머리 안 깎으면 라이터로 머리에 불질러버린다고 협박 |
| 7 | 인천 | 고(2) | 규정: 뒷머리와 옆머리 바리깡(귀두컷), 방과후 운동장 뺑이와 체육창고로 끌려가 맞고나옴 |
| 8 | 전북 | 고 | 규정: 두발지적 3회는 6시간 봉사활동, 4회는 부모님소환. 뺑 때리고 욕설, 야자시간에 늦으면 매 |
| 9 | 경기 | | 규정: 앞머리 8cm, 뒷머리 바리깡 |
| 10 | 서울 | 중 | 학교 홈페이지에 두발건의한 후 찍혔다고 들음 |
| 11 | 울산 | | 머리길다고 수업도 안 시키고 벌주고 때린다 |
| 12 | 전북 | | 욕설 |
| 13 | 부산 | 중(3) | 강제이발 |
| 14 | 서울 | 고(2) | 두발로 수행평가와 징계 |
| 15 | 충북 | | 머리 긴 학생 구타 |
| 16 | 부산 | 고 | 구타와 욕설, 삭발, 반삭, 귀두 아니면 강제이발 |
| 17 | 서울 | 중 | 강제이발, 선생님 앞에서 학생이 직접 자르게 한다, 용의복장불량과 장발은 수행평가 1점 감점 |
| 18 | 대전 | 고 | 규정: 옆머리, 뒷머리 면도기로 깎은 듯이 하얗게, 1달에 한 번 조사 후 4번 걸리면 징계와 퇴학 처리 |
| 19 | 서울 | 고(1) | 머리길면 잡는다 |
| 20 | 서울 | 중 | 학교 홈페이지에 두발관련 의견 올리면 생활부로 끌려간다. 강제 이발시키고 안 깎으면 수업불참, 따귀, 내신반영. 이번 방학 전에 두발검사실시 예정 |
| 21 | 대전 | 고 | 7/6 시험 끝나면 바로 두발검사 실시-스포츠형 |
| 22 | 서울 | | 귀두 컷, 반삭 |
| 23 | 충남 | 고 | 두발 검사해서 내신에 반영한다고 함 |
| 24 | 서울 | 중 | 두발규제가 심하다 |
| 25 | 대구 | 고 | 학생이 가위로 자신의 머리를 자르게 했다 |
| 26 | 서울 | 중(2) | 머리 땀에 학교에서 강제전학 시키고.. 군대수준 |
| 27 | 경기 | | 선생님이 미리 말도 없이 머리를 잘랐다 |

| 체벌 관련 사례 | | | |
|----------|----|-------------|---|
| 번호 | 지역 | 중·고 (학년) | 비고 |
| 1 | 서울 | | 머리를 맨손으로 수차례 뽐혀 부어오름. 따귀 맞고 정강이 걷어차임. |
| 2 | 서울 | | 인격모독과 성희롱발언과 손찌검 |
| 3 | 서울 | 고 | 하키채로 엉덩이 맞음, 체벌장면 못 찍게 핸드폰, 디카 소지 금지 |
| 4 | 경기 | 고 | 3교시동안 무릎 꿇고 자습 후 허벅지 체벌 |
| 5 | 충남 | 고 | 당구 채와 야구방망이로 30분간 구타 |
| 6 | 서울 | 고 | 전교생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별점 준다. |
| 7 | 전북 | 고(2) | 걸레대로 발바닥 때리고 대가 끊어지자 각목 |
| 8 | 울산 | 고 | 매질을 당하고 이후 징계를 내린다는 말 들음 |
| 9 | 대구 | 고 | 가혹한 체벌과 폭언, http://www.nocut.idoo.net 참고 바람 |
| 10 | 서울 | | 별점, 졸업 가산점과 부상 박탈, 각종 혜택 제외, 무차별적 구타, 집안 욕(부모 욕) |
| 11 | 서울 | 중(1) | 여러 번 걸리면 팬다 |
| 중복 사례 | | | |
| 번호 | 지역 | 중·고 (학년) | 비고 |
| 1 | 부산 | 고 | 위원회 자유게시판에 부산공고 관련 다수 의견 |
| 2 | 인천 | 고 (3) | 주먹으로 배와 얼굴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머리끄덩이 잡고, 발설하면 크게 다칠 거라고 협박함, 당구채로 때려 대가 부러지고 파이프를 테이프로 감아 때림 강제이발하다 귀까지 찢었음 |
| 3 | 서울 | 학부모 | 체벌뿐 아니라 비싸고 더운 교복도 문제다 |
| 4 | 부산 | 중 | 총대뼈를 차거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집어 뜯고 각목으로 엉덩이 구타. 머리 안 깎으면 라이터로 머리에 불질러버린다고 협박 |
| 5 | 서울 | 중 | 발목양말 못 신고, 크로스백 못 메고, 칼 가위 소지 금지 학교 홈페이지에 두발관련 글 올리면 사진삭제하게 만들고 내신점수 깎는다 함 |
| 6 | 인천 | 고 (2) | 규정: 뒷머리와 옆머리 바리깡(귀두컷) 방과 후 운동장 뽕이와 체육창고로 끌려가 맞고나옴 |
| 7 | 서울 | 중 | 핸드폰 소지 걸리면 한 달간 압수 |
| 8 | 서울 | 고 | 네이버에 동성고 관련 다수 의견 |
| 9 | 전북 | 고 | 규정: 두발지적 3회는 6시간 봉사활동, 4회는 부모님소환 뽐 때리고 욕설, 야자시간에 늦으면 매 |
| 10 | 대구 | 중 |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가격, 뽐 맞음, 규정: 뒷머리2.5cm |
| 11 | 서울 | 고 | 회초리로 허벅지 가격, 벌, 강제이발, 급식이상 |
| 12 | 서울 | 중 | 생활부장 선생님께 따귀, 가위로 머리 잘리고 안 자르면 수업 못 들음, 홈페이지에 올리면 생활부로 끌려감 |
| 13 | 대전 | 고 | 차별이 심하고 규정이 썩다 |

두발규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에서는 ‘우리부에서는 두발을 규제하도록 한 바 없다’(회신일 2005. 1. 11)며, 두발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두발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은 해당 학교의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건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6년 3월 23일 질의회신에서도 두발자유화를 공식발표해 달라는 질의사안에 학생의 두발은 국가가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부모님과 선생님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학생의 입장을 되돌아보고, 학교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학생의 도리이며 교사의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비인격적인 지도 방법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교장선생님과 상의하고, 학교의 두발 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면 친구들의 뜻을 모아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개선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6년 5월~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고발내용을 분석해보면 두발관련 내용은 27건에 달했다. 거의 대부분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의 두발 규제 실태와 교사 처벌 등의 내용 등으로 다음의 예시를 보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케 한다.

<사례 1>

“시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기에 저희 학교에선 매우 심한 두발규제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 저희 학생들은 자신의 두발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건가요, 어쩌서 저희들의 두발을 남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겁니까, 저희의 일부인 두발을 저희가 관리하도록 내버려 두게 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인권을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훗날 이 나라를 짊어질 수많은 국민들 중 하나입니다, 어리다며 학생의 인권을 이런 식으로 무시한다면 저희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기억에 남게되는 것은 "약자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것" 이라는 잘못된 개념뿐일 것입니다, 머리를 자른다고 학업 성적에 큰 효과가 있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허나 이렇게 두발 규제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두발을 강제로 자르도록 한다면 되레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어떻게 하나요, 두발을 자르지 않으면 폭력과 징계까지 내리는 이런 우스운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저희들의 인권을 무시되어도 되는 건가요,”

더불어 두발규제에 대한 반박을 다음과 같이 논리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다.

1.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학생다운 것이 무엇일까? 교복 챙겨 입고 단정한 머리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주로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그 학생다운이라는 것을 누가 규정한 것일까? 학생 스스로 규정한 것일까? 기존의 사회가 학생에 대해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은 어떤 것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 의무가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일인가? 학생다운은 학생 스스로 규정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학생은 하나의 집단이 기도하지만 한 개인들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은 절대 아니다,

2.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학생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사회의 여러 잘못된 부분에 빠져들 수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두발이나 다른 "학생다운"이라는 것들 없이는 조금은 힘이 들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활지도"라는 것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행하여질 정당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생활지도"부터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생활지도라는 것이 과연 학생들을 진정 위하는 길이나는 의문이 생긴다, 학생들에게도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생활지도라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너무 간섭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획일

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간섭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금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

학생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당연히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공부라는 것이 무엇일까? 학과공부만이 공부일까? 적어도 공교육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이유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가고 잘 먹고 잘사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일까? 국가에서 교육의 의무를 지우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키우기 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일 것이다, 이 사회의 원칙이 부당한 억압에 순종하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다 고 하여도 자신에게 피해가 된다면 참고 넘어가라는 것일까?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교육에서 그들이 과연 진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학생들이 버릇없이 인권 운운하면서 반항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생들의 두발자유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라 생각한다, 단지 그들이 "보기 싫은"것이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사회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싫은 것이다, 교사들의 구타를 당연시하고 강제로 머리 잘리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생각하던 사람들이 정당한 학생들의 요구가 알맹고 보기 싫은 것이다, 그들은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자꾸 반항하니까 짜증나고 싫은 것이다,

정당한 요구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대도 불구하고 내가 싫다고 무조건 억압해야 정상인가? 미니스커트가 싫다고 자르고 다니면서 치마길이 체크하고 다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장발이 싫다고 가위들고 다니면서 자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취향은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인권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 주장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학생들에게는 "교칙"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 교칙이 누구와 합의되어 만들어 졌는가? 공동체의 규칙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되었다면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요구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묵살되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이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은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두발의 자유는 단지 학생들에게 멋 부리게 하자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닌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권을 교육하지 못하는 교육이 무슨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 "

<사례 2>

"학생은 머리부터 단정해야 공부를 잘한다"라고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만 단정하다고 다 공부 잘한다는 근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들은 한대 쥐어박으며 머리가 길면 머리에 신경쓰게 된다고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하지만 머리를 잘랐을 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저절로 머리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학교 가서 머리가 길다고 선생님이 학생의 머리를 멋대로 찌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저의학교의 예입니다 물론 학교 이름은 말씀 못드리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럴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의 인권침해를 하는 머리를 멋대로 자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사례 3>

"두발의 속박은 학생들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휩싸이게 하고 심한경우 두발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합니다, 또한 두발단속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남기고간 나쁜 역사의 산물이며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걸림돌입니다, 작년에 한번 학교에 찾아왔다고 했는데 학교는 변한게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두발 자율화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게시글을 보면 오히려 두발 규제로 인해 학생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학업의욕 상실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두발규제 뿐만 아니라, 교복 자율화, 벌점제에 의한 인권침해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다음의 예들은 교복에 관한 내용, 학교생활규정에서의 벌점제도 등의 인권침해

에 대한 내용 등에 관한 것이다.

<사례 4>

"미군의 짧은 머리 보셨나요? 우리나라 군대의 짧은 머리 보셨나요? 그들은 왜 머리를 짧게 깎을까요? 학생들이 머리는 왜 짧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권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모두 다 짧은 머리가 인권과 관계가 있다면, 모두 다 긴 머리는 인권과 관계가 없는 건가요? 또 한 가지 교복은 왜 입는 거지요? 긴 머리에 교복은 정말 안 어울리거든요, 왜 똑같은 교복을 입는 것은 인권위에서 참견을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과거의 잔재 아닌가요? 두발의 자율과 교복의 자율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례 5>

"학생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받는 건 중·고등학교입니다, 일제시대의 잔재인 교복을 입혀 모두를 획일화시키고, 두발제한을 하여 학생들의 개성표현을 짓누르고 억압하려는 지금의 문제를 좀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두발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헌법에는 모든 인간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는 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모든 법의 기초이며 누구나 따라야하는 헌법을 가장 많이 위배하고 있는 곳이 학생들이 배우고 자라는 학교입니다."

<사례 6>

"벌점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반사항을 정하는데 있어서 학교 측이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것에 있다, 학교 측은 "학생회와 협의 하에 만든 제도" 혹은 "학생 기본 생활 수칙에 꼭 필요한 항목"이라면서 온갖 생활 패턴을 획일화하려고 한다, 두발제한은 거의 모든 학교가 기본적으로 포함시키는 벌점항목이고 책가방의 모양과 같이 사용하는 학용품 까지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 외에 선생님께서 대들거나 이유 없는 명령 불복종 행위에 있어서는 벌점부여에 있어 교사에게 재량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황당한 항목은 벌점제를 시행하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정한 위반조항을 학교 마음대로 수정하고 또 그것을 일부 학생회의 간부급들을 불러세워놓고 훈계조로 이야기 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는 "학생회 간부측과 이야기가 끝난 사항"이라고 하며 넘어가버린다, 이것은 양호한 편으로 학생회 간부측과도 아예 협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두발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벌점을 확 올려버린다면, 흡연자에 대한 처벌을 거의 2배에 가깝게 올려버린다면, 일상다반사적으로 학교의 오만한 벌점제 시행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감정성 발언으로 두발 및 용모에 대한 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학생이라는 지위 신분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부분에 대해 반대의 논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생다움이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생활지도"라는 것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행해질 정당성이 있느냐의 문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의지 문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때, 이 사회의 부당한 원칙과 억압에 과연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인지의 여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교육환경에서 그들이 과연 진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의 여부 등 학생의 인간다움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논리성을 피력하고 있었다.

우리사회에서 학생이라는 지위와 신분 그 자체가 규제대상이며 오히려 교육적 환경에서의 인권침해 및 폭력문제가 권리보다는 책임이라는 명분아래 자행되어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실히 파악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유권의 범위와 한계, 책임설정 부분에 대한 기준선이 정립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에 대한 향후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중 · 고등학생 인권 실태 조사

1.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 조사

1) 기술적 통계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전국의 중고 재학생 및 교사와 학부모를 모집단으로 층화 표집한 1,955명이다. 이들을 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표 14>와 같다. 이 가운데 학생이 1,16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학부모 533명이며, 교사가 262명으로 가장 적다.

<표 14> 응답자의 집단별 비율

| | 빈도 | 백분율 | 유효백분율 | 누적백분율 |
|-----|-------|-------|-------|-------|
| 학생 | 1,160 | 59.3 | 59.3 | 59.3 |
| 학부모 | 533 | 27.3 | 27.3 | 86.6 |
| 교사 | 262 | 13.4 | 13.4 | 100.0 |
| 합계 | 1,955 | 100.0 | 100.0 | |

응답자들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응답자들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역을 가중 표집 하였기 때문에 실제 인구비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표 15> 응답자 거주 지역별 분류

| 지역 | 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서울 | 118 | 10.2 | 52 | 9.8 | 27 | 10.3 |
| 부산 | 54 | 4.7 | 30 | 5.6 | 12 | 4.6 |
| 대구 | 92 | 7.9 | 44 | 8.3 | 20 | 7.6 |
| 인천 | 30 | 2.6 | 15 | 2.8 | 7 | 2.7 |
| 광주 | 86 | 7.4 | 41 | 7.7 | 19 | 7.3 |
| 대전 | 87 | 7.5 | 42 | 7.9 | 19 | 7.3 |
| 울산 | 60 | 5.2 | 29 | 5.4 | 12 | 4.6 |
| 경기 | 82 | 7.1 | 31 | 5.8 | 21 | 8.0 |
| 강원 | 51 | 4.4 | 19 | 3.6 | 13 | 5.0 |
| 충북 | 60 | 5.2 | 29 | 5.4 | 14 | 5.3 |
| 충남 | 61 | 5.3 | 28 | 5.3 | 14 | 5.3 |
| 전북 | 88 | 7.6 | 41 | 7.7 | 16 | 6.1 |
| 전남 | 58 | 5.0 | 28 | 5.3 | 14 | 5.3 |
| 경북 | 59 | 5.1 | 26 | 4.9 | 14 | 5.3 |
| 경남 | 85 | 7.3 | 37 | 6.9 | 19 | 7.3 |
| 제주 | 89 | 7.7 | 41 | 7.7 | 21 | 8.0 |
| 합계 | 1,160 | 100.0 | 533 | 100.0 | 262 | 100.0 |

그러나 <표 16>을 살펴보면 세부 지역별로는 인구분포와 차이가 있지만 거주지 특성별로 다시 분류하면 대체로 인구 분포와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 및 5대 광역시를 합산한 대도시 응답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어촌 응답자는 20%에 미달하고 있다. 이 분포는 실제의 인구분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 학부모, 교사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16> 응답자 거주 지역 특성별 분류

| 지역 | 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대도시 | 527 | 45.4 | 253 | 47.5 | 116 | 44.3 |
| 중소도시 | 432 | 37.2 | 201 | 37.7 | 103 | 39.3 |
| 농어촌 | 201 | 17.3 | 79 | 14.8 | 43 | 16.4 |
| 합계 | 1160 | 100.0 | 533 | 100.0 | 262 | 100.0 |

응답자가 재학하는 학교를 설립별로 살펴보면 <표 17>과 같이 국공립학교 재학생이 사립학교보다 약간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부모와 교사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대체로 53 : 47의 비율에 이른다. 이는 실제 전체 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들이 사립학교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중 표집했기 때문이다.

<표 17> 응답자 재학 학교 설립별

| 학교 설립별 | 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국공립 | 616 | 53.1 | 282 | 52.9 | 140 | 53.4 |
| 사립 | 544 | 46.9 | 251 | 47.1 | 122 | 46.6 |
| 합계 | 1,160 | 100.0 | 533 | 100.0 | 262 | 100.0 |

<표 18>은 응답자가 재학 혹은 재직하고 있는 학교 급별 분포다. 표를 보면 중학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목고, 대안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도 이와 같은 순서로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는 모집단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18> 응답자의 학교급별 분포

| 학교 편성별 | 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중학교 | 558 | 48.1 | 263 | 49.3 | 128 | 48.9 |
| 인문고 | 407 | 35.1 | 195 | 36.6 | 96 | 36.6 |
| 실업고 | 87 | 7.5 | 39 | 7.3 | 17 | 6.5 |
| 특목고 | 58 | 5.0 | 21 | 3.9 | 12 | 4.6 |
| 대안학교 | 50 | 4.3 | 15 | 3.4 | 9 | 3.8 |
| 합계 | 1,160 | 100 | 533 | 100 | 262 | 100 |

다음 <표 19>의 응답자의 재학학교 성별 편성을 보면 남녀 공학 학교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학교, 여학교 순으로 많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1997년 이후 공립학교를 모두 남녀 공학으로 전환한 결과로 보인다.

<표 19> 응답자 학교 편성별 분류

| 학교 편성별 | 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남학교 | 268 | 23.1 | 125 | 23.5 | 60 | 22.9 |
| 여학교 | 229 | 19.7 | 114 | 21.4 | 52 | 19.8 |
| 공학 | 663 | 57.2 | 294 | 55.2 | 150 | 57.3 |
| 합계 | 1,160 | 100.0 | 533 | 100.0 | 262 | 100.0 |

학년별로는 1, 2, 3학년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다만 2학년의 응답률이 높고 1, 3학년의 응답률이 조금 낮다.

<표 20> 응답자 학년별 분포

| 학년 | 학생 | | 학부모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1 | 352 | 30.5 | 198 | 37.1 |
| 2 | 424 | 36.7 | 199 | 37.3 |
| 3 | 378 | 32.8 | 125 | 23.5 |
| 합계 | 1,154 | 100.0 | 522 | 97.9 |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표 21>과 같다. 학생의 경우는 남녀의 성비가 전국 인구 평균과 일치하여 약간의 남초 현상을 보여주지만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는 여자의 비율이 한결 높다. 이는 아버지 보다 어머니가 자녀에 더 관심이 많은 현실, 그리고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이 초등에 이어 중등교육 기관에서도 이미 보편화 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21> 응답자의 성별 분포

| | 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남자 | 614 | 53.2 | 136 | 25.5 | 85 | 32.4 |
| 여자 | 540 | 46.8 | 377 | 70.7 | 166 | 63.4 |
| Total | 1,154 | 100.0 | 513 | 96.2 | 251 | 95.8 |

청소년들을 직접 대면하고 많은 영향을 주는 교사의 특성은 <표 22>와 같다. 응답 교사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경력 20~30년의 교사들로 최근 들어 심화된 교단 노령화 현상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경력 10년~20년 이내의 이른바 386세대 교사들이다. 교직원 체별로 보면 44.5%가 교총에 가입해 있으며, 36%가 아무 단체에도 가입해 있지 않다. 전교조 교사는 17%이며, 이 중 경력 10~20년 교사가 주로 가입해 있다.

<표 22> 응답 교사들의 특성

| | | 경력 | | | | Total |
|------|-----|--------|--------|--------|--------|--------|
| | | 10년 이내 | 20년 이내 | 30년 이내 | 30년 이상 | |
| 교총 | 빈도 | 5 | 28 | 57 | 20 | 110 |
| | 백분율 | 8.8% | 36.8% | 67.9% | 66.7% | 44.5% |
| 전교조 | 빈도 | 6 | 24 | 11 | 1 | 42 |
| | 백분율 | 10.5% | 31.6% | 13.1% | 3.3% | 17.0% |
| 한교조 | 빈도 | 0 | 0 | 1 | 0 | 1 |
| | 백분율 | .0% | .0% | 1.2% | .0% | .4% |
| 좋은교사 | 빈도 | 0 | 0 | 0 | 1 | 1 |
| | 백분율 | .0% | .0% | .0% | 3.3% | .4% |
| 자유교조 | 빈도 | 0 | 1 | 0 | 0 | 1 |
| | 백분율 | .0% | 1.3% | .0% | .0% | .4% |
| 없음 | 빈도 | 44 | 23 | 15 | 7 | 89 |
| | 백분율 | 77.2% | 30.3% | 17.9% | 23.3% | 36.0% |
| 기타 | 빈도 | 2 | 0 | 0 | 1 | 3 |
| | 백분율 | 3.5% | .0% | .0% | 3.3% | 1.2% |
| 합계 | 빈도 | 57 | 76 | 84 | 30 | 247 |
| | 백분율 | 22.1% | 30.5% | 32.4% | 14.9% | 100.0% |

2) 학교생활규칙 관련

(1) 학교생활규칙의 인지 및 공개정도

먼저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우선 응답대상자 전체를 살펴보면 학교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5.4%이며 어렵듯이 알고 있다는 응답이

48.0%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6.6%에 불과하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사가 다른 집단에 비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아 78.3%에 이르며, 학부모의 경우는 모른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의 두 배가 넘는 13.8%에 달했다. 이는 교사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교칙에 훨씬 더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의 아랫부분은 응답자의 학교가 위치한 지역 특성에 따른 교칙 인지 정도를 교차분석 한 결과다. 표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응답자가 농어촌 지역 응답자에 비해 교칙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학교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에서 교칙이 더 많이 인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안학교에서 교칙이 가장 많이 인지되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가 가장 적게 인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학교생활규칙 인지정도 교차분석

| | | | 규칙인지 | | | Total | Chi-Square | p |
|----------------|------|-------|---------|------------|--------|--------|------------|------|
| | | | 잘 알고 있다 | 어렴풋이 알고 있다 | 잘 모른다 | | | |
| 집단 별 | 학생 | 빈도 | 462 | 642 | 52 | 1156 | 187.453 | .000 |
| | | 백분율 | 40.0% | 55.5% | 4.5% | 100.0% | | |
| | 학부모 | 빈도 | 217 | 238 | 73 | 528 | | |
| | | 백분율 | 41.1% | 45.1% | 13.8% | 100.0% | | |
| | 교사 | 빈도 | 202 | 53 | 3 | 258 | | |
| | | 백분율 | 78.3% | 20.5% | 1.2% | 100.0% | | |
| 학교 소재 지별 | 대도시 | 빈도 | 417 | 410 | 64 | 891 | 10.012 | .040 |
| | | 백분율 | 46.8% | 46.0% | 7.2% | 100.0% | | |
| | 중소도시 | 빈도 | 336 | 358 | 36 | 730 | | |
| | | 백분율 | 46.0% | 49.0% | 4.9% | 100.0% | | |
| | 농어촌 | 빈도 | 128 | 165 | 28 | 321 | | |
| | | 백분율 | 39.9% | 51.4% | 8.7% | 100.0% | | |
| 학교 설립 별 | 국공립 | 빈도 | 422 | 540 | 69 | 1031 | 18.150 | .000 |
| | | 백분율 | 40.9% | 52.4% | 6.7% | 100.0% | | |
| | 사립 | 빈도 | 459 | 393 | 59 | 911 | | |
| | | 백분율 | 50.4% | 43.1% | 6.5% | 100.0% | | |
| 학교 급별 | 중학교 | 빈도 | 467 | 427 | 49 | 943 | 10.519 | .039 |
| | | 백분율 | 49.5% | 45.3% | 5.2% | 100.0% | | |
| | 인문고 | 빈도 | 239 | 389 | 66 | 694 | | |
| | | 백분율 | 34.4% | 56.1% | 9.5% | 100.0% | | |
| | 실업고 | 빈도 | 81 | 57 | 4 | 142 | | |
| | | 백분율 | 57.0% | 40.1% | 2.8% | 100.0% | | |
| | 특목고 | 빈도 | 43 | 39 | 8 | 90 | | |
| | | 백분율 | 47.8% | 43.3% | 8.9% | 100.0% | | |
| 대안학교 | 백분율 | 51 | 21 | 1 | 73 | | | |
| | 빈도 | 69.9% | 28.8% | 1.4% | 100.0% | | | |
| total | 백분율 | 881 | 933 | 128 | 1942 | | | |
| | 백분율 | 45.4% | 48.0% | 6.6% | 100.0% | | | |

이는 실제로 학교생활규칙을 공개하려는 학교 측의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4>에서 보듯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생활규칙 공개 여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생활규칙을 공개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각 집단별 규칙 인지도와 홈페이지 공개 정도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절반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규칙이 공개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사립학교 보다는 국공립학교 재학생이, 인문고, 실업고 학생보다는 중학교나 특목고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학교 규칙이 공개된 것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대안학교의 홈페이지 교칙 공개가 특별히 낮은 것은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교칙을 고지하기 때문이다.

<표 24> 집단별 학교생활규칙 홈페이지

| | | 학교생활규칙 홈페이지 공개 | | | Total | Chi-Square | p | | | |
|----------------|-----------|----------------|-------|-------|-------|------------|------|-------|--------|------|
| | | 있다 | 없다 | 모른다 | | | | | | |
| 집단 별 | 학생 | 빈도 | 451 | 80 | 621 | 233.45 | .000 | | | |
| | | 백분율 | 39.1% | 6.9% | 53.9% | | | | | |
| | 학교 설립별 | 빈도 | 210 | 42 | 269 | | | | | |
| | | 백분율 | 40.3% | 8.1% | 51.6% | | | | | |
| | 교사 | 빈도 | 186 | 39 | 33 | | | | | |
| | | 백분율 | 72.1% | 15.1% | 12.8% | | | | | |
| 학교 소재 지별 | 대도시 | 빈도 | 424 | 57 | 404 | 19.78 | .098 | | | |
| | | 백분율 | 47.9% | 6.4% | 45.6% | | | | | |
| | 중소도시 | 빈도 | 307 | 65 | 354 | | | | | |
| | | 백분율 | 42.3% | 9.0% | 48.8% | | | | | |
| | 농어촌 | 빈도 | 116 | 39 | 165 | | | | | |
| | | 백분율 | 36.3% | 12.2% | 51.6% | | | | | |
| 학교 설립 별 | 국공립 | 빈도 | 426 | 71 | 526 | 2.67 | 2.11 | | | |
| | | 백분율 | 41.6% | 6.9% | 51.4% | | | | | |
| | 사립 | 빈도 | 421 | 90 | 397 | | | | | |
| | | 백분율 | 46.4% | 9.9% | 43.7% | | | | | |
| | 학교 급별 | 중학교 | 빈도 | 459 | 65 | | | 412 | 65.133 | .016 |
| | | | 백분율 | 49.0% | 6.9% | | | 44.0% | | |
| 인문고 | | 빈도 | 267 | 51 | 370 | | | | | |
| | | 백분율 | 38.8% | 7.4% | 53.8% | | | | | |
| 실업고 | | 빈도 | 49 | 12 | 81 | | | | | |
| | | 백분율 | 34.5% | 8.5% | 57.0% | | | | | |
| 특목고 | | 빈도 | 50 | 6 | 35 | | | | | |
| | | 백분율 | 54.9% | 6.6% | 38.5% | | | | | |
| 대안학교 | | 빈도 | 22 | 27 | 25 | | | | | |
| | | 백분율 | 29.7% | 36.5% | 33.8% | | | | | |
| Total | 빈도 | 847 | 161 | 923 | 1931 | 100 | | | | |
| | 백분율 | 43.9% | 8.3% | 47.8% | | | | | |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 규칙은 학생, 학부모에게 제대로 인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학교규칙 인지 정도의 차이가 커서 확신을 가지고 징계하는 교사와 왜 징계 받는지 모르는 학생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을 공개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보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학교생활규칙의 재·개정 절차

학교생활규칙이 재·개정 되는 절차는 대체로 학생회, 혹은 생활지도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준 재개정 절차는 학생회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오면 교무회의에서 교사들이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혹은 생활지도부가 학생의견 및 교사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결정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학부모의 의견 수렴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학생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19%가 의견 수렴 절차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그런 절차가 없다고 응답한 학부모와 교사는 각 6.9%와 3.1%에 지나지 않아 학교생활규칙 재·개정시 의견수렴에 대한 반응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른들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표 25> 학교생활규칙 재·개정 절차

| | 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학생회 학생의견 수렴, 학운위 심의 | 150 | 12.9 | 55 | 10.3 | 23 | 8.8 |
| 학생회 학생의견 수렴, 교무회의, 학운위 심의 | 211 | 18.2 | 86 | 16.1 | 45 | 17.2 |
| 학생회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학운위 심의 | 89 | 7.7 | 28 | 5.3 | 9 | 3.4 |
| 학생회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교무회의, 학운위 심의 | 75 | 6.5 | 45 | 8.4 | 20 | 7.6 |
| 생활지도부 학생, 교사의견 수렴, 학운위 심의 | 69 | 5.9 | 26 | 4.9 | 23 | 8.8 |
| 생활지도부 학생, 교사의견 수렴, 교무회의, 학운위 심의 | 89 | 7.7 | 58 | 10.9 | 47 | 17.9 |
| 생활지도부 학생, 학부모, 교사의견 수렴, 학운위 심의 | 45 | 3.9 | 20 | 3.8 | 23 | 8.8 |
| 생활지도부 학생, 학부모, 교사의견 수렴, 교무회의, 학운위 심의 | 46 | 4.0 | 43 | 8.1 | 46 | 17.6 |
| 의견수렴절차 없음 | 221 | 19.1 | 37 | 6.9 | 8 | 3.1 |
| 기타 | 107 | 9.2 | 60 | 11.3 | 3 | 1.1 |
| 합계 | 1102 | 95.0 | 458 | 85.9 | 247 | 94.3 |

Chi-Square: 249.442(p=.000)

이러한 반응차이는 학교규칙 재·개정시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난다. 교사들의 67.6%가 학급회, 학생회와 협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은 35.6%만 학급회, 학생회와 협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의견수렴 방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17.9%, 학부모가 29.6%에 달해 교육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의사소통 방법도 잘 모름을 보

여주었다.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 의견개진은 매우 저조하여 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 게시판이 실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견개진을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6> 학교생활규칙 재·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

| | 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학급회, 학생회와 협의 | 413 | 35.6 | 223 | 41.8 | 177 | 67.6 |
| 설문조사, 공청회 | 138 | 11.9 | 42 | 7.9 | 19 | 7.3 |
| 학생회 대표 | 201 | 17.3 | 44 | 8.3 | 37 | 14.1 |
| 게시판 의견 | 23 | 2.0 | 8 | 1.5 | 1 | .4 |
| 의견수렴 없음 | 142 | 12.2 | 29 | 5.4 | 10 | 3.8 |
| 잘 모름 | 208 | 17.9 | 158 | 29.6 | 10 | 3.8 |
| 기타 | 10 | .9 | 2 | .4 | 0 | 0 |
| 합계 | 1135 | 97.8 | 506 | 94.9 | 254 | 96.9 |

Chi-Square: 129.274(p=.000)

이러한 반응 차이는 다른 문항에서도 계속 드러난다. <표 27>과 같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과반수가 언제 학교생활규칙이 개정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41.2%가 2004년~2005년 사이에 학교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정확하게 지적했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하였다.

<표 27> 학교규칙 개정 시기 집단별 비교

| | 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2000년 이전 | 21 | 1.8 | 14 | 2.6 | 13 | 5.0 |
| 2001~2003년 | 50 | 4.3 | 22 | 4.1 | 31 | 11.8 |
| 2004~2005년 | 235 | 20.3 | 71 | 13.3 | 108 | 41.2 |
| 2006년 | 152 | 13.1 | 50 | 9.4 | 49 | 18.7 |
| 잘 모름 | 626 | 54.0 | 314 | 58.9 | 43 | 16.4 |
| 합계 | 1,084 | 93.4 | 471 | 88.4 | 244 | 93.1 |

Chi-Square: 149.740(p=.000)

반면 무엇이 개정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세 집단이 고루 비슷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학교 규칙들 중 가장 많은 것은 두발 관련 규정이며, 다음으로 많은 것은 징계와 관련한 규정이다. 그러나 두발 관련 규정은 그 기준이 조금 완화된 것에 불과하며 징계 관련 규정은 중학교 의무교육화로 인해 자퇴나 퇴학이 폐지된 것이 기인한 것이다. 그 외 MP3, 휴대폰 소지 허용에 대한 개정이 기타 의견 중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28> 개정된 규칙

| | 교복 및 복장 | 양말, 스타킹 | 두발 | 장신구 | 신발 | 가방 | 학생회 | 징계 절차 | 징계 기준 | 기타 |
|-----|------------|------------|-----|-----|-----|----|-----|----------|----------|----|
| 학생 | 226 | 182 | 500 | 54 | 115 | 83 | 109 | 150 | 180 | 72 |
| 학부모 | 93 | 70 | 170 | 20 | 53 | 45 | 56 | 46 | 53 | 33 |
| 교사 | 75 | 58 | 168 | 17 | 38 | 25 | 76 | 85 | 90 | 7 |

Chi-Square: 127.740(p=.000)

바뀐 교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생의 20.5%, 학부모의 29.7%가 이전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교사들은 무려 60.3%가 이전보다 합리적이라고 대답해서 상당한 반응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교사들은 2004년~2005년 사이에 집중적인 개정으로 학교 규칙과 관련한 문제는 사라졌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표 29> 교칙 개정 집단별 만족도

| | | 집단별 | |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이전보다 합리적 | 빈도 | 150 | 94 | 135 |
| | 백분율 | 20.5% | 29.7% | 60.3% |
| 약간 미흡 | 빈도 | 171 | 29 | 45 |
| | 백분율 | 23.4% | 9.1% | 20.1% |
| 이전과 비슷 | 빈도 | 143 | 63 | 24 |
| | 백분율 | 19.5% | 19.9% | 10.7% |
| 이전보다 나쁨 | 빈도 | 84 | 10 | 7 |
| | 백분율 | 11.5% | 3.2% | 3.1% |
| 잘 모름 | 빈도 | 184 | 121 | 13 |
| | 백분율 | 25.1% | 38.2% | 10.2% |
| 합계 | 빈도 | 732 | 317 | 224 |
| | 백분율 | 100.0% | 100.0% | 100.0% |

Chi-Square: 117.740(p=.000)

(3) 학교생활규칙의 시행 정도와 처벌

현재 학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집행되는 학교생활규칙들에 대한 준수 정도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모든 영역을 막론하고 대부분 학생들은 절대 다수가 해당 규칙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응답하였거나 아니면 그런 교칙이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엄격히 지켜지거나 비교적 잘 지켜진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규칙은 교복 변형, 무스·스프레이, 염색·파마, 매니큐어, 화장과 같이 용의복장 규정 중에 비교적 눈에 잘 띄는 것들이었다. 반면 교복상용, 머리 길이, 머리 모양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상당수가 있으나 마나 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성교제 관련, 집회 및 결사 관련, 자치회 관련 규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생들이 관심이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교사가 단속하기 불가능한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엉뚱한 현상은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또 학부모 보다는 교사가 규칙이 엄격히 지켜지거나 비교적 잘 지켜진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이미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교 규칙을 어른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학생들이 어른들을 기만함으로써 규칙에 저항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교사들은 두발 관련 규칙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규칙들에 대해 과반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거꾸로 학생들은 두발 관련 규칙이 비교적 엄격히 적용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두발 관련 규칙과 관련해서 학생과 교사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30> 학교규칙 준수 정도의 집단별 빈도 비교 (단위 %)

| 규칙 | 학생 | | | | 학부모 | | | | 교사 | | | |
|-----------|---------|---------|--------|------|---------|---------|--------|------|---------|---------|--------|------|
| | 엄격히 지켜짐 | 제대로 지켜짐 | 있으나 마나 | 모름 | 엄격히 지켜짐 | 제대로 지켜짐 | 있으나 마나 | 모름 | 엄격히 지켜짐 | 제대로 지켜짐 | 있으나 마나 | 모름 |
| 교복상용 | 14.1 | 28.9 | 43.6 | 13.4 | 27.2 | 50.1 | 12.9 | 9.7 | 23.2 | 61.8 | 11.8 | 3.3 |
| 교복 변형 금지 | 16.1 | 34.2 | 34.0 | 15.8 | 19.9 | 48.4 | 23.7 | 8.0 | 16.7 | 66.7 | 15.4 | 1.2 |
| 외투 제한 | 7.0 | 14.5 | 40.1 | 38.3 | 21.9 | 44.3 | 23.2 | 10.7 | 11.2 | 61.0 | 26.1 | 1.7 |
| 외래어 표기 금지 | 10.1 | 22.0 | 47.5 | 19.8 | 11.9 | 28.6 | 34.9 | 24.6 | 11.7 | 44.2 | 34.6 | 9.6 |
| 잠마 금지 | 14.5 | 27.9 | 39.4 | 18.3 | 12.5 | 31.6 | 39.2 | 16.7 | 7.4 | 45.0 | 42.4 | 5.2 |
| 속옷 제한 | 9.5 | 17.9 | 52.2 | 20.4 | 19.3 | 44.5 | 21.3 | 14.8 | 11.2 | 61.6 | 24.4 | 2.9 |
| 양말 제한 | 20.6 | 26.2 | 40.7 | 12.6 | 16.3 | 34.7 | 36.3 | 12.7 | 7.9 | 50.4 | 37.2 | 4.5 |
| 두발 길이 | 16.0 | 18.5 | 48.5 | 17.0 | 16.3 | 42.6 | 32.1 | 9.0 | 7.4 | 53.3 | 36.5 | 2.9 |
| 두발의 형태 | 27.8 | 34.2 | 26.3 | 11.7 | 15.0 | 31.9 | 39.6 | 13.4 | 8.7 | 34.9 | 50.2 | 6.1 |
| 무스 금지 | 40.8 | 34.0 | 19.3 | 5.8 | 28.7 | 41.7 | 20.6 | 9.0 | 17.3 | 60.5 | 19.4 | 2.8 |
| 염색, 파마금지 | 29.1 | 32.7 | 24.9 | 13.3 | 42.9 | 41.7 | 10.4 | 5.0 | 29.1 | 61.0 | 8.4 | 1.6 |
| 화장 금지 | 24.3 | 33.0 | 28.8 | 13.9 | 39.2 | 41.8 | 10.0 | 9.0 | 29.7 | 59.8 | 8.8 | 1.6 |
| 매니큐어 금지 | 24.8 | 34.0 | 31.4 | 9.9 | 37.9 | 40.1 | 12.6 | 9.4 | 27.4 | 55.6 | 14.5 | 2.4 |
| 장신구 금지 | 15.2 | 29.2 | 40.7 | 14.9 | 37.8 | 38.4 | 15.0 | 8.7 | 24.7 | 56.8 | 16.5 | 2.1 |
| 신발 제한 | 8.4 | 16.7 | 52.2 | 22.7 | 32.6 | 42.7 | 15.5 | 9.1 | 17.4 | 71.3 | 10.1 | 1.2 |
| 가방 제한 | 11.0 | 10.7 | 34.8 | 43.5 | 17.6 | 38.7 | 31.0 | 12.6 | 7.0 | 52.9 | 36.0 | 4.1 |
| 이성 손잡기 금지 | 13.3 | 12.0 | 28.8 | 45.9 | 20.2 | 31.5 | 19.3 | 29.1 | 17.2 | 30.1 | 40.7 | 12.0 |
| 이성 포옹 금지 | 17.9 | 18.6 | 17.2 | 46.3 | 30.2 | 29.8 | 12.6 | 27.4 | 23.0 | 44.7 | 19.4 | 12.9 |

| 규칙 | 학생 | | | | 학부모 | | | | 교사 | | | |
|---------------|---------|---------|--------|------|---------|---------|--------|------|---------|---------|--------|------|
| | 엄격히 지켜짐 | 제대로 지켜짐 | 있으나 마나 | 모름 | 엄격히 지켜짐 | 제대로 지켜짐 | 있으나 마나 | 모름 | 엄격히 지켜짐 | 제대로 지켜짐 | 있으나 마나 | 모름 |
| 불건전한 이성 교제 금지 | 17.9 | 27.5 | 14.5 | 40.1 | 33.8 | 34.0 | 8.6 | 23.5 | 31.4 | 55.9 | 6.8 | 5.9 |
| 동아리 제한 | 16.6 | 24.5 | 14.7 | 44.1 | 27.5 | 38.7 | 7.9 | 25.9 | 28.6 | 56.9 | 9.3 | 5.2 |
| 모금 제한 | 14.3 | 25.0 | 13.9 | 46.8 | 29.1 | 37.4 | 8.7 | 24.7 | 35.7 | 52.6 | 7.2 | 4.4 |
| 간행물 제한 | 14.3 | 23.6 | 11.9 | 50.2 | 29.7 | 38.0 | 7.7 | 24.6 | 34.5 | 51.8 | 7.2 | 6.4 |
| 정치활동 금지 | 11.5 | 19.9 | 19.5 | 49.1 | 35.2 | 32.4 | 8.3 | 24.1 | 42.3 | 48.8 | 4.0 | 4.8 |
| 집회 제한 | 16.8 | 26.4 | 20.6 | 36.1 | 25.4 | 36.8 | 12.0 | 25.8 | 27.9 | 55.9 | 9.7 | 6.5 |
| 입후보 성적 제한 | 14.4 | 25.1 | 15.1 | 45.4 | 13.1 | 36.1 | 19.5 | 31.4 | 11.9 | 44.9 | 33.5 | 9.7 |
| 입후보 별점 제한 | 14.2 | 25.3 | 25.0 | 35.5 | 14.5 | 36.6 | 12.8 | 36.0 | 12.0 | 56.8 | 19.9 | 11.2 |

다음 <표 31>은 학교생활규칙이 청소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다. 이 수치가 4에 가까울수록 해당 규칙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며 1에 가까울수록 인권침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복장관련 규칙들, 두발관련 규칙들, 그리고 학생회 입후보자 성적제한 규정 등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거의 모든 규칙에 걸쳐 일관되게 교사들은 해당 규칙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세 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학부모는 그 중간에 위치했다. 분산분석(ANOVA)결과 세 집단 간의 학교생활규칙 인권침해 인식 정도의 차이는 전체 평균 및 각 규칙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차이는 주로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은 학교생활규칙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여기는 정도가 높은 반면, 교사들은 그렇게 여기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재를 가하는 측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측은 인권침해라고 여기는 것이다.

<표 31> 학교규칙 인권침해 인식의 집단별 비교

| 내 용 | 순 규칙 | 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F값 | p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 복 장 | 1 교복상용 | 2.24 | .876 | 1.94 | .791 | 1.70 | .771 | 50.447 | .000 |
| | 2 교복 변형 금지 | 2.43 | .859 | 1.98 | .761 | 1.74 | .701 | 95.624 | .000 |
| | 3 외투 제한 | 2.62 | .883 | 2.20 | .833 | 1.95 | .760 | 77.897 | .000 |
| | 4 외래어 표기 금지 | 2.69 | .968 | 2.29 | .875 | 1.99 | .753 | 70.847 | .000 |
| | 5 잠바 금지 | 2.78 | .924 | 2.42 | .857 | 2.07 | .786 | 69.187 | .000 |
| | 6 속옷 제한 | 2.55 | .917 | 2.21 | .828 | 1.94 | .739 | 58.381 | .000 |
| | 7 양말 제한 | 2.69 | .970 | 2.29 | .854 | 2.07 | .788 | 60.441 | .000 |

| 내 용 | 순 규칙 | 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F값 | p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 두 발 | 8 두발 길이 | 3.14 | .945 | 2.38 | .929 | 2.13 | .815 | 180.167 | .000 |
| | 9 두발의 형태 | 3.17 | .977 | 2.47 | .965 | 2.26 | .886 | 135.903 | .000 |
| | 10 무스 금지 | 2.38 | .961 | 2.08 | .890 | 1.95 | .732 | 31.560 | .000 |
| | 11 염색, 파마 금지 | 2.32 | .974 | 1.88 | .871 | 1.82 | .713 | 52.477 | .000 |
| 용 모 | 12 화장 금지 | 2.12 | .929 | 1.78 | .832 | 1.76 | .700 | 32.384 | .000 |
| | 13 매니큐어 금지 | 2.27 | .906 | 1.83 | .827 | 1.80 | .686 | 57.757 | .000 |
| | 14 장신구 금지 | 2.46 | .945 | 1.90 | .830 | 1.86 | .671 | 89.158 | .000 |
| | 15 신발 제한 | 2.62 | .947 | 2.01 | .863 | 2.01 | .666 | 107.981 | .000 |
| 이 성 | 16 가방 제한 | 2.79 | .950 | 2.20 | .874 | 2.20 | .705 | 107.078 | .000 |
| | 17 이성 손잡기 금지 | 2.74 | .980 | 2.17 | .973 | 2.12 | .951 | 189.831 | .000 |
| | 18 이성 포옹 금지 | 2.54 | .973 | 1.91 | .900 | 1.79 | .843 | 103.651 | .000 |
| 집 회 와 결 사 | 19 불건전 교제 금지 | 2.12 | .951 | 1.79 | .753 | 1.73 | .706 | 31.548 | .000 |
| | 20 동아리 제한 | 2.47 | .932 | 2.09 | .882 | 1.94 | .741 | 50.948 | .000 |
| | 21 모금 제한 | 2.31 | .920 | 1.97 | .856 | 1.83 | .724 | 43.576 | .000 |
| | 22 간행물 제한 | 2.29 | .900 | 2.00 | .884 | 1.87 | .729 | 32.629 | .000 |
| 자 치 | 23 정치활동 금지 | 2.36 | .930 | 1.92 | .889 | 1.79 | .725 | 62.442 | .000 |
| | 24 집회 제한 | 2.57 | .978 | 2.19 | .925 | 1.98 | .761 | 51.631 | .000 |
| 자 치 | 25 입후보 성적제한 | 2.86 | .993 | 2.55 | .920 | 2.22 | .831 | 48.752 | .000 |
| | 26 입후보 벌점제한 | 2.53 | .973 | 2.28 | .878 | 2.00 | .781 | 35.575 | .000 |
| 합계 | | 2.5276 | .6166 | 2.1134 | .5962 | 1.9304 | .5992 | 142 | .000 |

그런데 교사는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접해야 하는 성인이다. 그 시간은 오히려 부모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교사들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에서 반응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교사들의 교칙 인권침해 인식 정도를 교사 내부 집단별로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32>와 같다. 먼저 경력별로 살펴보면 경력이 20년~30년 사이의 교사들이 학교생활규칙의 인권침해인식이 낮았으며 경력 10~20년의 교사들이 가장 높았다. 교원 단체별로 보면 한국교총 소속 교사들이 가장 낮았으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가장 높다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경우도 겨우 학부모들의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즉 교사들 중 가장 진보적인 교사들이 겨우 일반인 수준인 것이다.

<표 32> 학교규칙 인권침해 인식의 교사 집단별 비교

| 교사집단 | 평균 | 사례 수 | 표준편차 | F | p | |
|-----------|--------|--------|------|--------|-------|------|
| 경력별 | 10년 이하 | 2.0291 | 51 | .59735 | 3.545 | .015 |
| | 10-20년 | 2.0614 | 74 | .64184 | | |
| | 20-30년 | 1.7859 | 84 | .60817 | | |
| | 30년 이상 | 1.8603 | 37 | .39690 | | |
| 교원 단체별 | 한국교총 | 1.8416 | 106 | .60080 | 4.553 | .012 |
| | 전교조 | 2.1667 | 41 | .67559 | | |
| | 기타/무소속 | 1.9187 | 81 | .51622 | | |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렇게 인권 침해라고 생각되는 학교생활규칙에 의해 실제 얼마나 처벌을 받는가? <표 33>은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학기 초부터 학생들의 30.2% 정도가 한 번 이상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다. 학부모는 불과 17.2%만이 자녀가 처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처벌을 굳이 집에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사들 중 59.7%가 처벌을 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실이다. 이는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하나는 교사들은 처벌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우다. 이는 일선 학교에서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상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여러 교사의 처벌이 일부 학생에게 집중되는 경우다. 이 중 후자가 보다 현실적인 해석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추후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표 33> 학교생활규칙에 의한 처벌 경험

| 처벌경험 | 집단별 | | | 합계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 아니다 | 빈도 | 665 | 373 | 91 | 1129 |
| | 백분율 | 57.9% | 71.3% | 35.3% | 58.5% |
| 그렇다 | 빈도 | 347 | 90 | 154 | 591 |
| | 백분율 | 30.2% | 17.2% | 59.7% | 30.6% |
| 잘 모르겠다 | 빈도 | 136 | 60 | 13 | 209 |
| | 백분율 | 11.8% | 11.5% | 5.0% | 10.8% |

Chi-Square: 149.740(p=.000)

그렇다면 학교 규칙을 어긴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표 34>에 따르면 학생들은 가장 직접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체벌류의 처벌은 그리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또 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하는 처벌은 훈계, 혹은 잔소리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훈계 또는 잔소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에 비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훨씬 적어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교사의 처벌을 처벌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의 학생들이 몽둥이나 회초리, 혹은 손발로 때리는 체벌을 받았다. 이는 전체의 40% 가량이 체벌을 경험했던 2000년의 상황(전교조, 한길리서치)과 비교하면 확실히 크게 개선된 것이다. 또 2000

년대 들어 도입된 별점제도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처벌의 유형

| 처벌 종류 | | 집단별 | | | 합계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처벌받지 않음 | 빈도 | 123 | 20 | 3 | 146 |
| | 백분율 | 11.0% | 4.0% | 1.4% | 8.0% |
| 훈계 또는 잔소리 | 빈도 | 331 | 103 | 138 | 572 |
| | 백분율 | 29.6% | 20.8% | 64.5% | 31.3% |
| 교내봉사 | 빈도 | 327 | 229 | 43 | 599 |
| | 백분율 | 29.2% | 46.2% | 20.1% | 32.8% |
| 사회봉사 | 빈도 | 77 | 60 | 4 | 141 |
| | 백분율 | 6.9% | 12.1% | 1.9% | 7.7% |
| 특별교육 | 빈도 | 30 | 18 | 1 | 49 |
| | 백분율 | 2.7% | 3.6% | .5% | 2.7% |
| 기합 | 빈도 | 27 | 6 | 4 | 37 |
| | 백분율 | 2.4% | 1.2% | 1.9% | 2.0% |
| 몽둥이나 회초리 | 빈도 | 47 | 18 | 4 | 69 |
| | 백분율 | 4.2% | 3.6% | 1.9% | 3.8% |
| 손발로 맞음 | 빈도 | 21 | 4 | 4 | 29 |
| | 백분율 | 1.9% | .8% | 1.9% | 1.6% |
| 별점 | 빈도 | 116 | 30 | 8 | 154 |
| | 백분율 | 10.4% | 6.0% | 3.7% | 8.4% |
| 기타 | 빈도 | 19 | 8 | 5 | 32 |
| | 백분율 | 1.7% | 1.6% | 2.3% | 1.8% |

Chi-Square: 220.467(p=.000)

체벌이라든지 기타 인권침해적인 처벌의 빈도가 그리 많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칙과 관련하여 아무런 인권 침해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다. 아무리 처벌이 가볍고 사소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와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기회 없이 가해진다면 그 역시 분명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처벌이라도 청소년들이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5>과 같다. 앞서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부분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심각한 인식차이가 드러났다. 교사의 86.7%는 처벌을 하기 전에 충분히 통보 했다고 응답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이와 거의 대칭되는 반응을 보여 각 83.7%, 90.0%가 충분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즉 이들은 왜 처벌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벌 받은 것이다. 이는 소명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교사는 충분히 소명기회를 주었다고 응답한 반면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다만 상담 등의 전문적인 지원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세 집단의 반응이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가 보다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연거푸 나타나는 교육주체간의 반응의 차이는 한결같이 교사는 현 상황이 별 문제 없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문제가 많다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5> 징계 절차

| | | | 집단별 | | | 합계 | Chi-Square | p |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
| 징계 통보 | 아니다 | 빈도 | 427 | 135 | 32 | 594 | 406.571 | .000 |
| | | 백분율 | 83.7% | 90.0% | 13.3% | 66.0% | | |
| | 그렇다 | 빈도 | 83 | 15 | 208 | 306 | | |
| | | 백분율 | 16.3% | 10.0% | 86.7% | 34.0% | | |
| 소명 절차 | 아니다 | 빈도 | 444 | 131 | 27 | 602 | 484.569 | .000 |
| | | 백분율 | 87.7% | 91.6% | 11.1% | 67.5% | | |
| | 그렇다 | 빈도 | 62 | 12 | 216 | 290 | | |
| | | 백분율 | 12.3% | 8.4% | 88.9% | 32.5% | | |
| 전문 지원 | 아니다 | 빈도 | 484 | 140 | 145 | 769 | 188.871 | .000 |
| | | 백분율 | 95.3% | 99.3% | 60.9% | 86.7% | | |
| | 그렇다 | 빈도 | 24 | 1 | 93 | 118 | | |
| | | 백분율 | 4.7% | .7% | 39.1% | 13.3% | | |

3)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지금까지는 학교생활규칙과 관련한 인권 침해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학교생활 규칙외의 다른 영역에서 학생들은 어떤 인권적 처우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기본권적 인권 상황

<표 36>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기본권적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한 결과다. 교사의 경우는 침해 한 경험을 물어 보았다. 이 수치가 4에 가까울수록 인권을 침해 받는 경험이 많은 것이며 1에 가까울수록 경험이 적은 것이다. 학부모의 경우는 4에 가까울수록 자녀의 인권침해 경험이 많은 것이며, 교사의 경우는 4에 가까울수록 인권을 침해한 경험이 많은 것이다.

각 항목들에 대한 침해 정도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해 보았더니 학생이 가장 높아서 1.45, 학부모가 가장 낮아서 1.12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중간 값인 2에 미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평균적으로 보아 그 발생 빈도가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화제가 되는 국기배례 문제 역시 청소년들은 거의 경험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인권 침해라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선 학교에서 국기배례를 거부하는 학생의 사례도 거의 없거니와, 또 이를 억지로 강요하는 교사도 거의 없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식없이 자연스럽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정종교 강요 행위 역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상을 기독교계 학교로 좁혔을 경우는 수치가 2.0을 넘어서 비교적 빈번하게 특정종교 강요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종교계 학교에서는 일반 학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6> 학교에서의 각종 인권 침해 경험정도

| 침해 항목 | 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F | Sig. |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 |
| 평 등 권 리 차 별 대 우 권 리 | 가정배경차별 | 1.22 | .562 | 1.15 | .473 | 1.22 | .594 | 3.250 | .039 | |
| | 성별차별 | 1.56 | .925 | 1.22 | .545 | 1.35 | .694 | 32.505 | .000 | |
| | 성적차별 | 2.03 | 1.045 | 1.51 | .825 | 1.23 | .522 | 105.805 | .000 | |
| | 임원차별 | 1.62 | .886 | 1.34 | .675 | 1.23 | .540 | 38.546 | .000 | |
| | 외모차별 | 1.39 | .795 | 1.15 | .478 | 1.14 | .456 | 27.426 | .000 | |
| 표 현 | 두발간섭 | 1.87 | 1.080 | 1.47 | .802 | 1.63 | .978 | 30.200 | .000 | |
| | 복장간섭 | 1.68 | .969 | 1.28 | .594 | 1.63 | .955 | 37.778 | .000 | |
| | 매체침해 | 1.31 | .714 | 1.12 | .410 | 1.17 | .540 | 18.006 | .000 | |
| | 의견묵살 | 1.48 | .827 | 1.21 | .527 | 1.18 | .495 | 34.630 | .000 | |
| 자 유 권 | 학칙개정시 참여제한 | 1.24 | .653 | 1.09 | .391 | 1.14 | .450 | 12.029 | .000 | |
| | 국가관 강요 | 1.25 | .649 | 1.08 | .378 | 1.11 | .441 | 18.693 | .000 | |
| | 국기경례강요 | 1.18 | .523 | 1.06 | .320 | 1.24 | .589 | 14.108 | .000 | |
| | 종교강요 | 1.17 | .598 | 1.09 | .418 | 1.09 | .439 | 5.248 | .005 | |
| | 종교강요(기독교) | 2.17 | .454 | 2.15 | .599 | 1.87 | .566 | 14.555 | .000 | |
| | 자치제한 | 1.28 | .660 | 1.12 | .457 | 1.09 | .424 | 19.977 | .000 | |
| | 결사제한 | 1.34 | .723 | 1.13 | .442 | 1.16 | .485 | 22.697 | .000 | |
| | 집회참여제한 | 1.20 | .588 | 1.11 | .424 | 1.15 | .452 | 5.584 | .004 | |
| | 일기장검사 | 1.20 | .676 | 1.08 | .384 | 1.18 | .579 | 7.235 | .001 | |
| | 소지품검사 | 1.63 | .845 | 1.36 | .656 | 1.72 | .834 | 24.977 | .000 | |
| 사 생 활 통 신 | 사적정보공개 | 1.31 | .670 | 1.11 | .404 | 1.16 | .493 | 22.126 | .000 | |
| | 통신자유침해 | 1.29 | .737 | 1.13 | .459 | 1.14 | .527 | 12.658 | .000 | |
| | 학 생 대 우 권 리 | 교사의 폭력 | 2.00 | 1.136 | 1.53 | .888 | 1.90 | .977 | 36.123 | .000 |
| | | 교사의 폭언 | 1.82 | 1.032 | 1.37 | .751 | 1.76 | .857 | 40.398 | .000 |
| 친구의 폭력 | | 1.25 | .683 | 1.12 | .426 | | | | | |
| 친구의 폭언 | | 1.44 | .870 | 1.22 | .609 | | | | | |
| 전체 | 1.45 | .834 | 1.12 | .532 | 1.28 | .665 | 59.279 | .000 | | |

평등권과 관련한 침해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중간 값인 2 이하를 나타내어 차별대우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학생과 교사의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반복되는 현상으로 교사가 스스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여기는 정도에 비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여기는 정도가 월등히 더 높게 나왔다. 게다가 학부모의 수치가 가장 낮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높은 수치로 중간 값을 넘긴 것은 교사에 의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교사들 스스로도 침해했다고 여기는 정도가 학생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학부모들은 현저하게 낮은 값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학부모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한국 학교가 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인 양 묘사하는 것은 과장임을 보여준다. 한국 학교의 청소년 인권 침해 정도는 중간 이하로 나타나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음 <표 37>은 앞서 살펴본 평등권, 자유권, 보호권 등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진정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나타나는지 조사해 본 결과다. 먼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었던 여학생의 치마교복 강요 사례를 살펴보면 치마만 허용한다는 응답이 30%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 치마와 교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교사의 경우는 치마와 교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69.3%인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57.4%, 57.7%에 불과하다. 그 대신 학생과 학부모는 모른다는 응답이 각 10.5%, 10.3%에 달하고 있어서 치마교복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정작 학생, 학부모에게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CCTV의 경우 80%정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CTV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반응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CCTV가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교사들 역시 여기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37> 교복 및 CCTV관련 의견

| | | 집단별 | | | 합계 | Chi-square | p |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 |
| 치마교복 | 치마만 허용 | 빈도 | 206 | 95 | 50 | 351 | 32.56 | .036 |
| | | 백분율 | 27.6% | 30.6% | 26.5% | 28.2% | | |
| | 치마, 바지 선택 | 빈도 | 428 | 179 | 131 | 738 | | |
| | | 백분율 | 57.4% | 57.7% | 69.3% | 59.3% | | |
| | 바지만 허용 | 빈도 | 9 | 0 | 1 | 10 | | |
| | | 백분율 | 1.2% | .0% | .5% | .8% | | |
| | 잘 모름 | 빈도 | 78 | 32 | 0 | 110 | | |
| | | 백분율 | 10.5% | 10.3% | .0% | 8.8% | | |
| | 기타 | 빈도 | 25 | 4 | 7 | 36 | | |
| | | 백분율 | 3.4% | 1.3% | 3.7% | 2.9% | | |
| CC TV 설치 | 있다 | 빈도 | 213 | 68 | 50 | 331 | 34.087 | .012 |
| | | 백분율 | 18.8% | 13.2% | 19.2% | 17.3% | | |
| | 없다 | 빈도 | 584 | 240 | 203 | 1027 | | |
| | | 백분율 | 51.5% | 46.4% | 78.1% | 53.8% | | |
| 잘 모름 | 빈도 | 336 | 209 | 7 | 552 | | | |
| | 백분율 | 29.7% | 40.4% | 2.7% | 28.9% | | | |
| CC TV 필요성 | 필요하다 | 빈도 | 300 | 195 | 107 | 602 | 76.788 | .000 |
| | | 백분율 | 27.6% | 40.0% | 44.6% | 33.2% | | |
| | 상관없다 | 빈도 | 350 | 111 | 31 | 492 | | |
| | | 백분율 | 32.3% | 22.8% | 12.9% | 27.2% | | |
| | 감시도구는 필요 없다 | 빈도 | 413 | 165 | 96 | 674 | | |
| | | 백분율 | 38.1% | 33.9% | 40.0% | 37.2% | | |
| 기타 | 빈도 | 22 | 16 | 6 | 44 | | | |
| 백분율 | 2.0% | 3.3% | 2.5% | 2.4% | | | | |

(2) 급식, 시설 관련 인권 상황

다음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급식과 관련한 사항들이다. 먼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식사 시간제한의 문제를 살펴보자. 학생의 48%, 교사의 47.6%가 점심시간 내내 식사시간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만 36.1%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모른다는 응답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급, 학년별로 제한한다는 응답도 이와 비슷하여,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급식 장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장소가 교실인 경우는 급식시간 제한이 15%에 불과하였지만 급식 장소가 식당인 경우는 54.3%가 시간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분한 식사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당공간의 확보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표 38> 급식 시간

| | | 집단별 | | | 급식장소 | | | 합계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교실 | 식당 | 모름 | |
| 점심시간 | 빈도 | 540 | 185 | 120 | 284 | 548 | 6 | 845 |
| 내내 식사 | 백분율 | 48.0% | 36.1% | 47.6% | 74.5% | 37.2% | 27.3% | 44.7% |
| 학년 학급별 시간 제한 | 빈도 | 488 | 254 | 125 | 57 | 801 | 6 | 867 |
| | 백분율 | 43.3% | 49.5% | 49.6% | 15.0% | 54.3% | 27.3% | 45.8% |
| 모름 | 빈도 | 77 | 59 | 1 | 30 | 95 | 10 | 137 |
| | 백분율 | 6.8% | 11.5% | .4% | 7.9% | 6.4% | 45.5% | 7.2% |
| 기타 | 빈도 | 21 | 15 | 6 | 10 | 30 | 0 | 42 |
| | 백분율 | 1.9% | 2.9% | 2.4% | 2.6% | 2.0% | .0% | 2.2% |

그렇다면 실제 학생들은 어디에서 식사하는가? <표 39>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70% 이상이 학교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당에서 식사하는 학생들의 50% 이상이 시간제한 속에서 쫓기듯이 식사하고 있음을 앞에서 이미 확인하였기 때문에 전교생이 불편 없이 식사 할 수 있는 충분한 식당시설의 확충, 그리고 식당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의 강화 등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39> 급식장소

| | | 집단별 | | | 합계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교실 | 빈도 | 230 | 109 | 54 | 393 |
| | 백분율 | 20.2% | 20.9% | 20.9% | 20.5% |
| 식당 | 빈도 | 894 | 399 | 203 | 1496 |
| | 백분율 | 78.6% | 76.6% | 78.7% | 78.0% |
| 모름 | 빈도 | 10 | 12 | 0 | 22 |
| | 백분율 | .9% | 2.3% | .0% | 1.1% |
| 기타 | 빈도 | 4 | 1 | 1 | 6 |
| | 백분율 | .4% | .2% | .4% | .3% |

Chi-Square: 45.238(p=.000)

다음 <표 40>은 최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급식비 미납자 확인용 바코드 실태 조사 결과다. 우선 전체적으로 59.4%의 응답자가 바코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바코드 검사 결과 급식불가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가 12.9%,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지만 바코드 검사는 실시하는 경우가 6.1%였다. 그리고 이는 학교가 직영하는 급식의 경우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 급식에서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40> 급식비 납입 확인 바코드

| | | 급식방식 | | | | 합계 |
|-------------|-----|-------|-------|-------|-------|-------|
| | | 직영 | 위탁 | 모름 | 기타 | |
| 없다 | 빈도 | 680 | 317 | 112 | 7 | 1116 |
| | 백분율 | 63.4% | 57.2% | 46.1% | 70.0% | 59.4% |
| '불가' 메시지 표시 | 빈도 | 134 | 83 | 24 | 2 | 243 |
| | 백분율 | 12.5% | 15.0% | 9.9% | 20.0% | 12.9% |
| 메시지 표시 없음 | 빈도 | 61 | 45 | 8 | 0 | 114 |
| | 백분율 | 5.7% | 8.1% | 3.3% | .0% | 6.1% |
| 잘 모름 | 빈도 | 163 | 86 | 93 | 0 | 342 |
| | 백분율 | 15.2% | 15.5% | 38.3% | .0% | 18.2% |
| 기타 | 빈도 | 34 | 23 | 6 | 1 | 64 |
| | 백분율 | 3.2% | 4.2% | 2.5% | 10.0% | 3.4% |

Chi-Square: 85.138(p=.000)

이러한 바코드 검사에 대해서 응답자의 59.4%가 인권 침해라고 응답했고, 14.8%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가 인권침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교사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학부모의 인권의식이 높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교사들은 학생들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고, 따라서 소수의 미납자들 때문에 다수의 성실한 납부자의 식사권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엄격한 집행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온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미납하고서도 식사를 감행하는 도덕적 해이는 지적하되, 이것이 학부모에게 가해져야지 학생들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41> 바코드 검사의 인권침해 견해

| | | 집단별 | | | 합계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침해다 | 빈도 | 643 | 347 | 124 | 1114 |
| | 백분율 | 57.9% | 67.2% | 49.4% | 59.4% |
| 모른다 | 빈도 | 325 | 91 | 35 | 451 |
| | 백분율 | 29.3% | 17.6% | 13.9% | 24.0% |
| 아니다 | 빈도 | 128 | 69 | 80 | 277 |
| | 백분율 | 11.5% | 13.4% | 31.9% | 14.8% |
| 기타 | 빈도 | 14 | 9 | 12 | 35 |
| | 백분율 | 1.3% | .7% | 4.8% | 1.9% |

Chi-Square: 32.110(p=.000)

앞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의 경우, 바코드 설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급식에서 위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표 42>에 따르면 학생의 52.8%, 학부모의 60.1%, 그리고 교사의 70.0%가 급식이 직영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위탁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고, 학생과 학부모는 모름의 비율이 교사보다 월등히 높았다. 따라서 대체로 28~29% 정도의 학생들이 위탁급식업체가 제공하는 식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2> 급식 운영 형태

| | | 집단별 | | | 합계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직영 | 빈도 | 597 | 309 | 180 | 1086 |
| | 백분율 | 52.8% | 60.1% | 70.0% | 57.1% |
| 위탁 | 빈도 | 337 | 147 | 74 | 558 |
| | 백분율 | 29.8% | 28.6% | 28.8% | 29.3% |
| 모름 | 빈도 | 188 | 57 | 2 | 247 |
| | 백분율 | 16.6% | 11.1% | .8% | 13.0% |
| 기타 | 빈도 | 9 | 1 | 1 | 11 |
| | 백분율 | .8% | .2% | .4% | .6% |

주로 저소득층 자녀인 급식비 지원 대상자들을 급식 도우미로 활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었다. 그 실태는 <표 43>과 같다. 전체적으로 23%가 급식비 지원 대상자들을 급식 도우미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지만, 학생, 학부모에 비해 교사들의 응답 비율이 훨씬 낮다. 실제 교육적 이유 때문에 급식비 지원 대상자들은 본인과 교사 외에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교사의 응답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경우는 봉사활동 시간을 받고 참가하는 급식 도우미와 급식비 지원을 대가로 참가하는 급식 도우미를 구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실제로 급식비 지원을 대가로 급식 도우미로 일하는 경우는 12.6% 정도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여부는 해당 학생들이 도우미를 하면서 급식지원 대상자라는 것이 공개되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해당 학교에 급식 도우미가 지원 대상자 외에는 아예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지원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급식 도우미를 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급식지원이 아니라 급식 도우미의 대가로 직영식당, 혹은 위탁업체에서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라면 또 봉사활동 시간을 위한 자원봉사자와 함께 편성되었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표 43> 급식비 지원 대상자의 급식 도우미 활용

| 배식 도우미 활용 | | 집단별 | | | 합계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있다 | 빈도 | 293 | 110 | 32 | 435 |
| | 백분율 | 26.1% | 21.4% | 12.6% | 23.0% |
| 없다 | 빈도 | 237 | 172 | 191 | 600 |
| | 백분율 | 21.1% | 33.5% | 75.5% | 31.8% |
| 모름 | 빈도 | 591 | 232 | 30 | 853 |
| | 백분율 | 52.7% | 45.1% | 11.9% | 45.2% |

Chi-Square: 45.311(p=.000)

다음 <표 44>는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평균이 4에 가까울수록 만족하는 것이며 1에 가까울수록 불만스러운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사의 만족도가 3이 넘어서 상당히 높으며 학생이 2.46으로 가장 낮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급식에 대하여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세부 항목별로 보면 학생들은 열량이 충분한가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을 표시했으며 교사는 식사의 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메뉴결정과정에서의 참여 기회 미흡이었다.

<표 44> 집단별 급식 만족도

| | 전체 | | 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F | p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 급식만족도 | 2.60 | .565 | 2.46 | .540 | 2.69 | .502 | 3.03 | .522 | 134.041 | .000 |
| 시간여유 | 2.67 | .830 | 2.56 | .862 | 2.76 | 2.49 | 2.97 | .732 | 31.814 | .000 |
| 공간여유 | 2.60 | .807 | 2.47 | .824 | 2.70 | .741 | 2.99 | .699 | 51.093 | .000 |
| 식사량 | 2.74 | 2.81 | 2.58 | .836 | 2.87 | .739 | 3.22 | .635 | 78.032 | .000 |
| 열량고려 | 2.81 | .739 | 2.68 | .753 | 2.89 | .650 | 3.20 | .682 | 57.689 | .000 |
| 패스트푸드 | 2.69 | .761 | 2.62 | .774 | 2.75 | .725 | 2.90 | .731 | 15.302 | .000 |
| 좋은 재료 | 2.77 | .748 | 2.62 | .753 | 2.87 | .679 | 3.20 | .650 | 74.575 | .000 |
| 식사질 | 2.75 | .907 | 2.54 | .924 | 2.89 | .755 | 3.41 | .720 | 115.738 | .000 |
| 메뉴결정 | 2.20 | .852 | 2.06 | .850 | 2.23 | .760 | 2.78 | .773 | 82.782 | .000 |
| 업자선정 | 2.20 | .855 | 2.06 | .842 | 2.26 | .776 | 2.73 | .837 | 69.473 | .000 |
| 급식지속 | 2.55 | .876 | 2.41 | .906 | 2.64 | .761 | 2.99 | .773 | 49.953 | .000 |

다음 <표 45>는 급식 운영방식별로 급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표를 살펴보면 위탁업체보다 직영 급식에 대한 급식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직영일 경우 충분한 열량, 식사의 질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위탁 급식 역시 같은 항목에서 그나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직영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다만 메뉴 결정 항목에서는 직영이나 위탁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학교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결국 의사소통의 부재, 의사소통의 차단 등에서 비롯된다는 앞서서의 현상이 급식 문제에 까지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좋은 대우보다는 차라리 열악할지라도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인권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그 핵심이 ‘보호’가 아니라 ‘보장’이라야 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표 45> 급식 운영 방식 별 만족도

| | 직영 | | 위탁 | | F | Sig.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 급식만족도 | 2.70 | .545 | 2.46 | .560 | 29.105 | .000 |
| 시간여유 | 2.72 | .809 | 2.61 | .854 | 2.797 | .039 |
| 공간여유 | 2.68 | .782 | 2.50 | .850 | 7.142 | .000 |
| 식사량 | 2.85 | .762 | 2.62 | .879 | 5.990 | .001 |
| 열량고려 | 2.91 | .696 | 2.66 | .774 | 16.330 | .000 |
| 패스트푸드 | 2.78 | .736 | 2.56 | .778 | 19.709 | .000 |
| 좋은 재료 | 2.90 | .700 | 2.60 | .785 | 11.524 | .000 |
| 식사질 | 2.96 | .834 | 2.46 | .920 | 27.821 | .000 |
| 메뉴결정 | 2.26 | .868 | 2.14 | .836 | 50.054 | .000 |
| 업자선정 | 2.26 | .867 | 2.12 | .846 | 5.077 | .002 |
| 급식지속 | 2.68 | .851 | 2.34 | .905 | 5.154 | .002 |

다음은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학교 시설이 그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다. <표 46>을 보면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에 대다수가 집중되어 가운데를 선호하는 한국적 응답 양상을 보인다. 그래도 특기할 점을 찾아본다면 이 중 학생들의 불만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부모들은 학교의 내부를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교사의 경우는 학교 시설이 학생의 생활공간과 교사의 생활공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표 46> 학교 시설 건강권 집단별 만족도

| | | 집단별 | | | 합계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매우 만족 | 빈도 | 66 | 31 | 28 | 125 |
| | 백분율 | 5.9% | 6.0% | 10.9% | 6.6% |
| 만족 | 빈도 | 285 | 178 | 99 | 562 |
| | 백분율 | 25.5% | 34.6% | 38.7% | 29.8% |
| 보통 | 빈도 | 504 | 227 | 90 | 821 |
| | 백분율 | 45.1% | 44.2% | 35.2% | 43.5% |
| 불만 | 빈도 | 175 | 57 | 34 | 266 |
| | 백분율 | 15.7% | 11.1% | 13.3% | 14.1% |
| 매우 불만 | 빈도 | 88 | 21 | 5 | 114 |
| | 백분율 | 7.9% | 4.1% | 2.0% | 6.0% |
| | 빈도 | 1118 | 514 | 256 | 1888 |
| | 백분율 | 100.0% | 100.0% | 100.0% | 100.0% |

Chi-Square: 52.788(p=.000)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가장 큰 불만의 요인이 되었을까? <표 47>을 살펴보면 가장 큰 불만의 요인이 되는 것은 시설이 낡고 위험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냉난방과 식수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교사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위험하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면 무심히 넘어갈 부분도 매우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의 경우는 식수에 대한 불만이 다른 집단들 보다 높았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정수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결하고, 또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에 대한 집단별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 각 집단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각 집단별 학교 시설 건강권 문제 인식

| | | 집단별 | | | 합계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좁은 건물 간격 | 빈도 | 50 | 23 | 9 | 82 |
| | 백분율 | 10.1% | 12.3% | 9.8% | 10.6% |
| 낡고 위험한 시설 | 빈도 | 109 | 45 | 29 | 183 |
| | 백분율 | 22.1% | 24.1% | 31.5% | 23.7% |
| 환풍 불가 | 빈도 | 69 | 19 | 8 | 96 |
| | 백분율 | 14.0% | 10.2% | 8.7% | 12.4% |
| 냉난방 미비 | 빈도 | 92 | 33 | 16 | 141 |
| | 백분율 | 18.6% | 17.6% | 17.4% | 18.2% |
| 식수 불비 | 빈도 | 85 | 32 | 6 | 123 |
| | 백분율 | 17.2% | 17.1% | 6.5% | 15.9% |
| 기타 | 빈도 | 89 | 35 | 24 | 148 |
| | 백분율 | 18.0% | 18.7% | 26.1% | 19.1% |
| | 빈도 | 494 | 187 | 92 | 773 |
| | 백분율 | 100.0% | 100.0% | 100.0% | 100.0% |

Chi-Square: 123.88(p=.000)

그런데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특기할만한 결과는 지역별로, 또 학교 종류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이었다. <표 48>을 보면 대도시 지역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높고, 다음은 중소도시가 높으며, 농어촌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소 이채롭다. 흔히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환경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과밀화된 도시학교 학생들에 비해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교 시설을 여유 있게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대도시 학생들은 학교보다 더 시설이 좋은 곳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주거 시설이나 각종 기반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경우는 접할 수 있는 공간 중 오히려 학교가 가장 시설이 좋은 곳일 수도 있다.

<표 48> 학교 시설 건강권 지역별 만족도

| | | 학교지역 | | | 합계 | |
|------|-----|-------|--------|--------|--------|--------|
| |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 매우만족 | 빈도 | 31 | 19 | 16 | 66 | |
| | 백분율 | 6.1% | 4.5% | 8.4% | 5.9% | |
| 만족 | 빈도 | 105 | 126 | 54 | 285 | |
| | 백분율 | 20.7% | 29.9% | 28.4% | 25.5% | |
| 보통 | 빈도 | 219 | 199 | 86 | 504 | |
| | 백분율 | 43.2% | 47.3% | 45.3% | 45.1% | |
| 불만 | 빈도 | 98 | 52 | 25 | 175 | |
| | 백분율 | 19.3% | 12.4% | 13.2% | 15.7% | |
| 매우불만 | 빈도 | 54 | 25 | 9 | 88 | |
| | 백분율 | 10.7% | 5.9% | 4.7% | 7.9% | |
| | | 빈도 | 507 | 421 | 190 | 1118 |
| | | 백분율 | 100.0% | 100.0% | 100.0% | 100.0% |

Chi-Square: 30.155(p=.000)

<표 49>는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학교 종류별로 비교해 본 결과다. 그 결과 특목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일종의 적신호로 볼 수 있다. 교육이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매우 중요한 바탕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양극화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로 부유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특목고의 시설 만족도가 월등히 높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아울러서 실업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난 것은 이미 학교의 양극화가 현실 사회의 계층구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9> 학교 시설 건강권 학교 종류별 만족도

| | | 학교종류 | | | | | |
|------|-----|-------|--------|--------|--------|--------|--------|
| | | 중학교 | 인문고 | 실업고 | 특목고 | 대안학교 | |
| 매우만족 | 빈도 | 28 | 19 | 2 | 13 | 4 | |
| | 백분율 | 5.3% | 4.8% | 2.4% | 23.2% | 8.5% | |
| 만족 | 빈도 | 141 | 93 | 11 | 22 | 18 | |
| | 백분율 | 26.5% | 23.3% | 13.3% | 39.3% | 38.3% | |
| 보통 | 빈도 | 247 | 175 | 48 | 16 | 18 | |
| | 백분율 | 46.3% | 43.9% | 57.8% | 28.6% | 38.3% | |
| 불만 | 빈도 | 80 | 75 | 13 | 2 | 5 | |
| | 백분율 | 15.0% | 18.8% | 15.7% | 3.6% | 10.6% | |
| 매우불만 | 빈도 | 37 | 37 | 9 | 3 | 2 | |
| | 백분율 | 6.9% | 9.3% | 10.8% | 5.4% | 4.3% | |
| | | 빈도 | 533 | 399 | 83 | 56 | 47 |
| | | 백분율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Chi-Square: 64.526(p=.000)

(3) 부업(아르바이트) 관련 인권 침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할 뿐 아니라 방과를 전후한 시간에 부업(아르바이트)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러한 부업 현장에서 학생들은 철저히 영리사업의 논리에 노출되고, 보호자도 없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력으로 가혹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인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업과 관련한 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전체의 14.1%의 학생들만 최근 1년간 부업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업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지역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 유형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관측되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10% 내외가 부업을 경험한 반면 실업고 학생들은 무려 40.2%가 부업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실업고의 특성상 실습 등의 경험이 더 많은 탓일 수도 있고, 또 실업고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하여 어쩔 수 없이 부업 전선으로 밀려 났을 가능성이 있다.

<표 50> 청소년들의 부업(아르바이트) 경험 빈도

| | | 학교종류 | | | | | 합계 |
|----|-----|--------|--------|--------|--------|--------|--------|
| | | 중학교 | 인문고 | 실업고 | 특목고 | 대안학교 | |
| 있다 | 빈도 | 56 | 41 | 33 | 4 | 7 | 141 |
| | 백분율 | 10.6% | 10.7% | 40.2% | 7.3% | 14.9% | 12.9% |
| 없다 | 빈도 | 468 | 341 | 48 | 50 | 40 | 947 |
| | 백분율 | 89.0% | 89.0% | 58.5% | 90.9% | 85.1% | 86.6% |
| | 빈도 | 526 | 383 | 82 | 55 | 47 | 1093 |
| | 백분율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Chi-Square: 81.706(p=.000)

<표 51>은 학생들이 주로 어떤 부업에 종사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다. 여기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실업고 학생들의 차이이다. 실업고 학생들이 주방·서빙, 판매 등 육체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식업소, 그리고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51> 청소년들의 부업 유형

| | | 학교종류 | | | | | 합계 |
|-----|-----|------|-------|------|-------|-------|-------|
| | | 중학교 | 인문고 | 실업고 | 특목고 | 대안학교 | |
| 사무 | 빈도 | 1 | 2 | 1 | 0 | 0 | 4 |
| | 백분율 | 1.3% | 3.4% | 2.8% | .0% | .0% | 2.2% |
| 전산 | 빈도 | 5 | 9 | 1 | 3 | 2 | 20 |
| | 백분율 | 6.7% | 15.5% | 2.8% | 33.3% | 25.0% | 10.8% |
| 과외 | 빈도 | 1 | 2 | 0 | 1 | 2 | 6 |
| | 백분율 | 1.3% | 3.4% | .0% | 11.1% | 25.0% | 3.2% |
| 가이드 | 빈도 | 0 | 1 | 0 | 1 | 0 | 2 |
| | 백분율 | .0% | 1.7% | .0% | 11.1% | .0% | 1.1% |

| | | | | | | | |
|---------|-----|-------|-------|-------|-------|-------|-------|
| 고객상담 | 빈도 | 1 | 0 | 0 | 0 | 0 | 1 |
| | 백분율 | 1.3% | .0% | .0% | .0% | .0% | .5% |
| 주방보조서빙 | 빈도 | 6 | 9 | 12 | 0 | 0 | 27 |
| | 백분율 | 8.0% | 15.5% | 33.3% | .0% | .0% | 14.5% |
| 판매 | 빈도 | 4 | 9 | 8 | 1 | 1 | 23 |
| | 백분율 | 5.3% | 15.5% | 22.2% | 11.1% | 12.5% | 12.4% |
| 배달 | 빈도 | 13 | 8 | 0 | 0 | 0 | 21 |
| | 백분율 | 17.3% | 13.8% | .0% | .0% | .0% | 11.3% |
| 노무 | 빈도 | 4 | 8 | 5 | 0 | 0 | 17 |
| | 백분율 | 5.3% | 13.8% | 13.9% | .0% | .0% | 9.1% |
| 청소 | 빈도 | 4 | 3 | 1 | 0 | 1 | 9 |
| | 백분율 | 5.3% | 5.2% | 2.8% | .0% | 12.5% | 4.8% |
| 주유 및 운전 | 빈도 | 1 | 0 | 1 | 0 | 0 | 2 |
| | 백분율 | 1.3% | .0% | 2.8% | .0% | .0% | 1.1% |
| 기타 | 빈도 | 35 | 7 | 7 | 3 | 2 | 54 |
| | 백분율 | 46.7% | 12.1% | 19.4% | 33.3% | 25.0% | 29.0% |

Chi-Square: 90.473(p=.000)

그렇다면 학생들은 부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표 52>에 따르면 70% 이상의 학생이 부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의 22.6%가 꼭 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51.6%가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여기에서도 학교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실업고 학생들은 과반수가 꼭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해 보는 것도 좋다는 합하면 93%가 부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현상인지 아니면 학업에 대한 흥미가 없기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표 52> 부업에 대한 생각

| | | 학교종류 | | | | | 합계 |
|-----------------|-----|--------|--------|--------|--------|--------|--------|
| | | 중학교 | 인문고 | 실업고 | 특목고 | 대안학교 | |
| 꼭 하고 싶다 | 빈도 | 106 | 81 | 43 | 4 | 17 | 251 |
| | 백분율 | 20.0% | 20.7% | 51.2% | 7.1% | 35.4% | 22.6% |
|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빈도 | 265 | 210 | 35 | 34 | 22 | 566 |
| | 백분율 | 49.9% | 53.7% | 41.7% | 60.7% | 45.8% | 51.0% |
| 공부에 전념하려한다 | 빈도 | 80 | 68 | 2 | 15 | 2 | 167 |
| | 백분율 | 15.1% | 17.4% | 2.4% | 26.8% | 4.2% | 15.0% |
| 모른다 | 빈도 | 80 | 32 | 4 | 3 | 7 | 126 |
| | 백분율 | 15.1% | 8.2% | 4.8% | 5.4% | 14.6% | 11.4% |
| | 빈도 | 531 | 391 | 84 | 56 | 48 | 1110 |
| | 백분율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Chi-Square: 80.054(p=.000)

학생들이 부업에 대해 대체로 관심이 많다면 이들은 일 할 기회는 얼마나 얻었을까? <표 53>을 보면 정작 청소년들은 일 할 기회를 그리 쉽게 얻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6.3%만이 일자리를 쉽게 얻었으며 55.7%가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두드러지는 것은 실업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얻으며,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도 가장 적다는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실업고 재학생들이 부업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부업 기회

| | | 학교종류 | | | | | 합계 | |
|--------------|-----|-------|--------|--------|--------|--------|--------|--------|
| | | 중학교 | 인문고 | 실업고 | 특목고 | 대안학교 | | |
| 쉽게 얻음 | 빈도 | 20 | 24 | 9 | 2 | 4 | 59 | |
| | 백분율 | 4.8% | 6.9% | 12.0% | 3.9% | 9.5% | 6.3% | |
| 몇 번의 기회 | 빈도 | 63 | 51 | 31 | 5 | 11 | 161 | |
| | 백분율 | 15.0% | 14.7% | 41.3% | 9.8% | 26.2% | 17.2% | |
| 기회 있으나 안함 | 빈도 | 89 | 74 | 18 | 11 | 2 | 194 | |
| | 백분율 | 21.2% | 21.3% | 24.0% | 21.6% | 4.8% | 20.7% | |
| 모름 | 빈도 | 248 | 198 | 17 | 33 | 25 | 521 | |
| | 백분율 | 59.0% | 57.1% | 22.7% | 64.7% | 59.5% | 55.7% | |
| | | 빈도 | 420 | 347 | 75 | 51 | 42 | 935 |
| | | 백분율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Chi-Square: 60.363(p=.000)

<표 54>는 학생들이 부업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인권 침해의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먼저 계약서 작성 여부를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부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실업고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이 부분에서는 역시 가장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업주가 부업중인 학생에게 인권침해를 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작업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한 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시키거나 심야노동을 강요하는 경우는 아주 적지만은 않게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간 연장, 심야노동 강요가 실업고생에게 집중되고 있어서 실업고 학생에 대한 사회전반의 시각교정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표 54> 부업 현장에서 인권침해

| | | 학교종류 | | | | | 합계 | Chi-Square | p | |
|-------------------|---------|------|-------|-------|-------|-------|--------|------------|--------|------|
| | | 중학교 | 인문고 | 실업고 | 특목고 | 대안학교 | | | | |
| 계약서 작성 | 예 | 빈도 | 4 | 8 | 11 | 2 | 1 | 26 | 13.788 | .008 |
| | | 백분율 | 4.8% | 12.7% | 28.9% | 16.7% | 16.7% | 12.9% | | |
| | 아니 오 | 빈도 | 79 | 55 | 27 | 10 | 5 | 176 | | |
| | | 백분율 | 95.2% | 87.3% | 71.1% | 83.3% | 83.3% | 87.1% | | |
| 임금약 속 위반 | 예 | 빈도 | 10 | 13 | 7 | 1 | 0 | 31 | 3.587 | .465 |
| | | 백분율 | 12.2% | 20.6% | 18.4% | 8.3% | .0% | 15.5% | | |
| | 아니 오 | 빈도 | 72 | 50 | 31 | 11 | 5 | 169 | | |
| | | 백분율 | 87.8% | 79.4% | 81.6% | 91.7% | 100.0% | 84.5% | | |
| 근로 시간약 속 위반 | 예 | 빈도 | 9 | 11 | 11 | 1 | 0 | 32 | 7.857 | .097 |
| | | 백분율 | 11.0% | 17.5% | 28.9% | 8.3% | .0% | 16.0% | | |
| | 아니 오 | 빈도 | 73 | 52 | 27 | 11 | 5 | 168 | | |
| | | 백분율 | 89.0% | 82.5% | 71.1% | 91.7% | 100.0% | 84.0% | | |

| | | | | | | | | | | |
|------------|---------|-----|-------|-------|-------|-------|--------|-------|-----------|-----------|
| 심야근 무강요 | 예 | 빈도 | 2 | 7 | 7 | 1 | 0 | 17 | 9.66 9 | .046 |
| | | 백분율 | 2.4% | 11.1% | 18.4% | 8.3% | .0% | 8.5% | | |
| | 아니 오 | 빈도 | 80 | 56 | 31 | 11 | 5 | 183 | | |
| | | 백분율 | 97.6% | 88.9% | 81.6% | 91.7% | 100.0% | 91.5% | | |
| 위험작 업강요 | 예 | 빈도 | 5 | 5 | 2 | 1 | 0 | 13 | .745 | .946 |
| | | 백분율 | 6.1% | 7.9% | 5.3% | 8.3% | .0% | 6.5% | | |
| | 아니 오 | 빈도 | 77 | 58 | 36 | 11 | 5 | 187 | | |
| | | 백분율 | 93.9% | 92.1% | 94.7% | 91.7% | 100.0% | 93.5% | | |
| 업주의 폭력 | 예 | 빈도 | 4 | 2 | 1 | 1 | 0 | 8 | 1.25 7 | .869 |
| | | 백분율 | 4.9% | 3.2% | 2.6% | 8.3% | .0% | 4.0% | | |
| | 아니 오 | 빈도 | 78 | 61 | 37 | 11 | 5 | 192 | | |
| | | 백분율 | 95.1% | 96.8% | 97.4% | 91.7% | 100.0% | 96.0% | | |
| 업주의 희롱 | 예 | 빈도 | 2 | 3 | 3 | 1 | 0 | 9 | 2.44 0 | 2.56 4 |
| | | 백분율 | 2.5% | 4.8% | 7.9% | 8.3% | .0% | 4.5% | | |
| | 아니 오 | 빈도 | 79 | 60 | 35 | 11 | 5 | 190 | | |
| | | 백분율 | 97.5% | 95.2% | 92.1% | 91.7% | 100.0% | 95.5% | | |

4) 학교 주체들의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의식

지금까지 학교 및 부업 현장에서의 학생 인권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제 학교 주체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인권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인권침해 대응

<표 55>는 교사나 학교가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다.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응답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막론하고 매우 낮았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제도화 부분이다. 교사들은 상담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학생은 상담창구와 정부의 감시·징계가 42%로 동일하게 나왔다. 이때 상담창구가 진정, 민원 창구의 기능도 포함함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요구는 정부가 학교 인권 침해 상황에 개입하기를 희망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교사는 3%만 여기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감시, 징계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 보다는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점진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표 55> 교사나 학교의 인권침해 발생 시 바람직한 대응

| | | 집단별 | | | 합계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그냥 넘어감 | 빈도 | 63 | 14 | 14 | 91 |
| | 백분율 | 5.6% | 2.8% | 5.4% | 4.8% |
| 상담 창구 마련 필요 | 빈도 | 475 | 349 | 217 | 1041 |
| | 백분율 | 42.0% | 68.7% | 84.4% | 54.9% |
| 정부가 감시 징계 | 빈도 | 476 | 106 | 8 | 590 |
| | 백분율 | 42.0% | 20.9% | 3.1% | 31.1% |
| 잘 모름 | 빈도 | 106 | 34 | 14 | 154 |
| | 백분율 | 9.4% | 6.7% | 5.4% | 8.1% |
| 기타 | 빈도 | 12 | 5 | 4 | 21 |
| | 백분율 | 1.1% | 1.0% | 1.6% | 1.1% |

Chi-Square: 230.773(p=.000)

(2) 청소년 인권 의식

학교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표를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의식은 세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나머지 권리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청소년 인권의식이 높았고, 다음은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특히 폭력으로부터 보호, 합리적인 징계절차 등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았고 이는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은 여기에 대해 대체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발, 복장,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 결정에의 참여, 자치활동의 자유, 정치적 소신의 표현, 동아리·서클 활동의 자유 같은 경우는 교사와 학생의 의식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의 의식이 매우 낮았다. 이는 인권교육이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결국 교사로부터 체벌 받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고 입시교육이나 잘

<표 56> 청소년 인권의식 집단별 비교

| | 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전체 | | F | p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3.49 | .749 | 3.46 | .653 | 3.41 | .636 | 3.47 | .710 | 1.600 | .202 |
| 두발, 신체 자유 | 3.25 | .736 | 2.68 | .757 | 2.48 | .707 | 2.99 | .803 | 178.318 | .000 |
| 매체, 정보 접근권 | 3.33 | .664 | 3.22 | .578 | 3.09 | .572 | 3.27 | .635 | 17.244 | .000 |
| 정책 결정 참여 권리 | 3.30 | .692 | 3.20 | .573 | 3.05 | .595 | 3.24 | .655 | 17.710 | .000 |
| 정치소신 표현 권리 | 3.29 | .703 | 3.11 | .668 | 2.89 | .679 | 3.19 | .705 | 40.373 | .000 |
| 종교 강요 거부 권리 | 3.25 | .761 | 3.14 | .658 | 3.10 | .628 | 3.20 | .720 | 7.109 | .001 |
| 자치활동 참여권리 | 3.40 | .670 | 3.29 | .616 | 3.24 | .600 | 3.35 | .649 | 9.783 | .000 |
| 동아리, 서클 활동 권리 | 3.18 | .775 | 2.91 | .719 | 2.93 | .648 | 3.07 | .754 | 27.980 | .000 |

| | | | | | | | | | | |
|---------------|------|------|------|------|------|------|------|------|--------|------|
| 사생활 보호 권리 | 3.27 | .790 | 3.03 | .709 | 2.83 | .658 | 3.15 | .769 | 45.183 | .000 |
| 폭력 보호 권리 | 3.61 | .621 | 3.51 | .592 | 3.26 | .550 | 3.54 | .615 | 36.150 | .000 |
| 합리적 절차에 따른 징계 | 3.47 | .664 | 3.47 | .598 | 3.33 | .582 | 3.45 | .638 | 5.441 | .004 |
| 징계시 자기 변호권리 | 3.35 | .676 | 3.27 | .611 | 3.16 | .529 | 3.31 | .644 | 9.665 | .000 |
| 일할 권리 | 3.25 | .808 | 2.95 | .866 | 3.04 | .695 | 3.14 | .821 | 27.181 | .000 |
| 인권의식 | 3.33 | .508 | 3.10 | .428 | 3.01 | .421 | 3.25 | .481 | 45.75 | .000 |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교육수요자라는 논리로 학부모의 학교 의사결정권 강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오히려 청소년 인권을 압살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실제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13시간의 중노동을 시키고도 이것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 학부모다.

<표 57>은 인권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그래서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교사들을 다시 내부집단별로 분석해 본 결과다. 먼저 <표 57>을 보자. 표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인권 항목에 걸쳐서, 또 전체 인권의식 평균으로도 교사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력 10~20년 사이, 즉 이른바 386세대의 인권의식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이들은 학생 자신들보다도 학생 인권의식이 더 높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보호되고 진작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제재와 간섭보다는 인권의식이 높은 이들 386세대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발, 복장과 관련한 문제를 학생 인권이라고 인정하는 정도는 가장 높은 386세대 교사들조차도 학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7> 교사 경력별 청소년 인권 의식 차이

| | 10년 이내 | | 10-20년 | | 20-30년 | | 30년 이상 | | F | p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3.38 | .499 | 3.57 | .603 | 3.35 | .735 | 3.34 | .627 | 1.663 | .176 |
| 두발, 신체 자유 | 2.56 | .706 | 2.71 | .693 | 2.35 | .751 | 2.26 | .503 | 4.662 | .003 |
| 매체, 정보 접근권 | 3.08 | .494 | 3.29 | .522 | 3.05 | .657 | 2.95 | .524 | 3.218 | .023 |
| 정책 결정 참여 권리 | 2.99 | .514 | 3.34 | .584 | 2.95 | .634 | 2.95 | .517 | 6.178 | .000 |
| 정치소신 표현 권리 | 2.91 | .502 | 3.30 | .578 | 2.71 | .769 | 2.66 | .627 | 11.840 | .000 |
| 종교 강요 거부 권리 | 3.09 | .525 | 3.37 | .599 | 2.96 | .702 | 3.03 | .545 | 5.059 | .002 |
| 자치활동 참여권리 | 3.14 | .499 | 3.43 | .611 | 3.21 | .622 | 3.21 | .622 | 2.755 | .043 |
| 동아리, 서클 활동 권리 | 2.91 | .477 | 3.25 | .660 | 2.79 | .713 | 3.84 | .547 | 6.596 | .000 |
| 사생활 보호 권리 | 2.88 | .643 | 3.04 | .624 | 2.73 | .683 | 2.66 | .627 | 3.574 | .015 |
| 폭력 보호 권리 | 3.13 | .496 | 3.41 | .513 | 3.33 | .565 | 3.18 | .609 | 3.814 | .011 |
| 합리적 절차에 따른 징계 | 3.25 | .539 | 3.52 | .563 | 3.30 | .597 | 3.29 | .611 | 2.648 | .049 |
| 징계시 자기 변호권리 | 3.13 | .563 | 3.29 | .409 | 3.13 | .593 | 3.14 | .536 | 1.256 | .290 |
| 일할 권리 | 2.84 | .616 | 3.36 | .689 | 2.98 | .707 | 3.08 | .640 | 6.612 | .000 |
| 인권의식 | 3.02 | .391 | 3.31 | .384 | 2.99 | .461 | 2.97 | .380 | 9.671 | .000 |

다음 <표 58>은 교직단체별 교사들의 청소년 인권의식을 조사한 결과다.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면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학생 자치, 정치, 동아리, 서클 활동,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해 매우 높은 인권의식을 편중되게 가지고 있다. 정작 두발, 신체의 자유나 일할 권리 같은 경우는 그리 높은 인권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 중 인권의식이 높은 집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특히 두발, 복장과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도 심지어는 진보적인 교사들조차 학생과 충돌을 일으키는 영역을 남을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표 58> 교직단체별 청소년 인권의식 차이

| | 교총 | | 전교조 | | 기타/무단체 | | F | p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3.31 | .701 | 3.62 | .492 | 3.42 | .599 | 3.713 | .026 |
| 두발, 신체 자유 | 2.34 | .667 | 2.69 | .811 | 2.61 | .685 | 5.587 | .004 |
| 매체, 정보 접근권 | 3.02 | .641 | 3.33 | .477 | 3.11 | .507 | 4.663 | .010 |
| 정책 결정 참여 권리 | 2.94 | .595 | 3.24 | .617 | 3.12 | .557 | 4.908 | .008 |
| 정치소신 표현 권리 | 2.73 | .662 | 3.17 | .730 | 3.03 | .608 | 9.084 | .000 |
| 종교 강요 거부 권리 | 2.94 | .628 | 3.40 | .627 | 3.15 | .598 | 9.253 | .000 |
| 자치활동 참여권리 | 3.18 | .626 | 3.52 | .594 | 3.17 | .546 | 6.017 | .003 |
| 동아리, 서클 권리 | 2.73 | .676 | 3.31 | .643 | 3.00 | .561 | 13.479 | .000 |
| 사생활 보호 권리 | 2.71 | .643 | 3.14 | .718 | 2.85 | .617 | 6.935 | .001 |
| 폭력 보호 권리 | 3.21 | .592 | 3.43 | .501 | 3.27 | .536 | 2.363 | .096 |
| 합리적 절차에 따른 징계 | 3.29 | .613 | 3.50 | .552 | 3.31 | .574 | 1.995 | .138 |
| 징계시 자기 변호권리 | 3.13 | .544 | 3.25 | .588 | 3.18 | .492 | .823 | .440 |
| 일할 권리 | 2.95 | .734 | 3.03 | .768 | 3.17 | .611 | 2.367 | .096 |
| 인권의식 | 2.96 | .424 | 3.28 | .433 | 3.12 | .416 | 9.984 | .000 |

그러나 학생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교직 내 하위집단의 존재가 학생 인권 침해를 방지하지는 못한다. <표 59>는 교사들의 인권침해 경험을 교직 경력별로 비교해 본 것이다. 경력 10~20년의 이른바 386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음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표 57> 참조). 그런데 정작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다른 연령집단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가장 빈번하게 가해했다고 교사들이 응답한 폭력과 폭언에서 각 연령층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교사들의 인권의식과 교사들의 실제 인권보호 행동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인권의식이 높은 교사라 할지라도 학교의 규칙이 있고, 학교의 체제가 그렇게 움직인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학교생활규칙 제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은 학생뿐 아니라, 대다수의 교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표 59> 청소년 인권침해 가해 경험 교직 경력별 비교

| | 10년 이내 | | 20년 이내 | | 30년 이내 | | 30년 이상 | | F | p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 가정배경차별 | 1.18 | .606 | 1.18 | .497 | 1.31 | .673 | 1.21 | .577 | .834 | .476 |
| 성별차별 | 1.39 | .796 | 1.42 | .712 | 1.33 | .646 | 1.19 | .577 | .957 | .414 |
| 성적차별 | 1.28 | .491 | 1.20 | .513 | 1.24 | .527 | 1.24 | .590 | .263 | .852 |
| 임원차별 | 1.30 | .566 | 1.19 | .480 | 1.26 | .580 | 1.13 | .529 | .966 | .409 |
| 외모차별 | 1.19 | .480 | 1.13 | .432 | 1.11 | .411 | 1.18 | .563 | .543 | .653 |
| 두발간섭 | 1.60 | .842 | 1.61 | .961 | 1.64 | 1.056 | 1.68 | 1.056 | .056 | .982 |
| 복장간섭 | 1.61 | .846 | 1.64 | .984 | 1.64 | .998 | 1.62 | .982 | .014 | .998 |
| 매체침해 | 1.11 | .363 | 1.20 | .624 | 1.21 | .558 | 1.14 | .536 | .570 | .635 |
| 의견묵살 | 1.18 | .428 | 1.14 | .476 | 1.21 | .514 | 1.22 | .591 | .360 | .782 |
| 학칙개정시 참여제한 | 1.09 | .342 | 1.11 | .421 | 1.15 | .476 | 1.22 | .584 | .720 | .541 |
| 국가관 강요 | 1.07 | .260 | 1.06 | .368 | 1.16 | .531 | 1.17 | .561 | 1.085 | .356 |
| 국기경례강요 | 1.18 | .428 | 1.18 | .471 | 1.36 | .754 | 1.19 | .577 | 1.916 | .127 |
| 종교강요 | 1.07 | .420 | 1.06 | .401 | 1.11 | .442 | 1.14 | .543 | .333 | .801 |
| 자치제한 | 1.04 | .187 | 1.05 | .352 | 1.12 | .521 | 1.17 | .561 | 1.045 | .373 |
| 결사제한 | 1.11 | .363 | 1.10 | .409 | 1.22 | .564 | 1.22 | .591 | 1.338 | .263 |
| 집회참여제한 | 1.07 | .320 | 1.14 | .443 | 1.16 | .459 | 1.25 | .604 | 1.233 | .298 |
| 일기장검사 | 1.25 | .606 | 1.19 | .618 | 1.20 | .632 | 1.03 | .164 | 1.145 | .332 |
| 소지품검사 | 1.63 | .747 | 1.76 | .885 | 1.79 | .874 | 1.64 | .762 | .563 | .640 |
| 사적정보공개 | 1.16 | .455 | 1.19 | .553 | 1.15 | .500 | 1.11 | .398 | .205 | .893 |
| 통신자유침해 | 1.11 | .489 | 1.21 | .630 | 1.12 | .448 | 1.11 | .516 | .678 | .566 |
| 교사의 폭력 | 1.95 | 1.042 | 1.95 | .953 | 1.99 | 1.006 | 1.50 | .775 | 2.395 | .069 |
| 교사의 폭언 | 1.65 | .876 | 1.85 | .802 | 1.87 | .910 | 1.51 | .768 | 2.116 | .099 |

이는 교직단체별 학생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한 <표 60>의 결과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전 교조 소속 교사들의 학생 인권의식이 교총 소속교사들이나 기타/무소속 교사들에 비해 높음은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표 58> 참조). 그러나 정작 학생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되었던 경험은 소속 교직단체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차이가 나타난 것은 소지품 검사 경험에서 무소속 교사들이 다른 교직단체 교사들에 비해 이를 적게 시행한 결과뿐이다. 또 오히려 한국 교총 소속 교사들보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폭력이나 폭언을 더 많이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서 의식과 실행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준다.

<표 60> 청소년 인권침해 가해 경험 교직원단체별 비교

| | 한국교총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 기타/무당파 | | F | p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 가정배경차별 | 1.24 | .649 | 1.26 | .544 | 1.21 | .590 | .106 | .900 |
| 성별차별 | 1.29 | .670 | 1.46 | .778 | 1.40 | .713 | 1.132 | .324 |
| 성적차별 | 1.21 | .576 | 1.19 | .397 | 1.26 | .513 | .387 | .679 |
| 임원차별 | 1.23 | .585 | 1.24 | .484 | 1.26 | .554 | .108 | .897 |
| 외모차별 | 1.16 | .512 | 1.12 | .328 | 1.16 | .478 | .139 | .870 |
| 두발간섭 | 1.60 | .979 | 1.69 | 1.070 | 1.54 | .823 | .348 | .707 |
| 복장간섭 | 1.63 | .975 | 1.67 | 1.004 | 1.52 | .813 | .511 | .600 |
| 매체침해 | 1.19 | .583 | 1.21 | .682 | 1.14 | .439 | .286 | .752 |
| 의견묵살 | 1.19 | .535 | 1.20 | .511 | 1.16 | .450 | .145 | .865 |
| 학칙개정시 참여제한 | 1.18 | .528 | 1.05 | .216 | 1.11 | .409 | 1.549 | .215 |
| 국가관 강요 | 1.17 | .536 | 1.05 | .309 | 1.10 | .400 | 1.145 | .320 |
| 국기경례강요 | 1.31 | .646 | 1.21 | .565 | 1.19 | .562 | 1.030 | .359 |
| 종교강요 | 1.10 | .450 | 1.05 | .312 | 1.11 | .513 | .293 | .746 |
| 자치제한 | 1.13 | .493 | 1.10 | .484 | 1.04 | .334 | .889 | .413 |
| 결사제한 | 1.25 | .562 | 1.07 | .463 | 1.10 | .400 | 2.994 | .052 |
| 집회참여제한 | 1.20 | .521 | 1.10 | .297 | 1.11 | .438 | 1.252 | .288 |
| 일기장검사 | 1.22 | .641 | 1.21 | .682 | 1.16 | .495 | .299 | .742 |
| 소지품검사 | 1.88 | .872 | 1.71 | .944 | 1.51 | .676 | 5.089 | .007 |
| 사적정보공개 | 1.15 | .522 | 1.24 | .617 | 1.16 | .424 | .529 | .590 |
| 통신자유침해 | 1.13 | .490 | 1.21 | .682 | 1.14 | .531 | .395 | .674 |
| 교사의 폭력 | 1.85 | .985 | 2.02 | 1.047 | 1.89 | .970 | .449 | .639 |
| 교사의 폭언 | 1.73 | .846 | 1.98 | .869 | 1.67 | .874 | 1.891 | .153 |

(3) 학교내 청소년 인권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견해

지금까지 학생 인권 문제의 실태,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교육주체들의 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61>를 보면 학교 내 청소년 인권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 주체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들의 경우는 2/3 정도가 학급당 인원수의 과다를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여기에 동의한 학부모는 48%, 학생은 35.2%다. 특히 학교 내 인권침해 사례가 학급당 인원이 많은 대도시 학교 뿐 아니라 중소도시나 농어촌 학교에서도 큰 차이 없

<표 61> 학교 인권문제의 원인

| | | 집단별 | | | 합계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학생 수 과다 | 빈도 | 392 | 231 | 156 | 779 |
| | 백분율 | 35.5% | 48.0% | 66.7% | 42.8% |
| 제도 장치의 미흡 | 빈도 | 188 | 64 | 8 | 260 |
| | 백분율 | 17.0% | 13.3% | 3.4% | 14.3% |
| 규칙 자체 반인권적 | 빈도 | 128 | 23 | 15 | 166 |
| | 백분율 | 11.6% | 4.8% | 6.4% | 9.1% |
| 제도의 형식적 운영 | 빈도 | 150 | 60 | 15 | 225 |
| | 백분율 | 13.6% | 12.5% | 6.4% | 12.4% |
| 교사 인권교육 미비 | 빈도 | 59 | 20 | 7 | 86 |
| | 백분율 | 5.3% | 4.2% | 3.0% | 4.7% |
| 인권교육 프로그램 미비 | 빈도 | 40 | 40 | 12 | 92 |
| | 백분율 | 3.6% | 8.3% | 5.1% | 5.1% |
| 교사의 자질 부족 | 빈도 | 105 | 30 | 9 | 144 |
| | 백분율 | 9.5% | 6.2% | 3.8% | 7.9% |
| 기타 | 빈도 | 42 | 13 | 12 | 67 |
| | 백분율 | 3.8% | 2.7% | 5.1% | 3.7% |

Chi-Square: 130.704(p=.000)

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음으로는 제도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제도가 미흡하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인권교육,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표 62>는 학교 내 학생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대책을 물어본 결과다. 역시 교사들의 37.7%가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주장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학생과 학부모는 제도마련, 학교 규칙의 자율적 제정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았으며 이와 더불어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제기하였다. 흥미 있는 사실은 교사들 역시 상당수가 학교규칙의 자율적 제정과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반면 교사들은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제도적 장치에 의존할 경우 정작 이를 시행하는 교사들의 저항에 부딪치거나 혹은 단지 관료체적 형식주의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이것이 교사들의 권리를 압살하고 간섭하는 장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표 62> 학교내 청소년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 | | 집단별 | | | 합계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학생 수 축소 | 빈도 | 104 | 70 | 88 | 262 |
| | 백분율 | 9.3% | 14.4% | 37.6% | 14.3% |
| 제도 장치 마련 | 빈도 | 281 | 79 | 11 | 371 |
| | 백분율 | 25.2% | 16.3% | 4.7% | 20.2% |
| 교칙 자율제정 | 빈도 | 259 | 68 | 37 | 364 |
| | 백분율 | 23.3% | 14.0% | 15.8% | 19.9% |
| 교사 교육 강화 | 빈도 | 166 | 99 | 38 | 303 |
| | 백분율 | 14.9% | 20.4% | 16.2% | 16.5% |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빈도 | 81 | 71 | 19 | 171 |
| | 백분율 | 7.3% | 14.6% | 8.1% | 9.3% |
| 교사 인격 자질 함양 | 빈도 | 123 | 60 | 19 | 202 |
| | 백분율 | 11.1% | 12.3% | 8.1% | 11.0% |
| 상담기회 확대 | 빈도 | 79 | 35 | 15 | 129 |
| | 백분율 | 7.1% | 7.2% | 6.4% | 7.0% |
| 기타 | 빈도 | 20 | 4 | 7 | 31 |
| | 백분율 | 1.8% | .8% | 3.0% | 1.7% |

Chi-Square: 203.763(p=.000)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 없이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을까? 교사들은 학생 인권의 수호자로 과연 어느 정도나 신뢰받고 있을까? 그들 스스로도 자신하고 있는가? 그 결과는 <표 63>과 같다. 우선 교사들은 72.6%가 청소년의 인권을 매우 잘 지켜주거나 잘 지켜준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교사들은 스스로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역시 이 보다는 낮지만 49.1%가 매우 잘 지켜주거나 잘 지켜준다고 응답하여 교사들을 비교적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생은 이 보다 훨씬 낮아서 33.2%가 잘 지켜주거나 매우 잘 지켜준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학부모의 11.9%, 학생의 21.8%가 교사가 청소년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잘 지켜준다는 응답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 인권의 보호 자로서는 그런대로 신뢰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3> 청소년 인권 보호자로서 교사에 대한 신뢰

| | | 집단별 | | | 합계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매우 잘 지켜줌 | 빈도 | 72 | 55 | 44 | 171 |
| | 백분율 | 6.3% | 10.6% | 17.0% | 8.9% |
| 잘 지켜줌 | 빈도 | 307 | 200 | 144 | 651 |
| | 백분율 | 26.9% | 38.5% | 55.6% | 33.9% |
| 보통 | 빈도 | 513 | 202 | 60 | 775 |
| | 백분율 | 45.0% | 38.9% | 23.2% | 40.4% |
| 잘 지키지 못함 | 빈도 | 167 | 49 | 8 | 224 |
| | 백분율 | 14.6% | 9.4% | 3.1% | 11.7% |
| 전혀 지키지 못함 | 빈도 | 82 | 13 | 3 | 98 |
| | 백분율 | 7.2% | 2.5% | 1.2% | 5.1% |

Chi-Square: 62.772(p=.000)

물론 이 정도 결과를 가지고 교사가 학생 인권의 수호자로서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에게 기대하고 있으며, 학생 인권의 개선과 보호의 열쇠는 교사가 쥐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사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제도보다는 교사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교사 대상의 학생 인권교육이, 또 학생들 자신들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시키는 학생 대상의 인권교육이 현장의 저항도 적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생각은 <표 64>와 같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의 88.2%, 학부모의 96%, 교사의 93.7%가 필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교사가 가장 낮은 것이 두드러진다. 또 학생의 경우에는 모른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 보다 높은 것이 두드러진다. 다음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의 89.8%, 학부모의 96.7%, 그리고 교사의 95.8%가 필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교사들의 매우 높은 찬성률이 두드러진다. 이는 교사들 역시 최근 자주 대두되는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와 분명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어 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학생들은 다른 집단보다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정작 자기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64> 인권교육의 필요성

| | | | 집단별 | | | 합계 | Chi-Square | p |
|----------------|-----------|-----|-------|-------|-------|-------|------------|------|
| | | | 학생 | 학부모 | 교사 | | | |
| 학생 인권 교육 | 반드시 필요 | 빈도 | 377 | 199 | 63 | 639 | 23.451 | .000 |
| | | 백분율 | 33.1% | 38.1% | 24.8% | 33.4% | | |
| | 필요 | 빈도 | 628 | 302 | 175 | 1105 | | |
| | | 백분율 | 55.1% | 57.9% | 68.9% | 57.7% | | |
| | 불필요 | 빈도 | 48 | 12 | 12 | 72 | | |
| | | 백분율 | 4.2% | 2.3% | 4.7% | 3.8% | | |
| | 모름 | 빈도 | 87 | 9 | 4 | 100 | | |
| | | 백분율 | 7.6% | 1.7% | 1.6% | 5.2% | | |
| 교사 인권 교육 | 반드시 필요 | 빈도 | 522 | 241 | 69 | 832 | 37.431 | .003 |
| | | 백분율 | 46.0% | 46.5% | 27.0% | 43.6% | | |
| | 필요 | 빈도 | 497 | 260 | 176 | 933 | | |
| | | 백분율 | 43.8% | 50.2% | 68.8% | 48.8% | | |
| | 불필요 | 빈도 | 30 | 4 | 9 | 43 | | |
| | | 백분율 | 2.6% | .8% | 3.5% | 2.3% | | |
| | 모름 | 빈도 | 87 | 13 | 2 | 102 | | |
| | | 백분율 | 7.7% | 2.5% | .8% | 5.3% | | |

2. 학교 방문 면접 조사

학교생활규칙 및 인권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느끼는 인권의식과 이들이 판단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전국에 걸친 표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오늘날 중고등학생 인권 실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적 경향을 읽을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단위학교에서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 학교들 가운데 학교 단계와 계열을 고려하여 4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나, 이 가운데 한 학교는 방문 조사를 거부하여 3개교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 조사 대상 학교는 중학교 1개교, 인문계고 1개교, 공업고 1개교이다.

서울 강남에 소재한 J중학교의 경우, 발목 양목을 못 신고, 크로스 백 못 매고, 칼 가위 소지를 금지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두발 관련 글을 올리면 자진삭제하게 만들고 내신점수를 깎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경기 분당에 있는 L고의 경우에는 두발이 길면 퇴학을 시키고, 학교에서 미용사 되려는 초보자를 불러 반삭을 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에 있는 D공고의 경우,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걸어차고 머리끄덩이 잡고, 발설하면 크게 다칠 거라고 협박하며, 당구채로 때려 대가 부러지고 파이프에 테이프를 감아 때린다. 강제 이발하다 귀까지 찢어졌다고 토로하였다.

면접자는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식견을 지닌 현직 교사

들로 구성하였다. 면접 대상 및 시간은 생활지도부장 교사 50분, 학교생활규칙을 주로 많이 어기는 1, 2, 3학년 각 1명씩 3명의 학생들의 집단 상담 50분으로 이루어졌다.

J중학교의 경우, 1, 2학년은 징계 받은 사실이 없으나, 3학년 학생의 경우, 구타 사건에 연루된 학생이었다. L고의 경우, 1학년 남학생 1명, 2학년 학생 두 명으로 한 학생은 여학생이었으며, 한 학생은 남학생이었다. 이들 3명의 학생은 모두 흡연으로 인해 징계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학교 방문 면접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규칙 인지도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면접에 응한 생활지도부장 교사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학생의 경우 1학년 입학식 때 배부되는 「학교 생활 안내」 책자 속에 복장, 두발, 신발에 대한 규정이 간략하게 삽입되어 있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의 특성상 한 학교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게 되므로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모든 교사가 알고 있는 상태이다.”(J중, 생활지도부장, 남, 61세, 33년 경력, 체육교사)

“잘 인지하고 있다.”(D공고, 생활지도부장, 남, 54세, 29년 경력, 전기교사)

J중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규칙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잘 인지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생활 규칙에 대해 알려준 것은 아니지만, 학교생활을 통해 규칙을 위반하면서 알게 되었다. 신발은 색깔있는 것은 안 되고 하얀 색과 까맣 색만 허용되며, 피어싱은 안 된다. 명찰 꼭 달아야 하고, 교복 벨트는 꼭 해야 한다. 춘추복 착용시 와이셔츠는 교복 바지 속에 꼭 넣어서 입어야 한다. 실내화는 흰색과 정해진 것만 착용 가능하다. 교복 옷도리 위에 튄는 색상의 걸쭉은 입으면 안 되고, 지퍼는 반드시 잠궤야 된다. 학교에 들어오면 걸쭉은 벗어야 되며, 옷티 안 입고 다른 걸쭉을 입으면 안 된다. 와이셔츠 속에 입는 티도 흰색과 흰색만 허용되며, 튄는 색은 절대 안 된다. 등교시 교복 단추는 반드시 잠궤야 하며, 바지 주머니에 손 넣으면 안 된다. 매점 이용시 음식물을 매점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J중, 1, 2, 3학년 모두)

그러나 L고 학생들은 대강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D공고의 경우에는 자세히 모른다고 응답했다.

“대강 알고 있다.”(L고, 1, 2학년 모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D공고, 1, 2, 3학년 모두)

따라서 교사들의 경우, 학교생활규칙이 잘 인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학교생활규칙 제정 절차

학교생활규칙은 어떤 절차로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보였다.

“타학교의 학교생활 규정을 토대로 11개 부서의 모든 교사가 의논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만들었으나, 학생의 의견수렴과정은 없었다.”(♀중, 생활지도부장, 남, 61세, 33년 경력, 체육교사)

“기존 생판을 받아서 개정, 수정한다.”(♂고, 생활지도부장, 남, 35세, 9년 경력, 기술교사)

“학생 대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칙 제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만들어진다.”(♂공고, 생활지도부장, 남, 54세, 29년 경력, 전기교사)

학교생활규칙을 만드는데 설문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여, 교사들과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개정된 내용도 잘 모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도 모르며 일방적으로 학교가 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학생회가 있으나, 학생회 자체로 성적 등을 고려하여 모범적인 학생이 뽑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도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학생회 인원라 교사들이 의논해서 하는 것 같다. 학생 전체의 의견을 개진한 경우는 없었다.”(♀중, 1, 2, 3학년 모두)

“모른다.”(♂고, 1, 2학년 모두)

“모른다. 실시한 적 없다.”(♂공고, 1, 2, 3학년 모두)

3)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바람직한 제정 절차

학교생활규칙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교직 경력이 많은 생활지도부장 교사는 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9년 경력이 짧은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해 대조적 견해를 나타냈다.

“교사만 학부모가 규정을 개정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생은 아직은 미성숙인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감이 없으므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중, 생활지도부장, 남, 61세, 33년 경력, 체육교사)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사만 학부모가 모여 의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생활지도부장, 남, 35세, 9년 경력, 기술교사)

한편,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때 모범생만이 아닌 학생 전체의 의견이 수렴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학생회 인원도 교사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학생회도 댈 수 없으므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규칙을 개정할 희망자를 받아 교사들 모르게 규칙 개정을 하여, 개정할 내용이 완성되면 교사들과 의논하여 개정하는 것이 좋다.”(♀중, 1, 2, 3학년 모두)

J중학생들은 개정해야할 내용 중 “두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분개하며 학생회도 교사도 학교 운영위에 속한 학부모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학교생활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 자신들의 의견은 수렴이 안 되고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대로 될 것이며, 어쩌면 지금의 규정보다도 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같은 비율로 모인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모임에서 맞들어져야한다. 모범생만이 모인 건 소용없다.”(♀고, 1, 2학년 모두)

“학생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두발과 복장라 같이 강요적인 것은 바뀌었으면 한다.”(♂공고, 1, 2, 3학년 모두)

4) 학생지도시 가장 지켜지지 않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불만인) 부분

학교생활규칙(복장, 두발, 용모, 이성관계, 집회와 결사 등) 가운데 학생지도시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분(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불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면접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교사와 학생 모두 두발 부분을 지목하였다.

“학교생활규칙 가운데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불만이 표출되지 않으나 “두발”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중, 생활지도부장, ♀, 61세, 33년 경력, 체육교사)

“두발과 복장이다.”(♀고, 생활지도부장, ♀, 35세, 9년 경력, 기술교사)

“두발 부분이다.”(♂공고, 생활지도부장, ♀, 54세, 29년 경력, 전기교사)

이러한 반응은 학생들에게서도 같게 나타나, 두발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장 불만을 토로하였다.

“두발 부분이다. 경고를 주지 않고 바른 행동(처분)으로 옮기는 선생님이 몇 분 계시다.”(♂공고, 1, 2, 3학년 모두)

“1학년 때 교사가 학생 머리를 가위로 자른 사건이 있었으며(♀중 2학년), 바리깡을 가지고 있는 교사도 있었다”(♀중 3학년)

“머리가 길면 상장도 안준다. 두발에 대해 교장·교사·학생(희망자)이 토론을 했으나 예전과 변함없이 똑같고, 이런 토론이나 차담이 있으면 규제는 더욱 심해진다. 최근에 1달에 1번씩 검사하고 교문 앞이나 수업시간에 교실을 돌면서 두발 검사를 하기도 한다. 머리가 긴 학생은 교사와 마주치면 교사를 피해가며, 일부러 눈병 걸렸다고 하고, 두발 검사를 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생회 후보로 출마시 두발에 대한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면 공약에서 삭제토록 한다. 2005학년도 졸업생 중에

“두발자유화”를 도록에 적카른 쓴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후 두발 규제가 더욱 심해졌다.“(J중 3학년)

“머리가 긴데 자르기를 거부하면 전학을 권유한다. 두발 검사에서 걸리면 수업시간에 머뭇실흔 보내진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점심 때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pc방에 있기도 하고, 그냥 귀가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두발 문제로 인하여 배회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두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교사들의 논의 갖대로 걸리거나 여부가 결정된다. 무단결석을 하거나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두발 검사를 피하는 경우도 있다. 방학식 날에도 두발 검사를 한다. 심지어 어떤 교사는 방학 중에도 두발 검사 하러 오라고 한다. 밴드부나 응원부도 학교의 얼굴이기 때문에 머리가 긴 학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J중 3학년)

“머리를 안 자르려면 수업도 듣지 말라고 한다. 짧은 머리를 가리기 위해 비니를 쓴 것이 교사에게 걸리면 다음 날 학교에서 또 혼난다. 하루 종일(1-6교시까지) 복도에 세워놓거나 무릎 꿇게 한 경우도 있다. 성적 상위권 학생과 머리 단정학 학생만 선출하고 있다.”(J중 1학년)

“인근 학교보다도 규제가 가장 심하며, 하교 후에 학원이나 거리에 나갈 때 너무 짧은 머리길이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학교 밖의 사생활에 불편을 느끼며, 어떤 학생의 경우 짧은 머리 때문에 가발을 사는 경우도 있다”(J중 2학년)

참고로 J중학교의 두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누른 상태에서 눈썹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길이를 유지한다.
2.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을 정도를 원칙으로 한다.
3. 뒷머리는 끝부분 3cm 이상을 이발 기계로 깎아 올려 단정한 두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4. 삭발, 중앙 가르마, 구레나룻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염색과 탈색, 파마넨트 웨이브, 헤어 스타일링 용품 사용 등은 금한다.

L고의 경우, 흡연으로 징계받은 학생들이나 탓으로 한결같이 흡연 규제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심지어 흡연을 단속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흡연실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전 휴학생이었기 때문에 맞으려 지금 18살이고 내년엔 19살이다. 내년엔 법적으로 성인이 되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데 학교에선 못 피우게 하면 무슨 아닌가? (L고, 2학년, 여)

“담배는 중학교때 다 배우는데 이미 굳어진 고등학교에서 장으려고 하는 건지... 담배를 학교에서 피울 수 있도록 흡연실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L고, 2학년, 남)

“저도 선배들의 말에 동의한다. 두발이나 용의복장 등은 요즘 많이 완화된 것 같다. 그러나 흡연을 강력 단속하는 것은 불만이다.” (L고, 1학년, 남)

이런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지키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학생들이 두발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첫째, 마스크를 보고 연예인들이나 기타 공인들이 그들만의 머리 모양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모방하기 위해 기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튀고 싶어서 기르는 경향이 있다. 셋째, 경쟁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불량한 학생으로 되어가는 전조전이며, 자신들이 힘이 있고, 강단이 있다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 머리를 기른다. 넷째, 학교 후 학교 밖으로 나가 어른 행세를 하고 싶어한다.”(♀중, 생활지도부장, 남, 61세, 33년 경력, 체육교사)

“학생들의 자기 고집이 강하기 때문이다.”(♂고, 생활지도부장, 남, 35세, 9년 경력, 기술교사)

“자기 자신의 개성을 무척 표현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공고, 생활지도부장, 남, 54세, 29년 경력, 전기교사)

한편,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니깐 머리를 더 기르고 싶은 생각이 든다.”(♀중)

“다른 건 지킬 수 있는데 흡연은 벌써 중독이 되어서 끊지 못한다.”(♂고, 1, 2학년 모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기준이 다르다. 자유화되면 비행가능성이 많다. 머리가 너무 길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공고, 1, 2, 3학년 모두)

5) 현 학교생활규칙 가운데 풀어주었으면 하는 규제

교사로서 현재 학교생활규칙 가운데 학생들에게 규제하지 않고 풀어주었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은 미성숙인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므로 규제를 풀어줄 부분이 거의 없다. 인근 학교의 경우 두발 등 생활지도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도난 행위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99.9% 규제를 해야 한다.”(♀중, 생활지도부장, 남, 61세, 33년 경력, 체육교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부다 풀어줘도 무방하다.”(♂고, 생활지도부장, 남, 35세, 9년 경력, 기술교사)

“현재의 규정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공고, 생활지도부장, 남, 54세, 29년 경력, 전기교사)

이에 반해 학생들은 규제정도를 낮추었으면 하는 것은 “두발”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본인들은 머리 염색이나 파마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길이만 조금 길게 해 달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심하게 규제를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중 1, 3학년)

“타교와 비교해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규정을 지켰는데도 단속을 한다. 바로 자르거나 규정을 어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당하는 것이다.”(♂공고, 1학년)

6) 학교생활규칙에 새로 마련해야 할 내용

교사로서 현재 학교생활규칙에 학생들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 마련해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교사들은 휴대폰 관련 규정, 학생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미 규정에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새로 규정에 넣어야 되는 항목은 거의 없다고 본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부분은 삽입하고 필요없는 부분이 생기면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중, 생활지도부장, 남, 61세, 33년 경력, 체육교사)

“휴대폰 소지에 관한 내용이 생겨야 한다.”(♂고, 생활지도부장, 남, 35세, 9년 경력, 기술교사)

“학생들의 일탈행위 등 자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사회전반인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공고, 생활지도부장, 남, 54세, 29년 경력, 전기교사)

학생들은 새로 만들어져야 할 규정은 없다고 한 반응과 함께, 붙임머리에 대한 규정, 수능이후 자유로운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다. 학교 내에 폭력은 심하지 않은 듯하다. 그 이유로 학생들간에 다툼이 있거나 싸우는 경우, 부모님을 소환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 폭력은 없는 것 같다.”(♀중 3학년)

“남학생들 머리핀 여학생들 붙임머리다.”(♂고, 1, 2학년 모두)

“고3 수능이후에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수업시간)을 바꾼다. 아르바이트, 진학 준비 등을 위해서...”(♂공고, 1, 2, 3학년 모두)

7) 처벌 종류와 처벌 이유

규칙을 어긴 학생들에게 주로 어떤 처벌(훈계, 봉사활동, 특별교육, 기합, 체벌, 벌점 부여)을 내리며, 그런 처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첫째, 학생 생활 카드제를 실시한다. 학생 생활 카드는 경미하게 학교 규정을 어긴 학생에게 전 교사 중 누구라도 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도나 교실에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 교내에서 동전 따먹기를 하는 경우, 핸드폰 소지가 금지 되어 있는데 소지하는 경우, 실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안전사고를 위협하는 장난을 한 경우, 교사에게 복손한 행동을 한 경우, 수업을 방해한 경우에 발급한다. 둘째, 해당 학년 과장, 해당 학년 학급담임 전원, 상담교사 1명으로 구성된 학년생활위원회 구성하고 있다. <사회봉사> 이하로 판단되는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여 심의한다. 경미한 다툼, 학생들 간의 폭언, 교사에게 경솔한 행동이나 폭언을 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셋째, 교감, 각부 부장(4개부서), 해당 학년 과장, 생활부 교사 3명, 상담교사 1명, 학부모 3명으로 구성된 학교생활위원회 구성하고 있다. 특별교육 이수 이상으로 판단되는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여 심의한다. 넷째, 변호사, 학부모 대표, 경찰관,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 교내 · 외에서 심한 폭력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중,

생활지도부장, 남, 61세, 33년 경력, 체육교사)

참고로 이 학교의 징계 종류 및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1주(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2주(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1주(7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전·편입 추천 :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징계 이후에도 품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가망이 없어 교육상 교육의 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해당 교육청에 추천할 수 있고, 학교장은 이 징계를 시행하기 전에 일정 기간(학교장이 결정)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는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이다.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카드발급 3회 이상 : 담임교사에 의해 상담, 반성문 제출 지도, (2) 반성문 제출 3회 이상 : 담임교사는 학생 · 학부모 상담 후 학년 과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학년 과장 지도로 방과 후 1시간씩 정신 교육, (3) 정신교육 3회 이상 : 학년생활위원회 회부, 교내봉사, 상담실 교육 프로그램참여, (4) 훈계 2회 이상 : 학년생활위원회 회부, 사회봉사, (5) 교내봉사 2회 이상 : 학년생활위원회 회부, 사회봉사, (6) 사회봉사 2회 이상 : 학년생활위원회 회부, 특별교육 이수이다.

다음은 이 학교에서 있었던 처벌 사례이다. 2006년 10월 20일 썸 구타 사건이 발생(3학년)하였다.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했으나, 3학년의 경우 11월에는 전학이 안 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을 1달간 등교 정지 시켰다. 처벌 기간 동안에 과제물을 제출하고 시험을 보게 하였다. 강제 전학(교장의 허락하에 나쁜 행위를 한 학생을 맞바꾸는 경우를 말함)이 있으나, 잘 보내지 않는 이유는 현재 나쁜 행위를 저지를 학생 보다 더 안 좋은 학생이 올라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J학교 교사는 처벌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의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처벌을 내리나, 잘못을 저지른 학생의 경우 커다란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타 학생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처벌을 내린다.”(J중, 생활지도부장, 남, 61세, 33년 경력, 체육교사)

다른 두 곳의 고교 생활부장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훈계를 하며 개인적으로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직서를 장려려면 처벌의 기준은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다.”(K고, 생활지도부장, 남, 35세, 9년 경력, 기술교사)

“훈계, 봉사활동, 특별교육, 기함, 체벌 등을 학생들의 각 개인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선도위원회를 개척하여 적절한 처벌을 시행한다. 학생의 인성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것이다.”(D공고, 생

항지도부장, 남, 54세, 29년 경력, 전기교사)

교사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다고 답하였으나,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다.

“담배피다 징계받았다. 1차 적발시엔 교내봉사, 2차 적발시엔 금연학교, 3차 적발시엔 금연캠프, 4차 적발시엔 사회봉사. 5차 적발시엔 강제 전학이다. 적발될때는 재수없이 걸렸다고 생각된다.” (♀교, 1, 2학년 모두)

“15분 시각에 2시간 동안 엎드려 벌을 받은 적이 있다. 너무 과도한 기행으로 오히려 반발심이 생겼다. 또 체벌로 몽둥이로 허벅지 3대, 머리 몇 대, 허벅지 10대 넉게 맞은 적 있다. 기분이 나쁘고 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교, 1, 2, 3학년 모두)

8) 징계 절차에 대한 통보 및 소명 기회

학생 징계시 징계 절차에 대해 학생들에게 통보하거나, 소명 기회를 주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차이를 드러냈다. 교사들의 경우, 징계 절차를 학생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소명 기회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소명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징계 절차를 잘못된 사안에 대해 학생이 경위서를 쓰게 한다. 징계가 확정되면 학부모에게 징계 내용을 즉시 통보한다. 징계 위원회에 허부되었을 때 학생은 경위서를 쓰고, 담임교사가 징계 대상 학생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학생에게 따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고 있다.” (♀중, 생활지도부장, 남, 61세, 33년 경력, 체육교사)

“흡연적발때는 금연일기에 자기 소명기회를 쓰게 한다. 다른 경우에도 일단 소명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 (♀교, 생활지도부장, 남, 35세, 9년 경력, 기술교사)

“정확하게 본인에게 통보하고, 선도위원회에 학부모도 같이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공교, 생활지도부장, 남, 54세, 29년 경력, 전기교사)

이처럼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는 교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학생은 경위서를 쓰고, 교사가 징계를 결정하나, 학생 자신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중)

“구타 사건으로 인하여 1달 간 등교 정지를 받은 적이 있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본인 스스로 부당한 처벌이라고 생각되어 억울한 느낌이 든다. 자신의 경우 친구들과 사소하게 다툼을 하면서 꿈뻐할 때인 것을 구타라고 부풀려 말했다. 잘못된 일이 있는 경우 경위서를 쓰는데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어도 잘못을 저지른 학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중 3학년)

“근신으로 청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징계절차는 없었다.” (♂공교, 1학년)

“징계절차에 따라 교내 봉사를 한 적 있다. 그러나 소명 기회는 없었다.” (♂공교, 2학년)

“두발과 지각으로 교내 청소한 적 많다.” (D공고, 3학년)

9) 홈페이지 불만 제기 처리

학생들이 학교 규제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글을 올리는 등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글을 삭제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강제로 삭제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에 학생 피해 신고, 3행 3무 신고, 인터넷 상에 “우리끼리”(학생 의견 교환), 신문고 등 학생들이 볼맛을 트도록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 피해 신고함을 통해 건의된 내용은 반드시 즉시 처리한다. 3행 3무와 다른 같다. 학생의 경우, 3행은 수업 집중하기, 인사 잘하기, 교실 깨끗이 하기이다. 3무는 폭력없는 학교, 따돌림 없는 학교, 도난 없는 학교이다. 교사의 경우, 3행이란 연구 많이 하기, 칭찬 많이 하기, 상담 많이 하기이며, 3무는 친지 없는 학교, 편애 없는 학교, 복신 없는 학교이다. 건의된 내용은 처벌과 조언을 병행한다. 우리끼리는 교장만이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신고함에 건의된 내용 중 학교규칙에 대한 볼맛 사항은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보시고 당금 등으로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내용은 해당 교사에게 지시를 내린다. 신문고는 교장만이 볼 수 있다.” (J중, 생활지도부장, 남, 61세, 33년 경력, 체육교사)

“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을 설득해서 내리게 한 적이 있다.” (J고, 생활지도부장, 남, 35세, 9년 경력, 기술교사)

“거의 없으며, 혹시 그러한 경우, 진로상담실 혹은 학생부에서 면담하고 학생을 잘 타이른다.” (D공고, 생활지도부장, 남, 54세, 29년 경력, 전기교사)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와 전혀 다르게 반응해 삭제 강요를 당한다고 응답했으며, 아예 묵살 당할 것 같아 시도하지 않는다는 학생도 있었다.

“학교 홈페이지에 어떤 학생이 자신을 부당하게 처벌한 교사에 대해 글을 올렸으나 해당교사가 오히려 글을 올린 학생을 야박했다. 신문고는 교장 선생님 혼자서만 보게 되어 있으며,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일만 올릴 수 있고, 두발 등의 건의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생각한다.” (J중 1, 2, 3학년)

“그랬다가 죽음이다. 끝까지 선생님들이 찾아내서 반 죽는다.” (J고, 1, 2학년 모두)

“없다. 건의해 봐야 묵살 당할 것 같아 한 적이 없다.” (D공고, 2학년)

10) 학교생활규칙에 가장 큰 불만 및 개선점

학교생활규칙 가운데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점을 묻자, 학생들은 두발에 대한 불만을 가장 많이 피력하였다.

“두발에 관련된 규제를 좀 더 완화하여 인근 학교와 비슷하게 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자율

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겠고, 현재 있는 기구들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의견을 게재하면 교사들에게 불려가서 혼난다.”(J중 1, 3학년)

“머리인데, 적당히 완화했으면 좋겠다. 타교와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다.”(D공고, 2학년)

11) 생활지도부장으로 학생지도시 가장 어려운 점

생활지도부장으로 학생지도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을 거칠게 대해야 하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들었으며, 두발 부분에 대한 지도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본인의 경우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학생들이나 교사 모두 연장자를 대우하는 경향이 있어 그다지 어려운 점은 없다. 생활지도부장 본인이 쓰레기 등도 솔선하여 줌은 관계로 학교가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어려운 일을 몹소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타학교의 경우, 생활지도 부장을 가장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런 불만은 없다.(J중, 생활지도부장, 남, 61세, 33년 경력, 체육교사)

참고로 J중학교는 재단이 대기업인 관계로 봉급이외에 담임 20만원과 학과 과장 25만원, 부장30만원의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나 스스로가 변해 가는 걸 느낀다. 점점 욕을 하고 과격해지는 것 같다. 인간적으로 대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게만은 되지 않는 것이 당당하다.”(L고, 생활지도부장, 남, 35세, 9년 경력, 기숙교사)

“두발 지도가 가장 어려운 점이며, 계속 두발과 용모가 단정할 수 있도록 교권이 위축되지 않게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D공고, 생활지도부장, 남, 54세, 29년 경력, 전기교사)

12) 학생 인권 향상 과제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교사들의 경우, 교사와 학생간 가치관 차이의 극복, 학생지도시 방임적 태도의 개선 등을 들었다.

“당하기 어려운 직문이다. 전교사가 상담교육을 철저히 받는 만큼 학생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J중, 생활지도부장, 남, 61세, 33년 경력, 체육교사)

“기존세대와 요즘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걸 좁히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한다.”(L고, 생활지도부장, 남, 35세, 9년 경력, 기숙교사)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입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있

는 현실이며, 어떻게 보면 방인적인 자세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사들 스스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 지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D공고, 생활지도부장, 남, 54세, 29년 경력, 전기교사)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보수적 가치관의 변화, 강압적 조치를 없애고 민주적 의견 수렴 등을 학생 인권 개선에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학생과 교사가 논의하여 고쳐졌으면 좋겠다. 너무 보수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교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두발 문제 등 학생 사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들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J중 1, 2, 3학년)

J중학교의 경우,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마찰이 가장 심한 부분은 두발 문제로 학생들은 교사가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사는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미숙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모르며,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와 학생 서로 간에 불신의 벽이 깊음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불만으로 가득차서 어겨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J중학교의 경우 “교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여서 모든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카드제”로 기록 했다가 연말에 누계를 내서 담임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 하는 교사라도 함부로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워 보이며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아보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서워서 건의를 못한다. 걱정된대만 떠나야하고 중학교때 다 들어진 습관을 고등학교에서 더 장으려고 하니 고쳐지지도 않고 더 번잡스럽다 생각한다. 우리도 내년엔 성년이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다.”(L고, 1, 2학년 모두)

“강압적인 조치를 없앴으면 좋겠다.”(D공고, 1, 2, 3학년 모두)

“의견을 들어보거나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평소에 무서워서 자유롭게 말을 못하는 선생님들이 있다.”(D공고, 2학년)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건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비해 이전 것이 구축되었으면 한다.”(D공고, 2학년)

3. 간담회

본 연구는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설문 조사와 학교 방문을 통한 생활지도부장 및 학생에 대한 면접 조사에 이어, 학생 인권 침해 사례와 그러한 사례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에는 서울 S공고의 J 생활지도부장 교사와 인권운동 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의 B씨, 그리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라는 청소년 인권단체를 통해 활동 해 온 청소년 2명이 참석하였다. 아수나로란 무라카미 류의 소설인 「엑소더스」에 등장하는 청소년들의 전

국적인 조직에서 따온 것이다. S 교사는 교직 경력 36년의 교사로 이전 부임했던 학교에서도 4년 반 동안 생활지도부장을 맡았었다. S공고는 재학생 1,650명, 교사가 180명에 달하는 대규모 학교이다. 이전 근무 학교인 K고의 학생 수도 1,730명이나 되었다. B씨는 오랫동안의 인권 운동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학생 및 청소년 인권 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참석한 2명의 청소년 가운데, 한 명은 C군으로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며, 한 명은 작년에 고교를 졸업하고 D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J군이다.

C군의 경우,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들은 것은 입학식때였으며, 주로 두발, 복장과 관한 내용과 처벌 규정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할 때,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시 바뀐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번은 C군이 가방에 액세서리를 달았는데, 이로 인해 생활지도부장 교사에게 불려가 사과문을 작성하였다. 규칙상으로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액세서리는 착용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뱃지도 이에 속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때 생활지도부장 교사가 마구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도 하였으나, 동료 교사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뱃지조차 못 달게하는 학교규칙이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진자 받아들이기 힘들음을 토로하였다. 한편 학교생활규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두발, 복장 규정 등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외투 색깔까지 지정하고 있으며, 원색의 모자 착용을 금하고 있다. 엄격한 규칙도 문제지만, 두발 규정처럼 애매한 점도 문제이다. 단정한 두발을 갖춘다는 식의 애매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발을 자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처벌 기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J군의 경우, 학교생활규칙에 매의 굵기 등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학창시절을 회고했다. 한편 학생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 경비가 필요한데, 실제 단위학교에서는 학생회비를 챙겨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생회 활성화의 선행 조건으로 학생회 활동 경비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이야기에 대해 J교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S공고의 경우, 학교생활규칙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며, 입학시 용의·복장 규정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한다. 학교생활규칙은 학생회장, 부회장 등의 학생대표와 생활지도부 담당교사가 함께 초안을 작성한 후 생활지도부 소회의를 거친다.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묻고, 2주 동안 교직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인물을 작성하고 전체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공람하게 한다. 이후 전체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학교장의 결재로 완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이므로 당연히 지켜야한다.

학생지도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두발이며, 교복에 관한 것이다. 교복의 경우, 교복업자가 교복 제작시 변형된 형태로 만들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흡연, 오토바이 타기, 월담 등이 지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적발시 무조건 도망가기 때문이다.

아마 이러한 규정을 학생들이 지키기 싫어하는 이유는 규제에 얽매이기 싫어서이며, 개성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과 연예인 모방 심리 작용과 이성 교제시 멋을 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돈도 없고 귀찮아서 두발 및 복장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두발 및 용의복장을 풀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학교생활규칙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서 학생들에게 공람케 하고,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S공고의 경우, 이 학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외부인이 ID를 도용, 접속하여 심지어 욕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규칙을 어긴 학생들에게는 먼저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사회활동에 필요한 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반성문을 쓰게 한다. 그 외에 봉사활동을 시키기도 한다. 학생 징계 시에는 학생 본인 및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학교의 지도방침을 설명한다.

학생들이 학교 규제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등 불만을 제기시, 익명으로의 무작정 투서는 상대하지 않으며, 기명인 경우에는 본인을 불러 의견을 듣고, 이의 상황을 설명한다. 공감이가 이루어질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답을 한다.

생활지도부장으로 학생 지도시 가장 어려운 점은 규정을 어기면서 자기변명과 반항으로 일관하는 학생을 설득하는 일이며, 학생말만 믿고 학부모가 무조건 항의할 때, 생활지도부의 방침과 담임교사의 의견이 어긋날 때, 문제의 발생시 학교장, 교육청에서 무조건 가해자로 인식할 때, 선의의 지도가 뉴스거리로 잘못 오도될 때라고 답해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학교장, 교육청과의 관계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한편 생활지도부장은 대부분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8시 30분경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시간이 타교사들에 비해 길며, 학생지도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근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 전교생이 30명인 작은 지방 학교의 생활지도부장이거나, 1,600, 1,7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대규모학교의 생활부장이거나 같은 7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생의 인권만큼 교사의 인권도 지켜졌으면 하며, 문제 교사와 문제 학생, 교실의 학원화, 마스크의 영향으로 인한 교사 경시 풍조 퇴출, 학생들의 악감정을 유발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권위적 태도와 욕설 및 폭력행사의 지양, 학생자치회의 월례회의 정례화. 교사·학생들에 대한 의식교육 강화, 교사·학부모·학생과 공감대 형성은 물론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사 대 학생 비율 감소, 음란 PC방, 폭력적 영상물, 마스크 등 각종 홍보물 등을 막을 수 있는 건전한 학생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근간으로 한 규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며, 학생 인권이란 미명하에 교사의 지도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들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통해 학생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guide line)을 마련했으면 한다. J교사는 미국이 가벼운 범죄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라는 무관용 정책을 펴 효과가 있었다는 예와 이러한 미국식 엄벌주의를 일본이 받아들여려고 한다는 사례를 소개한 신문과 엄격한 선생님보다 친구처럼 다정한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급에서 이지메(집단 괴롭힘)가 일어나기 쉽다는 일본 연구조사 결과를 소개한 신문 기사를 준비해 오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인권 관련 문제들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오고가는 틈틈이 B씨는 학생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학교생활규칙이 갖는 문제는 애초 학생 인권과 관련해 들어가지 않았어야 할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며, 규정이라고 하지만,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같이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의 모호한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집행과정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규칙 자율 제정, 학교생활규칙 제정시 학생회 참여의 모범 사례 발굴과 함께 학생 인권 개선과 관련한 외국 사례연구, 학생 인권 workshop, 교육청 단위의 연수 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V.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칙 내용 분석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부분과 금기 사항은 학교생활규칙을 통해 경계지어진다. III장과 VI장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칙에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 중·고등학교 규칙들은 어떤 요소들을 담고 있는지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학생들이 지켜야할 학교생활규칙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의 나라들로는 인권에 대한 보장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알려진 북미의 미국,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며, 동양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두발 및 교복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칙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일본과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향을 받은 대만, 그리고 중국의 사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미국, 캐나다, 호주 학교 규칙

1) 미국 학교 규칙 및 체벌 규정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자유권으로서 머리의 모양이나 복장을 선택하는 학생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고 학생의 복장이 깨끗하고 단정할 경우에, 의상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학생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해치게 될 때, 즉 헤어스타일이나 복장이 다른 학생에 대한 안전이나 위생 및 수업 분위기 등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를 할만한 근거가 제시될 때, 학생 복장 선택을 규제하려는 학교의 규칙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상적인 운영과 그 학교가 교육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60년대부터 두발이나 구레나룻, 여학생의 탱크 탑을 금지하는 것 등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으며, 1980년도에는 청소년 비행의 급격한 증가 탓에 복장 규정(Dress Code)이 엄격해졌다. 불량집단의 복장과 구분을 짓기 위해 교복의 도입이 검토되었으며, 1990년대가 되고 나서는 미국사회의 보수 경향, 가정 문제, 교육 문제가 배경이 되어 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994년 8월 캘리포니아 주 회의에서는 “학교교복법”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이 법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지역 교육위원회의 독자적 판단(연방 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개입이 아닌, 해당 교육처 개별적인)으로 복장 규정을 결정할 수 있다.
- 교복 규정은 학교, 교육위원회, 보호자가 합의 결정한다.
- 부모가 교복을 입히지 않는 교복 예외 규정을 둔다.

- 빈곤 가정에 대해 배려한다.
- 교복 비착용자에 대해서도 보호(교실에서의 차별, 등교거부 금지)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1994년 9월 신학기부터 공립 초중학교를 시작하여 교복이 채택된 후 1995년 사법 장관, 1996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 학교 폭력 예방 방안으로 교복 정책을 지지해 전미 16,000개의 교육위원회에 교복개정을 권장하는 매뉴얼을 보냈다. 그 후 교육 착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가 점차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2006년 5월 초등학교의 25%, 중등학교 12% 정도가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클린턴 매뉴얼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계획의 처음부터 보호자(학부모)가 참가한다.
-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다.
- 임의(표준 옷)인지 의무(교복)인지를 결정한다.
- 강제화했을 때의 예외 규정을 둔다.
-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 빈곤 가정에게는 경제적 원조를 한다.
- 학생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미국의 학교 규칙은 일반적인 학교 규칙, 운동장에서 학교 규칙, 점심시간의 규칙, 일반적인 규칙 위반에 대한 처리 과정, 복장 규칙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적인 학교 규칙으로는

- 손과 발을 가지런히 하고 물건은 제자리에 둔다.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 항상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어른들께 경의를 표하며, 권위를 가진 분들께 순종한다.
- 학교의 물건이나 개인 소지품을 소중히 여긴다.
- 교장 선생님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은 항상 교정 내에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은 본인의 건강이나 학업에 필요한 물건 이외에 다른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된다. 건강이나 학업에 필요한 물건 이외의 물품을 가져올 경우에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약물이나 무기, 그 밖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학교에 가져오면 안 된다.

운동장에서 학교 규칙으로는

- 똑바로 조용히 운동장으로 향하여 걸어간다.
- 조직된 운동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 운동장에서 놀 때나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는 잘 생각하여 사용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며 사용한다.
- 장남감이나 음식물을 운동장으로 갖고 들어가지 않는다.

- 야구공, 야구 방망이, 미식축구 용품들은 지정된 체육시간에 담당 교사의 지도 아래서만 사용할 수 있다.
- 화장실을 올바르게 사용한다.

점심시간의 규칙으로는

- 조용하고 똑바로 해당 학급의 지정된 자리로 가며, 허락을 받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 조용히 이야기한다.
- 자신의 음식만을 먹는다.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는다.
- 허락을 받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린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일반적인 규칙 위반에 대한 처리 과정으로는

- 처음 발생한 잘못된 행동은 담당 교실의 교사가 처리한다.
- 그 후의 잘못된 행동은 아래의 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 a. 담당교사 또는 부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상담을 받는다.
 - b.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벌칙을 받는다.
 - c. 방과 후에 30분 간 학교에 남아 있다.
 - d. 계속 규칙을 어길 경우 벌칙 경고장을 받는다.
 - e. 교장 선생님이나 부교장 선생님께 의탁된다.

복장 규칙으로는

- 모자나 야구모자, 또는 밴드나(머리에 쓰는 스카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 폭력이나 성 행위, 흡연이나 약물 복용, 음주를 장려하는 말이나 그림이 있는 옷이나 장신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너무 짧거나 속이 보이는 옷은 허용되지 않는다, 복부가 드러나거나 끈 티셔츠는 허용되지 않는다.
- 너무 크거나 발가락이 나오는 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발은 활동적인 체육 시간에 적합해야 한다.
- 킹즈(Kings), 레이더스(Raiders), 시카고 불스(Chicago Bulls) 등의 운동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버클 선을 넘는 긴 벨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버클에 글자가 새겨진 벨트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 사이즈가 너무 큰 옷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이 마무리 되지 않은 옷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학교의 일반적 규칙 내용 역시 규제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1) 미국 Stoller Middle School 규칙

미국의 Stoller Middle School은 오레곤(Oregon)주 포트랜드(Portland)에 위치해 있으며, 주정부가 7년 전에 세운 공립학교이며, 남녀공학이다. 근처에 사립학교도 많이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학교로 사립학교에 뒤지지 않는 시설 및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음은 Stoller Middle School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한 학교 규칙에 들어있는 주요 내용들이다.

① 학교 규칙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학교 규칙을 인지하고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집에는 지도와 상담, S-Cubes라고 불리는 사물함 사용, 매체 센터 운영 시간 및 이용법, 컴퓨터, 카메라 등 공학 매체 사용, 교과서 대여비와 벌금, 대체 교사, 참가비, 필드 트립(field trips), 파티, 숙제, 학년, 성적표(progress reports), 리포트 카드(선생님들에게는 리포트 카드 작성 방법을, 부모들에게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리포팅 과정과 학업 성취도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자료), 통학, 점심, 화장실 사용, 껌, 스케이트 보드·스쿠터·롤러블레이드, CD/MP3 플레이어·라디오/워크맨·디지털 카메라·핸드폰과 삐삐, 캠퍼스 폐쇄 시간, 헬스 룸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다.

1. 지도와 상담(Guidance & Counseling)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관리, 교우관계, 담배, 알코올, 그리고 마약과 관련한 문제들은 상담교사와 상담토록 한다.

2. 전화와 폰 메시지(Telephones and phone Messages)

교실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으나, 가족 응급 사항에 관련한 메시지는 전달된다. 부모들도 학교로 전화해 학생들에게 일상적 메시지를 건낼 수 없다. 학생들은 삐삐(beepers)나 핸드폰(cellular phones), 그 외 다른 통신 장비를 가져 올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교육 환경을 방해하기 때문이며, 만약 이것들을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복장(Fashion Tips)

Stoller 학교에는 복장 규정(dress code)이 있다. 이 규정은 교육 환경의 저해요소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켜야 한다. 두꺼운 외투와 모자를 학교에서 착용할 수는 있지만, 학교 건물 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추울 때는 교내에서 입을 수 있는 쇼핑 목록에 있는 풀오버나 지퍼 스타일의 양털 코트, 방풍용 자켓, 스웨터나 셔츠를 착용할 수 있다. 머릿수건, 모자, 이외의 머리덮개는 건물 내에서 쓸 수 없다. 바지는 허리에 걸쳐야 하며, 바닥에 끌려서는 안 된다. 벨트는 적당한 길이로 매야하며, 늘어져서는 안 된다.

신체 모양을 강조하기 위한 옷이 주요 패션이라는 것은 알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켜야

한다. 셔츠와 탑은 배를 덮어야 한다. 가느다란 어깨끈 탑은 입지 못한다. 탑은 최소한 1개의 넓은 것으로 된 것이어야 하며, 속옷을 가리는 것이어야 한다. 반바지나 치마는 가랑이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3''가 되어야 한다. 등과 어깨가 완전히 드러나는 홀터 탑과 등이 없는 탑은 입을 수 없다. 잠옷은 학교에 입고 와서는 안 된다. 남녀 학생 모두 탱크 탑은 다른 셔츠 아래 입을 수 있다. 복장과 기타 착용물에 갱과 관련하거나 알코올, 마약, 담배 생산을 광고하는 부적절한 글이나 그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신발(Shoes)

신발이나 샌들은 항상 신고 있어야 한다. 안전을 위해 굽이 높은 신은 피한다. 배낭은 학생들의 수납공간에 보관해야 한다. 목에 거는 지갑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최소한의 장식물을 착용토록 한다. 손이나 팔, 얼굴, 그리고 옷에 글자를 새기거나 쓰지 말아야 한다.

② 처벌 규정

위에서와 같은 학교 규정을 어겼을 경우, 어긴 규칙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에 못나오도록 한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사항이 아니면, 그런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담임교사의 훈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마약을 포함, 다음과 같이 여러 사람을 해하는 일일 경우, 정학이나 퇴학 조치된다. 이러한 사항은 「The Beaverton School District에서 지켜져야 할 지침을 담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다.

라이터, 포켓 나이프나 칼, 성냥, 폭죽이나 불꽃놀이용 폭약의 소지, 사용이나 배포는 정지(등교는 하되 별도의 공간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에서 퇴학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폭발물이나 폭발 장치, 2인치나 그 이상의 날을 지닌 칼, 모든 형태의 총 등은 물론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쇠몽둥이, 체인, 장난감 무기와 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의 소지, 사용, 배포는 일반적으로 퇴학 조치된다. 시거나 담배, 술, 불법 마약, 처방전(약국에 반드시 보관되어야 하는), 부모의 동의하에 약국에서 개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의사처방없이 구할 수 있는 약 등을 사거나 사용하거나 소지, 팔거나 나누어주면 정학이나 퇴학에 처해진다.

(2) 미국 체벌 규정

① 체벌 규정

미국에서도 체벌 사용에 관한 논쟁과 법적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체벌을 폐지하였던 일부 지역에서 체벌을 부활시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교내 체벌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인권을 유달리 강조하며 '아동학대(child abuse)'에 대해 엄한 법적 제재를 하는 미국이라 교내 체벌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을 것으로 대부분 짐작한다.

<표 65> 교내 체벌 금지 국가

| 연도 | 국가 | 연도 | 국가 |
|------|-------|------|------|
| 1783 | 폴란드 | 1936 | 노르웨이 |
| 1820 | 네덜란드 | 1949 | 중국 |
| 1860 | 이탈리아 | 1950 | 포르투갈 |
| 1867 | 벨기에 | 1958 | 스웨덴 |
| 1870 | 오스트리아 | 1967 | 덴마크 |
| 1881 | 프랑스 | 1986 | 영국 |
| 1890 | 핀란드 | 1990 | 뉴질랜드 |
| 1900 | 일본 | 2000 | 태국 |
| 1917 | 러시아 | 2001 | 케냐 |
| 1923 | 터키 | 2004 | 캐나다 |

<자료 : 미국체벌 반대 전국연합>

그러나 실상은 미국 50개 주(State) 중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는 28개 주에 불과하고 나머지 22개 주에서는 제한적 또는 전면적인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미연방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체벌을 받는 학생 수도 연간 3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미국 학교 체벌건수의 3/4은 텍사스, 아칸소, 미시시피, 테네시, 앨라배마 등 남부 5개 주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도 제일 먼저 체벌을 규제하기 시작한 주는 1867년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뉴저지(New Jersey)주이고 가장 최근엔 펜실베이니아 주가 2005년 체벌제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다시 말해 같은 미국에서도 교내 체벌 사용 규제를 놓고 140년의 논란이 있어 왔으며 아직도 22개 주에서는 체벌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학교 체벌과 관련 지역별로 큰 정서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지도에서 보듯이 주로 대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북부권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집중되어 있는 남부 지역의 교외 및 시골에서는 전반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1] 미국 각 주의 체벌 허용 현황

2006년 9월 30일자 <뉴욕타임스>는 체벌을 폐지했던 일부 주와 교육구에서 최근 들어 교육적 체벌을 부활시키고 있어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의 파이크 카운티 교육구에서는 1993년부터 체벌을 금지시켜 왔으나 지난해부터 이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미시시피의 로렐 교육구 교육위원회도 지난 8월 교내 체벌을 허용하는 체벌 부활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러한 체벌 부활 움직임에 미국소아학회, 전국학교심리학회 등과 같은 체벌 반대 단체들이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뉴햄프셔 대학교 가족연구소장인 스트라우스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세기 후반에 남편들의 아내 폭행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사회가 교내 체벌 부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해 왔다고 믿는다"며 체벌 부활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물론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동 심리학자인 제임스 돕슨, 소아과 의사인 듀보 라베넬 같은 이들은 "학부모 동의하에 교내 체벌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나라 전체가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믿는다"며 체벌이 학생 교육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텍사스 주 에버먼 중학교에 3년 전 부임한 프라이스 교장은 대표적 체벌 신봉론자다. 그는 '매를 아끼다 아이를 망친다(Don't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이 직접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있다. 그는 "체벌을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아이에게 왜 맞아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사용하면 교육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 아동 학대와 교육적 체벌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마치 한국에서 '사랑의 매' 논쟁을 벌이는 것과 흡사한 논란이 미국에서도 일고 있는 것이다.

체벌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법정 소송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 1월 플로리다 웨스트사이드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독서 수업시간에 반복해서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있다는 동료 교사의 불평을 듣고 학부모의 동의하에 체벌을 가했다가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결국 10일간 직무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 교사는 체벌을 가하기 전 아이의 학부모와 독서 교사 간에 상담을 주선해주었고 아이의 엄마가 자신에게 체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아빠 같은 마음으로 체벌을 했다고 교사를 편들어 주었으나 법정에서는 엄정하게 판결을 내렸다. 아무리 학부모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육구에서는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벌과 관련된 법적 소송이 10여 차례 제기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06년 지난 8월 발생한 오클라호마의 카메론 카운티에서 진행 중인 야구부 코치와 학생간 소송이 있었다.

앞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의 일반적인 경향은 교육구에서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벌을 가한 교사들이 불리한 판결을 받고, 법적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교육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구와 교사 편을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일단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 교육구에서 막대한 소송비 부담이 뒤따르고 교사가 곤경에 처하기 때문에 가급적 체벌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사들에게 권장하고 있다(<http://www.ohmynews.com/>, 2006. 10. 14. '미국도 연간 30만 명이 체벌을 받는다').

② 체벌 형태

미국에서 체벌을 다른 말로 '패들링(Paddling, 노처럼 생긴 막대로 때리기)' 또는 '스팽킹(Spanking, 불기썩을 찰싹 때리기)'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일반적으로 넓적한 판자 모양의 매로 불기썩을 때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2] 노처럼 생긴 미국의 체벌도구

지각생, 상습적 수업태도 불량 학생,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한 학생, 집단 따돌림을 가한 학생 등이 주로 체벌 대상이다.

체벌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학년 초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체벌 동의' 서명을 받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의 처벌(반성문 제출, 교장의 직접 지도, 학부모 호출 및 학생과 수업 참여, 방과 후 나머지 공부 참여, 토요일 등교, 정학 등)을 받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체벌을 허용하는 텍사스의 ARP 교육구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Teachers' Handbook)에서 다음과 같은 체벌 시행 지침을 권장하고 있다.

1. 체벌을 할 때는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목격자를 대동해야 한다.
2. 학생으로 하여금 목격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도록 한다.
3. 체벌 후 학부모에게 생활지도 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4. 체벌을 할 때는 잘못된 행동의 경중, 학생의 나이 및 덩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체벌(매)의 강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너무 심하지 않게'라고 권장하다 보니 "도대체 어느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냐?"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http://www.ohmynews.com/>, 2006. 10. 14. '미국도 연간 30만 명이 체벌을 받는다').

2) 캐나다 학교 규칙

(1) 온타리오(Ontario)주 미시소거(Mississauga) 지역 학교 규칙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의 학교 복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마치 대학생들처럼 복장이 매우 자유롭다. 그러나 사립학교와 종교 학교의 경우에는 교복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들도 대부분 티셔츠에 바지, 여학생의 경우 스커트를 입고, 겨울이면 라운드 스웨터를 덧입는 비교적 편안한 복장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온타리오 주의 미시소거(Mississauga) 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교복에 관한 지침들은 그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중학교에 해당하는 6~8학년의 경우, 여학생은 학교 마크와 학교 이름이 수놓아진 초록색 골프 셔츠(짧은 소매나 긴 소매)나 초록색 스웨트 셔츠에 블랙 워치 스커트를 입는다. 짙은 파란색이나 검은색 바지를 착용할 수 있으나, 골덴 바지나 천으로 된 주머니가 달린 옷은 안 된다. 흰색, 파란색, 검은색이나 초록색 양말이나 레오타드를 착용할 수 있으며, 신발은 아무거나 무방하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도 블랙 워치 스커트를 제외하고는 여학생과 같은 복장을 착용한다. 체육복으로는 남녀 학생 모두, “saints” (크리스찬 학교임을 의미)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는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마크가 수놓아진 초록색 반바지를,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마크가 수놓아진 파란색 반바지를 착용한다. 날씨가 따뜻한 기간동안에는 남녀 학생 모두 짧은 소매의 초록색 골프 셔츠를 입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마크가 수놓아진 초록색 반바지를,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문양이 그려진 파란색 반바지를 착용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9~12학년의 경우, 여학생들은 학교 마크와 학교 이름이 수놓아진 초록색 골프 셔츠(짧은 소매나 긴 소매)와 학교 마크와 학교 이름이 수놓아진 초록색 스웨트 셔츠, 블랙 워치 스커트를 입는다. 짙은 파란색이나 검은색 바지를 착용할 수 있으며, 몸에 꼭 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짙은 파란색이나 검은색 무릎 양말, 레오타드, 긴 양말을 착용할 수 있다. 검은색 학교 신발이나 간편화를 착용한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마크와 학교 이름이 수놓아진 초록색 골프 셔츠(짧은 소매나 긴 소매)와 학교 마크와 학교 이름이 수놓아진 초록색 스웨트 셔츠, 짙은 파란색이나 검은색 바지를 착용한다. 이때 바지는 허리부터 걸쳐야 한다. 검은색이나 파란색 벨트를 매며, 짙은 파란색이나 검은색 양말을 신고, 검은색 학교 신발이나 간편화를 착용한다.

9~12학년에 이르는 남녀 학생들의 체육복은 검은색이나 파란색, 초록색의 반바지 가운데 하나를 착용하며, “Saints” 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는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서 볼 때, 중학교와 고등학생의 복장에서의 차이는 8학년까지는 아무 신발이나 신을 수 있으나,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학교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는 점 외에 그다지 다른 차이점은 없다.

이외에도 미시소거 지역의 복장에 관한 지침들은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복장은 단정하고, 깨끗하게 착용하며, 적당한 크기의 것을 품위있게 착용한다. 골프 티는 항상 넣어서 입어야 한다. 스웨트 셔츠 하나만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골프 셔츠위에 덧입어야 한다. 6~12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벨트 고리가 있는 바지에 검은색이나 짙은 파란색 벨트를 매야 한다. 이보다 저학년의 학생들은 바지와 같은 색상의 벨트를 매야 한다.

한편, 까다로운 복장을 요구하는 학교들은 신발, 양말까지 모두 정해지고 있으며, 정해진 곳

에서 교복을 사야한다.

(2) 토론토(Toronto) Brebeuf 학교 규칙

토론토(Toronto)에 있는 가톨릭 남자고등학교인 Brebeuf 학교의 교복 규정도 신발, 양말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곳에서 교복을 사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례에 속한다.

① 바지는 회색 면바지를 착용해야 하며, 다른 것은 허용되지 않고, 어떤 형태든 변형해서도 안 된다.

② 셔츠는 흰색을 착용하며, 학교타이를 매야한다. 단 졸업반 학생들은 졸업반 학생용 타이를 맬 수 있다. 따뜻한 계절이 이어지는 개학일인 8월말에서 9월초에서부터 추수감사절까지, 그리고 5월 1일부터 학기말인 6월말까지는 학교 마크가 수놓아진 흰색이나 검은 골프 셔츠를 입을 수 있다. 속셔츠는 짧은 소매의 흰색이어야 하며, 글씨나 표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③ 양말은 아무 색상이나 괜찮으며, 스포츠 양말도 무방하다.

④ 신발은 검은색의 학교 신발을 착용해야 하며, 런닝화를 신어서는 안 된다.

⑤ 겨울에는 흰색 셔츠위에 학교 마크가 새겨진 양모 탑이나 Brebeuf 학교 코트, 학교마크가 수놓아진 스웨터, 학교마크가 수놓아진 조끼 등을 착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토론토의 York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학생들은 실용적인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착용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가톨릭 학교 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복장 규정(dress code)에 따라야 한다.

(3) 처벌 규정

캐나다는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사회인만큼 학교 규칙에 대한 전체적 통합성은 낮다. 지역마다, 학교를 세운 종교재단에 따라 모두 다 틀린 기준을 적용한다. 학교 행정도 일관된 규정을 적용하기보다 심사관이나 사무관에 따라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하지만, 학생 및 학부모들은 담당자들의 판단을 대부분 믿고 따른다. 이는 일처리가 더디기는 하지만 그만큼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하는 자세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인종들을 일관된 하나의 틀에 넣기보다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우선시한다. 물론 개개인의 인권 존중이 중시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규칙을 어기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학교 규칙에 따라 담임교사가 몇 차례 경고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학부모에게도 통지된다. 그러나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는 일은 없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권 존중이 중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교사들에게 따르는 책임 또한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심지어 교내에서 학생들의 신변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피하기 위해, 쉬는 시간에는 교내가 아닌 밖에 나가 놀도록 한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토론토에 거주하며, 아들을 가톨릭 중학교에 보내고 있는 한국 학부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캐나다는 날씨가 추운 지역인데, 쉬는 시간에도 가급적 아이들을 교실이나 교내에 두지 않고 운동장에 나가 놀도록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겨울모자, 장갑 등 외부에서 놀아도 춥지 않도록 준비해서 보낼 것을 당부한다, 이런 것을 보면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생각해 미리 그런 것을 차단하는 것에서 참 매정하다 싶으면서도, 오히려 그런 점이 있기에 아이들에게 일정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합리적,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교사들의 이런 태도와 인식이 학생들에게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부모들은 교사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같다." (44세, 여자 학부모, 토론토).

3) 호주 학교 규칙

호주는 사립, 공립 또는 기독교 학교 같은 유형에 따라 각각 교복·복장 규정이 다르다. 국가에서 교복을 권장하고 거의 모든 학교가 교복을 입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복회사의 것을 사 입기도 하지만, 호주의 학교는 학교 유니폼 샵을 통해서 학교 제품만 허용된다. 유니폼 샵에서는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수영복, 머리끈(학교지정색상), 뱃지 등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판다. 가방도 학교 가방을 땀다. 모자, 가방 등에는 학교 이름 로고가 모두 박혀 있다.

호주는 영국식 교육법을 들여왔기 때문에 엄격한 편이다. 학교 규칙은 예외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2006년 8월 빅토리아 주 선베리 다운스 중·고등학교 여학생이 십자가 목걸이를 교복 밖으로 드러내 놓고 다니다 떼지 않으면 귀가 조치하겠다는 경고를 받고 학교 측에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다.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 허가를 받은 학생이 있으나, 이 학생은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학교 측은 밝혔다(국민일보, 2006년 8월 23일자).

빅토리아 주에서는 각 학교 카운슬러가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협의하여 복장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타미티어 고교의 경우에는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 교복을 바꿨다. 종전 교복 색상이 너무 칙칙해하다는 학생들의 불평이 많자, 이를 학생회 안건으로 채택했는데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찬성해 산뜻한 교복으로 바꿨다.

(1) St Margaret's Anglican Girls School 학교 규칙

St Margaret's Anglican Girls School은 브리즈번(Brisbane)에 있다. 이 학교는 학교명에서 알 수 있듯 영국 성공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중립학교로, 올해로 개교한지 111년째이다. 학년당 학급 수는 4~5개이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안팎이다. 의식(spirit), 신념(faith), 열정(passion), 용기(courage), 강직(integrity), 존중(respect)을 교육의 주요한 덕목으로 하고 있다.

St Margaret's Anglican Girls School의 학교 규칙은 2006년 3월에 발간한 Activities Handbook에 담겨 있다. 이러한 규정집은 학년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지되며, 학교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학교의 자긍심을 느끼도록 교복을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 생활시 교복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지켜야할 교복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체육을 하기 위해 집에서 차로 곧 바로 이동할 때와 오후 4시 30분 이후 스포츠를 하기 위해 차로 집으로 갈 때는 체육복을 착용한다.

② 학교에서의 모든 스포츠 활동시에는 체육복을 착용한다.

③ 학교에서는 갈색 가죽 신발을 착용해야 하며, 달리기 할 때는 체육복을 착용하고, 흰색 신발을 신는다.

④ 1, 2학년생은 1학기과 4학기 때 체육복을 입는다. 1학년부터 3학년 동안 HPE(Health and Physical Education)활동 날에는 학교 밖에서도 체육복을 착용하고, 갈색 신발을 신는다.

⑤ 체육 활동시간에 참여할 때는 흰색 신발과 베이지색 양말을 신는다.

⑥ 과외활동으로 관람시에는 학교정신을 지지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교복을 착용한다.

⑦ 목에 레이스를 묶고, 칼라에는 학교 배지를 단다. 학교 배지는 흰 색 칼라 왼쪽에 단다.

⑧ 갈색 가죽 신발과 베이지색 양말은 교복과 함께 반드시 착용한다.

⑨ Speech Nights(일 년 동안 학교 내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정계, 재계, 학계 등의 지역사회 주민에게 알리는 행사)때나 성가 합창때 그리고 이외의 다른 특별 행사때에는 흰색으로 수놓아진 포켓 배지를 단 체플 복장을 한다.

⑩ 머리 길이가 칼라 밑으로 오는 학생들은 흰색, 짙은 파란색, 짙은 갈색 리본으로 머리를 뒤로 묶는다. 머리띠는 어떤 형태의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작고, 짙은 갈색이나, 짙은 파란색의 편은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의 머리는 반드시 자연 색을 유지해야 한다.

⑪ 교복을 입고, 장신구를 착용해서는 안 되며, 손톱을 칠하고 화장을 해서도 안 된다. 시계는 착용할 수 있으며, 종교적 의미를 지닌 작은 매달은 걸 수 있으나, 교복 밑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 순금이나 은의 작은 장식단추는 달 수 있으며, 진주 귀걸이나 작은 귀걸이를 달 수 있으나, 귀걸이는 한쪽 귀에 하나만을 귓볼의 위치에 착용해야 한다.

⑫ 가방은 St Margaret's 학교 가방을 사용한다.

⑬ Sun Safety라는 주일학교를 운영한다. Sun Smart 정책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학생들은 모자를 착용토록 하며, 야외에서는 햇빛을 방지하기 위해 파나마 모자를 쓰도록 한다. 초등학교생은 풀에서 반드시 sun shirt(수영할 때 입는 자외선 차단 티셔츠)를 입어야 한다. Sun Smart는 모든 학년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파나마는 베이지색의 학교 정식 모자이며, 딱딱한 쉹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생들의 경우, 점심시간에는 파란색으로 된 모자를 쓰고 먹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데, 이러한 규칙은 피부암이 많아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교 이동수업 할 때도 파나마를 꼭 쓰고 다녀야 한다.

⑭ 자유복을 입을 때의 기본 원칙은 Sun Smart와 때와 같으며, 안전을 유지하고 학교의 강령을 지키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 어깨를 드러내지 않으며, 목선을 너무 깊게 파지 않으며, 배

를 노출하지 않는다. 신발은 굽이 낮은 것, 스니커즈, 부츠나 발목까지 끈으로 연결된 샌들을 착용할 수 있으나, 엄지발가락과 검지 발가락사이에 끼우는 샌들인 thongs는 신을 수 없다. 스커트와 윗도리, 드레스의 길이는 얇전한 정도로 유지한다. 의복은 깨끗하고 단정한 상태로 착용해야 하며, 찢어진 청바지는 입을 수 없다.

학교생활에 관한 두발, 복장, 징계, 처벌에 관한 각종 규칙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개되며, 학교 규칙은 학교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복장에 관한 규정은 위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활동시에는 체육복을 입어야 한다. 학교에서 1교시나 2교시가 체육인 학생들 중에서도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오는 학생과, 집에서 학교까지 개인차로 등교하는 학생은 체육복을 입고 등교 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은 교복을 입고 등교해서 학교에서 갈아입어야 한다. 그리고 하교 할 때는 전학생이 교복으로 바꿔 입고 하교를 해야 한다. 체육복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치마, 반바지, 그리고 트레이닝 복 중 입고 싶은 것을 입어도 상관없다.

학교에서 단체로 행사에 참여할 때는 갈 때는 교복을 입고 간다. 예를 들면 다른 학교도 다 모이는 장소에는 교복을 입지만, 학교 운동회때에는 하우스 체육복을 입고 가기도 한다. Anglican 학교에는 house라는 것이 있다. 학교에서 단체 운동회를 할 때나, 수영시합을 할 때는 학년별로 운동회를 하지 않는다.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 섞여서 하나의 하우스(house)라는 팀을 정해서 각각 하우스끼리 경쟁을 한다. 이때 각자 자기 하우스 체육복을 입고 자기가 속한 하우스에 가서 자기 하우스가 이기도록 응원을 한다. 하우스는 총 8개가 있다. 그리고 그 하우스 이름 앞글자를 딴 배지를 흰색 칼라 왼쪽에 달고 다닌다.

자유복 매학기 마다 free dress day라고 해서 입는 날이 정해져 있다. 또 그 날은 무슨 색 옷을 입으라고 하지만 꼭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유복일 경우에도 어깨를 드러내지 않으며, 목선을 너무 깊게 파지 않으며, 배를 노출하지 않는다. 스커트와 윗도리, 드레스의 길이는 얇전한 정도로 유지한다. 의복은 깨끗하고 단정한 상태로 착용해야 하며, 찢어진 청바지는 입을 수 없다. 그러나 규칙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자유복에 대해서는 무엇을 입어도 상관없다.

두발과 관련해서는 머리 길이가 칼라 밑으로 내려올 때는 흰색, 짙은 파란색, 짙은 갈색 리본으로 머리를 뒤로 묶는다. 머리는 하나로 묶어야 한다. 머리띠는 어떤 형태의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작고, 짙은 갈색이나, 짙은 파란색의 핀은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의 머리는 반드시 자연 색을 유지해야 한다.

용모와 관련해서는 화장을 할 수 없으며,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를 수 없다. 종교적 의미를 지닌 작은 매달은 걸 수 있으나, 교복 밑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 순금이나 은의 작은 장식단추는 달 수 있으며, 귀걸이는 점, 또는 진주 귀걸이 그리고 아주 작은 링 귀걸이는 허용되지만 다른 모양의 것은 안 된다. 귀걸이는 한쪽 귀에 하나만을 귓볼의 위치에 착용해야 한다. 머리 색은 자연색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염색한 학생들이 많고, 웨이브한 애들도 많아서 교사들도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화장하면 안 된다고 써 있기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화장을 하고

다녀서 이제는 교사들도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고 전화인터뷰에 응한 한국 유학생은 이야기 한다. 장식단추를 달고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달면 경고를 받는다.

학교 신발로 꼭 갈색 가죽 신발을 신어야 하며, 매일 신발을 닦아서 깨끗하게 신어야 한다. 규정에는 체육시간에 흰색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으로는 체육시간에 아무색 운동화나 신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옆의 다른 학교의 경우, 흰색과 검은색 운동화만 신어야 한다. 신발은 굽이 낮은 것, 스니커즈, 부츠나 발목까지 끈으로 연결된 샌들을 착용할 수 있으나, 엄지발가락과 검지 발가락사이에 끼우는 샌들인 thongs는 신을 수 없다.

가방은 St Margaret's 학교 가방을 사용한다. 학교 가방을 꼭 사용해야 하지만 학교 가방 종류가 밀고 다니는 것, 드는 것, 거 메는 것으로 다양하며 학교 체육가방을 들어도 괜찮다. 또 학교 밖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가방은 자유롭게 들 수 있다.

체플시에는 완벽하게 교복을 입고 가야하며, 체육복을 입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로 흰색으로 수놓아진 포켓 배지를 달지는 않는다.

이러한 규칙이 운영되는 이 학교 9학년에 다니는 한국 유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 규칙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이 학생은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유학한 학생으로, 복장, 두발, 용모 등에 관한 위의 규칙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신발이나 양말 그리고 모자 그리고 머리를 항상 묶는 거 이런 거 까지 일일이 다 체크 하는거 보면, 한국보다 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귀걸이를 허용하고, 머리색을 자유로 해도 봐 주는 거 보면 조금은 자유로운 측면이 있구요.” (15세, 9학년 여학생, 브리즈번).

학생들이 실제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규칙이 한국보다 많은데요, 여기 학생들은 다 지키는 것 보면 신기해요, 거의 모든 학생이 규칙을 다 지킵니다, 규칙이 느슨한 공립학교의 학생들도 학교 규칙은 잘 지킨다.” (15세, 9학년 여학생, 브리즈번).

(2) 처벌 규정

학교 규칙을 어겼을 때는 3차례에 걸쳐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도 걸리면 처벌을 하는데 주로 봉사활동을 시키거나 숙제를 내준다. 숙제는 단어를 외워오는 것이며, 봉사활동으로는 보통 쓰레기를 줍거나 청소를 한다. 그리고 교사의 일을 돕거나 심부름을 한다.

그러나 무단결석을 할 경우, 엄격히 처벌한다. 그 외의 경우, 교사들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야단을 치지 않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2. 중국, 대만, 일본 학교 규칙

1) 중국 학교 규칙

중국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중·고등학생에게 학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머리를 짧게 깎거나 스포츠형으로 머리를 유지해야 하고 여학생은 긴 머리가 허용되나 염색은 금지하고 있다. 두발 단속은 생활지도를 통해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가 새로 개정하여 200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학교 규칙은 다음과 같다. 중국 교육부는 “초중학생 규칙”, “초등학생 일상행위규범”, “중학생 일상행위규범”에 대한 수정 발표로 공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초중학생 규칙

1. 조국과 인민, 중국공산당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한다.
2.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법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 학교규칙과 기율을 준수하고 사회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
3. 과학을 열렬히 사랑하고 열심히 학습하며, 근면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물어보며 탐구하는 것을 즐겨야 한다. 적극적으로 사회실천과 유익한 행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4.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몸을 단련하고 위생을 중시해야 한다.
5.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강의함, 생활습관을 문명하고 건전하게 해야 한다.
6.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며, 부지런하고 겸손하며 소박해야 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야 한다.
7.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을 존경하며, 예절바르게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
8. 집단이나 조직을 사랑하고 서로 단결하며, 상호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지녀야 한다.
9.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말과 행동에 있어 일치해야 한다. 잘못을 알면 바로 고쳐야 하고 늘 책임감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10. 대자연을 사랑하고 생활환경을 애호하여야 한다.

(2) 중학생 일상행위규범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풍채를 중시해야 한다.

1. 국가의 명예를 수호하고 국기나 국장을 존경하며, 국가를 부를 줄 알아야 한다. 국기의식을 진행하거나 국가를 부를 때에는 모자를 벗고 바르게 서서 예의를 표시하며, 소년선봉대 대원이 경례를 표시한다.
2. 단정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다녀야 하며 소박하고 대범하여야 한다. 머리를 파마하거나 염색하지 말아야 하며, 화장하거나 장식품을 몸에 달거나 붙이지 말아야 한다. 남학생은 긴 머

리를 하고 다니지 말아야 하며, 여학생은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3. 위생을 중요시하고 훌륭한 위생습관을 길러야 한다. 아무데나 침이나 가래를 뱉지 말아야 하며, 폐기물을 마구 버리지 말아야 한다.

4. 행동함에 있어 문명해야 하며 지저분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싸우지 말아야 하며 도박하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에게 적당하지 않은 활동과 장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5. 취미와 건강을 즐기며, 색정, 살인, 폭력, 봉건미신의 서적과 잡지, 등 시청각제품을 보거나 듣지 말아야 하며, 건전하지 못한 노래나 가사를 듣거나 부르지 말아야 하며, 미신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6.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주운 물건은 주인을 찾아 돌려주어야 한다. 불량한 유희를 막아야 하며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7. 안전에 주의하며 화재나 물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며 전기감전이나 도둑질, 중독 등을 막아야 한다.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예절바르게 사람을 대하여야 한다.

8.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한다. 타인의 인격이나 종교신앙, 민족풍속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겸손하고 예의바르며 남의 것을 공손하게 사양하며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장애인을 도와주어야 한다.

9. 교직원들을 존경하고 서로 만났을 때에는 예의를 표시하며 주동적으로 인사나 안부를 물어야 한다. 스승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이 물어볼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 답변해야 하며 선생님에게 의견을 제기할 때의 태도는 진심이어야 한다.

10.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존중하고 단결하며 서로 도와주고 진심으로 대하며 정상적인 교류를 가져야 한다. 남을 속이거나 업신여기고 모욕하지 말아야 하며 모순이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스스로를 비평해야 한다.

11.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장소나 경우에 따라 말을 조심해야 하며 단정한 태도를 갖추고 표준말을 사용해야 한다. 물건을 받거나 줄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두 손으로 받거나 주어야 한다.

12. 주인의 허락이나 승인이 없이는 타인의 집이나 방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타인의 물건을 다치거나 편지나 일기 등을 보지 말아야 한다.

13. 아무 때나 타인의 말을 끊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공부하거나 휴식하는데 떠들지 말아야 하며, 방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

14.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말과 행동에 있어 일치해야 하며 타인의 일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며,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감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타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은 곧 돌려주어야 한다.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하며, 허위로 날조하지 말며 잘못을 알면 바로 고쳐야 한다.

15. 수업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는 반드시 일어서 선생님에게 경의를 표시해야 하며, 수업

을 마칠 때에는 선생님이 먼저 교실에서 나가시게 해야 한다.

규율을 준수하고 기율을 지키며 꾸준히 학습하여야 한다.

16. 제 시간에 맞춰 학교에 도착해야 하며, 지각하거나 일찍 집으로 돌아가지 말며 무단으로 결석하지 말아야 한다.

17. 수업을 시작하면 전심하여 수업에 참여하며, 사고하고 열중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대담하게 자기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18. 연습과 복습을 꾸준히 해야 하며 주동적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 제 시간에 숙제를 하며 시험을 부당한 방법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19. 적극적인 생산노동과 사회실천, 학교조직의 기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의 요구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 성실하게 자기당번 청소를 해야 하며, 교실과 교정의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 교실과 교정 안에서 달리거나 소동을 피우며 큰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하며 학교의 훌륭한 질서를 지켜야 한다.

21. 학교 내의 건물과 공공물을 보호하며 칠판, 벽, 책상, 교탁, 게시문 등에 마구 낙서하거나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한다. 공공물을 빌려 사용하고서는 반드시 제때에 돌려주어야 하며 물건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하여야 한다.

22. 기숙사와 식당의 제도와 질서를 지켜야 하며, 양식을 소중히 여기며 물과 전기를 절약하고 관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23. 지혜롭게 고난과 어려움을 대처하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버리고 질투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심리적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근면하고 소박해야 하며 부모에게 효도하여야 한다.

24. 절약하는 생활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억지로 비기지 말아야 하며 마구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

25. 스스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배우며 자기의 옷과 물품을 깨끗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6. 규율있는 생활을 하며 시간에 맞춰 학습하고 휴식하며,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과외생활을 배치하고 신체단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27. 생활뿐만 아니라 학습하고 사고하는 등 모든 면에서 항상 부모와의 교류를 가져야 하며 부모님의 의견과 가르침을 존중해야 한다.

28. 외출하거나 집에 왔을 때에는 부모님께 알려야 하며 부모의 동의가 없이 외부에서 자거나 타인의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29. 부모님의 손윗사람을 살뜰히 돌보아야 하며, 주동적으로 할 수 있는 집안일을 감당하여야 하며, 형제들과 서로 돌보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

30. 부모님에게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절바르게 제안을 하고 이치에 맞게 이야기를 하며, 제멋대로 하거나 성질을 내지 말며 대꾸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31. 타인을 대하는데 있어 친절해야 하며, 갈 때에는 일어나서 배려주어야 한다. 이웃들과의 정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이웃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주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스스로를 엄하게 다스리며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

32. 국가의 법을 지키며 법에 위반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33.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빨간불이 켜있을 때 뛰어들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행단 보도를 건널 때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말아야 하며 분리대나 난간을 뛰어넘지 말아야 한다.

34.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공공교통수단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표를 구입해야 하며, 노인이나 어린이, 환자와 장애인, 임산부 및 스승이나 나이 드신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며 자리를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한다.

35. 공용시설과 문물고적을 애호하며 작물과 화초, 나무를 애호하며 유익한 동물과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36. 인터넷 도덕과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대강 보거나 따로 제작하지 말아야 하며 불량정보를 전달하지 말며, 신중하게 인터넷친구를 사귀어야 하며, 영업성 인터넷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37.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말며, 약물을 남용하거나 독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각종명목의 비법조직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38.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말아야 하며, 열사묘지 등 관련된 장소에서는 엄숙하고 경건해야 한다.

39. 공연이나 경기를 관람할 때에는 소란을 피우거나 떠들지 말아야 하며 문명한 관중이 되어야 한다.

40. 정의를 보면 용감하게 나서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공중도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충고를 주고 하지 못하도록 한다.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중국 교육부가 “초중학생 규칙”, “초등학생 일상행위규범”, “중학생 일상행위규범” 등을 통해, 중국 학생들이 지켜야할 규칙들로 규정한 것들의 대부분은 공산당에 대한 충성, 노동 참여, 부모 공경 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 및 효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효와 관련한 조항에는 “외출하거나 집에 왔을 때에는 부모님께 알려야 하며, 부모의 동의가 없이 외부에서 자거나 타인의 집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외에 공중도덕을 중시하고, 예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직원에 대한 존중은 물론 타인에 대한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 “수업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는 반드시 일어서 선생님에게 경의를 표시해야 하며, 수업을 마칠 때에는 선생님이 먼저 교실에서 나가시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한편 “지혜롭게 고난과 어려움을 대처하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버리고 질투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심리적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처럼 중요한 것이 당연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규정으로 두지 않는 마음가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하여, 타인의 인격이나 종교 신앙, 민족풍속습관을 존중하고, 남을 속이거나 업신여기고 모욕하지 말기, 주인의 승인없이 타인의 집이나 방에 들어가지 않기,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편지나 일기 보지 말기, 타인을 대하는 데 친절해야 하며, 갈 때에는 일어나서 배려주기 등의 조항은 타인에 대한 배려들을 명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다른 나라에 비해, 이데올로기적, 윤리적 성격이 강해 다소 추상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조항도 있으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싸우지 않기, 침이나 가래를 뱉지 않는 것, 타인의 말을 끊지 않을 것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복장 및 두발, 용모와 관련해서는 “단정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다녀야 하며 소박하고 대범하여야 한다. 머리를 과마하거나 염색하지 말아야 하며, 화장하거나 장식품을 몸에 달거나 붙이지 말아야 한다. 남학생은 긴 머리를 하고 다니지 말아야 하며, 여학생은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세밀하게 규정되지 있지 않다.

(3) 북경시 교육위원회 중학생 규칙

위에서와 같은 내용 및 특징들은 지역단위의 학교 규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북경시 교육위원회와 상해시 교육위원회가 규정한 학교 규칙은 중국 교육부가 규정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 규칙과 규정은 북경시 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중학생규칙이다. 이 규칙은 북경시의 모든 학교가 사용하고 있다.

1. 조국과 인민, 노동과 과학기술,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며 중국공산당을 옹호하여야 한다.
2. 학교기율과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과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한다.
3. 단체와 조직에 관심을 가지며 서로 단합하며 단체의 영예를 지지해야 한다.
4. 열심히 학습하고 근면한 사고를 지니며, 용감한 탐구정신을 지녀야 한다.
5. 몸을 단련하고 유익한 문체활동과 사회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이나 어른들을 존경하고 타인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7.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명확히 시비를 가려내며 잘못을 알면 바로 고쳐야 한다.
8.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귀중하게 여기며 공공물을 애호하고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위생을 중시하고 겸손하고 소박하게 생활하며 합리적인 소비의식을 지녀야 한다.
9.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어려움과 좌절을 극복해야 한다. 술과 담배, 도박과 마약 등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4) 상해시 교육위원회 중학생 규칙

아래 규칙과 규정은 상해시 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중학생 규칙이다. 이 규칙은 상해시의 모든 학교가 사용하고 있다.

1.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와 중국공산당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한다.
2. 학습기율과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과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한다.
3. 단체나 조직에 관심을 가지고 단체의 명예를 유지하며, 협력을 선호하고 남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공공이익과 노동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지닌다.
4. 과학을 사랑하고 열심히 학습하며 근면한 사고의식을 지니고 용감한 탐구정신을 지녀야 한다.
5. 꾸준히 몸을 단련하며 유익한 문체활동과 사회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 부모님을 존경하고 선생님과 어른들을 존경하며 학생들과 서로 친구처럼 사랑하고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 친절해야 하며 소박하고 대범해야 한다.
7.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명확하게 시비를 판단하며,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며, 문명하고 건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
8.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귀중히 여기며 공공물을 애호하고 노동의 성과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9.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안전에 주의하며, 공공위생을 중시하고 담배와 술을 하지 말아야 하며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것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0. 타인을 존중하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국가의 존엄을 보호하여야 한다.

(5) 神哲學院 규칙 및 처벌

길림성(吉林省) 화산로(華山路) 206호에 있는 神哲學院은 사립학교로 천주교 재단이 20년 전에 설립한 중국의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30명 정도로 운영된다. 학교 규칙을 만들 때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학교가 독립적으로 제정한다. 학교생활규칙이 학교 홈페이지에 실려 있지는 않다. 사립학교의 규율은 공립학교에 비해 비교적 규율이 강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모든 규칙은 자율적으로 잘 지켜진다. 학교 규칙을 어겨 징계당할 경우, 학교측로부터 징계절차에 대해 통보를 받는다.

이 학교를 졸업한 ○○○는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교사나 학교 측에 의견전달을 묵살당한 적이 있으며, 학생 자치활동에 제약을 느껴 본 적이 있고, 학생회 연합 및 교외 서클 활동과 외부 집회 참여에 제약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6) 광서성(廣西省) 유주시(柳州市) 고급중학(高級中學) 규칙 및 처벌

광서성 유주시에 소재한 고급중학은 국가에 의해 세워진지 101년 된 인문계 고등학교로 남녀공학이다. 학년당 학급 수는 6개 학급이며, 학급당학생 수는 50~60명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서구와 비교해서는 많이 높은 편이다.

학교규칙은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없이 마련되지만, 대부분 거의 학교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한다. 그럼에도 학교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잘 지킨다. 학교규칙을 어겼을 때에는 담당교사가 자기반의 학생들을 처벌하는데, 대부분 훈계방식으로 처벌한다.

2) 대만 학교 규칙

(1) 國立中和高給中學(National Chung Ho Senior High School) 규칙 및 처벌

국립중화고급중학은 Taipei에 있으며, 인문계 국·공립학교로 남녀공학이다. 이 학교생활규칙 역시 학교 홈페이지에 실려 있으며,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 학교 여학생의 경우, 치마, 바지 모두 착용할 수 있으나 계절에 따라 학교지정에서 지정한다.

국립중화고급중학은 중화민국 헌법 제 158조 규정에 입각하여 청소년의 심신 양성 및 건전한 공민을 육성하고 심오한 학술 연구와 전문지식에 관한 학습을 하기에 앞서 그 예비지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근거에 따라 설립되었다.

공동교훈은 體(체)-단정한 태도, 엄격한 규율, 義(의)-정당한 행실, 기개있는 희생, 廉(렴)-명백한 판별, 충실한 절약, 恥(치)-진실한 각오, 맹렬한 분투이다.

중화고등학교는 민국 79년에 설립을 허가 받아 79년 10월 18일, 원 타이완 정부 소속 타이페이현 立永과 국중학교장 李平蔭이 겸임 예비 주임으로 학교설립을 진행하였다. 학교 소재지는 중화시 연성로 46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3184평방미터에 달한다. 11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1, 2, 3학년 각 18학급, 총 54학급으로 이루어져있다. 교직원 수는 약 160명이며 학생 수는 약 2,300명이다.

이 학교 규칙은 이러한 학교교육 목표, 교훈, 학교 시설 및 소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항에 따라 상세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1. 학생 성적 시험 방법
2. 학생 성적조사 방법 보충 규정
3. 각과 재수강 실시 요강
4. 학생생활규범
6. 학생 상벌 실시 요강
7. 「예의범절교육」 지도 실시 요강
8. 학생 휴가원 규칙
9. 학생 <개과천선> 실행방법
10. 학생 학급회의 실시 요점

11. 동아리 활동 실시 요점
12. 교실 미화 대회 실시 방법
13. 체육 기술 옹호 관리방법
14. 운동장 보관 관리 방법
15. 수업후 운동장 관리 요점
16. 수영장 관리 규칙
17. 생활교육을 정결케 하기 위한 질서 경쟁 실시 방법
22. 시험규칙
23. 과제 검사 실시 방법
24. 지도 업무 및 봉사
26. 인도와 차도 분리선 규정
28. 공물 훼손 배상 방법
30. 학생 제소 처리 실시 요점
33. 대표단 각 항목의 대회 참가 장여 실시 요점
34. 전화 열람표

이러한 학교 규칙 내용 가운데 학생 인권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품행을 성적으로 평가

고등학교학생 성적 시험 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본 방법은 고등학교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입각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어 제2조 고등학교학생성적고사는 학업성적과 품행성적으로 나뉜다. 학업성적은 100점으로 평가하고 품행성적은 등급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품행성적은 학생이 자신을 닦고 선을 쌓은 미덕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문자로 서술하여 그 덕행을 표현하고 등급으로 평가한다(제16조). 품행성적은 優、甲、乙、丙、丁 5등급으로 평가하고 丁등급은 불합격이다. 그 성적은 아래의 규정에 의해 그 등급을 상정한다(제17조).

- 一. 90점 이상은 優등급
- 二. 80점 이상~90점미만은 甲등급
- 三. 70점 이상~80점미만은 乙등급
- 四. 60점 이상~70점미만은 丙등급
- 五. 60점미만은 丁등급

학년 품행 총 평균성적은 그 학년도 각 학기 품행성적 평균의 합계이다.

품행특수표현의 고사는 아래의 규정대로 처리한다(제18조).

一. 학생에 대한 장려는 嘉獎(가장), 小功(소공), 大功(대공)으로 나누고 벌칙으로는 警告(경고), 小過(소과), 大過(대과)로 나뉜다.

二. 학생의 장려는 학생, 지도교사, 가장 혹은 보호자에게 통지함은 물론 학기말에 품행성적으로 계산한다.

품행성적고사는 80점을 기본점수로 하여 지도교사가 평상시의 덕행의 표현, 출석사항, 상벌 기록, 단체활동, 생활대회 등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한 후, 학생실무회의를 통해 심사한다(제19조).

재수강, 보충수강학생 및 수강연장학생의 품행성적의 시험은 학교가 강의형편 및 일반학생의 규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제20조). 품행성적이 丁等인자는 학생실무회의심사를 걸친 후 교장의 심사결과를 걸쳐 丁等を 주고 전학을 지도한다(제21조).

또한 학생 성적고사방법 보충 규정 제10조에 따라 학생의 장려와 벌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一) 獎勵(장려)

1. 優點(우점)
2. 嘉獎(가장)
3. 小功(소공)
4. 大功(대공)
5. 其他特別獎勵(기타특별장려)

(二) 懲罰(벌칙)

1. 進德教育輔導(도덕교육지도참가)
2. 缺點(결점)
3. 警告(경고)
4. 小過(소과)
5. 大過(대과)
6. 留留校察看(학교감찰)
7. 家長或監護人帶回管教(학부모 혹은 보호자 면담)
8. 輔導轉學(전학지도)
9. 移送司法機關或相關單位處理(사법기관으로 이송 혹은 관계기관에서 처리)
10. 其他適當措施(기타상응대책)

품행성적고사는 80점을 기본점수로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11조).

(一) 출, 결석성적결과에 따라 점수를 주거나 감점한다.

(二) 상벌결과에 따라 점수를 주거나 감점한다.

1. 大功(대공): +7점
2. 小功(소공): +3점

3. 嘉獎(가상) : +1점
4. 優點(우점): +0.5점
5. 大過(대과): -7점
6. 小過(소과): -3점
7. 警告(경고): -1점
8. 缺點(결석점수): -0.5점

- (三) 생활교육대회 등의 일반 표현 고사는 담당교사, 지도교관 및 관련 교사 등이 학생의 일반 표현을 참작하여 점수를 주거나 감점한다. 단, 7점으로 제한한다.
- (四) 사회단체활동고사는 담당교사 및 관련교사 등이 각종활동표현을 보고 점수를 주거나 감점한다. 단 3점으로 제한한다.
- (五) 학교는 앞의 두 가지 고사 사항을 아래의 고사 및 실시 요강에 따라 시행한다.(표준, 표책포함) 학생실무회의심사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한다.
- (六) 학생의 상벌, 출-결석 등의 각 심사결과는 학생, 담당교사, 가장 혹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관련 기록부에 기록한다.
- (七) 학기 중 감찰 대상으로 분류 처리된 학생들의 품행성적은 임시적으로 60점을 기본점수로 한다.
- (八) 학교감찰기간 중 상벌 사유 발생 시에도 본 요강 관련규정에 따르며 단, 小過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학을 지도한다.
- (九) 여름, 겨울 방학, 재(보충)수강, 야간자율학습 및 과업보충기간에도 품행성적을 매겨야 한다. 2학기를 넘기는 경우에는 품행성적을 합산한 학기로 등록하여 계산한다.

출석사항은 아래의 표준에 따라 점수를 주거나 감점한다(제12조).

- (一) 전 학기 무단결석 및 결석을 하지 않은 자 : +3
- (二) 무단결석: - 0.5점/1시간
- (三) 계양식, 집회 지각 : - 0.5 , 무사고결석: -1
- (四) 아침자습 혹은 수업 지각 : - 0.25
- (五) 사적인 휴가가 10시간에 이르는 자: - 1점
- (六) 병가가 4시간에 이르는 자 : - 1점
- (七) 복상휴가 혹은 특수사고는 심사비준을 거쳐 휴가를 얻을 경우 감점하지 않는다.
- (八) 여름, 겨울 방학 수업 보충기간에 무단결석은 1시간에 0.2점을 감점한다. 아침자습이나 수업시간에 지각하는 자는 1회에 0.1점을 감점한다. 사적인 휴가가 10시간에 달하는 자는 0.5점 감점, 병가는 40시간에 0.5점 감점, 복상휴가나 특수사고는 심사비준을 거쳐 휴가를 얻을 경우 감점하지 않는다.

학생이 성적고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손실이나 부당한 권리와 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학교에 대해 서면으로 학생제소평의위원회에 평의 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제16조).

② 학생생활규범

학생생활규범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일상생활과 용모복장과 관련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一. 일상생활

(一) 입학

1. 학부모와 헤어져 학교로 온다.
2. 복장단정, 용모단정, 예의중시, 바른 태도를 유지한다.
3. 시간엄수, 정시등교, 교통질서준수, 자동정렬, 봉사 학생의 지도에 따를 것, 안전에 주의.

(二) 아침자습

1.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예의와 도덕을 지켜 인사한다. 「밤새 안녕하셨습니다까?」
2. 아침자습시간에는 교실에서 조용히 자습을 하고 큰소리로 책을 읽거나 소란스럽게 떠들지 않는다.
3. 교실 밖이나 복도에서 놀지 않는다.

(三) 조회(아침조회, 계양식)

1. 각종집회에 철저히 요구되는 것: 신속, 정숙, 정리, 정확, 경청할 것, 신문-잡지 보는 것 금지.
2. 7시30분 중 마치고 전에 운동장에 서서 집합 (계단을 내려올 때 밀치거나 뛰지 말 것, 평지에 이르면 천천히 뛰어 신속히 정렬)
3. 대열을 지어 순서대로 줄을 서고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비워둔다. 부반장은 빈자리의 이름, 번호를 명단에 결석으로 기록하고, 선생님이 대오를 정리할 때 결석한 번호의 자리를 채워 앞의 사람이 12명이 되게 줄을 세운다(반장 불포함)
4. 애국가를 부를 때 엄숙하고 크고 힘차게 합창한다.
5. 교실로 들어갈 때
 - (1) 각 받은 서있는 줄 순서대로 질서있게 교실로 들어간다.
 - (2) 교실로 들어간 후에는 신속히 책, 문구와 필기구를 꺼내어 수업준비를 한다.
 - (3) 수업에 관련된 서적 외에는 어떠한 서적, 물건 및 과제 등을 꺼내지 않는다.

(四) 수업

1. 교실수업과 같은 경우 자리에 먼저 앉힌 후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한다.
2. 교련, 체육 등의 수업과 같은 경우 집합을 먼저 확인하고 수업을 진행한다.
3. 수업 시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단정히 앉아 경청하고 다른 어떤 사항도 해서는 안 된다.
4. 수업 시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5. 수업 시에는 MP3등 어떠한 전자 통신 기기도 들을 수 없다.
6. 수업 시에는 경청을 해야 하며 어떠한 전자 통신 기기도 사용할 수 없다.

7. 수업 시에 의문이 생기면 선생님 말씀이 다 끝난 후 손을 들고 질문한다. 단, 공손한 태도로 얘기한다.
8. 병이나 기타 사고로 인해 교실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 우선 선생님의 허가를 받은 후 나갈 수 있다.
9. 자습시간에는 교실 내에서 조용히 과제를 하거나 작업을 하되 떠들거나 밖으로 나가 노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10. 수업이 끝나면 예의바르게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선생님이 교실 밖을 나가야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

(五) 쉬는 시간

1. 청소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한 교실 밖에서 활동한다. 단,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거나 반에서 휴식한다.
2. 공공위생에 주의한다. 종이조각, 과일껍질을 던져 어지럽히지 말고 바닥에 침을 뱉거나 벽에 낙서하지 않는다.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3. 손으로 문을 열고 전등을 켜고 수도꼭지를 튼다. (공공장소에서 특히 중요)
4. 사무실이나 교사휴게실에 들어갈 때는 먼저 노크를 하거나 알린다.
5. 난간 및 세면대에 앉거나 기댈 때에는 떨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공공 물자를 아끼고 화단을 보호하고 수도, 전기를 아낀다.公德심을 기르자.
7. 도박성 놀이는 할 수 없다.
8. 예절을 중시해야 하며 수업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준수한다. 시작종이 울리면 즉시 교실 안으로 들어간다.
9. 행정건물에 한해서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
10. 교실 구역 내에서 놀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六) 정오휴식(점심시간)

1. 4교시이후시간이며 식판을 준비해 놓는다.
2. 점심식사는 자기자리에 앉아서 먹으며 걸어 다니면서 먹거나 다른 반에서 먹지 않는다.
3. 점심식사가 끝나면 규정에 따라 남은 음식을 회수한다. 각 반마다 매일 당번을 정해 행한다.
4. 식수를 사용할 때는 절약해서 사용하고 오후에 식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식수로 식판을 닦지 않는다.
5. 점심휴식시간종이 울리면 교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되 떠들거나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다. 혹은 교실 밖으로 나가 논다.
6. 오후수업예비종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 오후수업준비를 한다.

(七) 과외활동

과외활동은 모두 규정시간에 따라 참가하고 결석이나 지각, 조퇴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 안전시설 및 환경 정리에 주의한다.

(八) 방과 후 3路路 실시:

1. 「전차탑승」(214, 241, 246, 311, 706, 809, 녹색10, 景安 정거장 전차 등)을 타는 학생들은 차가 완전히 정거한 후 질서정연하게 탑승한다.
2.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는 학생은 도서관과 활동센터로 들어가는 차선을 따라 차를 가지고 간다. 두 사람이 함께 타지 않는다.
3. 「도보」를 하는 학생은 담장 옆 인도(황색선 안쪽)로 교문을 나서 서쪽 담장 쪽 보도로 다니고 차도로 넘어가지 않는다.

4. 주의사항

- (1) 길을 갈 때는 머리를 들고 가슴을 펴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을 맞추어 걷는다.
- (2) 길을 갈 때는 균것질을 하지 말고 장난치지 않는다.
- (3) 어른과 동행할 때는 좌측으로 조금 떨어져 걷고 필요시에는 부축한다.
- (4) 승차 시에는 순서대로 타고 머리나 손을 창문 밖으로 내밀지 말고 차가 멈추면 서로 밀치지 말고 양보한다.
- (5) 버스는 탈때는 앞 다투어 타지 말고 노약자나 임산부, 환자에게 양보해서 앉히고 보호한다.
- (6) 방과 후 길에서는 안전에 주의한다.
- (7) 길에서는 장난을 치지 말고 귀가시간을 지키고 부모에게 알린다.

(九)휴일에 학교 올 때 주의사항

1. 개방시간: 오전8시~오후5시
2. 장소: 3학년1반~3학년6반 <복습> ; 운동장(운동)
3. 복장: 교복 혹은 체육복
4. 오후에 스스로 준비해온 음식물은 먹을 때는 청결을 유지한다.
5. 돌아갈 때는 의자를 정리하고 소지품을 잘 확인해서 가져간다.

二. 용모복장

(一)남자

-甲種복장: 춘, 추복 착용

1. 흰색긴소매상의, 진회남색 긴 바지
2. 검은색 허리띠에 고리에는 「중화고」 문양이 있어야 한다.
3. 검은 구두나 흰색운동화, 흰색(검은색)짧은 양말
(양말노출부분길이는 5~15CM)
4. 상의의 좌측 가슴 주머니에는 진한 남색실선으로 학번과 학교명을 새겨 넣는다. 오른쪽 가슴에는 이름을 새겨 넣는다.
5. 날씨가 추우면 체육복 외투를 겹쳐 입는다.

-乙種복장: 하복착용

1. 흰색짧은상의, 진회남색 긴 바지
2. 나머지는 甲種복장의 규정과 동일하다.

-丙種복장: 동복착용

1. 甲種복장위에 남색외투를 입고 넥타이를 맨다.(붉은색스웨터착용가능) 왼쪽 가슴 주머니에 금색 실선으로 학교명과 학번을 새겨 넣는다. 오른쪽 가슴 주머니에는 이름을 새겨 넣는다.
2. 홍색계열의 넥타이를 맨다(옷의 첫 번째 단추는 잠근다.)

(二)여자

-甲種복장: 춘, 추복착용

1. 흰색깃소매상의를 입고 녹색치마를 입는다(치마의 길이는 무릎보다 짧으면 안 된다.)
2. 흰(검)색구두혹은흰색운동화를 신는다 흰(검)색 짧은 양말을 신는다(양말노출부분길이는 5~15CM)
3. 상의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진한남색 실선으로 학번과 학교명을 새겨 넣는다.
4. 날씨가 추우면 체육복 외투를 겹쳐 입는다.

-乙種복장: 하복착용

1. 흰색짧은소매상의, 녹색치마(치마의 길이는 무릎보다 짧지 않도록 한다.)
2. 흰(검)색 짧은 양말(양말노출부분길이는 5~15CM)
3. 나머지는 甲種복장 규정과 동일하다.

-丙種복장: 동복착용

1. 회남색 긴 치마를 입고 회남색 외투를 입고 넥타이를 맨다(붉은색스웨터착용가능),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금색 실선으로 학교명과 학번을 새겨 넣는다.
2. 상의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다. (옷의 첫 번째 단추는 잠근다)

(三)복장일반규정:

1. 교복, 체육복은 학교규정에 따른 색깔과 방식으로 착용한다.
2. 교복, 체육복은 계절에 맞는 규정에 따라 통일되게 바꾸어 입는다.
3. 교복과 체육복은 혼합해서 입지 않는다.
4. 바지와 치마는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너무 작거나, 딱 조이지 말아야 하며 바지의 단을 묶거나 나팔모양으로 늘리거나 줄이지 않도록 한다. 바지폭은 위의 규정에 따른다.
5. 여자치마길이는 무릎 보다 짧지 않도록 한다.
6. 겨울에 추울 때에는 교복 외의 옷을 교복 안에 입되 겹옷이나 겹으로 드러나는 옷은 입을 수 없다.
7. 실내 수업 중에는 장갑을 끼지 않는다.
8. 깃 뒤에 대는 천은 검은색 혹은 흰색으로 제한한다.
9. 구두, 운동화는 규정에 따르며 기타 신발은 신지 않도록 한다.
10. 평상시체육시간에는 반 전체가 통일되게 입는다. 단 학교에서 갈아입는다(등교할 때는 긴 바지를 입는다).

(四) 환절기 복장은 학교 교무처의 공지에 따라 통일되게 입는다.

(五) 체육복외투의 왼쪽 가슴 교표 아래에는 금색실로 학번을 새겨 넣고 체육복상의 주머니

에는 금색실로 학번을 새겨 넣는다.

(六) 복장은 단정하고 단추를 잘 채우고 다니고 더러우면 잘 세탁해서 입고 파손 시 수선해서 입는다.

(七) 복장장식은 이상한 형태로 개조할 수 없고 자연스러운 것을 원칙으로 한다.

(八) 교내에서는 옷통을 벗을 수 없고 신발을 벗지 않는다. 두 사람이 함께 우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九) 화장실에 들어가야 옷을 벗을 수 있다. 옷을 잘 정리 한 후에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다.

(十) 상의는 반드시 치마나 바지 안으로 넣어서 입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十一) 회남색외투를 입을 때에는 넥타이를 반드시 매야 한다.

(十二) 책가방은 뒤로 매고 등교한다.

(十三) 용모

1. 남(여)학생 머리는 이상하지 않고 단정하고 간단하고 검소하게 빗고 다니고 학생신분에 적합한 머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여학생 장식은 흰색으로 화려하지 않게 한다.

한편 교표 착용과 관련하여 체육복의 경우에는 금색의 실선(오른쪽 가슴주머니), 교복에는 남색의 실선(왼쪽 가슴) 남색의 실선(오른쪽 가슴)에 붙이도록 한다.

이외에도 부록1 오토바이특별규정, 부록2 자전거특별규정, 부록3 아침자습면제신청특별규정 등을 두고 있다. 부록1 오토바이특별규정에는 처벌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一. 등교시(여름 겨울 방학 보충수업 혹은 학교 방문 포함) 교복착용 무면허로 오토바이 타는 행위..... 一大過(1대과)

등하교시(여름 겨울 방학 보충수업 혹은 학교방문 포함)에 교복착용 무면허인 오토바이 뒤에 타는 행위 一大過(1대과)

二. 휴일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주변을 공공연히 방황 하는 행위. 一大過(1대과)

휴일에 무면허인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학교 주변을 공공연히 방황 하는 행위..二小過(2소과)

三. 휴일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지나가는 선생님이 발견했을 때.....二小過(2소과)

휴일에 무면허인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는 것을 지나가는 선생님이 발견했을 때.....一小過(1소과)

四. 면허가 있으나 아직 학교의 기준을 거치지 않고 몰래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했을 때...一小過(1소과)

또한 부록3 아침자습면제신청특별규정을 통해서는 등교길에 차를 2번 이상 갈아타야하는 학생, 등교길이 60분이상 걸리는 학생,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가정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아침자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침 자습을 면제하는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아침자습면제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며 아침에 교문을 들어설 때 검사를 받고 들어간다. 아침 자습면제카드를 부주의로 분실하면 경고1차를 받고 증명사진을 준비하여 다시 발급받는다.

<표 66> 학년아침자습면제신청서

| | | | | | |
|-------------------------------|---|------|----|------|----|
| 국립중화고등학교 학년아침자습면제신청서 | | | | | |
| 신청날짜: 년 월 일 | | | | | |
| 학급 | 좌석번호 | 학번 | 성명 | 주소 | |
| | | | | | |
| 학교까지 오는 경로 설명 (교통편) 및 소요시간 | | | | | |
| | | | | | |
| 보호자 | | 지도교사 | | 보조장 | 학무 |
| | | 교관 | | 주임교관 | 주임 |
| 비 고 | 1.호적등본복사본2부 및 증명사진1장(뒷면에 반, 학번, 성명 기재) 2.아침자습면제학생은 개근 점수를 주거나 상 받는 것을 상실한다. 3.매주 한 번하는 조회에는 참여한다. : 매일8시전에는 등교한다. | | | | |

③ 학생 상벌 실시 요강

학생 상벌 실시 요강은 고등학교학생성적고사방법 제8조, 직업학교학생성적고사방법 제8조, 고등학교진수보습학교학생성적고사방법 제12조 규정에 입각하고 있다.

이 요강은 학생행위의 상벌에 대하여 연령, 학년의 고하, 동기와 목적, 태도와 수단, 행위 영향 등의 정형을 보고 사정을 참작하여 상벌을 등등을 변경한다.

학생의 상려와 벌칙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一) 獎勵勸 : 장려

1. 優點(우점)
2. 嘉獎(가장)
3. 小功(소공)
4. 大功(대공)
5. 特別獎勵勸(기타특별장려)
 - (1) 公開表揚(공개표창)
 - (2) 獎品或獎金金(상품혹은상금)
 - (3) 獎狀狀(상장)

(4) 獎章(훈장)

(二) 懲罰(벌칙)

1. 생활실천카드에 입각하여 기록부를 정정한다. ; 두번 누적되면 경고 2차로 기록된다. (한 장 당 효과를 3개월로 제한한다)
2. 결점을 기록한다.
3. 도덕교육지도에 들어간다.
4. 경고로 기록한다.
5. 小過(소과)로 기록한다.
6. 大過(대과)로 기록한다.
7. 특별벌칙:
 - (1) 학교감찰
 - (2) 전학지도
 - (3) 강제휴학명령

嘉獎(가상), 小功(소공), 大功(대공), 특별 獎勵(장려)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며, 아래의 규정에 부하하는 자에게는 경고를 줄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一) 교칙을 위반했으나 사항이 경미한 자

(二) 예의 없는 행동을 범하여 교사의 지도를 받았으나 개정할 줄을 모르는 자

(三) 동료들과 떠들었으나 사항이 경미한 자

(四) 수업시간에 잘 듣지 않아 주의를 주었으나 개정할 줄을 모르는 자

(五) 바닥에 침을 뱉거나 기물을 파손하여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쳤으나 사항이 경미한 자

(六) 복장이 단정하지 않은 자

(七) 격주기록이나 과제를 제시간에 하지 않는 자

(八) 여름 겨울 방학 때 학교 호출 시 고의로 오지 않는 자

(九) 수업 때 전자, 음향통신, 송신기재를 사용하는 자

(十) 계양식 혹은 축전 집회 때 태도가 엄숙하지 못한 자

(十一)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교외 인사를 만난 자

(十二) 행동이 태만하고 언행태도가 경망스러운 자

(十三) 공중봉사 혹은 단체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자

(十四) 습득한 물건이 돌려줄 시한을 넘겨 자신이 점유하였으나 그 가치가 경미한 자

(十五) 지각, 조퇴 혹은 제시간에 맞추어 공부하고 휴식하지 않아 지도를 하였으나 개정할 줄 모르는 자

(十六)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어기거나 고성방가하는 자

(十七) 공공물을 파손하고 자진해서 보고하지 않은 자

(十八) 기타 경고에 해당하는 자

한편 아래의 규정에 부합하는 자는 小過를 받는다.

- (一)선생님이나 동료, 친구들을 기만하였으나 그 사항이 경미한 자
- (二)각 종 축전행사 집회 때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고성방가를 하여 소란스럽게 한 자
- (三)고의로 공공물을 파손하거나 화단을 훼손했으나 그 사항이 경미한 자
- (四)단체질서를 해쳤으나 그 사항이 경미한 자
- (五)고사장규칙을 어겼으나 그 사항이 경미한 자
- (六)불정당한 서적이거나 그림을 휴대하거나 보는 사람
- (七)공공물과 위생을 방해하는 자
- (八)공공봉사를 계획적으로 피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자
- (九)허가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거나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간 자
- (十)태도가 오만하고 선생님을 모독하는 자 (사항의 경중을 따져 더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 (十一)다른 사람의 서신을 몰래 뜯어 본 자
- (十二)봉사단 혹은 반각간부의 규정에 복종하지 않은 자
- (十三)각 급의 간부를 맡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자
- (十四)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으나 그 사항이 경미한 자
- (十五)이유 없이 교외 중요 집회에 결석한 자
- (十六)도박, 음주, 흡연
- (十七)항상 휴가원을 내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
- (十八)금지서적을 보는 행위
- (十九)남녀학생간에 적합하지 않은 추행을 했을 때 (상황의 경중을 따져 더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 (二十)보고-허가 없이 각 사무실이나 특별교실에 들어가 제멋대로 설비를 사용하는 자
- (二一)불법 CD플레이어, 컴퓨터프로그램, 해적서적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저작권에 피해를 주는 자
- (二二)문서에서 인터넷이나 상품의 등록상표의 도안을 함부로 사용한자.
- (二三)특허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없이 물품을 제조한 자
- (二四)보고나 허가 없이 몰래 지하실에 들어가거나 (협동조합 및 자원회수실 개방 제외) 옥상에 올라간 자 (상황의 경중을 따져 더 엄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二六)기타小過(소과)에 해당하는 자

大過(대과)를 받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一)파벌을 만들거나 불량조직에 가담해 활동
- (二)싸우거나 집단 구타

- (三)태도가 오만하거나 선생님을 모독하는 자
- (四)시험 볼 때 부정행위자
- (五)절도
- (六)학생운동선동(상황의 경중을 따져 더 엄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七)금지품을 흡입하거나 주사하는 자.
- (八)학부모의 사인을 도용한 자
- (九)출석부, 휴가원 혹은 기타문건을 고치는 자
- (十)습득한 물건을 돌려보내지 않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우
- (十一)무면허오토바이.
- (十二)부주의한 행위로 학교의 명예에 오점을 남긴 자
- (十三)교칙을 위반하고 엄중히 지도했지만 고치지 않는 자
- (十四)금지물품을 휴대하고 폭발물을 제조하여 공공의 안전에 해를 입히는 자 (상황의 경중을 따져 더 엄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十五)고의로 학교의 공물을 훼손하거나 학교계시물을 더럽히는 사람
- (十六)부적합한 장소에 출입
- (十七)말썽을 주도한자(가담자는 상황의 경중을 따져 처분을 감할 수 있다.)
- (十八)교내에서 불법CD,컴퓨터프로그램, 불법서적 등을 판매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해치는 자
- (十九)교내에서 상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자
- (二十)기타 大過(대과)에 부합하는 자

다음은 학교감찰을 받는 경우이다.

- (一)교외에서 말썽을 일으켜 치안기관에 넘겨진 자는 법원의 공소를 거쳐 형의 책임을 진다.
- (二)교사에 대해 공공연히 반항하는 것이 심하고 개선되지 않는 자
- (三)성희롱의 정도가 심한 자
- (四)기타 ‘학교감찰’ 에 부합하는 자

한편 학교감찰을 받는 경우, 그 기간에 전학 지도를 받는다.

- (一)조목사항중 하나에 이름이 있는 자
- (二)학교감찰기간에 또다시 小過(소과)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
- (三)매 학년 功(공)과 過(과)가 서로 비슷하나 大過를 3개를 받은 자
- (四)휴학기간에 특수위반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해친 자
- (五)기타 전학지조처분에 부합하는 자

이외에도 학생의 감찰 및 전학지도 처분은 반드시 교무회의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학생은 재학기간에 공적과 과오를 집계하여 서로 맞바꿀 수 있다. 학교

를 떠나면 공적과 과오도 모두 소멸된다. 학생의 장려는 시간순서로 열거하여 서면으로 그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학생이 중요한 교칙을 위반하면 학무회의를 열어 교장에게 특별처분을 요청한다.

④ 예의범절교육 지도

학생의 개별차이를 고려하여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효과적인 지도방식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고 좋은 생활 규칙을 양성하기 위하여 「예의범절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의 개과천선을 독려하여 교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過처분을 면할 수 있게 하는 특별실시 요강이다.

改過遷善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는다. 기타 위반사항, 처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처분을 받은 학생이 개과천선 지도를 받고자 한다면 「신청서 (별첨一)」을 작성하여 매주 수요일 하교 전에 학무처 보조생에게 신청하고 다음 실시명단에 넣는다.

예의범절교육지도에 참가하는 학생은 교복을 단정히 입고 책과 필기구를 갖추고 지도당일 오전9시까지 학교에 온다. 지각을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제외) 표준 교복(체육복)을 입지 않을 경우 참가할 수 없다. (다음 번 교육에 끼워 넣는다) 만일 1시간을 지각한 학생이 있다면 교관이 즉각 전화로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이유를 묻고 후유증을 막는다.

지도기간동안 학생들 중에 동의 없이 중도에 학교를 떠나면 결석으로 처리하고 즉각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만약 학교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 「학생상벌실시요강」에 따라 처리한다.

누차 학교규정을 어기는 자중 만약 교사가 지도를 통해서도 잘못을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명부에 이름을 올려 본 지도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게 한다.

⑤ 학생 <개과천선> 실행 방법

이미 처분경력이 있는 학생들을 시기적절 하게 계도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학업과 도덕을 지향하기 위해 본 제도를 제정했다.

학교처분 조항 중 제 8, 9, 10 조항에 위반된 기록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확실히 개선될 여지가 있는 사실근거가 있는 학생과, 처분 기간 중 재차 위반하지 않은 학생들은 본교처리 방법에 따라 처분 취소 수속을 하게 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 후 한 시간씩 시행하며, 필요 시 휴일에도 실시한다.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선을 원하는 처분학생은 본교 처분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소 신청서와 개선 계도 기록카드는 학생사무소 생활 관리부에서 수취한다.
- 각 학과의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주임선생님에게 신청을 하게 되며, 주임선생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학생에게 재차 과제물과 보고 및 작문과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속에 따라 처리한다.
- 생활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생사무처에 보고를 하고 봉사활동으

로 취소를 처리한다.

취소 처분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을 원하는 자는 취소신청서(보호자의 사인 필)와 개선 계도 기록카드(봉사활동 시간 확인 사인 필)를 보조교관에게 신청을 하게 된다.
- 경고성 위반자: 봉사활동 2시간을 하며 신청 후 1개월간의 계도 기간 중 미위반자는 취소처분을 허가한다.
- (소)위반자: 봉사활동 6시간을 하며 신청후 2개월의 계도기간 중 미위반자는 취소처분을 허가한다.
- (대)위반자: 봉사활동 18시간을 하며 신청후 3개월의 계도기간 중 미위반자는 취소처분을 허가한다.
- 계도기간 중 만약 재차 위반 사례가 있을 시 취소처분 신청은 무효로 한다.
- 근신 학생 : 학생 사무처에서 요구한 봉사활동을 성실히 활동한 자는 정상 참작하여 기록을 감면해준다. 반드시 학생사무처 회의에 따라 근신학생을 처리하게 된다.
- 계도기간 후 학생사무처의 彙整 지도교사, 보조교관 혹은 주임선생의 평가기록을 참고하여 심사하며 취소처분을 처리한다.
- 처분이 끝난 후 보호자에게 통지되며 규정기록 카드에 (취소허가)라는 문구로써 증명한다.
- 경고 및 경미한 위반자는 학생 사무처에서 처리하며 중대위반자는 학생 사무처에서 교장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
- 매 학기 시작 전에 취소수속을 마치며 학교 품행 및 성적에는 감점을 하지 않는다.
- 학기가 끝나기 전에 처분이 끝나지 않은 자는 다음 학기로 이어서 실시하며 처분이 끝난 합격자에 한하여 처분기록을 삭제하며, 학교 품행 성적은 수정하지 않는다.

⑥ 생활교육을 정결케 하기 위한 질서 경쟁 실시 방법

학생생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중에 양호한 위생 습관을 양성하고, 학생의公德심과 책임감을 배양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교정의 환경을 사랑하고 우수한 질의 독서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광대한 교정환경은 모두가 공동으로 유지 보호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유지 보호하도록 하는데, 경쟁 방식으로써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분발하도록 한다. 교정 환경의 유지보호가 더욱더 완벽해 지도록 한다.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교장 혹은 위생 복무대는 각 장소를 청소 상황을 감독 조사하여 결점이 있는 부분 발견 시 청소 및 평가 점수를 기재.
- 2) 매일 정시에 평가 점수 평가
 - (1) 아침 7시 25분부터 7시 35분
 - (2) 정오 12시 25분부터 35분

(3)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10분까지

- 3) 학무처 위원은 수시로 각반 환경 청결상태를 검사. 규정사항이 위반된 학생들을 교정하고 양호한 생활습관과 태도를 가진 학생들을 배양.
- 4) 청결 점수의 합계는 지난주와 다음 주 사이로 하며,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총점수를 계산해서 매주 4회 총계를 낸 후에 각 학력 전 5명을 평정하고 격주 조회시 우수학생으로 표창하여 격려.

⑦ 학생 제소 처리 실시 요점

학생 이성결정문제 태도 배양, 학생제소 도관 설립, 학생들로 하여금 권익을 합법적으로 구제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교원화합 촉진, 민주교육 기능발휘, 특히 본교 학생제소평의위원회를 설치(이하 신평회라 간단히 칭함)한다.

제소 범위와 관련해 재학 중인 학생이 그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명백히 부당한 처벌, 교육의 권익에 있어 손해 입었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행정질서처리에 무법해결을 경험한 자는 신평회에 제소를 제출한다.(학생의 부모 혹은 학생의 대리인 지위를 획득한 자도 제소할 수 있다.

신평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一) 신평회 설치위원회는 5-30명, 아래의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별지1)

1. 학교 행정인원대표 4-5, 교무주임, 학무주임, 지도실주임 및 주임교관
2. 교사 대표 4-5인, 제소인 담임교사 및 지도교사(교관) 및 전임교사3명이 맡는다.
3. 家長회대표 1-2명, 가장회에서 대표 1-2명을 참가하도록 추천한다.

(二) 신평회 소집인은 개회시 위원들이 선출한다.

(三) 신평회 개회는 위원 2/3이상 출석해야 한다. 평의서 결의,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사항의 결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동의 후에 실행한다.

(四) 행정업무는 생활지도팀에서 담당 처리한다.

다음은 제소 및 처리 순서이다.

(一) 제소인 제소는 관련 처벌 혹은 행정처분의 통지서를 2회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2) 신평회에 제출한다(생활지도팀에서 수취담당, 신평회 위원 개회통지), 신평회는 수취한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 평의서 작성(별지3), 행정 순서를 완성한 후 제소인 및 소송의 당사자에게 송달, 제소인이 만약 불복할 경우, 평의서 결정 통지서 송달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법에 따라 대만성 정부에 소원 제출한다.

(二) 신평회는 기한을 초과한 제소안건에 대해서 접수받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의 권익에 확실히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三) 신평회는 서면자료를 평의, 회의 하는 데 있어 불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제소인(혹은 부모, 후견인), 상대방 및 관계인에게 회의에 와서 설명하라 통지한다. 만약 그 제소범위를 초과하면 서면으로 거절한다. : 또한 특수제소안건을 처리 시 소조직을 구성하여 비밀 조사한다.

(四) 신평회는 제소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평의를 해야 한다. 평의서 결의를 함에 있어 신평 소집인이 서명하고, 신평회의 평의, 표결 및 위원 각각의 개별의견을 한다. 외부에 대해 비밀엄수하고, 연루된 학생의 프라이버시인 제소안건과 제소인의 기본 자료는 비밀을 지킨다.

(五) 평의서는 사건의 경과, 양방의 진술, 평의 이유 및 결과를 기재한다. 만약 건의가 있어 조치를 구하고자 하면, 구체적인 건의를 제출한다.

(六) 제소 순서 중, 제소인, 상대방 혹은 기타 관계인은 제소안건을 회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평의위원회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七) 퇴학 및 이와 유사한 처분행위에 대한 제소는 학생은 신평회 평의 미확정 전에 학교에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서면신청을 제출한다. 학교는 위의 신청서를 받은 후 각성한 생활, 학습상황을 참작하여 1주일 이내 답변한다. 상관된 권리와 의무를 명료하게 기재한다.

五. 평의효력:

신평회의 평의는 만약 원래 처분부서가 법령에 저촉되거나 사실상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자는 구체적인 이유를 열거하고 행정순서에 따라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이 만약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면 신평회 再議 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의서를 교장이 사정한 후, 학교는 곧 행한다.

신평회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본 학교의 연관 경비 항목아래 공급한다.

<표 67> 국립중화고등학교 학생제소평의위원회 편성표

| 국립중화고등학교 학생제소평의위원회 편성표 | | | |
|------------------------|------------|----|--|
| 대표 | 직책 | 비고 | |
| 행정인원대표 | 교무처주임 | | |
| | 학생사무처주임 | | |
| | 지도실주임 | | |
| | 주임교관 | | |
| 교사대표 | 제소학생강의담당교사 | | |
| | 제소학생강의담당교사 | | |
| | 제소학생강의담당교사 | | |
| | 제소학생 지도교사 | | |
| | 제소학생의 담임교사 | | |
| | 제소학생의 지도교관 | | |
| 家長會 대표 | 회장 | | |
| | 부회장 | | |

주: 양쪽 진술인은 회의에 와서 진술의견 보아야 하며, 위원에게 참고이해를 제공한다.

<표 68> 국립중화고등학교 제소 신청서

| | | | | | | | |
|---|---|-----------|----|---------------------|---|------|-------|
| 국립중화고등학교 학생 신청서 | | | | 접수일: 년 월 일 | | | |
| 신청인 | | 학년 | 연반 | 자리번호 | | 성별 | 남: 여: |
| 출생년월일 | 민국 년 월 일 | 주소 | | | | 연락번호 | |
| 대리인 | | 신청학생과의 관계 | | 가 부 | 가 | 비고란 | |
| | | | |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 | | |
| | | | | 요구 | 부 | | |
| 1. 신청내용 | | | | | | | |
| 2. 신청이유 | | | | | | | |
| 3. 추가로 언급자 하는 사항 | | | | | | | |
| 4. 최초 처분 의견 | | | | | | | |
| 5.검토지시 | | | | | | | |
| 비 고 | 1. 본 신청서 자료에 있는 것은 외부에 공시하지 않는다. | | | | | | |
| | 2. 신청인이 본교와 관련된 재학생인 경우, 신청인 부모 및 후견인은 대리인이 된다 | | | | | | |
| | 3. <신청내용>, <신청이유>, 및 <추가로 언급자 하는 사항>란은 신청학생이 쓰며 또한 다른 용지에 써서 신청서 위에 첨부할 수 있다. | | | | | | |
| | 4. <최초 처분의견>란 최초 처분 단위가 작성한다 | | | | | | |
| | 5. <검토지시>란은 신청회 청부말은 사람이 열람한 후 검토지시 의견에 따라 한다. | | | | | | |
| 제소순서 중 신청인, 상대방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만약 제소 혹은 기타 연관된 사항을 민사소송, 형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에 제기하면 신청회에 통지하여 평의를 지한다. | | | | | | | |

<표 69> 국립중화고등학교 제소 신청서

| | | | | | | | |
|---------------------|----------|-----------|----|---------------------|---|------|-------|
| 국립중화고등학교 학생 신청서 | | | | 접수일: 년 월 일 | | | |
| 신청인 | | 학년 | 연반 | 자리번호 | | 성별 | 남: 여: |
| 출생년월일 | 민국 년 월 일 | 주소 | | | | 연락번호 | |
| 대리인 | | 신청학생과의 관계 | | 가 부 | 가 | 비고란 | |
| | | | |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 | | |
| | | | | 요구 | 부 | | |
| 1.사건경과 | | | | | | | |
| 2. 양쪽 진술 | | | | | | | |
| ① 최초 처분 부서 ② 제소인 | | | | | | | |
| 3. 평의 이유 | | | | | | | |

| | |
|------------------|--|
| 4. 평의 결과 | |
| 5. 검토지시 조치 건의 | |
| 신평회 소집인 | |
| 비고 | |

<표 70> 국립중화고등학교 제소 평의결정 통지서

| | | |
|-----------------------|--|-------|
| 국립중화 고등학교 제소 평의결정 통지서 | 접수일 | 년 월 일 |
| 문건을 받은 자 | | |
| 요 지 | | |
| 평의사실설명 | | |
| 공문서 발송 부서 | | |
| 비고 | 본 문서는 제소인(대리인), 담임교사, 지도교사, 지도교관 및 유관부서 혹은 자료보관 담당자에게 각각 보낸다 | |

이상에서 보듯, 대만의 경우, 품행을 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성적 평가를 위한 점수제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학생생활규범을 통해서도 일상생활 및 용모에 관한 내용을 상세화하고 있다. 일상생활 규정을 통해서도 입학, 아침자습, 아침조회·계양식 등 조회, 수업, 쉬는 시간, 점심시간, 과외활동, 방과 후 교통 및 도로 이용, 휴일 등교시 지켜야할 사항들을 자세하게 정해 놓고 있다. 학생 상벌 실시에 관련해서도 어떤 경우에 상과 벌을 받게 되는지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벌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지도방식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고 좋은 생활 규칙을 양성하기 위하여 「예의범절교육」을 실시하고, 개과천선을 실행하기 위한 조향을 마련하고 있다. 위생을 위해 청소 상태를 점검하며, 이 또한 평가 점수로 반영된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 또는 명백히 부당한 처벌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 처리 지침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규칙을 어겼을 때는 벌점제를 적용하고, 점수 초과시에는 퇴학 조치된다. 최근에는 학교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다.

(2) 私立辭修高給中學(Tsz-Shiou Senior High School) 규칙 및 처벌

私立辭修高給中學은 Taipei에 소재하며, 세워진지 32년 된 사립학교로, 인문계 남녀공학이다. 이 학교의 학교생활규칙은 학교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 엄격한 규율을 제정하고 있다. 학교 규칙을 만들 때,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있다.

학교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10~20%정도이며, 학교 규칙을 어겼을 때는 벌점을 받고 그것이 누적될 경우 징계된다.

이 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들은 둔 42세 여자 학부모는 아들이 전에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징계 결정 전 소명의 기회를 얻은 적은 없으며, 징계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은 적은 없다.

3) 일본 학교 규칙

두발 및 교복 등 용모에 대한 규제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보다 더 오랜 교복 문화를 가지고 일제 식민지시대 영향을 준 일본의 학교 규칙을 살펴본다.

군국주의적 영향으로 학교에서 짧은 머리가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으로 점차 서구화되면서 두발형태가 완화되었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복장, 두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후 1990년대 들어와서 다시 공·사립학교에서 두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는 여전히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1) 花園中・高等學校 규칙

하나조노 중고등학교는 교토시 우쿄구(京都市右京區)에 있다. 明治 5년(1872년) 교토 하나조노 묘신사 산내에 3년제를 설립하고 중문자제의 교육기관으로 시작되었다. 明治31년(1899년) 교토 하나조노조에 현재의 학교를 신축하고 학교 명칭을 보통학교로 칭했다.

남녀공학 학교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이과 문과로 나뉘어있고, 올해 보통과 진급 A코스 2개 반 남녀 70명, B코스 2개 반 남녀 80명, 종합코스 2개 반 남녀 80명 총 230명을 모집하였다.

하나조노 학교의 학칙중 포상 및 징계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第 1 条 본교는 불교정신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에 의해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인격 도야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第 2 0 条 졸업은 3년으로, 정해진 단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인정하고 본교 소정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 第 2 1 条 학업성적의 평가 및 단위 취득의 인정은 별도로 정한 것에 의한다.
- 第 3 4 条 본 교 학생은 이 규칙에 의한 수업료 그 외를 소정의 날에 납입해야한다. 단, 휴학 중인 학생은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아도 좋지만, 휴학의 사유가 해소되어 등교하여 상급학년에 진급할 경우에는 휴학 기간 중의 수업료 그 외를 납입 해야 한다.
- 第 3 5 条 이유없이 수업료 그 외 납입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하고, 납입할 용의가 없는 자는 등교정지를 명하고, 또는 퇴학시킬 수 있다.
- 第 4 0 条 학업우수, 품행 양호한 학생 또는 본교의 명예를 발휘한 자, 그 외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 第 4 1 条 학칙을 지키지 않고 학교의 풍기를 흐트리고, 그 외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정황의 경중을 심사하여 다음의 처분을 내린다.
훈계·근신·퇴학
2. 전항에 규정한 것 외, 다른 학생의 교육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에 대하여 그 학생의 출석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第 4 3 条 본교의 건물·비품을 파손 분실한 자에게는 수선 반환의 비용 전부 혹은 일부를 변상하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활의 마음가짐

규칙을 통해 생활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본 교 학생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항상 예의를 중시하고 절도를 가질 것.
2. 등교 시에는 지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등교 후에 학교 밖으로 나갈 때에는 허가를 받을 것.
3. 통학 시에는 언동에 주의하고, 교통도덕을 지키고, 금지된 장소에는 가지 않을 것.
4. 금전 물품을 대여교환하지 않을 것.
5.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행위를 하지 않을 것.
6. 소지품의 유실, 도난이 없도록 주의하고, 유실물, 습득물이 있을 경우에는 재빨리 담당자에게 제출할 것.
7. 수업에 관계없는 시설, 교실 등에 들어가지 않을 것.
8. 항상 건강에 주의하고, 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것.
9. 교내에서 발병 혹은 부상했을 경우, 그리고 등하교 시의 부상은 빨리 담임 혹은 담당자에게 처치를 받을 것.

② 명상, 수업, 청소, 게시

1. 매 수업 시간, 수업 시작 벨과 동시에 학생은 자신의 자리에서 좌선할 때와 같은 명상의 상태로 선생님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릴 것. 선생님이 들어와서 좋다거나 명상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약1분 전후) 명상인 채로 있을 것.
2. 명상 자세는 좌선할 때와 같이 허리를 펴고, 양 손을 허벅지 위에 두고, 눈을 반 정도 감고 앞 사람의 벨트 정도를 바라볼 것.
3. 명상은 벨 소리와 동시에 시작할 것. 따라서 용변 그 외는 그 때까지 끝마치고, 벨이 울릴 때에는 교실로 돌아와 있을 것.
4. 명상이 끝나면, 앉은 채로 일제히 수업시작의 인사를 할 것. 수업이 끝날 때에는 자리 옆에 서서 인사를 할 것.
5. 등교 시 그 날의 교과에 필요한 교과서·노트·필기도구 등 잊지 말고 휴대할 것.
6. 수업 중에는 정숙하고, 방해가 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7. 지각한 자는 그 이유를 제출하고, 지각카드를 작성하여 교실에 들어가서 교과담당 선생님에게 제출할 것.
8. 수업 시에 허가없이 소정의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업 중 아파서 퇴실할 경우 허가를 받을 것.
9. 수업 중 코트, 머플러, 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10. 교내 미화청소에는 각자 노력을 아끼지 말고 협력할 것.
11. 학급마다 청소당번을 정하여, 매일 방과 후 반드시 청소하고, 담임에게 보고하여 점검을 받을 것.
12. 항상 교내 게시, 방송에 주의하고,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할 것.
13. 게시를 말소 혹은 파기하거나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4. 학생이 게시 혹은 방송을 행할 경우는 담당 교원의 허가를 받을 것.
15. 정해진 장소 이외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게시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게시 신청자는 을을 제거할 것.

③ 복장, 액세서리에 관한 규정

1. 본교학생의 복장·구두에 대해서는 별표(別表)대로 정한다.
2. 학교가 규정품은 별도로 규정한다.
3. 6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하기복장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전후에 혼용기를 마련한다.
혼용기에는, 등교시 정해진 스웨터·조끼·가디건 착용을 인정한다. 단, 넥타이·리본은 반드시 착용하고 등교 할 것.
4. 하기복장은, 넥타이·리본의 착용은 자유, 상의는 부착용으로 한다. 단, 행사(시업식, 종업식 등) 때

- 에는 넥타이·리본을 착용한다. (폴로셔츠는 불가)
5. 휴교일 때에도 등·하교 때는 본 규정을 지킬 것. 단, 클럽활동만을 목적으로 한 등·하교의 경우에는, 클럽규정의 복장을 인정한다. (규정복장을 신고한 클럽에 한한다.)
 6. 학업, 클럽 활동 등에 있어 불필요한 물건(악세서리등)을 소지하지 말 것.
 7. 학교규정품에 낙서를 하거나, 변형시키지 말 것.
 8. 두발, 옷차림에 관해서는 별기(別記)대로 한다.
 9. 어쩔 수 없이 본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하여 학교(생활지도부)의 허락을 받을 것.
 10. 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주의·지도를 행하고,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등교정지의 조치를 취한다.

| (별표) 남자 | (별표) 여자 | |
|--|---|------------------------|
| 교복 상 의 슬랙스(평상복 바지) 커터셔츠 넥타이 스웨터, 조끼 양말 폴로셔츠 (하절기에 한함) 방한 코트 | 교복 상 의 스커트 블라우스 리본 스웨터, 조끼 양말 폴로셔츠 (하절기에 한함) 방한 코트 | 학교규정 |
| 구두 | | |
| 통학구두 대·소 | | |
| 클럽용 구두, 코트 | | 클럽규정으로 학교로부터 승인받은 것 |

(별기)

두발은 특이한 두발형태· 지나치게 긴 머리· 퍼머·염색·탈색 등은 금지 한다. 귀걸이 등과 같은 장식품, 매니큐어·립스틱 (색이 있는 립스틱) · 그 밖의 화장은 금지 한다. 머플러·모자·스타킹·타이즈·헤어리본·헤어핀 등은 화려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

④ 아르바이트

1.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희망 할 경우에는, 보호자와 학생의 서명을 한 허가신청서를 담임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3.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담임이 학생들의 모든 사정을 이해 한 후에,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담임의 승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4. 아르바이트를 허가 받은 학생들의 성적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담임은 그 학생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최근 교통정세에 의한 청소년의 교통사고 수가 증가의 일로를 걷게 되자, 자동차(오토바이 등 포함)등의 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교생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고, 일상생활에 필요 이외의 자동차등의 면허취득, 운전시행 등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취한다.

한편 자전거 통학 자에 대한 주의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통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다음 조항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합승 운전하는 것, 우산을 쓰고 운전하는 것,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 병·과로시의 운전하는 것,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야간에 운전하는 것, 인도를 통과 할 때는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http://www.kyoto-hanazono-h.ed.jp/kitei.htm>).

일본 하나조노 학교의 규칙은 학교에서의 기본 수칙을 비롯하여, 수업시간과 청소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복장 및 액세서리, 두발 등에 관한 규정과 아르바이트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두발의 경우, 특이한 두발 형태, 지나치게 긴 머리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 cm로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 규칙에 비해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2) 沖繩縣立八重山商工高等學校

오키나와 현립 야에야마 상업고등학교의 교복 및 옷차림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취지)

제1조 이 규정은 학생의 교복 및 옷차림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학생은 원칙으로 교내에서는 교복 혹은 학교 지정의 실습복, 체육복을 착용한다. 또 등하교 중에는 교복을 착용한다.

(교복의 종류)

제3조 학생의 교복은 다음과 같다.

- 남학생 하복 상의 무색의 와이셔츠, 하의 검정바지(학생복용), 동복은 상, 하 검정의 학생복
- 여학생 하복 상의 흰색의 반소매 블라우스에 학교 지정 넥타이, 하의 무색의 짙은 검색 스커트
- 춘추복 상의 흰색의 긴소매 블라우스에 학교 지정 넥타이, 하의는 하복과 같음
- 동복 상의 흰색의 블라우스 위에 학교 지정 자켓과 학교 지정 넥타이
하의는 하복과 같음

○ 자켓 길이는 웨스트 밑 10~20cm

○ 자켓 단추는 뒤에 구멍이 있는 단추로 할 것

○ 스커트 길이는 극단적으로 짧거나 긴 것은 금지한다. 무릎길이 위아래 5cm로 제한한다.

○ 블라우스 옷깃은 솔카라 혹은 셔츠 칼라로 한다.

○ 넥타이는 폭 3cm로 마크가 있는 것으로 한다.

(교복의 착용기간)

제4조 교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조정기간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조정기간은 학생지도부가 제안하고 직원회의의 승낙을 얻어 결정한다.

하복 혹은 여자 춘추복은 4월 1일~10월 31일, 동복은 11월 1일~3월 31일

(두발의 제한)

제5조 학생의 파마, 염색, 그 외 이상한 머리 모양을 금지한다.

(화장 혹은 장신구 금지)

제6조 학생의 화장 및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등)는 금지한다.

하나조노 학교 규칙과 야에야마 상업고등학교의 교복 및 옷차림에 관한 규정들은 거의 유사하다. 두발에 관한 규정도 파마, 염색, 머리 모양만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처럼 두발 길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또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가 학생들의 학교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 몇 가지 가설적인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요약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침해 현상은 학교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가정 배경, 성별, 성적, 외모에 따른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두발, 복장 규제 및 매체를 통한 표현 참여의 제한, 국기에 대한 경례, 종교행사 참여로 인한 사상, 양심, 종교의 강요, 자치활동 및 외부 집회 참여 제한으로 인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일기장,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자유권의 침해를 들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체벌로 인한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부당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보호권,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빈곤층 및 소외 학생들에 대한 복지권, 정당하게 일할 권리 등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학교생활규칙에 근거하여 규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두발에서, 복장, 양말, 신발까지 제한을 두고, 두발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생활규칙 자체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의 극복을 위해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와 관련한 학교생활 규정예시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2003년부터 생활지도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각급학교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해 학교생활규칙을 개정·시행하도록 지도해왔다.

그러나 2005년 국정감사 이후 2006년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했다고 보고한 학교 중에서 156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규칙을 제·개정을 했다고 보고했으나 용모복장이나 학생회, 징계 등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실제로 개정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았으며, 두발 이외에 다른 용모복장 규제에 대한 개정 시도도 별로 없었다. 또 개선 시도는 했으나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고 인권 침해 요소는 여전히 남겨놓아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교도 90개 학교로 많았다.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례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례와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두발 관련 대화,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정리한 결과, 진정사례의 내용으로는 학생 자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2001년에 비해 2006년으로 올수록 진정을 요구하

는 내용들이 많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두발관련 고발내용은 총 495건, 용모관련 114건, 교복관련 81건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자유권 침해가 비밀비재하며 이를 시정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생 인권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현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의 중고 재학생 및 교사와 학부모를 모집단으로 층화 표집 된 1,955명이다. 이들을 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학생이 1160명, 학부모 533명, 교사가 262명이다. 서울 및 5대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 응답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어촌 응답자는 20%에 미달하고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생활규칙과 관련한 결과를 살펴보자.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5.4%이며 어렵듯이 알고 있다는 응답이 48.0%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6.6%에 불과하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사가 다른 집단에 비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아 78.3%에 이르며 학부모의 경우는 모른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의 두 배가 넘는 13.8%에 달했다.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의 교칙이 더 많이 인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안학교의 교칙이 가장 많이 인지되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가 가장 적게 인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생활규칙을 공개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생활규칙이 공개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학교생활규칙이 재개정 되는 절차는 대체로 학생회, 혹은 생활지도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회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오면 교무회의에서 교사들이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많고, 생활지도부가 학생의견 및 교사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결정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른들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간주했다. 의견수렴 방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17.9%, 학부모가 29.6%에 달해 의사소통 방법도 잘 모름을 보여주었다. 바뀐 교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생의 20.5%, 학부모의 29.7%가 이전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교사들은 무려 60.3%가 이전보다 합리적이라고 대답해서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현재 학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집행되는 규칙들에 대한 준수 정도를 응답하게 한 결과 학생들 다수가 해당 규칙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응답했고, 그런 교칙이 있는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중 엄격히 지켜지거나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것은 교복 변형, 무스·스프레이, 염색·과마, 매니큐어, 화장과 같이 용의복장 규정 중에 비교적 눈에 잘 띄는 것들이었다. 반면 교복상용, 머리 길이, 머리 모양은 대부분 있으나 마나 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성교제 관련, 집회 및 결사 관련, 자치회 관련 규칙에 대해서는 학생들 대다수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또 학부모 보다는 교사가 규칙이 엄격히 지켜지거나 비교적 잘 지켜진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학교생활규칙이 청소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학생

들은 복장관련 규칙들, 두발관련 규칙들, 그리고 학생회 입후보자 성적제한 규정 등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규칙에 걸쳐 일관되게 교사들은 해당 규칙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세 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학부모는 그 중간에 위치했다. 교사들의 교칙 인권침해 인식 정도를 교사 내부 집단별로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본 결과 경력 20년~30년 사이의 교사들이 학교규칙의 인권침해인식이 낮았으며 경력 10~20년의 교사들이 가장 높았다. 교원 단체별로 보면 한국교총 소속 교사들이 가장 낮았으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가장 높았다.

학생들의 30.2% 정도가 학기 초부터 한 번 이상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다. 학부모는 불과 17.2%만이 자녀가 처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59.7%가 처벌을 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칙을 어길 경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또 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하는 처벌은 훈계, 혹은 잔소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40% 가량이 체벌을 경험했던 2001년의 상황(전교조·한길리서치, 2001)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아무리 가벼운 처벌이라도 청소년들이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교사의 86.7%는 처벌을 하기 전에 충분히 통보했다고 응답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이와 거의 대칭되는 반응을 보여 각 83.7%, 90.0%가 충분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학교생활규칙외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기본권적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한 결과 학생이 가장 높아서 1.45, 학부모가 가장 낮아서 1.12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중간 값인 2에 미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평균적으로 보아 그 발생 빈도가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등권과 관련한 침해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중간 값인 2 이하를 나타내어 차별대우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학생과 교사의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반복되는 현상으로 교사가 스스로 인권을 침해 했다고 여기는 정도에 비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여기는 정도가 월등히 더 높게 나왔다.

급식, 시설 관련 건강권적 인권 상황을 살펴보자.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급식과 관련한 사항들부터 살펴보자. 먼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식사 시간제한의 문제를 살펴보자. 학생의 48%, 교사의 47.6%가 점심시간 내내 식사시간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만 36.1%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모른다는 응답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급, 학년별로 제한한다는 응답도 이와 비슷하여, 절반 정도의 청소년이 점심시간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급식 장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장소가 교실인 경우는 급식시간 제한이 15%에 불과하였지만 급식 장소가 식당인 경우는 54.3%가 시간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분한 식사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당공간의 확보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급식비 미납자 확인용 바코드 실태 조사 결과로 59.4%의 응답자가 바코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바코드 검사 결과 급식불가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가 12.9%,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지만 바코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6.1%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 급식이 학

교가 직영하는 급식의 경우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바코드 검사에 대해서 응답자의 59.4%는 인권 침해라고 응답했고 14.8%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급식비 지원 대상자들을 급식 도우미로 활용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23%로 나타났다.

학교 시설이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만족도는 보통에 대다수가 집중되었지만 중학생들의 불만도가 가장 높다. 학부모와 교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부모들은 학교의 내부를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교사의 경우는 학교 시설이 학생의 생활공간과 교사의 생활공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가장 큰 불만의 요인이 되는 것은 시설이 낡고 위험하다는 것, 냉난방과 식수에 대한 것 등이 높았다. 교사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위험하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학생의 경우는 식수에 대한 불만이 다른 집단들 보다 높았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높고, 다음은 중소도시가 높으며, 농어촌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다.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학교 종류별로 비교해 본 결과 특목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아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일종의 적신호를 보여준다.

이 밖에 학교 밖에서의 부업(아르바이트) 관련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의 14.1%의 청소년들만 최근 1년간 부업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업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고 학생들은 무려 40.2%가 부업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업고 학생들이 주방·서빙, 판매 등 육체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요식업소, 그리고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들은 일 할 기회를 그리 쉽게 얻지 못하였다. 6.3%만이 일자리를 쉽게 얻었으며 55.7%가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부업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인권 침해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부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작업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한 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시키거나 심야노동을 강요하는 경우는 자주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간 연장, 심야노동 강요가 실업고생에게 집중되고 있어 실업고 학생에 대한 사회전반의 시각교정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교사나 학교가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다.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응답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막론하고 매우 낮았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제도화 부분이다. 교사들은 상담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학생은 상담창구와 정부의 감시·징계가 42%로 동일하게 나왔다.

학교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한 결과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의식은 세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나머지 권리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청소년 인권의식이 높았고, 다음은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특히 폭력으로부터 보호, 합리

적인 징계절차 등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았고 이는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은 여기에 대해 대체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발, 복장,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 결정에의 참여, 자치활동의 자유, 정치적 소신의 표현, 서클 동아리 활동의 자유 같은 경우는 교사와 학생의 의식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의 의식이 매우 낮았다. 교직원단체별 교사들의 청소년 인권의식을 조사한 결과다.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면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학생 자치, 정치, 서클 동아리 활동,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해 매우 높은 인권의식을 편중되게 가지고 있다. 정작 두발, 신체의 자유나 일할 권리 같은 경우는 그리 높은 인권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2/3 정도가 학급당 인원수의 과다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여기에 동의한 학부모는 48%, 학생은 35.2%다. 다음으로는 제도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제도가 미흡하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인권교육,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학교 내 청소년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대책을 물어본 결과 교사들의 37.7%가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주장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제도마련, 학교 규칙의 자율적 제정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았으며 이와 더불어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제기하였다.

교사들의 청소년 인권 수호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72.6%가 청소년의 인권을 매우 잘 지켜주거나 잘 지켜준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학부모 역시 49.1%가 매우 잘 지켜주거나 잘 지켜준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은 이 보다 훨씬 낮아서 33.2%가 잘 지켜주거나 매우 잘 지켜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부모의 11.9%, 학생의 21.8%가 교사가 청소년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잘 지켜준다는 응답보다 훨씬 낮았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의 88.2%, 학부모의 96%, 교사의 93.7%가 필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의 89.8%, 학부모의 96.7%, 그리고 교사의 95.8%가 필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교사들의 매우 높은 찬성률이 두드러진다. 이는 교사들 역시 최근 자주 대두되는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와 분명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어 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3개교에 대한 방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학교 현장 방문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두발 관련 규칙, 복장 관련 규칙들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교사는 처벌을 하기 전에 충분히 통보했다고 응답했지만 학생들은 거의 통보받지 못했다는 학생들이 많아 대조적 반응을 보인 것도 같았다. 면접 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교사의 처벌을 문제시하고, 징계시 징계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특히 폭력으로부터 보호, 합리적인 징계절차 등에 대한 권리 의식을 높게 나타냈던 설문 대상 학생들과의 반응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사들은 여기에 대해 대체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발, 복장,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의식을 보인 설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문 면접시 대부분의 생활부장 교사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즉 통계적으로 밝혀진 의미는 학교 현장 방문 조사에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대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우선적으로 주장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제도나 장치의 제도마련, 학교 규칙의 자율적 제정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았는데, 이는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과 같다. 학생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과 오랫동안 학생 인권운동을 펼쳐 온 인권운동가, 그리고 생활부장교사와 가졌던 간담회를 통해, 생활부장 교사는 대규모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인권운동을 하는 학생과 전문가는 학교 규칙의 자율 제정,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학생인권을 둘러싼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교사들의 문제의식이 다르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각기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는 것이기도 하나, 이들 각 집단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설문 조사, 면접 조사, 간담회를 통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국 학교들의 학교생활규칙 내용 분석에 따른 결과들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금지 형태의 통제중심의 학교 규칙 내용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외국 사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오랜 유교적 전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중국, 대만은 물론, 학교를 획일적으로 운영해 온 일본의 경우, 학교 규칙에 상세한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에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분석 대상국이었던 미국, 캐나다, 호주 역시 금지 조항들이 많다. 이러한 성격은 중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도 그대로 나타나 설립비에 따라 커다란 차이없이 통제위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국의 경우 학생들의 인권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간의 대립이 우리에게 비해 적은 것은 금기 위주의 통제성격 면 학교생활규칙 자체의 문제만이 아님을 시사한다. 오히려 우리나라 학교생활규칙들은 다른 나라의 학교들에 비해 상세하지 못하다. 바로 이것이 어느 선까지 허용되고, 규제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학생, 교사간 문제 소지로 등장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외국의 학교 규칙이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규정은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상과 그릇된 행동을 자제하게 하기 위한 벌의 명백한 선으로 작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간 마찰을 줄일 수 있게 한다.

분석 결과 밝혀진 외국 학교 규칙의 상세성은 규제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징계시 소명 절차에 대한 규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대만의 경우, 개관천선을 위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위한 예의범절교육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 놓을 정도다.

학교생활규칙을 근간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지도시 생겨나는 문제점은 두발처럼 학생들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교사와의 간극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처벌과도 관련한다. 여러 종류의 처벌 가운데 특히 체

별이 문제이다. 아직까지는 교사의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는 교육적 방편으로 행하였다고 하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체벌의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들이 필요하나, 이것에 대한 규정 또한 상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상세화의 필요성은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캐나다, 호주, 중국의 경우, 교사들은 체벌하지 않는다. 이는 구태여 체벌하지 않고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학교생활규칙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벌로서 학생들을 다스리려는 교사의 인식도 문제이지만, 학교생활규칙의 준수성에 대한 학생들의 실천 의식도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칙이 필요한 것이며, 교사의 체벌이 필요없어도 다른 유형들의 처벌들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며, 학생들도 학교생활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겼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게 되면 벌점제나 다른 처벌의 적용 대신 몇 대의 체벌로 대신하고, 학생 또한 다른 처벌 대신 한번 맞고 넘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2. 시사점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가 중·고등학생 인권 보호 및 함양을 위한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헌법 정신에 입각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 학교생활규칙과 교사의 규제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하고 있었다. 물론 학교라고 하는 곳이 많은 학생들을 훈육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학교생활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학교생활규칙들의 내용과 또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복장 및 두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나타났다. 이는 기본권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만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이다. 또 실제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야기하는 규칙들도 주로 이러한 신체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복장 및 두발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또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소모적인 갈등과 충돌만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권재원, 2005)에 따르면 교육적 효과도 없음이 증명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규제가 또 다른 억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정부 차원에서 복장, 두발 규정의 표준이나 예시안을 제정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는 것 역시 민주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자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칙이 제정되도록 하는 수준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민주적인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첫번째 시사점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사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살리는 학교생활규칙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 수 만큼의 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학교의 교육 주체들, 특히 규칙을 부가하는 교사와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 간의 공정한 협상과 합의의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정하는 것 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보다 민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의 조사결과 나타난 일선 학교의 실태는 이 부분에서 심각한 모습을 드러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일정부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규칙이 제·개정 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는 직접적 관심의 주체인 학생보다 간접적 관심의 주체인 교사가 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으로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규칙을 학생에게 강압적으로 집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더 큰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제·개정 절차가 충분히 민주적이며 납득가능하다면 학생들도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칙 및 이의 적용을 위한 교사의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강제 보다는 학교생활규칙의 제·개정 절차에 학생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대표와 교사 대표가 학교생활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결국 학생 자치회의 법제화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 일이다. 현재 학생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라 특별활동의 하나로 되어 있다. 즉 학생의 자치회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학생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되기 어렵다. 학생회의 법제화, 그리고 법제화된 학생회와 교사의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협의 절차는 학교내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학교는 학생회는 커녕 교사회마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학교장의 권력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가 모두 법제화 되고, 학교장이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할 때 비로소 학교생활규칙의 제·개정 절차의 민주화가 이룩될 것이다. 물론 이런 절차를 거쳐 제정된 규칙은 엄히 적용되어야 하며, 충분히 그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장승중학교는 1999년부터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가 함께 학교 규정을 만들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회가 중심이 된 용의·복장 자율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절차를 보면, 학생회장 임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요구 제기 → 전교 대의원회에서 논의 →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설문지 작성 → 설문조사 실시 → 설문지 수합 및 응답 내용 분석 → 설문 분석 결과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학급회의 시간에 학교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 전교 대의원회에서 결의 모으기 → 대의원회 결과 공고 및 학교장의 선포 → 전교생의 실천(4월부터 10월 말까지 시범 운영) → 학급회의를 통한 실천 결과

평가(11월) → 2차 설문조사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에 결과 보고 및 심의 → 대의위원회와 학급 회의를 통한 실행 결의 모으기 : 안건 자료 제시 → 학교장과 학생회장의 선포로 이루어진다.

마산 합포고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어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범적 사례의 성공은 다른 학교들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생활규칙 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자율적으로 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켜가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자치활동의 강화는 학교생활규칙 자율 제정의 선행 과제로 볼 수 있다. 학교생활규정예시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고, 학생회의 권한도 사실상 없다.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고'(제36조),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제39조)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명확한 근거없이 학생회 구서원의 '정당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인권 또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부모, 교사에 의해 이끌려 가는 교육보다는 스스로 형성해 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신들이 함께 생활해 가는 공간인 학교에서 지켜야할 것에 대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학급회의나 학생회 등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자치 활동을 통해 자율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학생회 구성을 위한 임원 자격 제한 규정 폐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학생회의 예·결산권 확보, 회칙 제·개정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독일의 경우처럼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셋째,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사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생회가 법제화 된다 할지라도 그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문제를 확인하게 해주었다. 그것은 학생들 자신의 무지, 혹은 무관심이다. 거의 대부분의 설문 항목에서 학생들은 일관되게 '잘 모름' 응답 비율이 교사 및 학부모에 비해 높았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칙이나 기타 자신들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혹은 충분한 정보를 받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회의 법제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참여하려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회는 결국 간부들만의 학생회(cadre council)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가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 교사가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도록 등 떠밀 수 있는 학교장의 전횡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질병도 일어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인권 문제도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권 침해 상황

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히 학부모 대상의 인권 교육이 시급하다. 이 연구 결과에서 시중 드러나는 것은 교육 3주체의 박약한 인권의식이다. 학생의 경우, 인권의식의 평균은 높았으나 이는 두발, 복장 등 이른바 스타일에 관련되는 영역에 그칠 뿐, 학생 자치, 정치 등과 관련한 인권의식은 거의 무관심에 가까웠다. 즉 인권의식이 높다기 보다는 외모에 대한 관심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교사만큼 정보를 갖고 있지도 못하면서 학생만큼 인권에 민감하지도 않다. 다행스러운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인권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이 연구의 결과 교사들은 또 다른 행정조치, 혹은 교육 외부기관에 의한 간접 등에 대해 전문직 집단으로서 강한 배타성과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인권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오히려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인권백서 등의 ‘참고자료’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또 보다 본격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여기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이들을 학교내 인권 전도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교사들 중 청소년 인권에 대해 민감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한꺼번에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만들기 보다는 이들을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인권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들을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 실제 교육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서 강사가 교사일 경우와 아닐 경우 교사들의 태도나 적극성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과 인권의 가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철학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직원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청소년인권협의체가 필요하다. 여타의 전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육 역시 고도로 체계화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떤 보편적 가치가 여기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적 변용을 거쳐야 하며 이 변용은 특정 가치의 승리나 포괄이 아닌,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실 그 동안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번번이 교육과 훈육상의 필요와 보편적인 기본권이라는 가치의 충돌로 평행선을 달리곤 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철학적인 연구 혹은 논쟁은 충분하지 않았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활동을 마구 재단할 수 없듯이, 교육적 필요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할 수도 없다. 여기에는 어떤 합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합의가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토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교육, 또 청소년의 인권, 이 둘은 모두 산발적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다룰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3. 중·고등학생 인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이러한 시사점들에 기반하여, 현재 각종 정당이나 단체에서 제출한 정책안에 대해 평가해 보고, 몇 가지 가설적인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 인권 지침 및 이에 근거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 마련에 관한 것이다. 학생인권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위법 차원에서의 방향을 제시할 뿐, 학교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까지 담을 수는 없다고 보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학생 인권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행동 지침이 되는 학교생활규칙 상의 내용이 잘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생활규칙 상의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며, 이를 어겼을 시의 처벌 규정 및 이에 대한 소명 절차 등을 상세화한 예시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마련한 적 있었으나, 이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교사, 학생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해 없애야 할 조항과 새로 신설해야 할 조항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칙이 단위 학교 차원에서 원활히 개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예시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물론 새로운 예시안의 마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과 교사 간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 생겨나는 마찰을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율적, 민주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것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하는 학교생활규칙예시안에 의존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의 인권확보가 문제될 수 있다.

둘째, 교육청 차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안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부터 생활지도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두발규제로 인한 강제 이발, 체벌 등의 인권 침해 사항이 지속되는 것은 이러한 지침이 단위 학교 차원에서의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학생 인권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학생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정 조치를 편다. 또 학생들의 민원시, 빠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처리 지침을 정비하고, 담당 장학사에게 민원 처리 원칙 및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 학생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담당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안들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존하는 것으로, 앞서 시사점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민주적 방향으로의 교육 발전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관련해 관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을 잘 실현하는 모범적 학교사례들을 발굴, 이런 학교들에 대한 시상, 다른 학교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별로 인권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의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은 안들은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학생인권신고센터(가칭) 설립에 관한 문제이다. 중·고등학생의 인권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두발 규정, 용의복장 규정 문제점, 학칙 개정과정 급식 등이 문제시되고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학생들은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불순한 학생으로 낙인 찍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징계 운운하며 그런 활동은 하지 말라고 하고 “왜 학교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비판적이나”고 훈계하는 것이 일반적 학교의 모습이다.

이처럼 학교 안에서의 일에 대해 침묵하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게다가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은커녕 회신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불만 및 민원을 마음놓고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러한 방안으로 학생인권신고센터(가칭)를 설립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학생인권신고센터는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단체의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신고센터’처럼 구체적인 제시안은 이에 대한 상세안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학생 인권 보장 및 신장을 위한 법 체제 마련 및 정비에 관한 건이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의 첫출발은 법적 보장에서 비롯된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28조는 당사국이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선언적 수준에 그칠 뿐 학생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여 2005년 이후부터 몇몇 국회의원들은 교육기본법의 하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최순영의원은 2005년 12월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교육당국 또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학생회의 법제화 및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정 법률안을 만들었다.

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그리고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나. 학교에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다.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개정).

라.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마.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사.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개정).

2005년 12월 23일 구노회 의원의 13명의 국회의원은 먼저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회부하였다. 제안이유는 자치조직인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활동이 학생들의 자주적인 능력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토론과 참여의 문화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학교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나, 현행 법령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학생회를 명문화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정이나 학생회와 관련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학생회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교내·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줄임과 동시에 학생 스스로 존엄한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책임지는 생활태도를 익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학생의 자치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건의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이다. 둘째, 학교에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그 자치조직으로서 학생회를 두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생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제17조의 2의 신설이다.

2006년 2월 14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회, 두발규제, 체벌 등에서 인권침해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청소년들이 학생인권법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제기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학생인권법의 법제화를 주창하였다. 현재 관련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서의 자치활동 보장은 모호하고 부족하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학생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으며 학교장에게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전권 위임되어 있는 현실이다.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과 같은 교육관료들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제대로 지원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6년 3월 8일 국회 기자실에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두발규제를 비롯한 생활규정상의 인권침해 금지,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보장, 0교시금지, 강제적 자율보충수업 금지, 체벌금지, 각종 차별금지,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 교육실시, 학생들의 학교 운영 보장 등 학생인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법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생인권법에는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를 조사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의 실행으로 차후 이루어질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강순원 외(2001).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정책방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연구과제. 국민일보, 2006년 8월 23일자.
- 권재원(2004). “청소년 문화 활동 저해 요인으로서의 학원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 : 학교 내 불만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6권 2호, 1~22쪽.
- _____ (2005). “학교 복장규정이 청소년의 정치문화와 비행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2권 1호, 257~275쪽.
- 길은배(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연구,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계리(2004). 「학교 규칙의 자율적 제정 필요성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지(2001). 「청소년 권리 시장 정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2004).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윤희, Marilyn Delong, Karen Labat(2001). “미국 고교생의 교복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6), 1167~1177, 한국의류학회.
-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원(2004. 8.).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규율(“생활지도”)의 의미”, 교육사회학연구 14권 2호, 53~79, 한국교육사회학회.
- 문용린 외(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박선웅(2002). “학생다운 몸의 규율과 학교 위기”, 교육사회학연구 12권 3호, 75~99, 한국교육사회학회.
- 박준행(2004). 고등학생의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방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경내(1998).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0).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 서경환(1990). 학생의 권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정숙(1998). 학생과 교사의 아동·청소년 권리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8). 세계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결의들.
- 육이은(2001). “학생의 눈으로 본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침해 실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어린이·청소년의 인간적 권리’, 2001년 제2차 국제이해교육 연구토론회 자료집, 35~48.
- 이순형 외(1992).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용교, 이희길 역(1996). 「인권교육의 기법(Amnesty International)」,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용교 외(1999).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용교(2004).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인간과 복지.
- 이해주, 최윤진, 구정화(2005) 중학생 인권교육 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 이은성(2004). 「중등학교 용의복장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인권교육 사랑방(1999). 「인권교육 길잡이」, 사람생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길리서치(2001). 스승의 날 기념 교사 의식조사,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회사모임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우리교육.
- 정준교(2002).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인권 증진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2002). “인권 지향적 고등학교의 문화적 특성과 학생 청소년들의 창의성 및 복장변형행동”, 청소년학연구, 9(1), 141-166.
- 정희욱 외(2000). 「권리에 대한 청소년 의식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금주 외 4인(1999). 「학교규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기초한 대안 탐색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금주 외 1인(2000. 12). 「학교 자율 규율 제정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석훈(2003).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 주희중외(1998. 12). 「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생활규정 분석팀(2006).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교칙 분석 보고서.
- 천정웅(1999). “청소년인권 : UN·국제기구의 발전노력과 주요국 동향”,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가 자율적 주체인가’, 95~129.
- _____ (1999).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 발전노력과 주요국정책 동향’, 청소년인권정책연구 ; 한국청소년학회 연구보고서

- 최윤진(1991). '학생 청소년 권리의 내용과 그 제한 근거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 2권 제4호.
- _____ (1997). "청소년 인권, 그 현실과 이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오늘의 청소년」 4월호, 6~13.
- _____ (1998). "보호로부터 자율로의 청소년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21세기를 향한 청소년 정책, 아우내 재단 미래문화연구원 청소년정책 토론회 자료집.
- _____ (1998). 청소년의 권리, 양서원.
- _____ (1999). "청소년권리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 연구 10권 1호.
- _____ (1999).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의 현주소",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가 자율적 주체인가', 23~77.
- _____ (2000).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2호.
- _____ (2001), '역사적 맥락과 현시대 국제적 규범에 비추어 본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제2차 국제 이해 교육 연구 토론회 자료집.
- 최윤진외(1999). 청소년인권정책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연구보고서.
- 최윤진외(2004). 청소년 인권론,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서울:교육과학사.
- 표시열(1997). "학생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오늘의 청소년」 4월호, 14~20.
- _____ (2000). "학생의 기본권과 두발·복장의 규제 정책", 교육법학연구, 12호, 대한교육법학학회.
- 하승수·김진(2000).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사계절.
- 한국청소년개발원편(1997). 「청소년인권보고서」, 인간과 복지.
- _____ (1999). 청소년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의 활동동향연구
- _____ (2000). 권리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_____ (2004).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_____ (2005).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학회편(1999). 「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가 자율적 주체인가", 한국청소년학회.
- 한승덕(2004), 고등학교 학생 인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정선(1986). '학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한국교육법학회 편, 교육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서울: 대학출판사.
- 고덕중학교 규정집.
- 강화여자중학교 제 규정집.
- 삼량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창덕여자고등학교 규정집.
- 합포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대만 國立中和高給中學 규칙
- 미국 Stoller Middle School 규칙
- 일본 花園中·高等學校 규칙
-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미시소거(Mississauga) 지역 학교 규칙
- 캐나다 토론토(Toronto) Brebeuf 학교 규칙

호주 St Margaret's Anglican Girls School 학교 규칙

- Amnesty International(1996). Our World, Our Rights - Teach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Primary School.
- (1998). Guideline for Human Rights Education for Teachers.
- Amnesty International Hongkong, All for Human Rights & Human Rights for All.
- Angel W.D.(Ed)(1995). The International Law of Youth Rights - Source Documents and Commentary. London:Martinus Nijhoff Publishers.
- Coles, B.(1995) Youth and social policy, London; UCL press.
- Fischer,L., Schimmel, D., & Kelly, C.(1987). Teachers and the Law, New York & London : Longman.
- Franklin B. (ed) (1995)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London and NewYork:Routledge.
- Franklin B. (ed) (1986) The Rights of Children. Oxford ; Basil Blackwell.
- Freeman, M.D.A. (1983) The Rights and Wrongs of Children, London ; Frauces Pinter.
- Levin L. (1988). The rights of the Child in P. Davies(ed), Human Rights, pp.40-51, NY: Routledge.
- Nazario,T.A.(1988). In Defense of Children, N.Y.: Charles Scribner's So.
- UNESCO(1998) All Human Beings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e Teacher's Library UNESCO Publishing.
- United Nations(1998). HUMAN RIGHTS -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Lessons for Life.
- Wringe C. (1981) Children's Rights. London ; Routledge & KeganPaul.

<http://Cambrian.web.infoseek.co.jp> 세계의 복장 규율에 대하여 (일본 사이트)

<http://www.kyoto.hanazono.h.ed.jp/kitei.htm>

<http://www.moe.edu.cn/>

<http://nikke.co.jp/uniform> 지도와 강제 -제복을 둘러싸고 (일본 사이트)

<http://ja.wikipedia.org/wiki> 교복의 의의와 기능 (일본 사이트)

<http://www.ohmynews.com/>, 2006. 10. 14. '미국도 연간 30만명이 체벌을 받는다'

<http://osaka.cool.ne.jp/kohoken> 지역별 교육 착용의 예 (일본 사이트)

참고 사이트

■ 평화 인권 일반

광주인권운동센터 <http://www.ingwon.org/>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main.html>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http://picis.jinbo.net>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사회진보연대) <http://pssp.jinbo.net/>
 새사회연대 <http://www.newsolidarity.org>
 울산인권운동연대 <http://ulsanhr.jinbo.net/>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http://www.khis.or.kr>
 인권실천시민연대 <http://hrights.or.kr/>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좋은 벗들 <http://www.jungto.org/gf/>
 지문날인 거부 운동 <http://fprint.jinbo.net/>
 진보네트워크 <http://www.jinbo.net>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천주교 인권위원회 <http://www.cathrights.or.kr>
 평화인권연대 <http://peace.jinbo.net>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CNPK) <http://www.peacekorea.org/>

■ 아동 및 청소년 인권

아동학대방지 <http://www.1391.co.kr/>
 아동학대신고상담센터 <http://www.childabuse.or.kr/>
 아동학대지킴이센터 <http://user.chollian.net/~enoch65>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http://kapcan.welfare.net/>
 한국어린이보호재단 <http://cpfk.or.kr/>
 한국이웃사랑회 <http://www.gni.or.kr/>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http://www.koreayc.or.kr/>
 전국중고등학생연합 <http://www.union10.org/>
 중고등 학생 복지회 <http://www.hitel.net/~k2sws/>
 청소년인권센터 1 <http://www.yrights.or.kr/>
 청소년인권센터 2 <http://www.youthright.or.kr/>
 해를 깨는 아이들 <http://www.youth.inchon.kr/>

■ 인권교육

광주학생생활연구회 <http://selfcom.new21.org/>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http://www.rights.or.kr/>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http://www.inkwonedu.x-y.net>
 인권운동사랑방인권교육실 <http://www.sarangbang.or.kr/kr/main/kr-frame.html>

■ 환경 및 보건의료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GreenLove.htm>
 여성환경연대 <http://www.ecofem.net>
 청년생태주의자 KEY <http://www.jinbo.net/~antinuke>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http://www.kgca.org/>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건강사회로 가는 길) <http://medroad.peacenet.or.kr/>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http://www.humanmed.org/neo/frmm.html>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http://myr.jinbo.net/>

■ 소수자 인권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http://www.migrantworkers.org/>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http://www.migrant.or.kr/>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http://jcmk.jinbo.net/>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http://migrant.nodong.net/>
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한 올바른 사회 인식을 위하여 <http://user.chollian.net/~torez/>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끼리끼리 <http://www.kiri.simin.org/>
동성애자웹진[버디] <http://www.buddy79.com/>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outpridekorea.com/>
친구사이 <http://chingu.go.to/>

■ 성 인권

또 하나의 문화 <http://www.tomoon.org>
사이버 성폭력 피해신고센터 <http://www.gender.or.kr>
여성부 <http://www.pcwa.go.kr>
평화를만드는여성회 <http://wmp.jinbo.net>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wnet.org>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kncw.or.kr>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http://safe.jinbo.net/>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k-comfortwomen.com>
한소리회 <http://www.han-sori.org>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모임 <http://antihoju.jinbo.net>

■ UN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유니세프 유스클럽 <http://youth.unicef.or.kr>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http://www.unep.or.kr>

주 국제연합 대한민국 대표부 <http://www.un.int/korea/>
유엔뉴스(Eng) <http://www.unnews.co.kr/>

■ 기타

동티모르에 평화와 독립을 <http://timor.peacenet.or.kr/>
문화개혁시민연대 <http://www.cncr.or.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http://minbyun.jinbo.net/>
민주주의·사회운동·NGO 자료관 <http://www.demos.or.kr/>
민주화운동자료관 <http://www.democracymuseum.org>
버마민족민주동맹(NLD)한국지부(Free Burma!)
<http://www.freeburma.or.kr/>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http://sofa.jinbo.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http://ktu.or.kr>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http://www.ugh.or.kr/>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www.usacrime.or.kr/>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 조사』 (학생용)

| | | | |
|--|--|--|--|
| | | | |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2006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 조사를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여러분의 신상자료는 공개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학술적인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은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인권과 처우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 21 연구진 드림

본인 및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본인 및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 1) 나는 ① 남자다() ② 여자다()
- 2) 우리 학교가 있는 곳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 3) 내가 사는 지역은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지역()
- 4) 우리 학교는 ① 국·공립학교() ② 사립학교()
- 5) 우리 학교 역사는 ()년
- 6) 우리 학교 재단은 ① 기독교재단() ② 천주교재단() ③ 불교재단()
 ④ 원불교재단() ⑤ 대순진리교재단() ⑥ 비종립재단() ⑦ 기타()
- 7) 우리 학교는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 8) 우리 학교는 ① 중학교() ② 인문계고등학교() ③ 정보산업고등학교()
 ④ 공업고등학교() ⑤ 디자인고등학교() ⑥ 외국어고등학교()
 ⑦ 과학고등학교() ⑧ 대안중학교() ⑨ 대안고등학교()
- 9) 나는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학교 규칙 인지도, 제정 절차, 바람직한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 현재 '학교생활에 관한 각종 규칙(두발, 복장, 징계, 처벌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생활지도부가 규제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어렵듯이 알고 있는 정도다()
 ③ 잘 모르고 있다()
3. 현재 학교생활규칙이 학교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른다()
4. 학교생활규칙들은 다음 중 어떤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①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②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③ 학생회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④ 학생회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⑤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⑥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⑦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⑧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⑨ 의견수렴 절차 없이 생활지도부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⑩ 기타()
5. 학교생활규칙을 만들고 바꾸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합니까?
 ① 학급회의와 학생회 회의를 거친다() ②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를 거친다()
 ③ 학생회 대표들의 의견만 묻는다() ④ 게시판에 의견을 게재한다()
 ⑤ 의견 수렴 과정이 없다() ⑥ 잘 모르겠다()
 ⑦ 기타()
6. 현재 학교생활규칙은 언제 바뀐 것입니까? (⑤번 응답자는 9번 문항으로)
 ① 2000년 이전() ② 2001~2003년() ③ 2004~2005년() ④ 2006년()
 ⑤ 잘 모르겠다()
7. 이전의 학교생활규칙과 비교해 볼 때, 개정된 학교생활규칙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이전보다 합리적이고 만족스럽다() ② 이전보다 완화되었지만 불만족스럽다()
 ③ 이전과 비슷하다() ④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⑤ 잘 모르겠다()
8. 2000년 이후 바뀐 학교생활규칙중 개정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 항목 모두 표시)
 ① 교복 및 복장() ② 양말스타킹() ③ 두발() ④ 장신구() ⑤ 신발() ⑥ 가방()
 ⑦ 학생회칙 및 학생회 활동() ⑧ 징계절차() ⑨ 징계기준() ⑩ 기타()

9. 학교생활규칙들은 다음 중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고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②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③ 학생회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④ 학생회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⑤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⑥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⑦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⑧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⑨ 의견수렴 절차 없이 생활지도부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 ⑩ 기타()



- 설문 계속 -

학교 규칙 준수 정도 및 인권 침해 인식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한 문항 당 두 개씩 표시해 주십시오. 먼저 여러 학교 규칙들이 학교에서 지켜지는 정도에 관한 4항목에서 하나와, 그러한 규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관한 4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각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군데 표시해 주십시오).

| 내용 | 순 | 규 | 칙 |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은 | | | | 나는 이 규칙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엄격하게 지켜 짐 | 제대로 지켜 짐 | 있으나 마나 함 | 모른다 | 전혀 아닌 편 | 아닌 편 | 그런 편 | 매우 그런 편 |
| 복 장 | 1 | 학생은 교내 및 외출 시에 항상 교복을 입어야 한다. | | | | | | | | | |
| | 2 | 교복의 폭이나 길이를 줄이는 등 원래 형태를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 | | | | | | | | |
| | 3 | 외투는 학생용만 허용하며 색상이 화려한 일반외투를 입을 수 없다. | | | | | | | | | |
| | 4 | 전·후면에 외래어가 표기된 걸옷을 입을 수 없다. | | | | | | | | | |
| | 5 | 학생외투가 아닌 잠바류의 걸옷을 입을 수 없다. | | | | | | | | | |
| | 6 | 화려한 색상의 속옷(티셔츠, 조끼, 슈터 등)으로 입을 것을 금한다. | | | | | | | | | |
| | 7 | 양말은 검은색, 흰색으로 허용하고, 성인용 스타킹이나 발목 양말, 긴 양말, 쫄양말은 금한다. | | | | | | | | | |
| 두 발 | 8 | 두발은 정해진 길이를 지켜야 한다.(예 : 귀밑 5센티, 앞머리 3센티 등) | | | | | | | | | |
| | 9 | 두발의 형태는 남학생은 스포츠형, 여학생은 단발 및 커트머리로 정해진 형태를 지켜야 한다. | | | | | | | | | |
| | 10 | 무스, 스프레이 등을 일절 사용할 수 없다. | | | | | | | | | |
| | 11 | 염색, 파마 등을 할 수 없다. | | | | | | | | | |
| 용 모 | 12 | 학생은 얼굴에 화장을 할 수 없다. | | | | | | | | | |
| | 13 | 손·발톱에 일절 매니큐어를 바를 수 없다 | | | | | | | | | |
| | 14 | 팔찌, 귀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등을 착용할 수 없다. | | | | | | | | | |
| | 15 | 신발은 단정한 운동화나 학생용 단화를 허용한다. 굽이 높거나, 색상이 화려하거나, 발목 위까지 길이가 긴 신발, 샌들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 | | | | | | | | |
| | 16 | 학생용 가방만 허용하며, 외래어 표기나 그림이 있는 가방, 서류가방, 자루가방 등은 금한다. | | | | | | | | | |
| 이 성 | 17 | 교내에서 이성과 손을 잡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한다. | | | | | | | | | |
| | 18 | 교내에서 이성과 껴안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한다. | | | | | | | | | |
| | 19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징계한다. | | | | | | | | | |
| 집 회 와 결 사 | 20 |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동아리를 만들 수 없다. | | | | | | | | | |
| | 21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모금행위를 할 수 없다. | | | | | | | | | |
| | 22 | 학교장이 허가 안한 간행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 | | | | | | | | |
| | 23 | 학생 신분엔 맞지 않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 | | | | | | | |
| | 24 |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외부단체 행사나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 | | | | | | | | | |

| 내용 | 순 | 규칙 |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은 | | | | 나는 이 규칙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엄격하게 지켜짐 | 제대로 지켜짐 | 있으나 마나함 | 모른다 | 전혀 아닌 편 | 아닌 편 | 그런 편 | 매우 그런 편 | |
| 자치 | 25 | 학급 회장이나 학생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성적 제한을 둔다(상위 30% 등). | | | | | | | | | |
| 활동 | 26 | 학급 회장, 학생회장 출마의 생활지도규정 제한을 둔다(벌점 10점 이하 등). | | | | | | | | | |

11.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규칙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규칙이 자율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 ② 학교장, 또는 생활지도부장의 성향에 따라 엄해지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한다()
- ③ 모든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처벌 여부, 처벌 종류, 지도 방법, 징계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본인은 학기 초인 3월부터 지금까지 위의 규칙들 중 적어도 하나를 어겨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아니다()
- ② 그렇다()
- ③ 잘 모르겠다()

13. 본인은 위의 규칙들을 어길 경우 주로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처벌 받지 않음()
- ② 훈계 또는 잔소리를 들음()
- ③ 교내봉사()
- ④ 사회봉사()
- ⑤ 특별교육()
- ⑥ 기합을 받음()
- ⑦ 몽둥이나 회초리로 맞음()
- ⑧ 손 또는 발로 맞음()
- ⑨ 벌점()
- ⑩ 기타()

14. 학교의 규칙을 어긴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들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순 | 징계 방법 | 적극 반대 | 반대 | 찬성 | 적극 찬성 |
|---|---|----------|----|----|----------|
| 1 | 훈계한다. | | | | |
| 2 |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의 방법으로 지도한다. | | | | |
| 3 | 환경, 생태 공동체나 종교시설 등에 위탁하여 특별교육을 받되,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 | | | |
| 4 | 규정된 몽둥이나 회초리로 규정된 부위를 엄하게 체벌한다. | | | | |
| 5 | 벌점제를 도입하여 벌점의 누계에 따라 징계하는 방법으로 지도한다. | | | | |
| 6 | 학생회에서 자율적인 선도활동을 벌이고, 공동체적 학교생활을 통해 문제를 시인하고 교정하게 한다. | | | | |
| 7 | 상담전문가의 학교 순회를 통한 상담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 | | | |

15. 학교에서 징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세요. 징계시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 순 | 항 목 | 아니다 | 그렇다 |
|---|------------------------------|-----|-----|
| 1 | 징계절차에 대해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 2 | 징계결정 전 소명의 기회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 | |
| 3 | 징계과정에서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학교 생활 인권 침해 여부, 인권 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지난 학기 학교생활 중 본인은 다음의 각 항목들에 해당 되는 것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순 | 경 험 여 부 | 전혀 없다 | 한 두번 정도 | 세 네번 정도 | 다섯번 이상 |
|----|---|----------|------------|------------|-----------|
| 1 | 가정배경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은 적이 있다. | | | | |
| 2 |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은 적이 있다. | | | | |
| 3 | 성적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은 적이 있다. | | | | |
| 4 | 임원이나 아나나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은 적이 있다. | | | | |
| 5 | 외모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은 적이 있다. | | | | |
| 6 | 두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다. | | | | |
| 7 | 복장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다. | | | | |
| 8 | 매체를 통한 의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 | | | | |
| 9 | 교사나 학교측에 의견전달을 묵살당한 적이 있다. | | | | |
| 10 | 학칙을 만들때나 개정시 참여를 제한당한 적이 있다. | | | | |
| 11 | 국가, 정치에 대한 선생님께서부터의 설명에 반기를 들어 혼난 적이 있다. | | | | |
| 12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혼난 적이 있다. | | | | |
| 13 | 학교측에서 정한 예배와 같은 종교행사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 | | | | |
| 14 | 학생회와 같은 자치활동의 참여권, 선거권 등의 제약을 느낀 적이 있다. | | | | |
| 15 | 학생회 연합 및 교외 써클 활동에 제약을 느낀 적이 있다. | | | | |
| 16 | 외부 집회 참여에 제약을 느낀 적이 있다. | | | | |
| 17 | 일기장 검사를 당한 적이 있다. | | | | |
| 18 | 소지품 검사를 당한 적이 있다. | | | | |
| 19 | 사적 정보를 공개당한 적이 있다. | | | | |
| 20 | 통신(서신 왕래 등)의 자유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 | | | | |
| 21 |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체벌)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 22 | 교사에게 언어적 폭력(심한 꾸지람 혹은 욕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 23 | 친구 및 선·후배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 24 | 친구 및 선·후배에게 언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 25 | 교사에게 심부름, 강제 노력 등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 | | | |
| 26 | 교사나 학교로부터 억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 | | | |
| 27 | 교사나 학교로부터 야간자율학습, 보충학습 등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 | | | |

17. 여학생 교복에 바지가 있습니까?(남학교 학생은 다음 18번 문항으로)
 ① 치마 교복만 있다() ② 치마 및 바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바지교복만 있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18.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9.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기물 도난 및 비행 등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설치되어 있든, 없든 상관없다()
 ③ CCTV는 학생 및 교사 등 교직원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므로,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④ 기타()
20. 교사나 학교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사나 학교로부터 당한 것이므로, 그냥 넘어간다()
 ② 교사나 학교로부터 당한 인권 침해 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③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감시하고 징계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청소년 권리 인식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청소년 권리에 대한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순 | 항 목 | 전혀 중요하 지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
| 1 |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 | | |
| 2 | 청소년은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3 |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이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4 |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학교의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5 | 청소년은 국가적, 정치적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 | | | |
| 6 | 청소년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 활동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7 | 청소년은 학교의 자치활동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8 | 청소년은 자유로이 동아리, 씨클 등을 결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9 | 청소년은 사생활 침해(소지품 검사, 몸수색 등)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 | | |
| 10 |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 | | |
| 11 | 청소년을 징계하거나 처벌하려면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 한다. | | | | |

| 순 | 항 목 | 전혀 중요하 지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
| 12 | 청소년은 징계절차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13 |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 | | |

인권 침해 방지 과제, 인권 교육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2.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지켜주고 있다() ② 잘 지켜주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⑤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23.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잘 지켜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 수가 많아 통제위주로 지도할 수 밖에 없기 때문()
 ② 학생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제도나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
 ③ 학교 규칙 자체가 인권 침해적 내용이기 때문()
 ④ 학교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예를 들어 소리함 같은 것이 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되기 때문()
 ⑤ 교사에 대한 인권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
 ⑥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
 ⑦ 교사의 인격적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
 ⑧ 기타()
24.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 수의 축소()
 ② 학생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제도나 장치 마련()
 ③ 학교 규칙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제정()
 ④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⑤ 체험적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⑥ 교사의 인격적 자질 함양()
 ⑦ 상담 교사를 통한 인권 상담기회 확대()
 ⑧ 기타()
25. 청소년이 누려야할 인권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6. 학생 대상의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27. 교사 대상의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건강권 침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28. 학교의 급식시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① 특별한 규칙 없이 점심시간 내내 식사 가능()
 ② 학년이나 학급별로 식사 시간 제한() ③ 모른다() ④ 기타()

29. 학교의 급식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교실() ② 식당() ③ 모른다() ④ 기타()
30. 학교의 급식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학교직영() ② 급식업체위탁() ③ 모른다() ④ 기타()
31. 학생증을 통한 바코드 처리나 지문인식기를 통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급식불가’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습니까?
 ① 바코드기나 지문인식기가 없다()
 ② 바코드나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며, ‘급식불가’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③ 바코드나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나, ‘급식불가’라는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32. 학생증을 통한 바코드 처리나 지문인식기를 통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급식불가’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④ 기타()
33. 본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배식에 동원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34. 학교의 급식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 | 항 목 | 전혀 아님 | 아닌편 | 그런편 | 매우 그럼 |
|----|-----------------------------------|----------|-----|-----|----------|
| 1 | 급식시간은 식사를 여유 있게 할 만큼 넉넉하다. | | | | |
| 2 | 급식장소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준다. | | | | |
| 3 | 식사의 양은 충분하게 주어진다. | | | | |
| 4 | 음식 열량의 고려 등 균형있는 식단이 제공된다. | | | | |
| 5 |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6 | 신선하고 좋은 음식재료를 사용한다. | | | | |
| 7 | 학생 급식과 교직원 식당의 식사 질이 동등하다. | | | | |
| 8 | 급식 메뉴 결정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다. | | | | |
| 9 | 급식 업자나 담당자 선정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다. | | | | |
| 10 | 현재 급식 업체나 담당자가 계속 했으면 한다. | | | | |

35. 학교 건물 및 시설과 관련한 건강권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②,③번 응답자는 37번 문항으로)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36. 학교 건물 및 시설이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측면은 어떤 것입니까?
 ① 건물간의 간격이 좁아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
 ② 건물 및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다칠 위험이 있다()
 ③ 환풍이 되지 않는다()
 ④ 냉·난방기 등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⑤ 식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⑥ 기타()

일할 권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37. 자신이 학교 공부이외에 아르바이트나 일할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④번 응답자는 39번 문항으로)

- ①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② 기회가 되면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③ 학교 공부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④ 잘 모르겠다()

38. 자신에게 아르바이트나 일할 기회는 실제 얼마나 있었습니까?

- ① 원하는대로 쉽게 얻어 일할 수 있었다() ② 몇 번의 기회를 얻어 일할 수 있었다()
 ③ 몇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일하지 않았다() ④ 잘 모르겠다()

39.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나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②번 응답자는 42번 문항으로)

- ① 있다() ② 없다()

40. 지난 1년 동안 했던 아르바이트 중 가장 많은 시간 일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일반 사무() ② 컴퓨터/전산() ③ 과외지도() ④ 관광가이드/통역()
 ⑤ 고객상담/텔레마케터() ⑥ 주방보조/서빙() ⑦ 매장/판매/편의점()
 ⑧ 배달/운반/물류() ⑨ 일용직/노무() ⑩ 청소() ⑪ 주차/운전/주유소()
 ⑫ 기타()

41.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 순 | 문항 | 예 | 아니오 |
|---|------------------------------------|---|-----|
| 1 |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 | |
| 2 | 임금을 제 때 주지 않거나 원래 약속 한 것보다 적게 주었다. | | |
| 3 | 원래 약속 한 것 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일하게 하였다. | | |
| 4 | 밤 10시 이후 심야 근무를 강요하였다. | | |
| 5 | 위험한 일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 | |
| 6 | 업주나 상급자로부터 폭력이나 협박을 받았다. | | |
| 7 | 업주나 상급자로부터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받았다. | | |

다음은 여러분의 신상에 대한 질문으로, 개인이 아닌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본인이 지난 학기에 가장 잘 본 시험의 점수는 몇 점이었습니까?

- ① 60점 이하() ② 61~70점() ③ 71~80점() ④ 81~90점() ⑤ 91점 이상()

43. 아버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교 중퇴() ③ 고졸() ④ 전문대 중퇴()
 ⑤ 전문대졸() ⑥ 대학교 중퇴() ⑦ 대졸() ⑧ 석사() ⑨ 박사()

44. 어머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교 중퇴() ③ 고졸() ④ 전문대 중퇴()
 ⑤ 전문대졸() ⑥ 대학교 중퇴() ⑦ 대졸() ⑧ 석사() ⑨ 박사()

45. 본인의 가정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46. 본인의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 ① 무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원불교() ⑥ 통일교() ⑦ 증산교() ⑧ 기타()

♣ 모두 끝났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 조사』 (학부모용)

| | | | |
|--|--|--|--|
| | | | |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2006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 조사를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여러분의 신상자료는 공개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학술적인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은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인권과 처우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 21 연구진 드림

귀하와 자녀의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 1) 자녀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2) 학교 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 3) 지역규모별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지역()
- 4) 설립별 ① 국·공립학교() ② 사립학교()
- 5) 학교 역사 ()년
- 6) 종립별 ① 기독교재단() ② 천주교재단() ③ 불교재단()
 ④ 원불교재단() ⑤ 대순진리교재단() ⑥ 비종립재단() ⑦ 기타()
- 7) 공학형태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 8) 학교급별 ① 중학교() ② 인문계고등학교() ③ 정보산업고등학교()
 ④ 공업고등학교() ⑤ 외국어고등학교() ⑥ 대안중학교() ⑦ 대안고등학교()
- 8) 학교급별 ① 중학교() ② 인문계고등학교() ③ 정보산업고등학교()
 ④ 공업고등학교() ⑤ 디자인고등학교() ⑥ 외국어고등학교()
 ⑦ 과학고등학교() ⑧ 대안중학교() ⑨ 대안고등학교()
- 9) 자녀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학교 규칙 인지도, 제정 절차, 바람직한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 현재 자녀 학교의 '학교생활에 관한 각종 규칙(두발, 복장, 징계, 처벌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생활지도부가 규제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어렵듯이 알고 있는 정도다()
 ③ 잘 모르고 있다()
3. 현재 자녀의 학교생활규칙이 학교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른다()
4. 학교생활규칙들은 다음 중 어떤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①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②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③ 학생회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④ 학생회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⑤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⑥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⑦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⑧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⑨ 의견수렴 절차 없이 생활지도부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⑩ 기타()
5. 학교생활규칙을 만들고 바꾸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합니까?
 ① 학급회의와 학생회 회의를 거친다() ②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를 거친다()
 ③ 학생회 대표들의 의견만 묻는다() ④ 게시판에 의견을 게재한다()
 ⑤ 의견 수렴 과정이 없다() ⑥ 잘 모르겠다()
 ⑦ 기타()
6. 현재 학교생활규칙은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⑤번 응답자는 9번 문항으로)
 ① 2000년 이전() ② 2001~2003년() ③ 2004~2005년() ④ 2006년()
 ⑤ 잘 모르겠다()
7. 이전의 학교생활규칙과 비교해 볼 때, 개정된 학교생활규칙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이전보다 합리적이고 만족스럽다() ② 이전보다 완화되었지만 불만족스럽다()
 ③ 이전과 비슷하다() ④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⑤ 잘 모르겠다()
8. 2000년 이후 바뀐 학교생활규칙중 개정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 항목 모두 표시)
 ① 교복 및 복장() ② 양말스타킹() ③ 두발() ④ 장신구() ⑤ 신발() ⑥ 가방()
 ⑦ 학생회칙 및 학생회 활동() ⑧ 징계절차() ⑨ 징계기준() ⑩ 기타()

9. 학교생활규칙들은 다음 중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고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②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③ 학생회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④ 학생회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⑤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⑥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⑦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⑧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⑨ 의견수렴 절차 없이 생활지도부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 ⑩ 기타()



- 설문 계속 -

학교 규칙 준수 정도 및 인권 침해 인식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한 문항 당 두 개씩 표시해 주십시오. 먼저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규칙들이 학교에서 지켜지는 정도에 관한 4항목에서 하나와, 그러한 규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관한 4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각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두 군데 표시해 주십시오).

| 내용 | 순 | 규칙 | 현재 자녀의 학교에서 다음 항목은 | | | | 나는 이 규칙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 엄격하게 지켜짐 | 제대로 지켜짐 | 있으나 마나함 | 모른다 | 전혀 아닌 편 | 아닌 편 | 그런 편 | 매우 그런 편 |
| 복장 | 1 | 학생은 교내 및 외출 시에 항상 교복을 입어야 한다. | | | | | | | | |
| | 2 | 교복의 폭이나 길이를 줄이는 등 원래 형태를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 | | | | | | | |
| | 3 | 외투는 학생용만 허용하며 색상이 화려한 일반외투를 입을 수 없다. | | | | | | | | |
| | 4 | 전·후면에 외래어가 표기된 걸옷을 입을 수 없다. | | | | | | | | |
| | 5 | 학생외투가 아닌 잠바류의 걸옷을 입을 수 없다. | | | | | | | | |
| | 6 | 화려한 색상의 속옷(티셔츠, 조끼, 웨터 등)으로 입는 것을 금한다. | | | | | | | | |
| | 7 | 양말은 검은색, 흰색으로 허용하고, 성인용 스타킹이나 발목 양말, 긴 양말, 쫄양말은 금한다. | | | | | | | | |
| 두발 | 8 | 두발은 정해진 길이를 지켜야 한다.(예 : 귀밑 5센티, 앞머리 3센티 등) | | | | | | | | |
| | 9 | 두발의 형태는 남학생은 스포츠형, 여학생은 단발 및 커트머리로 정해진 형태를 지켜야 한다. | | | | | | | | |
| | 10 | 무스, 스프레이 등을 일절 사용할 수 없다. | | | | | | | | |
| | 11 | 염색, 파마 등을 할 수 없다. | | | | | | | | |
| 용모 | 12 | 학생은 얼굴에 화장을 할 수 없다. | | | | | | | | |
| | 13 | 손·발톱에 일절 매니큐어를 바를 수 없다 | | | | | | | | |
| | 14 | 팔찌, 귀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등을 착용할 수 없다. | | | | | | | | |
| | 15 | 신발은 단정한 운동화나 학생용 단화를 허용한다. 굽이 높거나, 색상이 화려하거나, 발목 위까지 길이가 긴 신발, 샌들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 | | | | | | | |
| 이성 | 16 | 학생용 가방만 허용하며, 외래어 표기나 그림이 있는 가방, 서류가방, 자루가방 등은 금한다. | | | | | | | | |
| | 17 | 교내에서 이성과 손을 잡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한다. | | | | | | | | |
| | 18 | 교내에서 이성과 껴안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한다. | | | | | | | | |
| 집회와결사 | 19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징계한다. | | | | | | | | |
| | 20 |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동아리를 만들 수 없다. | | | | | | | | |
| | 21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모금행위를 할 수 없다. | | | | | | | | |
| | 22 | 학교장이 허가 안한 간행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 | | | | | | | |
| | 23 |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 | | | | | | |
| | 24 |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외부단체 행사나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 | | | | | | | | |

| 내용 | 순 | 규칙 | 현재 자녀의 학교에서 다음 항목은 | | | | 나는 이 규칙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 엄격하게 지켜짐 | 제대로 지켜짐 | 있으나 마나함 | 모른다 | 전혀 아닌 편 | 아닌 편 | 그런 편 | 매우 그런 편 |
| 자치 | 25 | 학급 회장이나 학생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성적 제한을 둔다(상위 30% 등). | | | | | | | | |
| 활동 | 26 | 학급 회장, 학생회장 출마의 생활지도규정 제한을 둔다(벌점 10점 이하 등). | | | | | | | | |

1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녀의 학교 규칙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규칙이 자율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 ② 학교장, 또는 생활지도부장의 성향에 따라 엄해지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한다()
- ③ 모든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처벌 여부, 처벌 종류, 지도 방법, 징계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학기 초인 3월부터 지금까지 자녀가 위의 규칙들 중 적어도 하나를 어겨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아니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13. 귀하는 학생들이 위의 규칙들을 어길 경우 주로 어떤 종류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처벌 받지 않음() ② 훈계 또는 잔소리를 들음() ③ 교내봉사()
- ④ 사회봉사() ⑤ 특별교육() ⑥ 기합을 받음()
- ⑦ 몽둥이나 회초리로 맞음() ⑧ 손 또는 발로 맞음() ⑨ 벌점()
- ⑩ 기타()

14. 학교의 규칙을 어긴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들입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순 | 징계 방법 | 적극 반대 | 반대 | 찬성 | 적극 찬성 |
|---|---|----------|----|----|----------|
| 1 | 훈계한다. | | | | |
| 2 |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의 방법으로 지도한다. | | | | |
| 3 | 환경, 생태 공동체나 종교시설 등에 위탁하여 특별교육을 받되,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 | | | |
| 4 | 규정된 몽둥이나 회초리로 규정된 부위를 엄하게 체벌한다. | | | | |
| 5 | 벌점제를 도입하여 벌점의 누계에 따라 징계하는 방법으로 지도한다. | | | | |
| 6 | 학생회에서 자율적인 선도활동을 벌이고, 공동체적 학교생활을 통해 문제를 시인하고 교정하게 한다. | | | | |
| 7 | 상담전문가의 학교 순회를 통한 상담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 | | | |

15. 자녀가 학교에서 징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세요. 자녀의 징계시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 순 | 항 목 | 아니다 | 그렇다 |
|---|------------------------------|-----|-----|
| 1 | 징계절차에 대해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 2 | 징계결정 전 소명의 기회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 | |
| 3 | 징계과정에서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학교 생활 인권 침해 여부, 인권 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귀하의 자녀가 지난 학기 학교생활 중 다음의 각 항목들과 같은 행위를 경험했다고 들으신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 순 | 경 험 여 부 | 전혀 없다 | 한 두번 정도 | 세 네번 정도 | 다섯번 이상 |
|----|---|----------|------------|------------|-----------|
| 1 | 가정배경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은 적이 있다. | | | | |
| 2 |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은 적이 있다. | | | | |
| 3 | 성적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은 적이 있다. | | | | |
| 4 | 임원이나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은 적이 있다. | | | | |
| 5 | 외모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은 적이 있다. | | | | |
| 6 | 두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다. | | | | |
| 7 | 복장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다. | | | | |
| 8 | 매체를 통한 의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 | | | | |
| 9 | 교사나 학교측에 의견전달을 묵살당한 적이 있다. | | | | |
| 10 | 학칙을 만들때나 개정시 참여를 제한당한 적이 있다. | | | | |
| 11 | 국가, 정치에 대한 선생님께서로부터의 설명에 반기를 들어 혼난 적이 있다. | | | | |
| 12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혼난 적이 있다. | | | | |
| 13 | 학교측에서 정한 예배와 같은 종교행사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 | | | | |
| 14 | 학생회와 같은 자치활동의 참여권, 선거권 등의 제약을 느낀 적이 있다. | | | | |
| 15 | 학생회 연합 및 교외 씨클 활동에 제약을 느낀 적이 있다. | | | | |
| 16 | 외부 집회 참여에 제약을 느낀 적이 있다. | | | | |
| 17 | 일기장 검사를 당한 적이 있다. | | | | |
| 18 | 소지품 검사를 당한 적이 있다. | | | | |
| 19 | 사적 정보를 공개당한 적이 있다. | | | | |
| 20 | 통신(서신 왕래 등)의 자유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 | | | | |
| 21 |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체벌)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 22 | 교사에게 언어적 폭력(심한 꾸지람 혹은 욕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 23 | 친구 및 선·후배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 24 | 친구 및 선·후배에게 언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 25 | 교사에게 심부름, 강제 노력 등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 | | | |
| 26 | 교사나 학교로부터 억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 | | | |
| 27 | 교사나 학교로부터 야간자율학습, 보충학습 등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 | | | |

17. 여학생 교복에 바지가 있습니까? (남학교 학생 학부모는 다음 18번 문항으로)
 ① 치마 교복만 있다() ② 치마 및 바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바지교복만 있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18.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9.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기물 도난 및 비행 등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설치되어 있든, 없든 상관없다()
 ③ CCTV는 학생 및 교사 등 교직원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므로,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④ 기타()
20.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사나 학교로부터 당한 것이므로, 그냥 넘어간다()
 ② 교사나 학교로부터 당한 인권 침해 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③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감시하고 징계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청소년 권리 및 인권 의식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청소년 권리에 대한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순 | 항 목 | 전혀 중요하 지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
| 1 |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 | | |
| 2 | 청소년은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3 |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이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4 |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학교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5 | 청소년은 국가적, 정치적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 | | | |
| 6 | 청소년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 활동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7 | 청소년은 학교의 자치활동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8 | 청소년은 자유로이 동아리, 씨클 등을 결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9 | 청소년은 사생활 침해(소지품 검사, 몸수색 등)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 | | |
| 10 |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 | | |
| 11 | 청소년을 징계하거나 처벌하려면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 한다. | | | | |

| 순 | 항 목 | 전혀 중요하 지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
| 12 | 청소년은 징계절차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13 |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 | | |

인권 침해 방지 과제, 인권 교육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2.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지켜주고 있다() ② 잘 지켜주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⑤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23.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잘 지켜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 수가 많아 통제위주로 지도할 수 밖에 없기 때문()
 ② 학생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제도나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
 ③ 학교 규칙 자체가 인권 침해적 내용이기 때문()
 ④ 학교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예를 들어 소리함 같은 것이 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되기 때문()
 ⑤ 교사에 대한 인권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
 ⑥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
 ⑦ 교사의 인격적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
 ⑧ 기타()
24.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 수의 축소()
 ② 학생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제도나 장치 마련()
 ③ 학교 규칙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제정()
 ④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⑤ 체험적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⑥ 교사의 인격적 자질 함양()
 ⑦ 상담 교사를 통한 인권 상담기회 확대()
 ⑧ 기타()
25. 청소년이 누려야할 인권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6. 학생 대상의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27. 교사 대상의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건강권 침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28. 자녀의 학교 급식시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① 특별한 규칙 없이 점심시간 내내 식사 가능()
 ② 학년이나 학급별로 식사 시간 제한() ③ 모른다() ④ 기타()

29. 자녀의 학교 급식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교실() ② 식당() ③ 모른다() ④ 기타()
30. 자녀의 학교 급식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학교직영() ② 위탁급식() ③ 모른다() ④ 기타()
31. 학생증을 통한 바코드 처리나 지문인식기를 통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급식불가’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습니까?
 ① 바코드기나 지문인식기가 없다()
 ② 바코드기나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며, ‘급식불가’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③ 바코드기나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나, ‘급식불가’라는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32. 학생증을 통한 바코드 처리나 지문인식기를 통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급식불가’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④ 기타()
33. 자녀의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배식에 동원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34. 자녀의 학교 급식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 | 항 목 | 전혀 아님 | 아닌편 | 그런편 | 매우 그럼 |
|----|-----------------------------------|----------|-----|-----|----------|
| 1 | 급식시간은 식사를 여유있게 할 만큼 넉넉하다. | | | | |
| 2 | 급식장소는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준다. | | | | |
| 3 | 식사의 양은 충분하게 주어진다. | | | | |
| 4 | 음식 열량의 고려 등 균형있는 식단이 제공된다. | | | | |
| 5 |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6 | 신선하고 좋은 음식재료를 사용한다. | | | | |
| 7 | 학생 급식과 교직원 식당의 식사 질이 동등하다. | | | | |
| 8 | 급식 메뉴 결정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다. | | | | |
| 9 | 급식 업자나 담당자 선정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다. | | | | |
| 10 | 현재 급식 업체나 담당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 | | | | |

35. 학교 건물 및 시설과 관련 자녀의 건강권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②,③번 응답자는 37번 문항으로)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36. 학교 건물 및 시설이 자녀의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측면은 어떤 것입니까?
 ① 건물간의 간격이 좁아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
 ② 건물 및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다칠 위험이 있다()
 ③ 환풍이 되지 않는다()
 ④ 냉·난방기 등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⑤ 식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⑥ 기타()

일할 권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37. 자녀가 학교 공부이외에 아르바이트나 일할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④번 응답자는 39번 문항으로)

- ①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② 기회가 되면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③ 학교 공부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④ 잘 모르겠다()

38. 자녀에게 아르바이트나 일할 기회는 실제 얼마나 있었습니까?

- ① 원하는대로 쉽게 얻어 일할 수 있었다() ② 몇 번의 기회를 얻어 일할 수 있었다()
 ③ 몇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일하지 않았다() ④ 잘 모르겠다()

39. 자녀가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나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②번 응답자는 42번 문항으로)

- ① 있다() ② 없다()

40.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 일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일반 사무() ② 컴퓨터/전산() ③ 과외지도() ④ 관광가이드/통역()
 ⑤ 고객상담/텔레마케터() ⑥ 주방보조/서빙() ⑦ 매장/판매/편의점()
 ⑧ 배달/운반/물류() ⑨ 일용직/노무() ⑩ 청소() ⑪ 주차/운전/주유소()
 ⑫ 기타()

41.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순 | 문항 | 예 | 아니오 |
|---|------------------------------------|---|-----|
| 1 |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 | |
| 2 | 임금을 제 때 주지 않거나 원래 약속 한 것보다 적게 주었다. | | |
| 3 | 원래 약속 한 것 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일하게 하였다. | | |
| 4 | 밤 10시 이후 심야 근무를 강요하였다. | | |
| 5 | 위험한 일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 | |
| 6 | 업주나 상급자로부터 폭력이나 협박을 받았다. | | |
| 7 | 업주나 상급자로부터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받았다. | | |

다음은 여러분의 신상에 대한 질문으로, 개인이 아닌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귀하의 자녀가 지난 학기에 가장 잘 본 시험의 점수는 몇 점이였습니까?

- ① 60점 이하() ② 61~70점() ③ 71~80점() ④ 81~90점() ⑤ 91점 이상()

4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교 중퇴() ③ 고졸() ④ 전문대 중퇴()
 ⑤ 전문대졸() ⑥ 대학교 중퇴() ⑦ 대졸() ⑧ 석사() ⑨ 박사()

44. 배우자(있으신 경우)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교 중퇴() ③ 고졸() ④ 전문대 중퇴()
 ⑤ 전문대졸() ⑥ 대학교 중퇴() ⑦ 대졸() ⑧ 석사() ⑨ 박사()

45. 귀하의 가정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46. 귀하의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 ① 무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원불교() ⑥ 통일교() ⑦ 증산교() ⑧ 기타()

47.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

48.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모두 끝났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 조사』 (교사용)

| | | | |
|--|--|--|--|
| | | | |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2006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 조사를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여러분의 신상자료는 공개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학술적인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은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인권과 처우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 21 연구진 드림

소속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소속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 1) 학교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 2) 학교지역별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지역()
- 3) 설립별 ① 국·공립학교() ② 사립학교()
- 4) 공학형태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 5) 학교급별 ① 중학교() ② 인문계고등학교() ③ 정보산업고등학교()
④ 공업고등학교() ⑤ 디자인고등학교() ⑥ 외국어고등학교()
⑦ 과학고등학교() ⑧ 대안중학교() ⑨ 대안고등학교()
- 6) 학교 역사 ()년
- 7) 종립별 ① 기독교재단() ② 천주교재단() ③ 불교재단()
④ 원불교재단() ⑤ 대순진리교재단() ⑥ 비종립재단() ⑦ 기타()

학교 규칙 인지도, 현재 제정 절차, 바람직한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 현재 '학교생활에 관한 각종 규칙(두발, 복장, 징계, 처벌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생활지도부가 규제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어렵듯이 알고 있는 정도다()
 ③ 잘 모르고 있다()
3. 현재 학교생활규칙이 학교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른다()
4. 학교생활규칙들은 다음 중 어떤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①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②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③ 학생회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④ 학생회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⑤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⑥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⑦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⑧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⑨ 의견수렴 절차 없이 생활지도부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⑩ 기타()
5. 학교생활규칙을 만들고 바꾸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합니까?
 ① 학급회의와 학생회 회의를 거친다() ②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를 거친다()
 ③ 학생회 대표들의 의견만 묻는다() ④ 게시판에 의견을 게재한다()
 ⑤ 의견 수렴 과정이 없다() ⑥ 잘 모르겠다()
 ⑦ 기타()
6. 현재 학교생활규칙은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⑤번 응답자는 9번 문항으로)
 ① 2000년 이전() ② 2001~2003년() ③ 2004~2005년() ④ 2006년()
 ⑤ 잘 모르겠다()
7. 이전의 학교생활규칙과 비교해 볼 때, 개정된 학교생활규칙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이전보다 합리적이고 만족스럽다() ② 이전보다 완화되었지만 불만족스럽다()
 ③ 이전과 비슷하다() ④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⑤ 잘 모르겠다()
8. 2000년 이후 바뀐 학교생활규칙중 개정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 항목 모두 표시)
 ① 교복 및 복장() ② 양말스타킹() ③ 두발() ④ 장신구() ⑤ 신발() ⑥ 가방()
 ⑦ 학생회칙 및 학생회 활동() ⑧ 징계절차() ⑨ 징계기준() ⑩ 기타()

9. 학교생활규칙들은 다음 중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고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②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③ 학생회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④ 학생회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⑤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⑥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⑦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⑧ 생활지도부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만들고 바꾼다()
 - ⑨ 의견수렴 절차 없이 생활지도부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 ⑩ 기타()



- 설문 계속 -

학교 규칙 준수 정도 및 인권 침해 인식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한 문항 당 두 개씩 표시해 주십시오. 먼저 학교 규칙들이 학교에서 지켜지는 정도에 관한 4항목에서 하나와, 그러한 규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관한 4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각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두 군데 표시해 주십시오).

| 내용 | 순 | 규 칙 |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은 | | | | 나는 이 규칙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 엄격 하게 지켜 짐 | 제대 로 지켜 짐 | 있으 나 마나 함 | 모 른 다 | 전혀 아닌 편 | 아닌 편 | 그런 편 | 매우 그런 편 |
| 부 장 | 1 | 학생은 교내 및 외출 시에 항상 교복을 입어야 한다. | | | | | | | | |
| | 2 | 교복의 폭이나 길이를 줄이는 등 원래 형태를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 | | | | | | | |
| | 3 | 외투는 학생용만 허용하며 색상이 화려한 일반외투를 입을 수 없다. | | | | | | | | |
| | 4 | 전·후면에 외래어가 표기된 걸옷을 입을 수 없다. | | | | | | | | |
| | 5 | 학생외투가 아닌 잠바류의 걸옷을 입을 수 없다. | | | | | | | | |
| | 6 | 화려한 색상의 속옷(티셔츠, 조끼, 웨터 등)으로 입는 것을 금한다. | | | | | | | | |
| | 7 | 양말은 검은색, 흰색으로 허용하고, 성인용 스타킹이나 발목 양말, 긴 양말, 쭈양말은 금한다. | | | | | | | | |
| 두 발 | 8 | 두발은 정해진 길이를 지켜야 한다.(예 : 귀밑 5센티, 앞머리 3센티 등) | | | | | | | | |
| | 9 | 두발의 형태는 남학생은 스포츠형, 여학생은 단발 및 커트머리로 정해진 형태를 지켜야 한다. | | | | | | | | |
| | 10 | 무스, 스프레이 등을 일절 사용할 수 없다. | | | | | | | | |
| | 11 | 염색, 파마 등을 할 수 없다. | | | | | | | | |
| 용 모 | 12 | 학생은 얼굴에 화장을 할 수 없다. | | | | | | | | |
| | 13 | 손·발톱에 일절 매니큐어를 바를 수 없다 | | | | | | | | |
| | 14 | 팔찌, 귀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등을 착용할 수 없다. | | | | | | | | |
| | 15 | 신발은 단정한 운동화나 학생용 단화를 허용한다. 굽이 높거나, 색상이 화려하거나, 발목 위까지 길이가 긴 신발, 샌들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 | | | | | | | |
| 이 성 | 16 | 학생용 가방만 허용하며, 외래어 표기나 그림이 있는 가방, 서류가방, 자루가방 등은 금한다. | | | | | | | | |
| | 17 | 교내에서 이성과 손을 잡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한다. | | | | | | | | |
| | 18 | 교내에서 이성과 껴안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한다. | | | | | | | | |
| 집 회 와 결 사 | 19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징계한다. | | | | | | | | |
| | 20 |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동아리를 만들 수 없다. | | | | | | | | |
| | 21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모금행위를 할 수 없다. | | | | | | | | |
| | 22 | 학교장이 허가 안한 간행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 | | | | | | | |
| | 23 | 학생 신분엔 맞지 않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 | | | | | | |
| | 24 |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외부단체 행사나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 | | | | | | | | |

| 내용 | 순 | 규칙 |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은 | | | | 나는 이 규칙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엄격하게 지켜짐 | 제대로 지켜짐 | 있으나 마나함 | 모른다 | 전혀 아닌 편 | 아닌 편 | 그런 편 | 매우 그런 편 | |
| 자치 | 25 | 학급 회장이나 학생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성적 제한을 둔다(상위 30% 등). | | | | | | | | | |
| 활동 | 26 | 학급 회장, 학생회장 출마의 생활지도규정 제한을 둔다(벌점 10점 이하 등). | | | | | | | | | |

11.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규칙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규칙이 자율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 ② 학교장, 또는 생활지도부장의 성향에 따라 엄해지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한다()
- ③ 모든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처벌 여부, 처벌 종류, 지도 방법, 징계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선생님은 학기 초인 3월부터 지금까지 위의 규칙들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긴 학생에게 처벌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 ① 아니다()
- ② 그렇다()
- ③ 잘 모르겠다()

13. 선생님은 학생들이 위의 규칙들을 어길 경우 주로 어떤 종류의 처벌을 내리십니까?

- ① 처벌 하지 않음()
- ② 훈계 또는 잔소리를 함()
- ③ 교내봉사()
- ④ 사회봉사()
- ⑤ 특별교육()
- ⑥ 기함()
- ⑦ 몽둥이나 회초리로 체벌()
- ⑧ 손 또는 발로 체벌()
- ⑨ 벌점()
- ⑩ 기타()

14. 학교의 규칙을 어긴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들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순 | 징 계 방 법 | 적극 반대 | 반대 | 찬성 | 적극 찬성 |
|---|---|----------|----|----|----------|
| 1 | 훈계한다. | | | | |
| 2 |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의 방법으로 지도한다. | | | | |
| 3 | 환경, 생태 공동체나 종교시설 등에 위탁하여 특별교육을 받되,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 | | | |
| 4 | 규정된 몽둥이나 회초리로 규정된 부위를 엄하게 체벌한다. | | | | |
| 5 | 벌점제를 도입하여 벌점의 누계에 따라 징계하는 방법으로 지도한다. | | | | |
| 6 | 학생회에서 자율적인 선도활동을 벌이고, 공동체적 학교생활을 통해 문제를 시인하고 교정하게 한다. | | | | |
| 7 | 상담전문가의 학교 순회를 통한 상담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 | | | |

15. 학생들을 징계할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순 | 항 목 | 아니다 | 그렇다 |
|---|--------------------------------|-----|-----|
| 1 | 징계절차에 대해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 | |
| 2 | 징계결정 전 소명의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까? | | |
| 3 | 징계과정에서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게 한 적이 있습니까? | | |

학교 생활 인권 침해 여부, 인권 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지난 학기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다음의 각 항목들과 같은 행위를 어느 정도 행하셨습니다?

| 순 | 경 험 여 부 | 전혀 없다 | 한 두번 정도 | 세 네번 정도 | 다섯번 이상 |
|----|---|----------|---------------|---------------|-----------|
| 1 | 가정배경에 따라 다르게 대우한 적이 있다. | | | | |
| 2 |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한 적이 있다. | | | | |
| 3 | 성적에 따라 다르게 대우한 적이 있다. | | | | |
| 4 | 임원이나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대우한 적이 있다. | | | | |
| 5 | 외모에 따라 다르게 대우한 적이 있다. | | | | |
| 6 | 두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한 적이 있다. | | | | |
| 7 | 복장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한 적이 있다. | | | | |
| 8 | 매체를 통한 의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적이 있다. | | | | |
| 9 | 교사나 학교측에 의견전달을 묵살한 적이 있다. | | | | |
| 10 | 학칙을 만들때나 개정시 참여를 제한한 적이 있다. | | | | |
| 11 | 국가, 정치에 대한 선생님께서로부터의 설명에 반기를 들어 혼낸 적이 있다. | | | | |
| 12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혼낸 적이 있다. | | | | |
| 13 | 학교측에서 정한 예배와 같은 종교행사를 강요한 적이 있다. | | | | |
| 14 | 학생회와 같은 자치활동의 참여권, 선거권 등의 제약을 한 적이 있다. | | | | |
| 15 | 학생회 연합 및 교외 씨클 활동에 제약을 한 적이 있다. | | | | |
| 16 | 외부 집회 참여에 제약을 한 적이 있다. | | | | |
| 17 | 일기장 검사를 한 적이 있다. | | | | |
| 18 | 소지품 검사를 한 적이 있다. | | | | |
| 19 | 사적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다. | | | | |
| 20 | 통신(서신 왕래 등)의 자유를 침해한 적이 있다. | | | | |
| 21 |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체벌)을 한 적이 있다. | | | | |
| 22 | 학생에게 언어적 폭력(심한 꾸지람 혹은 욕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가한 적이 있다. | | | | |
| 23 | 동료 및 선·후배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 | | | | |
| 24 | 동료 및 선·후배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 | | | | |
| 25 | 학생에게 심부름, 강제 노력 등을 강요한 적이 있다. | | | | |
| 26 | 학생에게 억울한 처벌을 내린 적이 있다. | | | | |
| 27 |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학습 등을 강요한 적이 있다. | | | | |

17. 여학생 교복에 바지가 있습니까? (남학교 교사는 다음 18번 문항으로)
 ① 치마 교복만 있다() ② 치마 및 바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바지교복만 있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18.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9.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기물 도난 및 비행 등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설치되어 있든, 없든 상관없다()
 ③ CCTV는 학생 및 교사 등 교직원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므로,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④ 기타()
20.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사나 학교로부터 당한 것이므로, 그냥 넘어간다()
 ② 교사나 학교로부터 당한 인권 침해 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③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감시하고 징계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청소년 권리 및 인권 의식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청소년 권리에 대한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순 | 항 목 | 전혀 중요하 지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
| 1 |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 | | |
| 2 | 청소년은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3 |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이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4 |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학교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5 | 청소년은 국가적, 정치적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 | | | |
| 6 | 청소년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 활동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7 | 청소년은 학교의 자치활동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8 | 청소년은 자유로이 동아리, 씨클 등을 결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9 | 청소년은 사생활 침해(소지품 검사, 몸수색 등)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 | | |
| 10 |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 | | |
| 11 | 청소년을 징계하거나 처벌하려면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 한다. | | | | |

| 순 | 항 목 | 전혀 중요하 지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
| 12 | 청소년은 징계절차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13 |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 | | |

인권 침해 방지 과제, 인권 교육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2. 선생님은 자신이 학생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지켜주고 있다() ② 잘 지켜주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⑤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23.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잘 지켜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 수가 많아 통제위주로 지도할 수 밖에 없기 때문()
 ② 학생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제도나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
 ③ 학교 규칙 자체가 인권 침해적 내용이기 때문()
 ④ 학교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예를 들어 소리함 같은 것이 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되기 때문()
 ⑤ 교사에 대한 인권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
 ⑥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
 ⑦ 교사의 인격적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
 ⑧ 기타()
24.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 수의 축소()
 ② 학생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제도나 장치 마련()
 ③ 학교 규칙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제정()
 ④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⑤ 체험적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⑥ 교사의 인격적 자질 함양()
 ⑦ 상담 교사를 통한 인권 상담기회 확대()
 ⑧ 기타()
25. 청소년이 누려야할 인권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6. 학생 대상의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27. 교사 대상의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건강권 관련 급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28. 학교의 급식시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① 특별한 규칙 없이 점심시간 내내 식사 가능()
 ② 학년이나 학급별로 식사 시간 제한() ③ 모른다() ④ 기타()

29. 학교의 급식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교실() ② 식당() ③ 모른다() ④ 기타()
30. 학교의 급식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학교직영() ② 위탁급식() ③ 모른다() ④ 기타()
31. 학생증을 통한 바코드 처리나 지문인식기를 통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급식불가’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습니까?
 ① 바코드기나 지문인식기가 없다()
 ② 바코드기나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며, ‘급식불가’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③ 바코드기나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나, ‘급식불가’라는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32. 학생증을 통한 바코드 처리나 지문인식기를 통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급식불가’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④ 기타()
33. 본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배식에 동원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34. 현재 학교의 급식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 | 항 목 | 전혀 아님 | 아닌편 | 그런편 | 매우 그림 |
|----|-----------------------------------|----------|-----|-----|----------|
| 1 | 급식시간은 식사를 여유 있게 할 만큼 넉넉하다. | | | | |
| 2 | 급식장소는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준다. | | | | |
| 3 | 식사의 양은 충분하게 주어진다. | | | | |
| 4 | 음식 열량의 고려 등 균형있는 식단이 제공된다. | | | | |
| 5 |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6 | 신선하고 좋은 음식재료를 사용한다. | | | | |
| 7 | 학생 급식과 교직원 식당의 식사 질이 동등하다. | | | | |
| 8 | 급식 메뉴 결정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다. | | | | |
| 9 | 급식 업자나 담당자 선정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다. | | | | |
| 10 | 현재 급식 업체나 담당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 | | | | |

35. 학교 건물 및 시설과 관련한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②,③번 응답자는 37번 문항으로)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36. 학교 건물 및 시설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측면은 어떤 것입니까?
 ① 건물간의 간격이 좁아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
 ② 건물 및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다칠 위험이 있다()
 ③ 환풍이 되지 않는다()
 ④ 냉·난방기 등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⑤ 식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⑥ 기타()

다음은 여러분의 신상에 대한 질문으로, 개인이 아닌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대졸() ② 석사수료() ③ 석사() ④ 박사수료() ⑤ 박사()

38. 선생님의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 ① 무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원불교() ⑥ 통일교() ⑦ 증산교() ⑧ 기타()

39.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40.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

41.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

42. 선생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평교사() ② 생활지도부장() ③ 1학년 부장() ④ 2학년 부장()
⑤ 3학년 부장() ⑥ 기타 부장() ⑦ 교감() ⑧ 교장()

43. 선생님의 담임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담임() ② 부담임() ③ 비담임()

44.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교원단체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교총() ② 전교조() ③ 한교조() ④ 좋은교사모임()
⑤ 자유교조() ⑥ 없음() ⑦ 기타()

♣ 모두 끝났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